

최 종
연구보고서

**레포트피싱(Leports-fishing)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A Study on Income Increase of Fishery Households and
Economy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through Leports-fishing Development**

2005. 12.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 양 수 산 부

제 출 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레포츠피싱(Leports-fishing)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연구책임자 : 류 정 곤
연 구 원 : 김 대 영
연 구 원 : 안 재 현
연 구 원 : 이 정 삼
연 구 원 : 김 수 진
연 구 원 : 신 상 규
위탁연구기관명 : 부 경 대 학 교
위탁연구책임자 : 박 성 쾌
연 구 원 : 오 정 한
위탁연구기관명 : (주) 이 티 카 운 슬
위탁연구책임자 : 노 영 희

요 약 문

I. 제목

레포츠피싱(Leports-fishing)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결과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이 21세기 주도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광 및 레포츠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새롭게 창출되는 관광인구는 기존과는 달리 모험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을 생각하는 체험형 관광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서 이들 수산자원을 채포, 어획하거나 혹은 수산물 양식 및 가공 활동에 참여하는 등 수산자원을 적극 활용한 신개념 해양레포츠의 개발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음
-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활동은 갯벌체험과 같은 극히 제한된 형식에 국한되고 있으며 실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체험형 관광인구가 점차적으로 증대되면서, 수산자원 활용에 있어 생계형 어업인과의 경합관계 형성이나 주무부처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해양레포츠와는 차별화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등에 초점을 맞춘 ‘레포츠피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레포츠피싱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자원을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업인 및 연안 지역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정책이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단계로서 레포츠피싱의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포츠피싱 활동을 유형화함
- 이를 토대로 수요자들의 생활방식을 감안한 레포츠피싱의 전략적인 시스템 개발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하여 레포츠피싱에 의한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며, 해양수산자원 이용의 다각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어업인과의 분쟁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레포츠피싱을 어가소득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함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낚시인구, 낚시판매점, 낚시포인트, 스쿠버다이버 인구, 스쿠버다이버 판매점, 스쿠버다이버 포

- 인트, 체험어로유형 등의 통계자료를 정부, 관련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기존의 해양레포츠 관련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는 통계기법에 의해 분석하고 수집자료는 전산입력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레포츠피싱에 대한 수요분석을 위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인식도 및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지출함수를 계산해냄으로써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수요분석 및 예측치를 토대로 레포츠피싱에 따른 어가소득 증대효과를 분석함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레포츠피싱의 개념 및 유형

1. 레포츠피싱의 개념

- 레포츠피싱(Leports-fishing)은 레저(Leisure), 스포츠(Sports) 및 피싱(Fishing)이 중복적으로 조합된 단어로서, **‘레저(혹은 레크리에이션)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중동·식물을 채포하거나 수중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행위’**로 정의됨
 - 레저 : 참가의 주된 목적이 의식주 문제가 아닌 집을 떠나 행해지며 삶의 재충전에 기여하는 자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용한 후 남는 시간에 특정의 목적, 가치 및 수단적 의미를 부여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
 - 스포츠 : 체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서, 오락으로 즐기거나 승부를 겨루기 위한 신체운동 또는 일과 놀이의 연장선 위에 걸치는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 정신적·신체적 활동

- 레포츠 : 레저와 스포츠가 조합된 개념으로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즐거움과 재미,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싱(Fishing) : 어류(Finfish)를 어획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획활동 자체가 수중생태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대상을 수중생태계 전체로 넓힐 수 있음. 또한 어획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 취하는 개념을 넘어서 관찰을 위해 일정 시간 채취하거나 혹은 어획하였다가 다시 놓아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

○ 레포츠피싱의 특징

- 비상업적 어업행위 : 레포츠피싱은 상업적 어업과 마찬가지로 수산생물을 채포하기는 하나 채포한 수산물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적 어업행위
- 대상의 광역성 : 레포츠피싱의 대상은 수산동물만이 아니라 수중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 광역성을 가지고 있음
- 행위의 다양성 : 레포츠피싱의 협의의 개념은 레포츠 행위과정에서 수산생물을 채포하는 것이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 수산생물 채포행위를 수반하지 않지만 수산생물이나 수산생태계를 직접 수중관찰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됨

○ 레포츠피싱의 유사개념

- 레크리에이셔널피싱(Recreational Fishing) :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활동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스포츠피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 스포츠피싱(Sports Fishing) : 협의개념으로 (i) 낚시를 통해 어획물 획득 혹은 금전적 가치를 얻기보다는 바다에서 어류를 찾아내고 잡기 위해 도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ii) 목표어종을 두고 낚시꾼들끼리 경쟁적인 어획을 행하고, (iii) 공간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싱을 위한 이동범위가 광역이며, (iv) 경우에 따라 고가장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정의됨
- 레크리에이셔널피싱과 스포츠피싱은 모두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낚시활동에 국한되므로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관찰행위까지를 포괄하는 레포츠피싱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레포츠피싱과 해양관광어촌관광의 관계

- 레포츠피싱은 해양을 기반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레저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해양레포츠, 해양관광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수중동식물을 채포, 관찰하는 체험적 행위에 보다 역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2. 국내 레포츠피싱의 유형

- 레포츠피싱을 전술한 바와 같이 레크레이션과 스포츠가 혼합된 비상업적 수산물 채취 및 어획활동과 수중생태계를 관찰하는 활동으로 규정할 때,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레포츠피싱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 (i) 수산물 포획에 중점을 둔 유어낚시형, (ii) 종전의 갯벌맷사지나 단순한 갯벌행사가 아닌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 채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갯벌체험, (iii) 그물어업이나 전통적인 어법을 경험해보는 체험어업형, (iv) 수중생태계 동식물을 관찰하는 행위에 역점을 두는 수중체험형이 그것임

표 1. 국내 레포트피싱 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유어낚시형	바다낚시	선상낚시, 갯바위 낚시 유어장(유료낚시터) 낚시 등
	민물낚시	하천낚시, 호소낚시, 인공낚시터 낚시 등
갯벌체험형	체험어장 (체험형)	갯벌맨손체험
	생태학습장 (교육형)	갯벌생태체험
체험어업형	양식장체험	사료주기, 양식과정 참여, 양식물 수확 등
	조업체험	문어통발어업, 야간횃불조업, 그물어업, 도수어업, 해녀조업 등
	전통어업체험	손공치잡이, 지인망어업, 손낚시, 창경바리어업 등
	기타	해조류건조 등
수중체험형	직접체험형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씨워킹, 비치다이빙 등 ** 국내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국민의 해외관광 증가로 이러한 형태의 레포트피싱을 즐기려는 인구는 많음
	간접관찰형	잠수정 등

제3장 국내 레포트피싱 현황

○ 국내 레포트피싱 인구

- 해양관광이나 해양레포츠 인구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 기관별로 추정치를 내놓고 있지만 이 추정치 역시 큰 편차를 보여 표준치를 제시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레포트피싱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 단, 지난 2003년 정부의 어촌관광종합추진대책에 따르면, 국내 어촌관광 인구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지난 1996년 6,600만 명에서 2003년 기준 9,200만 명으로 국내 전체 관광인구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10년에 가서는 11,600만 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 국내 레포트피싱의 발전 추세

- 과거 유어낚시가 주류를 이루던 패턴에서 벗어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의 영향으로 갯벌체험형과 체험어업형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각각의 유형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패턴에서 최근에는 개별 유형을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 유어낚시형과 수중체험형은 주로 동호회 및 소규모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갯벌체험형과 체험어업형은 기업체, 각종 기관 등 중대형 규모의 단체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등 소규모 인원이 모두 즐기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국내 레포츠피싱의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와의 관계
 - 현재 국내의 레포츠피싱은 여전히 초보적 수준의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레포츠활동이 실제 어가소득 증대나 어촌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2. 레포츠피싱 유형별 특성분석

유형	주요 해역	활동그룹 형태	현 개발수준	프로그램 다양성	체류 가능성	현재 어가소득에의 영향
유어낚시형	전국	소규모 위주	각종 동호회 활동 다수	프로그램 고착화 경향	낮음 (바다낚시는 다소 있음)	유어선 대여, 입어료
갯벌체험형	서,남해	단체, 소규모	개발 본격화 단계	다양화 가능성 있음	있음	입장료
체험어업형	동,서,남해	소규모 단체 일부	개발 시작 단계	다양화 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대여료 일부
수중체험형	동해, 제주해역	소규모	각종 동호회 중심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고착화 경향	있음	입어료

제4장 레포츠피싱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관련법규 검토

- 레포츠피싱은 신개념이어서 직접적으로 레포츠피싱을 다루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음. 그러나 현재 국내 법체계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서 ‘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어행위와 관련된 법들을 중심으로 법규를 검토하였음
 -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유어는 레포츠피싱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레포츠피싱 네 개 유형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 관련법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 유어행위 제한 관련법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내수면어업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 유어행위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타 동력기구 관련법 : 낚시어선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2. 문제점 분석

가. 법·제도 측면

- 개별법에 의한 관리로 중복규제 혹은 행정공백 : 유어행위 제한에 관련한 직접법만 10개이고, 유어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동력기구를 관할하는 법이 별도로 존재함. 또한 유어행위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조성이나 시설설치를 위해서는 기타 어항·어촌개발,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규제도 받게 됨
- 개별법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식은 중복규제 혹은 규제공백을 피할 수 없고, 관리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측면이 많음
 - 예컨대, 내수면 유어낚시의 경우에는 이 행위제한 관련법 10개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되며, 갯벌체협의 경우에도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의 적용을 받음
 - 또한 유선및도선사업법상의 유선(낚시유선)과 낚시어선업법상의 낚시어선은 영업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신고시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동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성능과 안전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동법 제7조). 이는 동일 행위에 대해 상이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임

표 3. 레포트피싱 직접 관련법 및 주요 규제내용

소관부처	관련법	주요 관련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 유어장내 유어행위 가능(제55조) :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정
	수산자원보호령	- 비어업자의 포획·채취 제한(제14조) : 어구제한, 은어포획 금지어구 및 지역 설정
	내수면어업법	- 유어행위에 대해 어구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제18조) 동법시행령 제14조1항 내수면에서 가능한 유어행위 나열
	습지보전법 (환경부 공동)	- 습지내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제13조, 제15조) 지역민의 일정한 어로행위 외,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행위제한, 금지행위 설정(제12조, 제15조, 제16조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제한
	수질환경보전법	- 호소 중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가능(제20조, 시행령 제57조)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금지(제5조)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금지(시행령 제8조)
	자연공원법	- 공원구역 내 허가행위 및 금지행위 규정(제22조, 제27조)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해중동물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포획행위 자체 금지
건교부	하천법	- 사·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하천지역 내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한 낚시행위 금지(제71조)
문화관광부	문화재보호법	- 특정 보호구역내 동식물 포획·채취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필요(제20조)
해양경찰청	낚시어선업법	- 안전설비 구비의무(제8조), 낚시어선검사(제9조), 최대승선인원 제한(제10조)
	유선및도선사업법	- 사업자의 안전준수 의무조항(제12조, 제16조) - 유선및도선 승선객의 안전준수 조항(제13조, 제17조)

- **생계형 어업과 유어행위에 대한 법적 형평성**: 연안어업인들은 정부로부터 어업허가를 득하여 어구제한, 어법제한 등 일정한 어업관리제도 하에서 어로활동을 펼쳐야 하는 반면, 유어행위는 여가활동으로 분류돼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표 4. 생계형 어업행위와 유어행위에 대한 상반된 규제현황

생계형 어업 행위규제	유어 행위규제
1. 수산업법 - 어업권규제 : 제8조(면허어업), 제41조(허가 어업), 제43조(신고어업) - 어업권유효기간 규제 : 제14조, 제43조 - 보호수면 내 행위규제 : 제69조	1. 수산업법 - 명시적인 유어행위 규제조항 없음 - 단, 유어장지정과 관련한 조항(제55조)만 있음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15호 근거조항)
2. 수산자원보호령 - 특정어업 금지구역 지정(제4조) - 그물코 규격 및 어구 규모 제한(제5조, 제6조) - 어구사용금지구역 및 기간(제7조) - 포획금지구역과 기간(제8조) - 어종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제한(제9조, 제10조)	2. 수산자원보호령 - 비어업자의 어구제한 : 제14조제1항 - 특정지역에서 특정어구를 사용한 은어포획 금지 : 제14조제2항
3. 내수면어업법 - 어업권규제 : 제6조(면허어업), 제9조(허가어업), 제11조(신고어업) - 어업권 유효기간 : 제13조 - 유해어업 금지 : 제19조	3. 내수면어업법 - 유어질서 : 제18조 (내수면에서의 행위규제 근거조항이 됨) ** 동법 시행령 :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 **불명확한 유어의 개념** : 레포츠피싱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유어’는 (i) 낚시 등을 이용하여 (ii) 놀이를 목적으로 (iii)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매우 모호하며 유어에 사용가능한 어구어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용에 혼란의 여지가 있음
 - 유어장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서도 유어의 종류를 정확히 나열하고 있지 않고, 유어장에서 가능한 채취·포획 방법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유어장 내에서만 가능해 일반 수면에서의 유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새로운 형태의 유어활동 규제근거 부재** :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유어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자면, 체험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서의 유어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새로운 형태의 유어활동을 어떠한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유명무실한 유어장 관리체제** :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 시행 중이지만 관리자 측이 강제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함. 이로 인해 치어·치패 남획과 과도한 어획이 이루어져 결국 유어장 내의 자원량 고갈로 이어지고 자원량 고갈은 유어장 이용객들의 흥미저하를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 **불법 유어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조치 불가** : 불법 유어행위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

업인은 불법 유어행위자를 발견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해당 수면관리자 혹은 해양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을 뿐, 정작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제재권한을 갖는 관리기관이나 해양청 등은 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불법 유어행위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어업인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음

나. 자원이용 및 관리 측면

- **생계형 어업인과 레포트피싱 활동자의 경합적 자원이용** : 생계형 어업인과 레포트피싱 활동자는 모두 수면을 활동공간으로,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행위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자원이용에 있어 경합현상이 불가피함
 - 정부나 지자체, 어업인이 수산자원량 증대 및 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묘 방류사업의 주요 대상종은 넙치, 볼락, 감성돔, 황복 등의 고가어종으로 상업형 혹은 생계형 어업인의 주요 대상종이자 어업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함. 하지만 이들 어종은 유어낚시객의 주요 조획 대상종이기도 해 경합이 심함
 - 수중체험의 경우, 마을어장 혹은 협동양식장 내 어촌계 자체적 혹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종묘방류나 종패살포사업으로 방류 혹은 살포된 패류 등을 스킨스쿠버들이 불법적으로 어획
 - 이러한 레포트피싱 이용객의 행위는 어떠한 기여 없이 마을 혹은 지역민의 공동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일종의 무임승차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레포트피싱 활동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조항 미흡** : 레포트피싱 이용객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조항에 대상종에 대한 체장 혹은 체중제한 내용이 없는 등 제도상의 불충분으로 어린물고기나 치패까지 마구잡이로 포획·채포하도록 방치되고 있음
-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자원량 관리 곤란** : 수산업법 제54조의2에 근거해 어업인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유어(레포트피싱)에 의한 어획 또는 채포되는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총허용어획 관리량에서 아예 빠져 있음. 레포트피싱 대상종이 일부 어종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포획, 채취량이 총허용어획량이나 자원관리량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 정부부처간 역할관계 측면

- 레포트피싱 활동과 관련된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교부, 문화관광부로, 이들 4개의 중앙부처간 역할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관리측면(예, 유어낚시)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레포트피싱 활동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수면과 수산자원의 이용 및 개발, 환경부는 수면과 수산자원, 환경의 보전 및 수질보전, 건교부는 수자원 이용 및 개발, 수질보전, 문광부는 수면내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

라. 정책적 측면

- **어촌어항의 유기적 개발체계 미흡으로 소득과의 연계성 낮음** :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장-어항-어촌 3개 요소의 통합적·전략적 개발 및 운영 체계가 미흡함. 특히 레포츠피싱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가 부족함
- **프로그램 개발지원 부족** : 정부의 레포츠피싱을 포함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 및 세부사업이 주로 시설위주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고, 프로그램 역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어촌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마케팅 측면이 사업에서 간과되어 왔음
- **관측 및 데이터베이스화 측면** : 레포츠피싱의 적절한 수급을 위한 통계자료의 축적이나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미비함. 현재 각 레포츠피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이용실태와 관련한 제대로 된 통계자료 하나가 없는 실정임
- **레포츠피싱의 항만구역 및 배후지의 친수공간에 대한 활용성 저조** : 정부는 항만공간을 활용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 친수공간은 대부분이 항만 배후지의 육상공간을 이용하여 녹지나 공원을 조성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강함. 그러나 이러한 휴식공간 조성은 단지 감상형, 관상형 관광수요나 여가수요만을 만족시킨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만구역과 이에 부속한 수산자원을 이용해 레포츠피싱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가. 법·제도 개선방안

- **개별법에 의한 규제내용 통합** : 레포츠피싱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삽입되어 있는 조항들을 통합해 단일화 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법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낚시발전을 위한 통합법과 해양자원이용및개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확대·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유어(레포츠피싱)의 개념을 명확화** : 유어개념을 레포츠피싱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정의하되, 용어 자체를 레포츠피싱으로 명시하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을 정확히 제시하며, 시행령을 통해 각 유형별 사용가능한 도구나 어구 등을 나열하도록 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화
- **유어(레포츠피싱)행위에 대한 명시적 행위제한 조항 삽입** : 이를 통해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 **낚시어선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통합** : 유어낚시 및 기타 체험어업, 수중체험형 등에 사용되는 어선이나 선박을 통합된 조항으로 규제하도록 명문화해야 함
- **유어장 관리제도 개선** : 유어장 관리규정에 상주 관리인원과 관리방식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유어장 관리규정에 대해 마을 어촌계 혹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의견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함. 또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어장에 대해 우수 유어장 인증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유어장 관리를 통한 자원관리와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감

-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체계 정비** : 신고체계나 신고내용을 단순화해 자발적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법 레포트피싱 행위에 대해 유어장 관리자나 해당 마을 어촌계에서 즉시적인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나. 상업적 어업과의 공존방안

- **레포트피싱 행위에 대한 자원보호 의무사항 명시** :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비어업자(레포트피싱 활동자)에 대해서도 체장제한, 체중제한, 금어기 및 금어구 설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해야 함.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생계형 어업인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고가어종에 대해서는 체장제한이나 금어기간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어업인들의 어구나 어법이 일반적으로 레포트피싱을 하는 이용객의 사용도구보다 어획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
- **유어장 및 낚시터 등에 대한 자원관리** : 레포트피싱 행위에 대한 총허용할당제 도입
 - 미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어낚시에 의한 조획량 비중이 큰 어종에 대해 연간 조획할당량을 설정하여 유어낚시를 관리하고 있음
 - 특히 유어장이나 유료낚시터 등 레포트피싱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정 공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남획에 따른 마을어장이나 유어장 황폐화를 방지해야 함
- **어업인과 레포트피싱 활동자의 교류가능성 확대** : 어업인과 레포트피싱 활동자들과의 공존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안의 하나는 이 양자간의 교류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임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보다는 소규모 어촌의 어가를 기반으로 레포트피싱 활동이 이루어지고 각종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다. 부처간 역할관계 정립방안

- **해수부 중심의 관리체계 구성** : 4개 중앙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레포트피싱 활동과 관련한 행정체계를 해수부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함
 - 레포트피싱은 단순히 수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수산자원 활용 및 관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해수부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교부의 하천 수질을 보호를 위한 낚시행위 금지 관할권이나 문광부에서 관할하는 수면내

문화재보호권을 해수부로 이관해 레포츠피싱 산업을 보다 전체적으로 관리 및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와는 단기적으로는 공조해서 수면과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레포츠피싱과 관련한 관할사항을 해수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만을 환경부에 존치
- 다만 환경부나 건교부, 문광부 등에서 수질관리, 문화재관리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레포츠 피싱 활동을 금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수부와 협의해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해역을 레포츠피싱 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함

라. 정책적 개선방안

- 레포츠피싱 활동이 유어장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 : 정부는 정책적으로 레포츠피싱 허용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을 설정해 레포츠피싱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관리는 철저히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부는 현재 일반항만 17개소와 신항만 8개소에 사업이 12,279억원을 들여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친수공간과 인접한 항만수역의 수질개선 및 정비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항만수역의 수질과 환경이 지금과는 달리 상당히 개선되게 됨. 따라서 친수공간과 인접한 항만수역의 수질개선 및 환경정비를 통해 이 지역을 레포츠피싱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레포츠피싱용 자원조성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해 그야말로 휴식공간과 레포츠피싱 공간이 공존하는 레포츠 피싱 거점구역으로 활성화해야 함. 이러한 친수공간을 단순히 감상형 혹은 관광형 수요에만 초점을 맞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임
 - 대신 이 허용구역 혹은 권역에서는 최적의 레포츠피싱 활동조건을 제공하되, 불법적 레포츠 피싱 활동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식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히 이 지역에 대해 레포츠피싱용 자원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레포츠피싱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 레포츠피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체계 마련 : 레포츠피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관광프로그램 개발업체-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프로그램 개발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해양관광 프로그램은 어업인과 어협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업인의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부터 레포츠피싱 관련 시설 및 이용객 관리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타 : 기초통계 구축과 레포츠피싱 관련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레포츠피싱 행위제한 지역이나 제한내용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함

제5장 해외 레포트피싱 개발사례

1. 일본

- 일본은 우리나라의 레포트피싱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양레크리에이션’이란 용어를 사용함. 수산동식물 채포여부에 따라 ‘유어(遊漁)’와 ‘친수성레크리에이션’으로 구분됨
- 일본의 해양레크리에이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해면·내수면 어업조정규칙’으로, 수산동식물의 채포와 관련해 어업자와 유어자에 대한 어구어법, 채포금지 구역, 어종마다의 채포금지 기간, 채장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 해구어업조정위원회·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의 지시, 내수면 유어규칙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수산동식물 보호 및 어장이용을 위한 자율규제가 병행되고 있음
- 이 중 핵심인 어업조정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 각 도도부현별로 유어자가 사용가능한 어구어법을 정하고 있음
 - 각 지자체별로 어민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보호·육성시키고 있는 어패류에 대해 채장 및 금지 기간 등을 설정하여 유어납시로부터 상업적 어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2002년 12월, 유어와 어업의 조정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동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첫째, 종전에 전면금지 되던 미끼뿌림납시에 대해 (i) 바다에 접한 도도부현 과반수가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고, (ii) 유어활동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자원관리나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장을 제외하고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둘째, 광력(예, 집어등)사용과 관련해 어업은 규제규정이 있지만 유어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유어에 대한 광력규제 방안을 도입하였음. 셋째, 유어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온 끌연승에 대해 최근에는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끌연승을 이용한 유어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태와 규칙의 괴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구역·기간·어법의 제한·조치를 설치하여 전면금지를 해제하였음. 어업과 유어에 공통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업과 유어의 어획물(채장, 연령), 구역·기간 등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조치의 통일 및 우수어장에서 어선, 유어선, 플레저보트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척수를 제한하였음

2. 미국

- 유어인구 : 연간 1,400만 명. 수요 증가추세, 출조횟수 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10%가 증가하여 2004년에는 8,200만 회 출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어납시객이 어획한 총 마리수는 4억4천1백만 마리, 중량으로는 총 2억5천4백만 파운드 가량이었음
 - 미국에서 유어납시는 주된 경제적 원동력이기도 한데, 대략 30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35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그러나 유어납시객들이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비교적 집중적인 어획을 함으로써 일부 어종의

자원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정 어종에 있어서는 유어낚시에 의한 어획량이 상업적 어업에 의한 어획량을 초과하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유어낚시 인구 및 출조횟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주무기관 : NOAA는 수산업법, 행정명령 12962, 기타 보존법 하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의 원칙 하에서 상업적 어업과 더불어 유어업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관장. 이를 위해 유어낚시공동체, 연안에 위치한 주정부기관과 기타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함
- 미국의 유어낚시 규제는 관할수역의 차이에 따라 크게 주 정부에 의한 규제와 연방정부에 의한 규제로 구분됨
 - 연방정부 :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유어낚시에 의한 어획량 비중이 큰 어종에 대해서 연간 어획할당량을 설정하여 유어낚시를 관리하고 있음. 특히 연방정부 관할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종(다랑어류나 새치류 등)에 대해서는 출조당 일일 어획마릿수 규제뿐만 아니라 유어낚시 어선이 반드시 어획면허를 얻어야만 출조하여 어획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정확한 유어낚시 어획량을 파악하기 위해 유어낚시객들이 어획한 어종에 대해 24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획보고 의무는 유어낚시객들이 연방정부 관할수역에서 잡은 고도회유성 어종(상어와 참다랑어 이외의 다랑어류 제외)에 대해서 24시간 이내 지역 NMFS에 보고해야 함
 - 주 정부 : 최소체장규제, 금어기규제, 그리고 출조 일일당 어획마릿수규제를 통해 유어낚시를 규제하고 있음. 최소체장규제와 금어기 규제는 치어 자원의 어획을 방지하고, 산란시기에 어획을 금지하여 산란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 그리고 출조 일일당 어획마릿수 규제는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여 어업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규제수단은 주 정부나 지역어업관리위원회에 의한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제6장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활용 가능성

1. 어가소득의 현황 및 특성

- 2003년 말 기준 국내 어업가구의 평균소득은 23,916천 원으로 1988년 이후 연평균 8.7% 증가율을 보였지만, 어업의존도는 2002년을 기해 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함
 - 이는 어업자원 감소와 해양오염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비의 급격한 증가, 국내 수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어가의 하락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때문임
- 또한 도시 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어가소득은 1990년의 88.6%에서 1995년 81.9%, 1997년 74.1% 그리고 2003년 67.8%로 그 차이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어가 대부분의 소득이 수산업,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보다는 단순한 생산활동을 통한 것이어서 환경변화에 따라 매우 변동이 심함. 이는 결국

어가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소득의 불안정성은 어촌인구, 특히 젊은층의 이탈현상을 가속화시켜 어촌의 노령화가 매우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임
 - 어업통계기본조사에 따르면, 1990년 496,089명이던 어업인구는 2003년 현재 21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50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이 2000년대를 전후해 40%를 초과하기 시작해 2003년에는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하고, 또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생산, 가공 및 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2. 레포트피싱의 수요분석 및 예측

- 2005년 10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지역 레포트피싱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표본 총 270부의 내용을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한글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레포트피싱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바다축제, 바다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체험(스킨스쿠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참여횟수는 1회가 42.2%, 2회가 26.8%, 3회가 12.2% 순으로 참여횟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소선택 기준으로는 자연경관(82.2점)과 기반시설(81점), 시간(75점)이 주요했으며, 방문지역은 인천지역이 35.9%, 충남(22.6%), 강원(14.1%)으로 수도권과 근거리에 있는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 동반자는 친구/연인/선후배(43.3%), 가족/친척(39.6%)으로 소규모 그룹형이 많고, 당일방문 비율(23%)에 비해 숙박을 한 경우가 77%로 높았으며, 여행경비는 1인당 5~10만원 미만 28.5%, 10~15만원 미만 27.8%, 20만원 이상 17.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냄
 - 재방문 의사에 대해서는 97%의 응답자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레포트피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시설 보완에 대한 요구도 높았음
- 분석모형
 - 분석결과를 토대로 레포트피싱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콥-더글라스 함수형태의 지출함수를 설정하고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선형모형으로 변형하였음
 - 종속변수를 연간 레포트피싱참여회수(LYH), 독립변수를 단위교통비(LTE), 단위 음식비(LFE), 단위 숙박비(LSE), 단위 레포트피싱 비용(LLP), 1인 연간소득(LY)으로 사용하였음. 종속변수로 연간 레포트피싱 비용을 이용하지 않고, 연간 1인 레포트피싱 참여회수를 사용한 이유는 비용을 종속변수로 이용할 경우, 조사된 독립변수들은 사실상 총비용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출(수요)함수로서 의미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임

$$LYH_i = \hat{\beta}_0 + \hat{\beta}_1 LTE_i + \hat{\beta}_2 LFE_i + \hat{\beta}_3 LSE_i + \hat{\beta}_4 LLP_i + \hat{\beta}_5 LY_i + \epsilon_i \quad (1)$$

- 또한 본 연구에서는 White(1980)의 이형분산 하에서의 일관성 있는 공분산 매트릭스를 추정하여 파라메타 추정치의 이형분산 문제를 교정하였음
- 추정결과 결정계수(R^2)는 0.427로 나타났고, 모든 독립변수 파라메터 추정치의 부호는 경제이론과 부합하였으며, 최소한 10%의 전통적 임계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음. 특히 소득 탄성치가 1.266으로 추정되어, 소득 증가에 따른 레포츠피싱에 대한 수요가 향후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레포츠피싱 수요예측(해면 중심)

- 본 연구에서는 레포츠피싱 참여자수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위한 초기 레포츠피싱 인구는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중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수와 일반 어촌관광객수를 합한 어촌관광객수의 2005년 추정치를 초기 레포츠피싱 인구로 사용하였고, 인구증가율의 경우 우리나라 출국 관광객수와 입국 관광객수의 평균증가율을 레포츠피싱 인구 증가율로 이용하였음

$$\text{- 예측모형 : } LFP_t = LFP_{t-1} (1 + TPR) (1 + \hat{\eta} * GNP)$$

LFP = 레포츠피싱 인구, TPR = 내국인출국 및 외국인입국 관광객 증가율, $\hat{\eta}$ = 소득탄성치, GNP = 경제성장률, $t = 2006 - 2015$

- 2015년 레포츠피싱 인구는 406.9만 명 ~ 45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2005년 설문조사 대상자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산한 시장규모는 1조4천억 원 (349,240원/명×4,069,000명) ~ 1조6천억 원(349,240원/명×4,58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표 5. 레포츠피싱 인구 예측(2006~2015년)

경제성장률 \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만명)	(만명)	(만명)	(만명)	(만명)
4(%)		260.9	274.1	288.0	302.5	317.9
5(%)		264.0	280.7	298.5	317.4	337.5
경제성장률 \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만명)	(만명)	(만명)	(만명)	(만명)
4(%)		330.0	350.9	368.6	387.3	406.9
5(%)		358.8	381.6	405.7	431.4	458.7

3.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촌의 소득원 개발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어촌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어업인구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은 어촌주민의 정주공간이자, 도시민이 자연과 접촉하고 어촌과 교류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동시에 도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참살이(well-being)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어촌이 갖는 인문사회적 자원은 레포츠피싱 이용객에게 레포츠피싱 이외에도 다양한 흥밋거리나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레포츠피싱을 통해 어촌이 또 다른 별도의 소득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어촌은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의 생산주체이자 최초의 판매주체이므로, 레포츠피싱이 활성화되면서 어촌이 레포츠피싱 이용객이라고 하는 최종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들 생산물들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짐
 - 또한 생산된 어획물을 그물이나 기타 장비에서 떼어내 내장이나 기타 분비물을 제거한 후 말리는 등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및 가공행위 자체가 도시민의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거리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어가에서의 숙박 등을 함께 연계시켜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레포츠피싱의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음
 - 최근 늘어나는 해상가두리 시설을 낚시터로 전환해 레포츠피싱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레포츠피싱 활성화도 가능함. 특히 이러한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착안해 수심이 낮은 지역에 해상가두리 시설과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 이를 가족형 이용객들을 위해 어린이나 부녀자 대상의 유어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앞서 실시한 2005년 설문조사 대상자의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산한 2015년 레포츠피싱의 시장규모는 1조4천억 원~1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레포츠피싱의 이런 잠재수요는 어촌관광과 레포츠피싱 개발의 높은 가능성과 성공확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측된 잠재수요가 모두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움
 - 레포츠피싱 지출항목 중에서 어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음식물비, 숙박비, 렌트비, 낚시, 스쿠버다이빙비, 기타잡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현지 설문조사 결과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은 604,990원이며, 교통비, 음식물비, 숙박비에 대한 지출이 62.3~74.2%에 달함
 - 따라서 이것이 레포츠피싱에 대한 잠재수요 중 어가수입 또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볼 때, 전체적으로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분은 약 9,345천억 원~11.13천억 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전망치는 어가소득 실현가능치이며, 어촌관광 및 레포츠피싱에 대한 정책의 내용과 투자규모 그리고 정책의지에 따라 그 승수효과 및 파급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제7장 레포츠피싱 중장기 개발계획

1. 상위계획 및 현 추진사업 검토

- 레포츠피싱은 기본적으로 국가개발 및 어촌관광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 따라서 레포츠 피싱 개발은 국가의 어촌관광개발과 관련한 상위계획의 정책목표 및 사업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해나갈 것임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등을 검토한 결과, 각 권역별로 관광기능을 별도로 부여하고, 충청권, 전남권, 경남권, 강원권에 해양관광 기능을 집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충청권과 일부 신안 등에는 갯벌관광을, 여수, 사천, 통영과 제주도 등 남해안 지역에는 해양레포츠 관광기능을 특화해 개발한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음. 또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법체제 정비를 서두를 계획임. 더욱이 가두리양식장 등을 레저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어촌어항 개발 측면에서 이러한 레저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표 6. 주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구분		내용
상위계획	국토 및 관광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국토구상(2004)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년~2011년)
	해양수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 2000~2010) ●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연도별)
기타 관련계획	국토 및 관광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2000~2009) ●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구상 중)
	해양수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어촌어항개발 기본계획(구상 중) ●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년~2009년) ● 해양관광진흥종합대책(2004년)
추진 중인 사업	해양수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종합개발사업(1994년~2013년) ● 어촌관광활성화사업(2005년~2009년) : 모델별 어촌어항개발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2002년~2013년)

2. 기본계획

- 계획의 목표
 -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레포츠피싱 관련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틀 안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수산자원 및 어촌의 인문·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포츠피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

가하는 체험형 해양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급자인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
 - 기존의 어촌관광개발 사업 및 기타 레포츠피싱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레포츠피싱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함
 - 권역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레포츠피싱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함
 - 어촌 및 어항의 문화교류 기능과 판매기능 위주로 강화함으로써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하되, 특히 어가소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실현가능한 레포츠피싱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체제를 효율화함
 -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단일화된 법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함
 -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어촌계와 레포츠피싱 관련 단체,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레포츠피싱 문화의 정착을 유도함
- 추진전략(3단계 추진)

표 7. 레포츠피싱 추진단계 및 추진전략

단계별	목 표	추진전략
1단계 (‘06~’07)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법·제도적 체제정비	- 레포츠피싱 활성화 체제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06~’07) - ‘레포츠피싱발전법(가칭)’ 제정 추진(‘06~’07) -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대책 마련(‘06) - 권역별, 유형별 개발방향 설정(‘06) - 시범사업 실시계획 확정 및 실시(‘06~’07) - 레포츠피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06~’07) - 레포츠피싱 관련 통계 D/B 구축 및 자료축적(계속) - 레포츠피싱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강화(계속)
2단계 (‘08~’10)	지속적 법·제도 정비를 통한 체제정착 유도 및 레포츠피싱 발전추진	- 지속적 법·제도의 정비(‘08~’10) - 시범사업을 토대로 권역별, 유형별 시행계획 확정 및 추진(‘08~’10) - 유어장 및 레포츠피싱 허용구역 설정(‘08~’10) - 레포츠피싱용 수산자원 조성 추진(‘08~’10)
3단계 (‘11~’15)	국민적 어가활동으로서 안정화 및 본격 확산추진	- 2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시행계획 수정,보완(‘11) - 레포츠피싱 개발사업의 본격 확산(‘11~’15)

-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개발사업은 2007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0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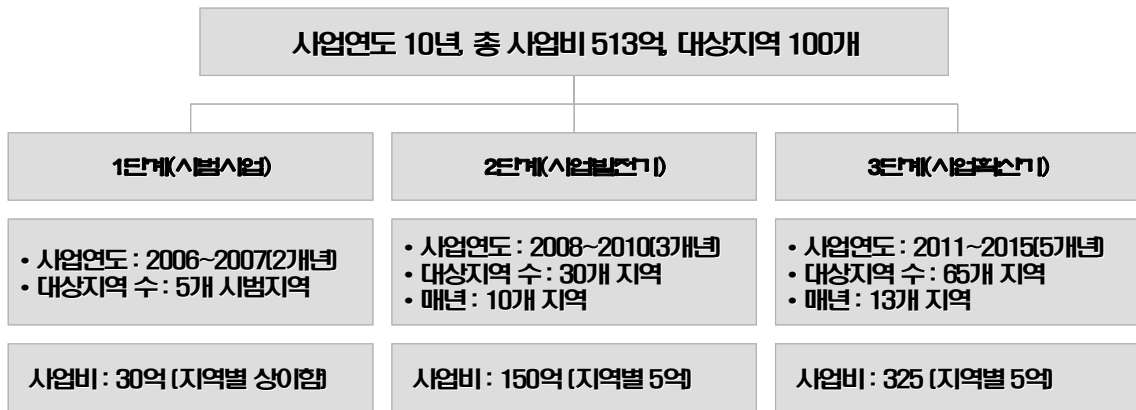


그림 2. 레포츠피싱 개발사업 추진단계

3. 유형별 어촌경제 활성화 발전모델 설정

- 레포츠피싱 중장기개발을 위한 각 유형별 어촌경제 활성화모델은 (i)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ii)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iii) 어가소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iv) 이용객의 재방문을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운영수입이 좋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어장이나 어촌마을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기본모델로 설정하였음
- 유형별 발전모델 설정의 기본원칙
 - (i)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구축, (ii) 도서지역을 가족중심·장기체류형 레포츠피싱 거점으로 개발, (iii) 시스템적 어촌어항 개발과 이를 통한 판매 및 문화교류 기능 강화, (iv) 개별 어가 기반의 레포츠피싱 이용시스템 구축, (v) 실현가능하고 어가소득과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제 강화, (vi) 주변 배후지 관광자원 및 기타 체험프로그램과 연계성 강화
- 유어낚시형

구분	내용
기본모형	● 소규모 가족형 유어낚시마을
유어장 형태	● 구획성 유어낚시터 - 해상잔교, 해상가두리형, 기타 명확한 구획이 설정된 형태 - 갯바위낚시, 방파제낚시 등은 지양
프로그램	● 주요 유어낚시객인 성인 남자 이외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전통어업 체험, 해조류 및 기타 패류채취, 해수욕(소규모), 수산물 시식프 프로그램 등
관리 및 운영형태	● 유어장 :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운영회를 조직해, 순번제로 공동관리운영 ● 숙박, 판매, 기타 편의시설 : 어촌계 부녀회를 중심으로 공동관리운영(순번제) - 일정수준의 강제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먼저 어촌계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어촌소득증대	●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유어장, 숙박시설 등을 통한 입어료, 숙박료, ●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수산물 및 가공품 직판 수입

구분	내용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바위 낚시가 주류를 이루던 바다유어낚시는 불법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고, 관리나 통제가 곤란해 어촌계의 반발이 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잔교형, 가두리형처럼 특정한 지역에서만 유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어장을 운영할 경우 관리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음 ● 가족 관광객일 경우 체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형으로 개발하되, 유어낚시를 하지 않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강제성을 부여한 순번제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어업소득을 포기하는 대신 수산물 공동판매 및 숙박시설 운영료 등을 통한 소득보전을 위해 수산물 및 가공품 직판장을 설치해 어업인을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가족형 소규모여야 불법 낚시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갯벌체험형

구분	내용	
기본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관광형 (통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인근 초중고등학교 체육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그룹형(체류형)
체험어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갯벌체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체험어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상황에 따라 갯벌체육행사(갯벌씨름, 뽕배체험 등)를 위주로 구성 ● 갯벌행사 주최측과 프로그램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 + 어업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이용한 전통어업체험 ● 갯벌체험 + 유어낚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해의 탁도 때문에 갯벌체험과 수중관찰형을 결합하는 것은 불가
관리 및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회원 1~2인(순번제)을 포함한 상시 관리인력을 따로 배치하되, ● 행사시, 주최측 관리인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정부의 [갯벌행사 지침]에 따름 ● 숙박 및 기타 부대시설 공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회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운영체에서 순번제 관리운영 ● 체장 및 어획량 등을 명확히 제한하되 ● 레포트피싱 이용객의 추가어획량에 대해서는 저가판매하는 형태로 운영 ● 숙박, 기타시설물 : 부녀회 공동관리
어촌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대여료, 입장료, 기타 부대용품 판매료, 음식판매비용 등 파생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료, 숙박료, 체험어업 참가료, 어촌계 회원이 직접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판매료, 추가어획량에 대한 판매료 등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형은 이용객 규모에 따라 개발가능한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체관광형과 소규모 갯벌체험마을로 구분하여 개발하되, 소규모형은 체류형으로 개발하도록 함 ● 단체관광형은 특히 인근 학교나 기관의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수산동식물 채포행위와 관련된 행사, 이벤트를 위주로 하는 것이 흥미를 끌어내기 용이할 것임 ● 소규모형의 경우에는 체장, 어획량 등을 정확히 제한해 제한량 이상의 어획물에 대해서는 추가금액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가능 ● 기타 수산물 직판장 개설을 통해 어촌의 수산물 판매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 	

○ 체험어업형

구분	내용	
기본모형	● 소규모 그룹형 체험마을	
	● 동해형 (체험어업+수중관찰형)	● 서남해형 (체험어업+일부 갯벌체험)
프로그램	● 동해의 탁도가 낮은 수질을 이용하는 어업(창경바리, 손공치잡이 등) 특화	● 야간횃불조업, 김양식, 패류양식 등 양식체험 특화
	● 일부 수중관찰형 체험 가미	● 일부 갯벌체험 가미
관리 및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업은 어업인이 체험안내자로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않음 ● 하지만 레포츠피싱 이용객과 어업인(체험어선이나 장소대여자)을 균등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단, 어촌계 협의과정을 통해 체험어업에 대한 체장제한, 어획량제한을 명확히 하고, 체험안내자인 어업인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어촌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업 참가료(어선대여료, 기타 체험에 필요한 도구 대여료 포함) ● 숙박 및 기타 시설사용료 ● 수산물 간이직판장 개설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 ● 일부 수산물에 대한 가공 등 서비스 제공비 등 	
특이사항	● 체험어업을 통해 레포츠피싱 이용객이 어획, 채포한 수산물을 어촌에서 단순가공, 배송까지 해줌으로써 체험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업형은 지인망 등 일부 어업을 제외하고는 단체형보다는 대부분이 소그룹이 참여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그룹형 체험마을을 기본모델로 함 ● 단, 동해와 서남해의 해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해는 별도 기구없이 손으로 직접 수산물을 수확하는 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을, 서남해는 김양식이나 바지락양식 등이 발전해있다는 점을 살려 양식장 체험이나 야간횃 불조업 등으로 특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수중체험형

구분	내용
기본모형	● 소규모 그룹형 유어장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유어장형태	● 섬주변 유어장 혹은 육역과는 떨어져 있어 반드시 유어선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유어장 - 이러한 유어장 형태여야 수중관찰형 레포츠피싱 이용객에 대한 관리가 용이
관리 및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선을 대여해주는 어업인 자체가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 ● 레포츠피싱 이용객에 대한 체장이나 어획량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 ● 유어장 관리 및 운영은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함
어촌소득증대	● 입어료, 숙박료, 부대시설 이용료 및 기타 판매료, 어촌계에서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판매, 기타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관찰형은 그 동안 자원활용에 있어 경합관계를 띠면서 어촌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이는 전문 스쿠버다이버들이 실제로 마을어장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채포한 때문 ● 그러나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그룹형으로, 유어선을 반드시 이용해 이동하도록 개발한다면 어업자들이 안내자이자 유어선 대여자로 기능하면서 관리까지 용이해지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서형

구분	내용
기본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레포트피싱 단지화 (장기체류 유도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유어낚시+체험어업+갯벌체험+수중관찰 통합 ● 유어낚시의 경우, 온 가족이 유어선에 동승하고 수산물을 시식해 보는 등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기타 관광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관건
관리 및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단지화하는 경우, 어업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업체가 필요함. 이때 관리 및 운영에 어촌주민이 참여가능하도록 함
어촌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선 대여료, 수산물 판매료, 단지내에 고용되어 받는 월급. 기타 ● 레포트피싱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파생소득(수산물 판매료)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함 ● 그러나, 물품조달이라든지 레포트피싱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레포트피싱 시설을 한데로 집적시켜 단지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므로, 상술한 네 가지 유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시범사업 실시계획

- 시범사업 지역선정 : 유형별 기본 개발모델을 바탕으로 레포트피싱 활성화와 어가소득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2007년~2008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유형별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레포트피싱 시범지역은 이미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2001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9개소, 2002년 8개소, 2003년 11개소, 2004년 12개소를 포함해 총 40개소를 검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 외에 해수부에 의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전문가 의견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실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2개 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음
 - 이들 42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체험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를 레포트피싱 4개 유형으로 분류, 이 분류표를 토대로 각 유형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해 10개 잠재 시범지역을 도출한 후, 2차로 이 10개 지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한 결과 5개 유형별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음
 - 평가항목은 시설기반, 접근성, 인지도, 프로그램 다양성을 기준으로 하였음. 특히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기자 하였으나 어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요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는 않았음

표 8. 시범지역 선정결과

구분	시범지역	비고
유어낚시형	사천 저도	
갯벌체험형	부안 모항, 서천 월하성	1개소 최종 선정(서천 월하성)
체험어업형	삼척 장호, 부산 공수	1개소 최종 선정(삼척 장호)
수중관찰형	남제주 위미	
도서형	신안 증도	

○ 시범지역 개발방안

구분	기본모형	주요내용
사천 저도	해상잔교형 바다낚시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형 유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쉼터 및 산책로 조성
서천 월하성	단체관광형과 소규모 체류형 가족체험마을(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소의 기능강화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 편의시설 확충 - 체류관광객을 위한 체험어업 프로그램 개발
삼척 장호	가족중심의 체험형 레포츠피싱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업 프로그램 관련시설 정비 - 숙박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 - 마케팅 활성화
남제주 위미	가족중심의 소규모 유어장(아마추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센터의 기능 강화 -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편의시설 확충 - 마케팅 채널강화 및 운영체제 정비
신안 증도	대규모 고급형 레포츠피싱 관광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 프로그램 강화 - 김 양식장 체험프로그램 강화 - 간이 체험어업형 프로그램 운영 - 유어선 선착장 시설 증설

5. 투자계획

○ 시범지역 투자계획(사업 1년차~2년차)

단위 : 천원, %

구 분		2006	2007	합 계	비 중
전체	합 계	793,500	3,027,000	3,820,500	100.0
	국 비	361,000	1,617,000	1,978,000	51.8
	지방비	259,500	890,000	1,149,500	30.1
	어업인	173,000	520,000	693,000	18.1
사천 지도 (유어낚시형)	소 계	190,000	650,000	840,000	100.0
	국 비	80,000	340,000	420,000	50.0
	지방비	67,000	185,000	252,000	30.0
	어업인	43,000	125,000	168,000	20.0
서천 월하성 (갯벌체험형)	소 계	237,000	625,000	862,000	100.0
	국 비	140,000	305,000	445,000	51.6
	지방비	72,000	195,000	267,000	31.0
	어업인	25,000	125,000	150,000	17.4
삼척 장호 (체험어업형)	소 계	104,000	645,000	749,000	100.0
	국 비	42,000	335,000	377,000	50.3
	지방비	37,000	185,000	222,000	29.6
	어업인	25,000	125,000	150,000	20.0
남제주 위미 (수중관찰형)	소 계	141,000	447,000	588,000	100.0
	국 비	74,000	232,000	306,000	52.0
	지방비	42,000	135,000	177,000	30.1
	어업인	25,000	80,000	105,000	17.9
신안 증도 (도서형)	소 계	121,500	660,000	781,500	100.0
	국 비	25,000	405,000	430,000	55.0
	지방비	41,500	190,000	231,500	29.6
	어업인	55,000	65,000	120,000	15.4

주 : 신안 증도의 경우, 민자투자금액 비중이 높지만 위 투자금액에서는 제외한 것임

○ 본 사업 투자계획(사업 3년차~10년차)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47,500	5,000	5,000	5,000	6,500	6,500	6,500	6,500	6,500
국 비		23,750	2,500	2,500	2,500	3,250	3,250	3,250	3,250	3,250
지방비		14,250	1,500	1,500	1,500	1,950	1,950	1,950	1,950	1,950
어업인		9,500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1,300
국 비	소 계	23,750	2,500	2,500	2,500	3,250	3,250	3,250	3,250	3,250
	자원조성	9,500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1,300
	기반시설조성	14,250	1,500	1,500	1,500	1,950	1,950	1,950	1,950	1,950
지 방 비	소 계	14,250	1,500	1,500	1,500	1,950	1,950	1,950	1,950	1,950
	기반시설조성	5,700	600	600	600	780	780	780	780	780
	정보화기반조성	3,325	350	350	350	455	455	455	455	455
	프로그램개발비	1,900	200	200	200	260	260	260	260	260
	마케팅비용	3,325	350	350	350	455	455	455	455	455
어 업 인	소 계	9,500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1,300
	기반시설조성	6,175	650	650	650	845	845	845	845	845
	운영비	3,325	350	350	350	455	455	455	455	455

주 : 시범사업을 제외한 투자금액임

제8장 결론

-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등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생활양식이 자리 잡아가면서 앞으로 관광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예전과는 달리 체험성을 강조하는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속에서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및 레포츠는 타 분야에 비해 활동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 수요는 2010년에 가서는 2000년 수준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양관광 또는 체험관광 수요를 어촌사회로 유입시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레포츠피싱(유어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체험 등)은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레포츠피싱은 예전처럼 단순히 자연경관 감상이나 해산물 시식 등의 관광과는 달리, 수산물 식물을 직접 포획·채포하거나 수중생태계를 관찰 또는 체험하는 등의 활동을 포괄하는 신개념 레포츠활동으로 단순히 수면만을 이용하는 수상레포츠와는 차원이 달라 체험을 강조하는 관광수요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진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서울 등 7개 시도에 걸쳐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레포츠피싱의 수요를 예측한 결과, 2015년 레포츠피싱 인구는 406.9만 명~45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 같은 레포츠피싱의 가능성을 뒷받침함
 - 아울러 2005년 설문조사 대상자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산한 시장규모는 1조4천억 원(349,240원/명×4,069,000명)~1조6천억 원(349,240원/명×4,58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레포츠피싱의 가능성은 매우 큼
- 한편 어촌사회 자체적으로도 어촌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구조적인 전환을 꾀하고 부가적인 소득원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
 - 최근 유통비 등 어업경영비 상승, 어장상황 악화, 국제 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경영압박을 받으면서 어가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 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 소득의 불안전성은 젊은층의 어촌 이탈을 심화시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다행히 어촌사회는 어촌만의 특수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다면 체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어촌사회 자체적인 구조변화와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하지만 레포츠피싱 활성화가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레포츠피싱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 상업적 어업인과 레포츠피싱 이용자 간의 경합적 자원이용 문제, 레포츠피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간 역할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레포츠피싱 활성화와 어촌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과되어서

는 안 될 것이 레포츠피싱 활동자와 생계형 어업인의 공존임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들 양자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각종 행위규제를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하고, 레포츠피싱 활동자에게도 치어 및 치패의 남획을 방지하도록 하는 자원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외에 양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함
- 아울러 현재 개별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데 따른 중복규제나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 유어장 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레포츠피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레포츠피싱과 관련한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한편으로 레포츠피싱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어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체험형과 더불어 도서지역을 레포츠피싱과 연계시키는 방안까지 각 유형별, 지역별 특색이 고려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레포츠피싱이 명실상부한 어가소득 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부의 관련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을 위주로 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마케팅 측면이 간과됨으로써 실질적일 어가소득 증대까지 연결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었음
- 이와 병행하여 현재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레포츠피싱 관련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장기적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SUMMARY

1. Title of Study

A STUDY ON INCOME INCREASE OF FISHERY HOUSEHOLDS AND ECONOMY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THROUGH LEPORTS-FISHING DEVELOPMENT

2. Results of Study

A. FISHING VILLAGE REVITALIZATION THROUGH LEPORTS-FISHING

With the spread of the living pattern laying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introduction of a 5-day workweek system, demand for tourism and leisure are increasing steadily and available time for them is getting longer. Especially, demand for sea-based tourism in 2010 has been estimated to be doubled from that of 2000. However, those newly-increasing demands for tourism and leisure will have a tendency of focusing on adventurous and experiential activities. From the point of view, it is needed to develop something new that can meet those kinds of demands for an experiential tourism and activity, particularly based on seawater and freshwater.

Leports-fishing - an activity which means comprehensively the experiential activities to catch and gather fishes, shellfish and seaweed, and to observe the ecosystem of underwater, not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benefits but for leisure - can be one of alternatives. Leports-fishing sub-programs being done in local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such as (i) Leisure Fishing, (ii) Catching-and-gathering of wetland fishery resource, (iii) Experiencing of Traditional Fishing and (iv) Observing-and-experiencing of Underwater Ecosystem. Among them, Leisure Fishing has been the most activated but Experiencing of Traditional Fishing is emerging as another potential typ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Leports-fishing and the existing leports are emphasizing more on

experiencing and acting than just sightseeing, they are similar with each other. But Leports-fishing is utilizing both fishery recourses and water surface while the existing leports using water surface only. Also, common people can easily enjoy the Leports-fishing activity without and special learning and training for doing it.

Therefore, Leports-fishing, a very unique concept of activity, has a great potential for inducing those additional demands for experiential tourism and finally revitalizing the economic situation of fishing villages. KMI has carried out a survey on tourists in 7 cities including Seoul and Busan in October 2005. According to the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result, 407 million ~ 459 million persons will take part in Leports-fishing activities in 2015 and 1,400 billion ~ 1,600 billion Korean won will be expended for Leports-fishing in the same year. The scope of the estimation covers the Leports-fishing activities only in seawater, not in freshwat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market share will increase if the activities in freshwater are included. It reflects the possibility that Leports-fishing will be another income source for fishery households.

On the one hand, fishing villages have been fac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change; Real income of fishery household has been falling continuously due to rising of oil price, deteriorating environment of fishing ground and so on; the income gap between fishermen and city workers is getting wider; the youth leaving from fishing village is ris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fishing industries is worsening owing to the rapid withdrawal of the trade barriers of the international fish market.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re forcing fishing villages to turn its structure into tourism-oriented and to searching another income source. Fortunately, fishing village has diverse social and cultural resources which can induce attention of Leports-fishers. Considering the situation stated above, fishing villages have enough potential of being revitalized once they utilize fully and most reasonably those resources and fishery resource for Leports-fishing.

B. PROBLEMS CAUSED BY LEPORTS-FISHING ACTIVATION AND ALTERNATIVES

However, there still remains some problems to be solved in order to revitalize fishing villages through Leports-fishing activation. For instance, there

are over 10 relevant laws but the complicated law system must be simplified to increase its efficiency. And 4 governmental bodies concerned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control and manage Leports-fishing activities individually. But the multi-control system can bring about unguarded points or impose double control on the same activity. Therefore, a single government body, which is wholly responsible for all kinds of Leports-fishing affairs and makes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lan for Leports-fishing industry, has to be organized.

Most of all, the important and sophisticated problem is how commercial/artisanal fishermen and Leports-fishers who are utilizing competitively the fishery resources co-exist reciprocally. This matter is closely related with an unequal application of a law to commercial fishing and fishing for leisure. Namely, so many legal controls and restrictions including a ban on specific fishing methods and tools, and an application of total allowable catch system are being imposed on commercial/artisanal fishing while little legal regulations are being made on fishing action for leisure. Especially, commercial/artisanal fishermen cannot catch juvenile (the young fishes and shellfishes) for some seasons or at specific areas under the name of fishery resource enhancement. However, Leports-fishermen are relatively free from the regulation. From this reason, commercial/artisanal fishermen are expressing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is unfair application of the law. From the point of view, solving the problem is essential to the co-existence between two sectors. Simultaneously, supportive programs need to be started for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them. Furthermore, types and sub-programs of Leports-fishing have to be developed for attracting the attention of potential demander. On the other hand, once marketing methods and channels are diversified, Leports-fishing will be action as the power movement for revitalizing fishing villages.

C. DIRECTIONS FOR LEPORTS-FISHING DEVELOPMENT

There is, however, a need to form a Master Plan in order to develop Leports

Fishing Industry 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ner. The Master Plan should include the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above-mentioned and be promoted on the basic directions as follows.

First, to be coherent with and reflect the objectives of the super ordinate plans, especially plans for developing a tour to fishing village.

Second, to meet various demands by developing Leports-fishing sub-program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by region and category.

Third, to enhance the connection with incomes of fishery households by supplementing the equipment and constructions which will boost a culture exchange and the sale function and maximizing the space efficiency and the cultural resources utilization of fishing village.

Forth,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ub-programs development and operation.

Fifth, to form the infrastructure of leports fishing development by simplifying a legal system and setting up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Sixth, to make a desirable culture by co-operating with associations, clubs and commercial/artisanal fishermen and enhance PR and marketing related.

Table of Contents

■ SUMMARY	i
Chapter 1. INTRODUCTION	1
Se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s	3
1. Background	3
2. Objectives	4
Section 2. The Scope and Methodology	4
Chapter 2. DEFINITION OF LEPORTS-FISHING AND CATEGORIZATION	7
Section 1. Definition of Leports-fishing	9
Section 2. Categorization of Leports-fishing	12
Chapter 3. PRESENT STATUS OF LOCAL LEPORTS-FISHING	15
Section 1. Overview	17
Section 2. Status and Characteristics by category	18
1. Category 1 (Leisure Fishing)	18
2. Category 2 (Catching-and-gathering in Wetland)	21
3. Category 3 (Traditional Fishing Experiencing)	25
4. Category 4 (Underwater Observing-and-experiencing)	28
Chapter 4. PROBLEMS AND ALTERNATIVES	33
Section 1. Review of Related Laws	35
1. Overview	35
2. Details of Individual Law	37
Section 2. Problems from Leports-fishing Activation	45
1. Complicated Law and Management System	45
2. Competitive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	53
3. Plural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Ambiguous Functions Allocation	55
4. Irrational Policies	57

Section 3. Alternatives for the Problems	58
1. Simplification of Law and Management System	58
2. Co-existence between Artisanal Fisheries and Leports-fishing	60
3. Singular Government Ministry and Function Reallocation	61
4. Improvement of Supporting Policies	63
Chapter 5. CASE STUDY OF FOREIGN LEPORTS-FISHING DEVELOPMENT	65
Section 1. Japan	67
1. Type and Present Status of Ocean Recreation	67
2. Management System	69
3. Programs of Ocean Recreation Development	80
4. Development Case	82
Section 2. United State of America	84
1. Present Status of Recreational Fishing	84
2. Management System	90
3. A Vision for Recreational Fisheries	91
4. Development Case	99
Chapter 6. POTENTIAL FOR FISHING VILLAGE REVITALIZATION	103
Section 1. Present Status of Fishery Community	105
1. Income Trend	105
2. Characteristics of Income	107
3. Member Status	107
Section 2. Demand Analysis and Forecasting	108
1. Method of Research	108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109
3. Demand Analysis and Forecasting	119
Section 3. Potential for and Effects on Fishery Community	122
1. Functional Change of Fishery Community	122
2. Potential and Effects	123

Chapter 7. MASTER PLAN FOR LEPORTS-FISHING DEVELOPMENT	127
Section 1. Review of Super Ordinate Plans and Programs Related	129
1. The Second Master Plan for Tourism Development(2002~2011)	130
2. Ocean Korea 21(2000~2010)	131
3. Other Programs Relative to Ocean Affaires and Fisheries	131
Section 2. Master Plan for Leports-fishing Development	134
1. Objectives and Basic Principles	134
2. Strategy by Stages	135
3. Details of Main Program	137
Section 3. Development Model by Category	144
1. Direction of Model Establishment	144
2. Development Models	147
Section 4. Pilot Program	153
1. Site Selection	153
2. Development Plan for Pilot Site	155
Section 5. Investment Plan	177
1. Investment Plan for Pilot Program	178
2. Investment Plan for Actual Plan	180
제8장 CONCLUSION	181
Reference	187
<Annex 1> Main Fishing Points(For Ocean Fishing) in Local	193
<Annex 2> Permission Status of YouEJang	198
<Annex 3> USA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by States	200
<Annex 4> Questionnaire for Demand Analysis	207
<Annex 5> Site Evaluation Result for Trial Program	212
<Annex 6> Questionnaire for Present Status of Trial Sites	213

목 차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4
제2장 레포트피싱의 개념 및 유형	7
제1절 레포트피싱의 개념	9
제2절 레포트피싱의 유형	12
제3장 국내 레포트피싱 현황	15
제1절 개황	17
제2절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8
1. 유어낚시형	18
2. 갯벌체험형	21
3. 체험어업형	25
4. 수중체험형	28
제4장 레포트피싱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제1절 관련법규 검토	35
1. 현행 관련 법체계	35
2. 주요 관련법 세부내용 검토	37
제2절 문제점 분석	45
1. 법·제도 측면	45
2. 자원이용 및 관리 측면	53
3. 정부부처간 역할관계 측면	55
4. 정책적 측면	57

제3절 개선방안	58
1. 법·제도 개선방안	58
2. 상업적 어업과의 공존방안	60
3. 부처간 역할관계 정립방안	61
4. 정책적 개선방안	63
제5장 해외 레포츠피싱 개발사례	65
제1절 일본	67
1. 해양레크리에이션 종류 및 현황	67
2. 해양레크리에이션 제도	69
3. 해양레크리에이션 관련 보조사업	80
4.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운영사례	82
제2절 미국	84
1. 유어낚시 현황	84
2. 유어낚시 관리제도	90
3. 증장기 유어낚시 개발전략	91
4. 개발사례	98
제6장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활용가능성	103
제1절 어가소득의 현황 및 특성	105
1. 어가소득 현황	105
2. 어가소득 특성	107
3. 어촌구성원 특성	107
제2절 레포츠피싱 수요분석 및 예측	108
1. 설문조사 설계 및 방법	108
2. 표본특성	109
3. 레포츠피싱 수요분석 및 예측	119
제3절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촌의 소득원 개발 가능성 및 파급효과	122
1. 어촌의 역할	122
2. 어촌소득원의 개발가능성 및 파급효과	123

제7장 레포트피싱 중장기 개발계획	127
제1절 상위계획 및 현 추진사업 검토	129
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130
2.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 2000~2010)	131
3. 기타 해양수산 분야 관련계획 및 사업	131
제2절 기본계획	134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134
2. 단계별 추진전략	135
3. 주요 추진내용	137
제3절 유형별 어촌경제 활성화 발전모델 설정	144
1. 유형별 발전모델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144
2. 유형별 발전모델	147
제4절 시범사업 실시계획	153
1. 시범지역 선정	153
2. 시범지역 개발방안	155
제5절 투자계획	177
1. 시범지역 투자계획(사업 1년차~2년차)	178
2. 본 사업 투자계획(사업 3년차~10년차)	180
제8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7
<부록 1> 전국 주요 바다유어낚시 포인트	193
<부록 2> 국내 유어장 지정 및 이용현황	198
<부록 3> 미국의 주요 주별 유어낚시제도	200
<부록 4> 설문조사 양식	207
<부록 5> 시범지역 평가결과	212
<부록 6> 잠재지역 실태조사표	213

표 목 차

<표 2.1> 해양관광과 레포츠피싱간 프로그램 비교	12
<표 2.2> 국내 레포츠피싱 유형	13
<표 3.1> 레포츠피싱 유형별 특성분석	17
<표 3.2> 국내 주요 유어낚시 활성화 지역(해면 유어낚시 중심)	18
<표 3.3> 유어낚시 세부유형별 특징	20
<표 3.4> 국내 갯벌체험 가능 지역	22
<표 3.5> 갯벌체험 세부유형별 특징	24
<표 3.6> 체험어업 세부유형별 특징	27
<표 3.7> 국내 주요 스킨스쿠버 포인트	29
<표 3.8> 제주도 관내 작살형 스킨스쿠버 프로그램 운영지역	30
<표 3.9> 수중체험 세부유형별 특징	31
<표 4.1> 레포츠피싱 관련법 및 주요 규제내용	35
<표 4.2> 생계형 어업행위와 유어행위에 대한 상반된 규제현황	48
<표 4.3> 관련 정부부처간 역할관계	56
<표 5.1> 일본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종류	68
<표 5.2> 일본 해면 및 내수면 유어자의 추이	69
<표 5.3> 일본 어업권의 종류와 영위 가능한 업종	70
<표 5.4> 일본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에서 정하는 유어에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71
<표 5.5> 일본 유어낚시의 체장제한 및 금지 기간의 지역별 예	73
<표 5.6> 일본 유어자에 대한 벌칙규정(어업법·수산자원보호법·어업조정 규칙)	74
<표 5.7> 미국 연방정부에 의한 유어낚시 연간 허용어획량 규제 예	91
<표 5.8> 미국 환경산업 현황	99
<표 6.1> 어업의존도 및 어업소득률(1990~2003년)	105
<표 6.2> 어가소득과 농가, 도시근로자 소득 비교(1990~2003)	106
<표 6.3> 어업인구 변화추이(1990~2003)	107
<표 6.4>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109
<표 6.5> 레포츠피싱 선호순위	110
<표 6.6> 레포츠피싱 동기(복수응답)	110
<표 6.7> 레포츠피싱 연간 참여횟수	111

<표 6.8> 레포츠피싱 목적지 선택의 중요도	111
<표 6.9> 레포츠피싱 투자시간	112
<표 6.10> 레포츠피싱 투자금액	112
<표 6.11> 레포츠피싱 방문지역	112
<표 6.12> 레포츠피싱 활동지역	113
<표 6.13> 방문지역 레포츠피싱 연간 참여횟수	113
<표 6.14> 레포츠피싱 동반자 유형	114
<표 6.15> 동반자 수	114
<표 6.16> 교통수단	114
<표 6.17> 소요시간	115
<표 6.18> 방문유형	115
<표 6.19> 숙박시설	116
<표 6.20> 1인당 여행경비	116
<표 6.21> 1인당 1일 여행경비	117
<표 6.22> 항목별 금액 및 비율	117
<표 6.23> 레포츠피싱 소요시간	117
<표 6.24> 해당 지역 재방문 의사	118
<표 6.25> 어민마찰	118
<표 6.26> 레포츠피싱 지역 보완점	118
<표 6.27> 레포츠피싱 지출(수요)합수 추정결과	120
<표 6.28> 국내 해수욕장 및 어촌관광객 수(2004/2005)	121
<표 6.29> 예측에 이용된 파라메타 추정치	121
<표 6.30> 레포츠피싱 인구 예측(2006~2015년)	121
<표 6.31> 지역별 바다향토요리	123
<표 6.32> 유형별 레포츠피싱 활동에 따른 어촌소득 증대가능성	125
<표 6.33> 레포츠피싱 항목별 평균지출액	126
<표 6.34> 레포츠피싱 항목별 지출 비율	126
<표 7.1> 주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29
<표 7.2> 레포츠피싱 추진단계 및 추진전략	135
<표 7.3> 각 유형별 개발방향	144
<표 7.4> 유어낚시형 발전모델 설정	148
<표 7.5> 갯벌체험형 발전모델 설정	149

<표 7.6> 체험어업형 발전모델 설정	150
<표 7.7> 수증체험형 발전모델 설정	152
<표 7.8> 도서형 발전모델 설정	153
<표 7.9> 대상지역 유형별 구분	154
<표 7.10> 시범지역 선정결과	155
<표 7.11> 저도의 시설현황	157
<표 7.12> 저도 유어낙시터의 현황 및 향후 개발방안	159
<표 7.13> 월하성 갯벌체험장의 현황 및 향후 개발방안	163
<표 7.14> 장호마을의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167
<표 7.15> 위미지역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171
<표 7.16> 증도 레포츠단지의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176
<표 7.17> 시범사업 투자계획	179
<표 7.18> 본 사업 투자계획	180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5
<그림 2.1> 레포트피싱의 개념도	11
<그림 4.1> 관련부처간 역할관계 변화도	62
<그림 5.1> 일본 해양레크리에이션의 분류	67
<그림 5.2> 도도부현, 어업조정위원회 및 해면이용협의회의 관계	76
<그림 5.3> 일본 유어선업의 제도 변화	78
<그림 5.4> 미국의 총어획량 중 유어낚시 점유율(상위 10대 유어낚시 어종)	86
<그림 5.5> 미국의 2004년도 지역별 유어낚시 출조횟수 및 어획량 비율	86
<그림 5.6> 미국의 2004년도 유어낚시 수역별 및 형태별 어획량 비율	87
<그림 5.7> 미국의 2004년도 주요 어종별 어획량 비교(대서양 지역)	88
<그림 5.8> 미국의 2004년도 주요 어종별 어획량 비교(멕시코만 지역)	89
<그림 5.9> 미국의 2004년도 주요 어종별 어획량 비교(태평양 지역)	90
<그림 5.10> 광의 씨워킹 체험프로그램	100
<그림 5.11> 어린이 유어낚시대회	101
<그림 7.1> 레포트피싱 증장기 사업 추진계획	136
<그림 7.2> 어촌어항의 시스템적 개발과 기능강화	145
<그림 7.3> 사천 저도의 시설현황 및 전경	157
<그림 7.4> 삼척 장호의 시설현황 및 전경	166
<그림 7.5> 신안 증도의 시설현황 및 발전전경	174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21세기 주도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휴식과 레저를 중요시하는 생활패턴이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관광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관광기구(WTO ;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Tourism 2020 Vision’을 통해 세계관광 인구가 연평균 4%씩 성장하여 2010년에는 2000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 증가, 웰빙(참살이) 확산 등에 따라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관광 및 레포츠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및 레포츠는 여타 분야에 비해 보고, 즐기고, 느낀다고 하는 활동성이 강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찾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해양의 수산자원은 장래에 레포츠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롭게 창출되는 관광인구는 해양경관 감상과 같이 감상형 테마를 주축으로 하는 기존의 관광형태가 아닌 체험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체험형 관광활동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기타 양식 및 수산물 가공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해양관광 활동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신규로 창출되는 레포츠인구를 어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어촌종합개발 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지정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들이 주로 시설사업에 치중하고, 형식면에서도 갯벌체험과 같은 극히 제한된 형태의 프로그램에 국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인구가 점차적으로 증대되면서, 수산자원 이용을 둘러싼 어업인과의 갈등이나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이처럼 수산자원을 이용하고 체험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양레포츠와는 차별화된 개념으로서 ‘레포츠피싱(Leports fishing)’의 개념을 명

확히 설정하고, 레포트피싱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어업인 및 연안 지역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정책이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레포트피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포트피싱 형태를 유형화하여 국내외 수요자들의 생활방식을 감안한 레포트피싱의 발전전략 설정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레포트피싱을 통한 가치창출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이용의 다각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어업인과의 분쟁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레포트피싱을 어가소득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학연연구체제 운용,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모델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부경대학에서는 현지실태 조사와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아직 레포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레포트피싱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화와 이들 유형별 발전모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조사 자료의 수집은 기존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낚시인구, 낚시가게, 낚시포인트, 스쿠버다이버 인구, 스쿠버다이버 판매점, 스쿠버다이버 포인트, 체험어로유형 등의 자료를 정부, 관련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하여 수집된 통계자료와 기존의 해양레포트 관련 국내의 문헌을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외에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통해 미진한 부분은 직접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레포트피싱에 대한 수요분석 및 예측을 위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인식도 및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지출함수를 도출함으로써 레포트피싱 활성화와 어촌 소득원 개발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레포트피싱의 시범모델은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와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시범사업 실시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은 연구진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를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존 해양관광이나 어촌체험관광과의 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레포츠피싱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포츠피싱 활동들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된 국내 레포츠피싱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각 유형별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레포츠피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레포츠피싱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법·제도적 측면, 수산자원과 공간 이용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이들 문제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5장은 해외 레포츠피싱의 사례로서 일본의 해양레크레이션, 미국의 유어낚시를 대상으로 현황, 관련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현재 국내 레포츠피싱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레포츠피싱의 수요분석 및 예측을 통해 레포츠피싱이 어가소득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제7장은 앞에서 분석된 결과와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레포츠피싱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계획과 유형별 발전모델의 설정, 시범사업의 실시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해 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 레포츠피싱의 중장기 발전에 따른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그림 1.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내용과 이에 따른 추진체계를 모식화한 것이다.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제2장 레포트작성의 개념 및 유형

1. 레포트작성의 개념
2. 레포트작성의 유형

제2장 레포츠피싱의 개념 및 유형

이 장에서는 ‘레포츠피싱’의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고, 기존 해양관광이나 어촌체험관광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이렇게 도출된 개념에 비춰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포츠피싱 활동을 유형화하였다.

제1절 레포츠피싱의 개념

‘레포츠피싱(Leports fishing)’은 문자 그대로 레포츠(Leport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이며, 레포츠(Leports)는 레저(Leisure)와 스포츠(Sports)가 합성된 것이다. 요컨대, 레포츠피싱은 레저와 스포츠, 피싱이 중복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레포츠피싱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기에 앞서 레저, 스포츠, 피싱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레저는 참가의 주된 목적이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집을 떠나 행해지며 삶의 재충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엄서호, 1998).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용한 후 남은 시간에 특정의 목적, 가치 및 수단적 의미를 부여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는 사전적으로 ‘체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서, 오락으로 즐기거나 승부를 겨루기 위한 신체운동’로 정의된다(한철언, 2001). 스포츠는 중세영어에서 ‘전환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Sporten’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방향전환’이나 ‘오락’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하지만 스포츠에는 이러한 방향이나 오락의 의미 외에도 싸움(dispute)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란 본질적으로 일과 놀이의 연장선 위에 걸치는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 정신적·신체적 활동으로서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박홍규 외 2인, 1992).

이러한 레저와 스포츠가 조합된 레포츠에 대한 개념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레포츠활동을 즐거움과 재미,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남동현, 2004).¹⁾ 또한 사회학자 켈리(Kelly, J.R.)는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은 참여자에게 있어 확실히 레저이다’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에서의 스포츠 참여 역시 즐거움과 기분전환의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92년 4월 설립된 일본 레저스포츠 진흥협회는 레포츠에 대해 ‘스포츠에는 골프를 비롯해 오토바이 대륙횡단, 스쿠버 다이빙과 같이 레저성이 강한 스포츠가 있는데, 레저스포츠는 특정 스포츠종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를 즐거움이나 기분전

1) 남동현, “해양스포츠 관광 경영론”, 대경북스, 2004., p15

환 등의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을 레포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정의하였다.²⁾ 이를 종합하면 레포츠는 '즐거움과 기분전환, 흥미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피싱(Fishing)은 '어류(Finfish)를 어획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획활동은 자체가 어류뿐만 아니라 패류, 해조류 및 수중식물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수중생태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본다면, 피싱의 대상을 어류뿐만 아니라 각종 패류 및 수중식물까지로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싱의 목적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 취하는 개념을 넘어서 관찰을 위해 일정 시간 채취하거나 혹은 어획하였다가 다시 놓아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싱을 수중동식물을 어획하거나 수중생태계를 관찰하는 일체의 행위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레포츠피싱을 '레저(혹은 레크리에이션)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중동식물을 채포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특징을 갖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그림 2.1 참조).

- 비상업적 어업행위 : 레포츠피싱은 상업적 어업과 마찬가지로 수산생물을 채포하기는 하나 채포한 수산물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적 어업행위
- 대상의 광역성 : 레포츠피싱의 대상은 수산동물만이 아니라 수중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 광역성을 가지고 있음
- 행위의 다양성 : 레포츠피싱의 협의개념은 레포츠 행위과정에서 수산생물을 채포하는 것이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수산생물 채포행위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수산생물이나 수산생태계를 직접 수중에서 관찰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함

미국에서는 레포츠피싱과 유사한 개념으로 레크리에이션피싱(Recreational fishing)과 스포츠피싱(Sports fis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레포츠피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먼저 레크리에이션피싱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활동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스포츠피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스포츠피싱은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i) 낚시를 통해 어획물 획득하거나 금전적 가치를 얻기보다는 바다에서 어류를 찾아내고 잡기 위해 도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ii) 목표어종을 두고 낚시꾼들끼리 경쟁적인 어획을 행하고, (iii) 공간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싱을 위한 이동범위가 광역이며, (iv) 경우에 따라 고가장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레크리에이션피싱과 스포츠피싱은 모두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낚시활동을 그 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관

2) 김학신, 이덕성, 민창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레포츠시장의 개발 방향", 제38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 스포츠이벤트와 지역사회 발전, 2000., p 888-889

찰행위를 포괄하는 레포츠피싱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요컨대 레포츠피싱은 스포츠피싱과 레크리에이션피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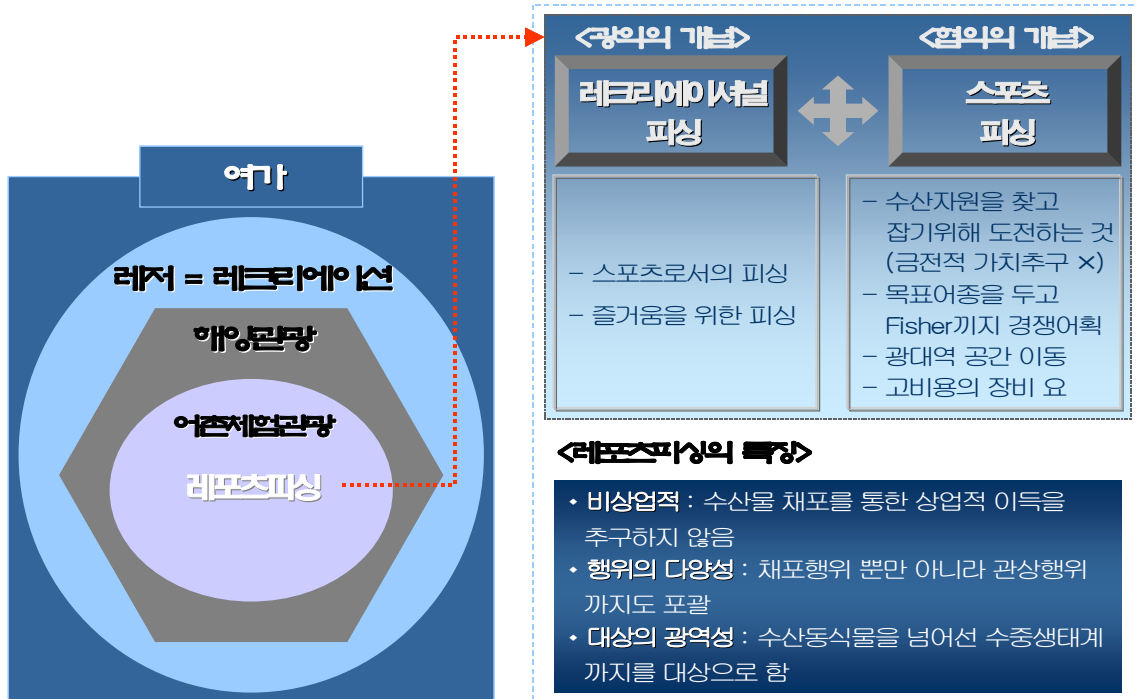


그림 2.1 레포츠피싱의 개념도

또한 레포츠피싱은 해양을 기반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레저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해양레포츠, 해양관광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수중동식물을 채포, 관찰하는 체험적 행위에 보다 역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해양관광이나 어촌체험마을과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영역 등에서 차이가 난다.

표 2.1과 같이 해양관광이나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생활 체험이나 문화체험과 같이 해양이나 어촌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활동을 대상자원으로 하지만, 레포츠피싱은 이러한 인문, 사회, 문화적 자원보다는 수산자원을 행위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수욕,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피싱과는 관련이 없는 해양레포츠 활동과는 달리 레포츠피싱은 주로 바다낚시,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과 같이 수산생물을 채취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만을 포함한다. 예컨대 해양관광의 영역에는 갯벌맛사지나 갯벌씨름, 갯벌축구 등과 같이 갯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지만 레포츠피싱에는 실제로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레포츠피싱은 해양관광이나 어촌체험마을의 일부를 구성하긴 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표 2.1 해양관광과 레포츠피싱간 프로그램 비교

해양관광(어촌체험관광)	레포츠피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생활 체험 : 어촌경관, 어촌의 분위기, 어항, 전통행사, 새벽 어시장, 향토요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체험 : 지인망, 정치망, 오징어낚시, 야간조업체험 등 ● 생태체험 : 갯벌관광(갯벌맛사지, 갯벌체험), 철새관찰, 경관 감상, 잠수정, 산책, 에코트래킹, 산책 등 ● 양식장체험 : 양식사료주기, 김 말리기, 양식물 가공체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체험 : 좌동 ● 생태체험 : 갯벌체험, 잠수정 ● 양식장체험 : 양식물 어획과 관련된 활동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스포츠 : 해수욕, 스쿠버다이빙, 낚시, 수상스키, 비치발리, 윈드서핑, 씨워킹, 스노클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스포츠 : 스쿠버다이빙, 낚시, 씨워킹, 스노클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 : 문화유적, 풍어제, 영등제, 민속전시관 등 	

제2절 레포츠피싱의 유형

전술한 바와 같이 레포츠피싱을 레저와 스포츠가 혼합된 비상업적인 수산물 채취·어획, 수중 생태계를 관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때,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레포츠피싱 활동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레포츠피싱이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레포츠피싱을 유형화한 예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i) 수산물 포획에 중점을 둔 유어낚시형, (ii) 종전의 갯벌맛사지나 단순한 갯벌행사가 아닌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 관찰 혹은 채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갯벌체험형, (iii) 그물어업이나 전통적인 어법을 이용해 피싱활동을 경험하거나 양식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체험어업형, (iv) 수중에 들어가 생태계 동식물을 채포하거나 관찰하는 행위에 역점을 두는 수중체험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각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했는데, 유어낚시형은 유어활동의 대상지역에 따라 바다낚시와 민물낚시로, 갯벌체험형은 레포츠활동의 목적과 행태에 따라 패류나 해조류의 채취를 목적으로 체험어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갯벌체험과 관찰행위에 역점을 두고 생태학습장 내에서 행해지는 교육형 갯벌체험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체험어업은 대상행위의 성격에 따라 양식장체험, 조업체험, 전통 어업체험으로, 마지막으로 수중체험형은 레포츠활동의 대상이 되는 수

산자원 채포유무에 따라 직접채포형과 간접관찰형으로 구분하였다.³⁾ 단, 체험어업의 경우에는 수산물 포획, 채취, 관찰하는 행위 이외에 수산물에게 사료를 주거나, 해조류를 건조하는 행위 등 수산물을 가지고 행해지는 갖가지 활동 중에 유어낚시형, 갯벌체험형, 수중관찰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체험어업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형태의 레포츠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 2.2 국내 레포츠피싱 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유어낚시형 ⁴⁾	바다낚시	선상낚시, 갯바위 낚시 유어장(유료낚시터) 낚시 등
	민물낚시	하천낚시, 호소낚시, 인공낚시터 낚시 등
갯벌체험형	체험어장 (체험형)	갯벌맨손체험, 기타 형태의 갯벌체험(패류채취 등)
	생태학습장 (교육형)	갯벌생태체험
체험어업형	양식장체험	사료주기, 양식과정 참여, 양식물 수확 등
	조업체험	문어통발어업, 야간햇불조업, 그물어업, 도수어업, 해녀조업 등
	전통어업체험	손공치잡이, 지인망어업, 손낚시, 창경바리어업 등
	기타	해조류건조 등
수중체험형	직접채포형	작살형 스킨스쿠버 ** 제주도 해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형태가 발전하고 있음
	간접관찰형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씨워킹, 비치다이빙 등 ** 국내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국민의 해외관광 증가로 이러한 형태의 레포츠피싱을 즐기려는 인구는 많음

3) 세부유형은 논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류법을 따르기로 함

4) 유어낚시를 레저낚시(일반적인 대부분의 낚시)와 스포츠낚시(지칭, 플라이)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레포츠피싱'을 레저와 스포츠가 모두 포함되는 보다 포괄적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유어낚시를 대상지역별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로만 구분하기로 함

제3장 국내 레포트츠피싱 현황

1. 개황
2. 유형별 현황 및 특성

제3장 국내 레포츠피싱 현황

이 장에서는 각 유형별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레포츠피싱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들 레포츠피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제1절 개황

해양관광이나 해양레포츠 인구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다. 단지 각 기관별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추정치를 내놓고 있을 뿐이며 이 추정치 역시 큰 편차를 보여 표준치를 제시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세분류별로 통계를 잡지 않기 때문에 레포츠피싱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만 지난 2003년 정부가 내놓은 어촌관광종합추진대책 내용에 따르면, 국내 어촌관광 인구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지난 1996년 6,600만 명에서 2003년 기준 9,200만 명으로 국내 전체 관광인구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10년에 가서는 11,600만 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레포츠피싱 활동은 과거 유어낚시가 주류를 이루던 패턴에서 벗어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의 영향으로 갯벌체험형과 체험어업형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각각 유형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패턴에서 최근에는 이들 각각의 유형이 통합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어낚시형과 수중체험형은 주로 동호회 및 소규모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갯벌체험형과 체험어업형은 규모에 무관하게 기업체, 각종 기관 등 중대형 규모의 단체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등 소규모그룹 모두가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레포츠피싱은 여전히 초보적 수준의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레포츠활동이 실재어가소득 증대나 어촌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레포츠피싱 유형별 특성을 각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레포츠피싱 유형별 특성분석

유형	주요 해역	활동그룹 형태	현 개발수준	프로그램 다양성	체류 가능성	현재 어가소득에의 영향
유어낚시형	전국	소규모 위주	각종 동호회 활동 다수	프로그램 고착화 경향	낮음 (바다낚시는 다소 있음)	유어선 대여, 입어료
갯벌체험형	서,남해	단체, 소규모	개발 본격화 단계	다양화 가능성 있음	있음	입장료
체험어업형	동,서,남해	소규모 단체 일부	개발 시작 단계	다양화 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대여료 일부
수중체험형	동해, 제주해역	소규모	각종 동호회 중심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고착화 경향	있음	입어료

제2절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유어낚시형

가. 현황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포트피싱 유형 가운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유어낚시이다. 유어낚시는 유어활동의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로 구분되며, 낚시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포츠낚시와 레저낚시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레포트피싱 개념에 이미 레저와 스포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어낚시의 세부유형을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로만 구분하였다.

현재 국내 유어낚시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995년 환경부는 『낚시면허제 추진계획안』을 추진하면서 낚시인을 '20세 이상이면서 레저 혹은 스포츠를 목적으로 연간 5~6회 이상의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규정하고, 낚시인구를 325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00년 『내수면의 낚시면허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에서는 민물낚시와 바다낚시 인구를 각각 350만, 15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2004년 「종합적인 낚시관리제도 도입 추진방향」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어낚시 인구는 민물낚시(220만)와 바다낚시(160만), 혼합(190만)을 포함해 570만 명으로 추정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수산특정과제로 수행 중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연구'에서도 동일한 추정결과를 내놓았다.⁵⁾ 따라서 현재 국내 유어낚시 인구는 약 350만 명에서 57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유어낚시 주요 포인트 역시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바다낚시가 해안선 인근 도서와 연안 어촌의 자연발생적 낚시터에서 주로 행해진다고 볼 때, 3,170개 도서(유인도서 491개, 무인도서 2,679개를 포함)와 연안촌락(1,203곳), 자연부락(3,322곳), 방과제(1,896곳)를 각각 1개 포인트로 상정하면 국내 유어낚시 포인트는 대략 9,59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전국 주요 바다유어낚시 포인트 <부록 1> 참조).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유료낚시터를 중심으로 하는 낚시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2004년 말 현재 국내에서 해면유어장으로 지정된 곳은 총 46개소의 979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유료낚시터는 총 21개소로 545ha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해면유료낚시터의 대부분은 전남(8개소, 241ha)과 경남(13개소, 304ha)에 집중되어 있다(세부내용은 <부록

5) 이 보고서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4,559명을 표본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3차례 실시하여 낚시인구를 잠재(연 4회 이하), 일반(연 5~50회), 전문(일주일 2회 이상) 낚시인구로 분류하여 추산하였음

2> 참조). 유어낚시터의 개념 및 지정요건은 수산업법 제55조, 수산업법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8조 등에 나타나 있다.

이 외에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수부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한 어촌지역 가운데 특히 바다낚시를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운영 중인 곳이 있다.

표 3.2 국내 주요 유어낚시 활성화 지역(애면 유어낚시 중심)

구분	마을명칭	지역
어촌체험마을	거일체험마을	울진군
	고산체험마을	북제주군
	남애체험마을	양양군
	대진체험마을	동해시
	도장포체험마을	거제시
	문항체험어장	남해군
	지족체험어장	남해군
유어장(유료낚시터)	바다유어장	목포시
	조발유어장	여수시
	적금1유어장	여수시
	적금2유어장	여수시
	우두유어장	고흥군
	선소유어장	보성군
	사금1호유어장	장흥군
	대리1호유어장	장흥군
	실리도낚시터	마산시
	산분령유료낚시터	사천시
	저도어촌계 유료낚시터	사천시
	근포어촌계유어장	거제시
	장승포어촌계유어장	거제시
	이수도어촌계유어장	거제시
	대곡어촌계유어장	거제시
	노도낚시터	남해군
	왕지낚시터	남해군
	왕지낚시터	남해군
	지족낚시터	남해군
	대도유료낚시터	하동군
대치유료낚시터	하동군	

나. 세부유형별 특징

유어낚시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바다낚시는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역의 갯바위, 해안선, 방조제, 방파제 및 선상 등에서 두루 이루어지는데, 한정된 포인트를 대상으로 한 갯바위 낚시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 대상 어종은 감성돔, 벵어돔, 돌돔, 참돔, 우럭, 농어 등이다.

경남 사천과 전남 여수,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선상낚시는 대부분이 (i) 3

명~7명의 친목단위 소그룹 또는 개인이 (ii) 유어선을 빌려 낚시포인트로 이동하며 대략 유어선 사용료는 10만 원~25만 원가량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으며, (iii) 어획된 어종을 시식용 횡감으로 사용하고, (iv) 장기체류형 보다는 길어야 1일을 숙박하는 정도의 패턴을 보였다. 갯바위낚시 역시 (i) 친목단위 소그룹이나 개인의 경우가 많긴 하지만, (ii) 체류형보다는 당일유형이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바다낚시객은 수산동식물 채포행위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어획한 어종을 되가져와 횡감으로 이용하는 선까지를 낚시행위로 보고 있다는 특징적인 면을 드러냈으며, 실제 유어선이 많은 지역의 횡집에서는 낚시객이 어획한 수산물을 손질해주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었다.

유어장 낚시는 선상낚시나 갯바위 낚시와는 달리 관광적 측면이 가미되어 있어 가족단위 이용객이 늘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갯바위 낚시나 선상낚시에 비해 대부분 체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상낚시나 갯바위 낚시 이용객은 자신의 생활권에서 멀지 않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찾아가 낚시를 즐기는 반면, 가족단위 낚시객은 상대적으로 주거지로부터 먼 지역까지도 유어낚시 지역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유어장 주변에 동반가족을 위한 흥밋거리가 적어 가족단위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민물낚시는 하천, 댐, 호소, 저수지 및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에서 주로 행해지며, 붕어, 잉어, 백련어, 향어, 초어, 배스, 쏘가리가 주 대상종으로, 출조지로는 저수지나 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 유어낚시 세부유형별 특징

세부유형	내용	특징			비고
		이용자 형태	어가소득과의 연계성	기타	
바다낚시	선상낚시	친목단위 소그룹, 개인	유어선 대여, 서비스비용(회 뜨기), 숙박료	- 어가소득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상황	- 어장황폐화, 마을어장 이용 자들과의 자원경합 문제 발생
	갯바위낚시	친목단위 소그룹, 개인	서비스비용(회 뜨기) 숙박료 일부	- 바다낚시 중 가장 성행 - 마을어장의 허가 없이 하는 불법낚시형태 많음	
	유어장 (유료낚시터 낚시)	친목단위 소그룹, 개인, 가족(일부)	입어료, 숙박료	- 실질적으로 관리가 곤란 - 자원이 희박	
민물낚시	댐/저수지 낚시	개인, 친목단위 소그룹, 단체(낚시대회 경우)	사용료(좌석 대여료) 낚시대회 참가비 일부		- 자원경합 발생
	하천/호소낚시	상동	사용료(좌석 대여료)		- 체류를 유도하기가 힘들다는 단점
	인공낚시터 낚시	개인, 친목단위 소그룹	이용료		

다. 활성화의 장애요인

전술한 바대로 유어낚시는 비교적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어낚시를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가소득 측면에서 본다면, 유어낚시객이 늘어나면서 유어선 대여료, 서비스비용(회 떠주기), 숙박료와 일부 낚시터의 자리사용료와 같은 이용료 등 새로운 어가소득원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한 어가소득 증가분이 어장황폐화에 따른 손실분을 만회할 만큼 크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해수부의 「종합적인 낚시관리제도 도입 추진방향」 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객의 1회 조획량이 민물낚시가 2.8kg이고 바다낚시가 2.2kg으로, 1회 출조시 평균 밑밥류 투입량은 민물과 바다 각각 1.3kg, 2.2kg이다. 2005년 수행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의 최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회 출조시 밑밥류 사용량이 민물낚시와 바다낚시 각각 1.25kg, 4.54kg으로 추정했다. 특히 바다낚시 세부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갯바위 낚시의 경우, 평균 밑밥 사용량이 5.93kg로 선상낚시의 약 1.5배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뿐더러 수질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납봉돌과 각종 유해 떡밥, 미끼 등을 사용함으로써 마을어장의 수질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또한 그 동안 유어낚시가 적절한 제한 혹은 제도적 관리소홀로 자유침입의 형태를 띠면서 상업적 어업, 어촌의 생계유지형 전통어업과 수산자원 활용 측면에서의 경합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유어선 대여로 일부 지역에서는 어선어업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어선업은 일부 유선업자에게만 그 실익이 돌아가는 반면, 어장황폐화에 따른 불이익은 마을어촌계 전체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어낚시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부분이 자리대여료, 유어선 대여 외에 유어낚시로 인한 별다른 소득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갯벌체험형

가. 현황

유어낚시와 함께 국내 레포츠피싱 유형 가운데 가장 발달해 있는 형태가 갯벌체험이다. 갯벌 체험은 해양자원을 관광화하기 위한 주요 아이템의 하나로 과거 10여 년 전부터 매우 인기 있는 테마가 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갯벌을 이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4년 전국 갯벌체험행사는 55회로 참여인원이 약 4만(39,596명)명이었는데 이것이 2005년에 와서는 10월 말까지 153회로 배 이상이 증가하고 참여인원도 6천여 명이 늘어난 45,983명으

로 집계되었다.⁶⁾ 그러나 이 수치에는 레포트피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갯벌생물 채집 혹은 생태체험 외에 갯벌축구, 갯벌씨름, 갯벌마라톤 등 갯벌생물 보다는 갯벌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행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영역에 포함되는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형태의 갯벌체험에 참여한 인구만을 별도로 산출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갯벌 체험어장 현장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갯벌체험어장 방문자가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에서 갯벌체험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로 이미 지정된 곳과 지자체 등에서 체험어장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 곳이 있다 (표 3.4). 이 가운데 갯벌체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함평의 석두마을, 보성의 선소마을, 영광의 두우리마을(전남), 고창의 하전마을(전북), 서천의 월하성, 다사리, 태안의 뱃가리(충남), 남해의 문항마을, 지족마을(경남) 등이다. 이 지역은 주로 갯벌에 서식하는 패류, 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인문·사회적 자원들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객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이들 체험어장이나 어촌체험마을에서 갯벌체험이 무료였지만, 최근에는 일부 유료로 전환해 새로운 어가 소득원으로도 기능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갯벌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근래 갯벌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전문업체까지 등장했다.⁷⁾

표 3.4 국내 갯벌체험 가능 지역

구분	마을명칭	지역	갯벌체험 프로그램	입어료
어촌체험마을	궁평체험마을	화성시	갯벌체험, 뽕썰매 타기, 슬로푸드 체험	
	다사리체험마을	서천군	갯벌체험, 독살체험, 김양식체험	
	두우리마을	영광군	갯벌체험(백합, 고동, 대합), 조개잡이, 송어잡이, 염전체험	무료
	모항체험마을	부안군	갯벌체험, 바다낚시, 지인망/정치망체험,해수욕	
	석두마을	함평군	갯벌생태체험(낙지, 조개), 참숯뱅장어잡이, 정치망체험	무료
	선감체험어장	안산시	갯벌체험, 맨손어업체험, 갯바위낚시, 바다낚시	
	선소마을	보성군	갯벌체험(꼬막, 낙지, 바지락), 바다낚시, 어업체험	1인 5,000원
	송계마을	무안군	갯벌체험, 갯바위 낚시, 정치망체험, 양식장체험	
	송석유어장	서천군	갯벌탐사(조수변화관찰), 조개류(동죽) 양식어업	
	오이도마을	시흥시	갯벌체험, 조업체험, 바다낚시	무료
	와온마을	순천시	갯벌체험(조개잡이, 짱뚱어/꾸꾸미), 해수찜질	
	월하성유어장	서천군	갯벌맛사지, 야간횃불조업, 양식어업, 건강망체험, 바다낚시	
	전곡마을	화성시	갯벌체험	
	제부마을	화성시	갯벌체험	1,000

6) 해양수산부, [갯벌 체험행사 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Workshop’ 개최 등 추진계획] 참고자료 내용을 발췌한 것임
 7) ‘체험아이’라는 업체가 강화도, 영종도, 제부도, 안면도, 대천, 서천 등을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 갯벌체험을 주요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내놓았음

	진두체험마을	옹진군	갯벌체험, 망둥어 낚시	
	큰무리체험마을	중구	갯벌체험, 조업체험, 바다낚시	
	하저체험마을	강진군	갯벌체험, 어선승선체험, 조개잡이, 바다낚시, 도요지체험	
	하전체험마을	고창군	갯벌생태체험(바지락, 송어, 새우, 김 등), 축제식 낚시, 김/미역말리기	8,000(장비대여료 포함)
유어장 (체험어장)	탄도체험어장	안산시		5,000
	선감체험어장	안산시		5,000
	종현동체험어장	안산시		5,000
	월하성유어장	서천군		3,000
	월하성유어장(2)	서천군		3,000
	송석유어장	서천군		3,000
	몽산1유어장	태안군		1,600(무료)
	누동1유어장	태안군		5000
	당진도비도	당진군		20,000(무료)
	용무지유어장	당진군	갯벌체험(바지락), 도비도 지역, 가두리안 좌대낚시 가능	대인 5,000
	망누리유어장	당진군		대인 4,000
	지족체험어장	남해군	갯벌체험(바지락, 썩 캐기), 지족바닷길 걷기, 직접 캔 바지락으로 칼국수 끓여 주기	20,000
	문항체험어장	남해군	갯벌체험(썩), 조개잡이, 야간 낙지잡이, 긴섬일대 300m의 바닷길 체험	대인 2,000 소인 1,000
기타	증도갯벌*	신안군	갯벌체험장, 갯벌축제, 해수욕, 대규모 고급 휴양단지 조성	
	선도마을	서천군	갯벌체험장(봄:주꾸미,광어,꽃게,가을:전어,대하),학꽂이낚시	
	해창갯벌체험장	부안군		
	소원갯벌체험장	태안군	갯벌체험(능정 게, 낚시), 농어촌체험, 트랙터 개조한 40인승 캠핑카.	대인 30,000 소인 20,000
	벚가리마을	태안군	갯벌체험(봄: 설게잡이, 가을: 망둥어), 천일염 생산과정, 굴 까기 및 굴 구이 체험	
	원산 갯벌체험	대전	갯벌체험(해루질: 해안가 일대에서 한밤에 횃불이나 후레쉬로 고동, 소라, 낙지, 해삼, 민꽃게 등 채취)	
	지곡마을	서산시	갯벌체험(낙시, 맛, 조개채취)	
	회동	진도군	갯벌체험(낙지, 게, 조개, 굴 등), 바닷길 걷기 체험 등	
	심포갯벌	김제시	갯벌체험(트랙터 타고 백합 및 동죽채취 체험)	

나. 세부유형별 특징

일반적으로 갯벌체험이라 하면, 갯벌마사지 등과 같이 갯벌만을 이용한 경우도 갯벌체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수산동식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레포츠피싱의 범주로 구분하기에 무리가 있어 배제하였다. 따라서 레포츠피싱의 한 유형으로서의 갯벌체험은 크게 (i) 마을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조성한 체험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체험형과 (ii) 갯벌생태학습장을 중심한 관찰형으로 대별되는데, 최근에는 서남해안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체험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갯벌체험은 갯벌의 성질(사질형, 니질형, 혼합형)에 따라 체험의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갯벌종류에 따라 채취가능한 동식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질형 갯벌 체험은 주로 패류와 갑각류(게 등)가 많이 어획되고 주로 해수욕장 인근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어 어린아이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주를 이루는 반면, 니질형 갯벌체험은 패류와 연체류(낙지 등)가 많고 갯벌체험만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한 마을어장에서 이루어지며 단체관광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 갯벌체험 세부유형별 특징

세부유형	내용	특징			비고
		이용자 형태	어가소득과의 연계성	기타	
체험형	사질형	친목단위 소그룹, 가족단위	입장료	- 대부분의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이 해당	
	니질형	친목단위 소그룹, 단체	입장료 도구 대여료 등		
교육형	갯벌 생태관광 (생태체험학습장)	단체		- 인천 소래포구, 강화도 남단 갯벌 등	

특히 체험형의 경우, 현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여행사의 관광패키지 아이템의 하나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반면, 교육형의 경우는 갯벌의 동식물 채취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갯벌생태계의 특성, 변화, 기타 갯벌을 둘러싼 다른 동식물까지를 포괄해 하나의 자연생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천시 소래포구에 조성된 해양생태공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 활성화의 장애요인

이러한 갯벌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체험어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일부 유료화한 경우에도 입장료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이용객의 체류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갯벌 체험장 이용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체류에 따른 숙박시설, 음식점, 기타 시설이용 등에 따른 부수적 소비가 실제 마을어촌계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용객의 체류가 거의 없어 갯벌체험어장을 운영하는 마을어촌계의 실질적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오히려 체험어장을 운영하는 마을어촌계 입장에서는 매년 종패를 사다 뿌려야 하는 등 각종

비용부담은 늘고, 관광객들이 치패, 치어까지 어획하거나 어획강도가 매우 높아 마을어장이 초토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가 매우 소홀하여, 상주 관리인력이 있는 체험어장이 거의 없었으며, 설령 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2명에 불과해 단체이용객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갯벌생물을 채포하거나 관찰하는 이외에 갯벌마사지나 극기훈련 등 갯벌을 무대로 여러 가지 무분별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생태보고인 갯벌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근 정부는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용객 입장에서는 갯벌내 자원량이 많지 않아 관광이나 체험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체험어업형

가. 현황

레포츠피싱의 한 유형으로 매우 각광받고 있는 유형이 바로 체험어업형이다. 물론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각 지역별로 이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 고성군 손뽕치잡이, 전라북도 고창군의 풍천장어 잡이,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의 지인망행사, 강서 대항마을의 송어잡이, 전라남도 장흥군의 개막이 축제 등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동진에서는 해수욕장 관광객을 상대로 지인망 끌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러한 지인망 끌기는 관광객이 단체로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자신들이 끌었던 지인망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가공하여 관광객들에게 배송하여 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린 바 있다. 2002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경북 영덕의 대탄마을 역시 체험어장에서 관광객이 따온 미역을 마을 주민들이 건조한 후 이를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삼척 장호항의 경우에는 노련한 어부를 따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 배낚시 체험, 가두리 양식장에 찾아가 물고기 밥을 주거나 홍합을 따는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호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작년의 4,300여 명 수준에서 7,0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어촌체험마을 조성 전보다 어촌계 어가수입이 약 1,0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은 그 프로그램을 매우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곧 관광객의 장기체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그룹 혹은 단체 등 이용객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다른 레포츠

피싱 유형보다도 이용객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갯벌체험이나 유어낚시, 수중 체험형(특히 스킨스쿠버)의 경우에는 이용객과 체험어장이나 유어장을 운영하는 마을어촌계 관리 인 간에 직접적 대면이 없는 상태에서 레포츠피싱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한 관리 문제 소홀, 이로 인한 마을어장 황폐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체험어업의 경우에는 마을어촌계 회원이나 어업인 자체가 체험어업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당사자가 되고 이로써 이용객과 어업인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해지기 때문에 이용객의 레포츠피싱 활동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세부유형별 특징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은 크게 어떠한 활동을 레포츠피싱의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양식체험, 어선승선 및 조업체험, 전통어법 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조업체험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레포츠피싱 유형에 비해 긴 시간을 요한다. 실제 야간횃불조업의 경우에는 부득이 어촌에서의 숙박이나 어업인과의 긴밀한 협동을 요하기 때문에 어촌 어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조업체험의 세부유형으로는 멸치잡이 나 오징어잡이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체험을 하는 야간횃불조업과 기타 어망을 이용하는 형태의 그물어업체험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문어통발어업을 체험화한 경우도 있으며, 기타 도수어업 혹은 손낚시 등이 있다. 그러나 조업체험의 경우 특히 체력적 소모가 많고 장시간의 조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젊은층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인망과 같은 일부 정치망 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규모 그룹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으로 손꽂치어업, 창경바리어업, 은어어법, 죽방렴이나 독살어업 등 전통적인 어업방식을 체험화한 유형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타도가 심하지 않은 경북 울릉군 일대와 강원도 일대에서는 6월을 즈음해 산란을 위해 꽂치가 해초 따위에 몸을 문지르는 습성을 이용해해 장갑을 끼고 아무런 장비없이 이를 어획하도록 하는 손꽂치 어업을 프로그램화 했다. 또한 사각통이나 원통 하단부에 유리를 부착해 만든 창경(수경)을 통해 바다 속을 보며 고기를 잡는 창경바리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죽방렴이나 독살과 같은 전통어업도 서남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통어업 체험은 향수를 자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작은 낚시배나 어선을 타고 연안에서 체험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어선에 승선해 조업체험을 하는 것과는 달리 위험성이 그만큼 적다고 하겠다. 역시 주로 소규모 그룹의 이용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3.6 체험어업 세부유형별 특징

구분	세부유형	내용	어촌체험마을 및 기타 지역
양식장체험		어류양식장 사료주기, 김 밭에 말리기, 종패뿌리기 등 양식과정에 참여하거나 어류, 패류(굴이나 동죽), 해조류(김 등) 수확에 직접 참여	서천(송석, 월하성, 다사리), 영덕(대진), 화성(전곡), 부산(대항), 고창(만돌), 무안(송계), 고성(동화), 울진(거일)
조업체험	문어통발어업	150~300m길이 줄에 문어단지 30~100개를 달아 주낙을 놓듯이 놓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어획하는 것으로 어선에 함께 승선해 이에 참여	삼척(장호) ** 어촌체험마을은 아니지만 울릉도 등지에서 가능하며, 일부 강원도 해역에서도 가능
	야간햇불조업	주로 멸치잡이,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승선하여 야간조업에 참여	서천(월하성), 진도(죽림), 남해(냉천) ** 기타 지역에서도 야간 어선승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물어업	그물을 이용하는 어로어선에 승선해 명태, 삼치, 돔 등의 어획에 참여	영덕(대진, 대탄), 양양(남애), 함평(석두), 고성(오호), 고창(만돌), 영덕(경정), 통영(유동) 등 많은 어촌체험마을에서 어선승선과 함께 이러한 형태의 조업체험 기회 제공
	기타	도수어업, 해녀조업, 오징어 맨손잡기 등	
전통 어업체험	손공치잡이	6월쯤 물풀들을 가까운 바다에 깔아놓으면 공치들이 수직상승하는데, 이때 장갑을 끼고 손가락을 펴고 기다리면 공치를 잡을 수 있음	** 최근 경북 울릉도 일대와 강원도 주문진 일대에서 체험화 함
	지인망어업 (갯후리어법)	4~10월에 멸치, 송어, 농어 등을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배를 이용해 투망한 후, 그물을 육지쪽에서 끌어당겨 어획하는 어법으로 한번 조업에 3~4시간 소요	부산(공수), 부안(모항), 고창(만돌) * 정동진 등지에서도 해수욕장 관광객을 상대로 이를 체험화
	도수낚시	낚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낚시줄을 잡고 하는 낚시	
	창경바리 어업	무동력 소형어선을 타고 사각통 아래 유리를 부착한 창경(수경)을 통해 바다 속을 보며 고기를 찌르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법	
기타	해조류건조	해조류 채취 및 건조, 가공	부산(공수), 영덕(대탄) 고성(오호), 진도(죽림), 통영(유동)

양식장체험의 경우, 양식물 수확이나 양식사료 주기 등 주로 양식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형태인데 단체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조업체험이나 전통어업에 비해 체력적 소모나 위험

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단체관광객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소규모그룹이 주요 대상층이 될 수 있다. 양식장체험의 경우에는 양식대상종이 동, 서, 남해 해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양식장체험 역시 해역별로 특화될 수 있다.

다. 활성화의 장애요인

사실 체험어업형은 여러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어가소득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개발을 필요로 하는 레포츠피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은 실제 어로활동이나 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 도시민에게는 체력적 소모가 매우 클 수 있고, 경험이 없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 대상층이 주로 젊은 층이 될 공산이 큰데, 조업체험형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이 외에도 체험어업형 레포츠활동은 양식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선을 타고 연근해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유어선이나 어선대여가 필수적인데 체험어업에 참여하는 어선확보 문제, 혹은 유어선 대여업자나 어선대여자가 곧 조업체험이나 전통어업 체험프로그램의 안내자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겸할 수 있는 노련한 어업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양식활동 참여, 조업체험, 전통어업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어업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레포츠피싱 활동에 참여하는 이용층의 만족도가 매우 달라지는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관건이 된다. 즉 적절한 수준에서 안내자이자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업인을 확보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선을 확보하며, 이들 어업인과 이용층을 어떻게 연결해주고 이용층의 만족도를 일정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수중체험형

가. 현황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포츠피싱 활동 중 하나는 수중체험형으로, 이 가운데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는 스킨스쿠버가 가장 발전해 있다. 그 외에 현재 국내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씨워킹이나 스노클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레포츠피싱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신희여행객이나 일반 관광객이 태국이나 필리핀, 괌 등 아열대성 기후의 해외여행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레포츠피싱을 경험하면서 이를 국내에서도 시도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레포츠피싱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수욕장 혹은 관광리조트들을 중심으로 스노클링이나 비치다이빙 등의 수중체험형 레포츠피싱이 시도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에 따르면, 12개 시도에 88개의 스킨스쿠버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국내 스킨스쿠버 동호회 인구만도 30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동호회 인구는 스킨스쿠버를 주기적으로 매우 활동적으로 하는 인구라고 볼 때 실제 스킨스쿠버를 1회 이상 경험한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요 스킨스쿠버 포인트는 표 3.7에서와 같이 동해안의 속초~포항일대, 남해안의 신안 앞바다와 여수, 남해, 사천, 거제일대, 제주해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해안 일부(충남 보령, 안면도 일대) 지역이 포함된다.

표 3.7 국내 주요 스킨스쿠버 포인트

구분	지역(포인트)
동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진: 이야진, 오호리 ● 속초: 연금정, 봉포리 ● 강릉: 경포대 십리바위 ● 삼척: 함성 근덕, 초당동굴, 후포리 ● 포항: 일대 전체, 특히 조사리, 월포, 방어리, 석리 등 ● 영일: 동해면, 임곡리, 마산리, 발상리 등 ● 울릉도 및 독도 일대
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 흥도, 가거도(소흑산도) ● 여수: 거문도, 상·하 백도, 소치도, 세존도 등 ● 남해: 매물도 일대 ● 부산: 형제섬, 나무섬, 하나섬 일대
제주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슬포: 송악산 일대, 형제섬 일대, ● 가파도 ● 서귀포: 문섬, 새섬, 쇄섬, 범섬 일대, 공형진 앞바다 등
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 격렬비열도, 웅도, 안도, 흑도 등 ● 보령: 대천 앞바다, 외연도 ● 군산: 십이동파

자료 : 국민생활체육 전국 스킨스쿠버연합회(www.scubakorea.or.kr) 홈페이지 발취, 정리

씨워킹이나 스노클링의 경우, 공식적 통계는 없다. 그러나 태국, 필리핀과 같이 씨워킹이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동남아 지역 여행이 대부분 패키지 여행상품이고, 이러한 여행패키지에 씨워킹, 스노클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여행객의 상당수는 씨워킹, 스노클링 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태국, 필리핀 출국자 120여만 명⁸⁾ 가운데 절반이 씨워킹, 스노클링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씨워킹이나 스노클링을 한 번 이상 즐긴 인구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더욱이 태국과 필리핀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레포츠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인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내놓은 한국관광동향 2006년 1/4분기 전망치에 따르면, 2005년 4/4분기 총 내국인 출국자수는 10,184천 명(추정치)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4% 늘어났으며, 이 중 태국과 필리핀 출국자 수가 각각 686천 명과 495천 명이었음. 특히 필리핀 출국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음

나. 세부유형별 특징

수중체험형 레포츠피싱은 (i) 특정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수중 입수해 수산동식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유형과 (ii) 직접 채취하기보다는 수중동식물 관찰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 두 가지로 대별된다.

특히 근래 들어 스킨스쿠버의 변형된 형태로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 들어가 작살을 이용해 어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레포츠피싱이 등장했는데, 이는 제주국 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가 일부 유어장에 대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작살형 스킨스쿠버는 종전의 스킨스쿠버나 씨워킹, 스노클링과 같이 주로 수중체험이나 관찰에 초점을 맞춘 행위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현재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남제주군 위미리 유어장, 하예체험마을과 기타 제주도 일대 체험어장에서 마을어장이나 협동양식어장 내에 설정된 유어장에서 압축공기탱크와 산소호흡장비를 갖추고 작살로 2마리 이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8 제주도 관내 작살형 스킨스쿠버 프로그램 운영지역

구분	마을명칭	지역
어촌체험마을	경정체험마을	영덕군
	위미1리유어장	남제주군
	하예체험마을	서귀포시
유어장(체험어장)	거문여코지유어장	서귀포시
	애월어촌계유어장	북제주군
	수원어촌계유어장	북제주군
	상모리유어장	남제주군
	위미1리유어장	남제주군
	온평리유어장	남제주군

이러한 형태의 레포츠피싱은 전문 스쿠버다이버보다는 일반 관광객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그룹 형태로 이러한 레포츠피싱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체험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제주도 관광패키지 상품으로 묶여 있어서 실제로 체험을 하는 마을어촌계에서의 숙박이나 체류는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어가소득에 큰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일반 스킨스쿠버는 주로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노클링이나 씨워킹은 일반 관광객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을 이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어가소득이 유어장이나 체험어장 입어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 3.9 수중체험 세부유형별 특징

세부유형	내용	특징			비고
		이용자 형태	어가소득과의 연계성	기타	
간접관찰형	스킨스쿠버	동호회 중심	입어료	불법행위 잦음	
	스노클링 비치다이빙	일반 관광객 중심	입장료	초기 단계	
	씨워킹	일반 관광객 중심	입장료	초기 단계	
직접채포형	작살형 스킨스쿠버	가족, 소규모 그룹 중심	입장료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다. 활성화의 장애요인

수중체험형 레포츠피싱의 경우, 해당 마을어촌계 혹은 마을 어업인들의 심리적 저항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스쿠버다이버들이 마을어장 내에 입수하여 전복이나 기타 마을어장 자원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미약해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작살형 스킨스쿠버를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에서도 이러한 저항이 적지 않다. 더욱이 일반 스킨스쿠버 포인트가 되고 있는 해역의 마을어촌계의 경우에는 스킨스쿠버에 대한 반감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따라서 스킨스쿠버나 비슷한 형태의 씨워킹, 스노클링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어촌계에 이러한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리포트피싱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관련법규 검토
2. 문제점 분석
3. 개선방안

제4장 레포츠피싱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먼저 레포츠피싱과 관련한 법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산자원의 경합적 이용에 따른 자원관리상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측면에서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 관련법규 검토

1. 현행 관련 법체계

레포츠피싱은 관광수요의 패턴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국내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 가운데 유어행위와 관련된 법들을 중심으로 법규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어의 개념이 레포츠피싱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레포츠피싱 개념보다 좀더 협의의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유어와 관련한 법 이외에 기타 관련법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레포츠피싱 활동은 수면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국내법 가운데 수면(내수면·해수면, 습지 등)에 대한 관리 및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법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비롯해 13개가량이며, 이 가운데 유어 등 레포츠피싱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은 10여 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레포츠피싱 이용객이 아니라 레포츠피싱에 사용되는 선박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제하기 위해 낚시어선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이 다수 존재한다.

관련법을 규제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레포츠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상인 수면이나 수면과 접한 육역부분의 개발·이용측면을 다루는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과 같이 수면을 이용한 어업행위를 다루는 법, 기타 수질, 환경, 문화재 및 기타 보존에 목적을 둔 수면개발 및 이용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들로 구분된다. 또한 규제해역에 따라 구분하면, 수산업법은 해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수질환경보전법, 하천법, 수도법 등은 주로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적용되며, 기타 수산자원보호령,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관리법 등은 해수면과 내수면 모두에 적용된다.

표 4.1 레포트피싱 관련법 및 주요 규제내용

소관부처	관련법	주요 관련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 사항 규정(제1조) - 유어의 개념정의(제2조) - 보호수면지정 및 해제 :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67조) - 수면내 어업활동에 대한 면허,허가,신고(제2장, 제3장) : 이외 어업행위 금지 - 유어장내 유어행위 가능(제55조)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수산자원보호령	- 수산업법에 근거해 제정된 법령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수산업의 균형발전(제1조) - 비어업자의 포획·채취 제한(제14조) 어구제한, 은어포획 금지어구 및 지역 설정
	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 사항 규정(제1조) - 내수면내 면허,허가,신고어업 관리(제5조, 제9조, 제11조 등) - 유어행위에 대해 어구·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제18조) 동법시행령 제14조1항 내수면에서 가능한 유어행위 나열
	습지보전법 (환경부 공동)	-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사항 규정(제1조) - 습지보전 책무(제3조) : 내륙습지(환경부장관), 연안습지(해수부장관) - 습지내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제13조, 제15조) 지역민의 일정한 어로행위 외,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존·이용·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행위제한, 금지행위 설정(제12조, 제15조, 제16조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제한 - 자연유보지역에 대한 보존계획 수립 및 행위제한(제22조, 제15조 준용)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오염 예방,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관리 및 보전 관련사항 규정(제1조) - 오염원 배출 등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규제 - 호소 중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가능(제20조, 시행령 제57조) 일체의 낚시행위 금지
	수도법	- 수도에 관한 종합적 계획수립, 공중위생 향상(제1조)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금지(제5조)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금지(시행령 제8조)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해중포함)의 지정·보전 및 관리 관련사항 규정(제1조) - 공원구역 내 허가행위 및 금지행위 규정(제22조, 제27조)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해중동물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포획행위 자체 금지
건교부	하천법	- 하천의 지정·관리·사용·보전과 관련한 사항 규정(제1조) - 사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하천지역 내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한 낚시행위 금지 (제7조)
문화관광부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의 보존·활용 관련사항 규정(제1조) - 특정물(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동식물 포함)과 특정구역(수중구역 포함)에 대해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제6조, 제8조) - 특정 보호구역내 동식물 포획·채취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요함(제20조)
해양경찰청	낚시어선업법	- 낚시어선 이용 및 안전관련 사항 규정, 낚시어선업 발전, 어가소득 증대(제1조) - 안전설비 구비의무(제8조), 낚시어선검사(제9조), 최대승선인원 제한(제10조)
	유선및도선사업법	- 유선및도선의 안전운항 관련 사항 규정(제1조) - 사업자의 안전준수 의무조항(제12조, 제16조) - 유선및도선 승선객의 안전준수 조항(제13조, 제17조)

한편 레포츠헬동은 기본적으로 수면(내수면과 해수면), 습지 등에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레포츠헬동이 단지 이러한 수면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레포츠헬동이 활성화될수록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어장이나 유어장을 넘어서 어촌과 어항까지 활동영역이 확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레포츠헬동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이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레포츠헬동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주로 어촌과 어항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어장뿐만 아니라 어촌, 어장 역시 레포츠헬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레포츠헬동이 활성화되면 상술한 수면관련 법들 외에도 어촌어항 개발과 관련한 법들의 관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관련법 세부내용 검토

가. 레포츠헬싱 행위제한 관련법

(1) 수산업법(2004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7314호)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제1조). 동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적용되며(제3조), 내수면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단,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내수면어업법 제22조), 수산업법은 내수면과 해수면에 두루 적용되는 수산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생계형 어로행위에 대해 매우 다양한 행위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법 제8조와 제44조에서는 정치망어업이나 양식어업, 복합어업 및 협동양식어업과 같은 면허 어업이나 각종 신고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면허를 득하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1조에서는 근해어업이나 원양어업 등 허가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0조와 제25조~33조까지는 구체적인 면허, 허가, 신고어업을 열거하고 있고, 제9조와 제27조에서는 양식어업과 연안어업의 종류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한 어업을 명시한 후, 동법 제57조는 이 법에 의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양식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함으로써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제67조에서는 수산자원의 증식이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고, 보호수면 내에서의 어

로행위를 금하고 있다(제69조). 또한 동법 제73조에서는 폭발물이나 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으며, 동법 제79조는 수산동식물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54조의2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어종이나 해역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생계형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리수단을 동원해 행위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유어행위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행위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단 동법 제55조에서는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어장 내에서의 유어행위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정치성 구획어업을 말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은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 조성, 포획·채취가 가능한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운영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조 동항에서는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 제41조, 제44조에서 규정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유어장 내에서의 특수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유어장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수산자원보호령(2003.8.27 개정,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어업인들에 대해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제4조), 그물코의 규격제한(제6조), 어구의 규모 제한(제6조의2), 특정어구의 제작 및 판매 등의 금지(제6조의3),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제7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제8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각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포획금지 체장 및 체중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종별 자원량을 보호하고 있는 등 수산업법과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에 대한 행위규제가 매우 까다롭다.

동령에서는 비어업자의 포획 및 채취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어업자는 투망, 쪽대·반두4수망, 1본조(대낙시 또는 손줄낙시),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함), 집게·갈구리, 손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 섬진강·탐진강 일대에서 외줄낙시나 두리그물을 이용한 은어포획을 6월에서 10월까지 금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조항이 많지 않다.

(3) 내수면어업법(2005.3.31 개정, 제7477호)

내수면어업법은 지난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법으로,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역시 수산업법과 마찬가지로 제6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어업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동법 제22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 역시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어업자에 대한 규제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동법 제18조에서는 수산업법과는 달리 유어행위와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수면 내에서의 유어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구를 제한하고 있는데,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쪽대·반두·4수망,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손 등을 이용한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4) 습지보전법(2002.12.26 개정, 법률 제6825호)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에 따르면,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뉘며, 내륙습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연안습지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이 각기 보전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동법 제8조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이외에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3조는 이렇게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모래·자갈·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의 채굴행위,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포획·채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이나 주변지역 내에서의 레포츠활동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단, 동식물의 경작·포획 등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이 일정 기간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우를 제외한다고 함으로써 지역민의 일정

한 어로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제외한 자에 의한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 각종 출입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5) 자연환경보전법(2005.8.4 개정, 법률 제7678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동법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이나,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을 요하는 지역, 기타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 기타 특별히 경관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그 중요도에 따라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행위제한이 가해지는데, 동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 내에서의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행위 또는 기타 훼손·고사시키는 행위와 이를 위해 화약류·덫·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구에서는 유어행위 뿐만 아니라 각종 레포트피싱 활동이 금지된다.

(6) 수질환경보전법(2005.3.31 개정,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 방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동법 제2조제9항에 따르면, 공공수역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말함)의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동법 제20조에서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하에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에 의해 지정된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는 유어행위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57조 (낙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낙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낙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나. 어선을 이용한 낙시행위 등 「낙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낙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라. 1개의 낙시대에 5개 이상의 낙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3. 낙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7) 수도법(2005.7.21 개정, 법률 제7604호)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 계획수립과 수도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제1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동조 제3항에서는 이렇게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와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로서 제1항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어로행위를 제외하고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도법 역시 유어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이 외에 동법 제5조제4항에서는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요할 때는 관

9) 단, 동 시행령 제2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

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법 제6조의2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이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8) 자연공원법(2005.3.31 개정, 법률 제7678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환경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 법은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만한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각각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결정하되, 각 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범주가 가장 좁다고 할 수 있다(제18조).

동법 제23조는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사업 외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1항6호에서는 해중동물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유어(레포트피싱)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5조는 자연공원 외에도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까지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나 수면매입, 형질변경,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광물채굴이나 흙·돌·모래·자갈 채취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상행위의 금지(제27조)나 출입금지(제28조) 조항을 두고 있다.

(9) 하천법(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2호)

하천법은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 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역을 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 시·도, 지자체 등이 일정 부분을 관할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술한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동법 제71조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해 하천유수의 저유(貯留)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

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호에서는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서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71조).

(10) 문화재보호법(2005.3.31 개정, 법률 제7428호)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통해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문화재라 함은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기념물, 동식물(서식지, 번식지 포함)을 포함하며, 이러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된 일정한 보호구역까지를 포함한다(제1조, 제2조). 동법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각각의 문화재를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보물·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이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5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외에도 시·도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대해 시·도문화재로 지정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이렇게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위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20조제1항에서는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위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서의 낚시 또는 각종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25조에서도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나 각종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나 기타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레포트피싱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타 동력기구 관련법

(1) 낚시어선업법(2002.5.13 개정, 법률 제6702호)

낚시어선업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 승선자의 안전과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낚시어선업이란 동법 제2조1호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4조에서는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과 관련해,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의미하며(제2조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낚시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규모와 선령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령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 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이라고 정하고 있다. 단,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에서는 또한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는 영업구역 제한(제7조), 안전설비 구비의무(제8조), 낚시어선의 검사(제9조)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낚시어선의 안전성과 관련해, 낚시어선 승선정원을 선박안전법에 의해 선박검사필증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으로 하도록(제10조) 제한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해서는 안 되며,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종용하고, 승선정원을 초과해서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안전운항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이를 어길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유선및도선사업법(1999.1.18 개정. 법률 제5629호)

유선및도선사업법은 유선과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바다에서 어업·관광·기타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기타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유선사업과 도선사업 모두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제2조). 유도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선박의 규격이나 시설 및 설비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유선 및 도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영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이거나 총 톤수가 5톤 미만인도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단, 면허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선박기준, 시선·장비·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영업구역

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시 정하여진 항행구역 내에서 시도지사·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도선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선박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로 제한된다(법 제8조). 특히 이 법에서는 유·도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항 의무조항(제12조, 제16조) 뿐만 아니라 이들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에게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제13조, 17조)

(3) 수상레저안전법(1999.2.8 개정. 법률 제5610호)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되, 수상레저기구란 동법 시행령 2조에 나열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를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 어선을 타고 이루어지는 수상활동은 이 법에서 말하는 수상레저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유선및도선사업법이나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당해 사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주로 이러한 수상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조종면허 시험관련 내용(제2장)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나 조정자의 안전준수의무(제3장),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안전검사 의무조항 등(제5장)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 2005년 3월 개정되어 2006년 4월 발효될 예정으로 있다. 이는 수상레저 인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상레저기구에 의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선박 해양사고 149건 중 57%인 85건이 수상레저 기구에 의한 것으로, 지난 해 8월 경북 포항 화진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와 바나나보트의 충돌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기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를 받는 자 또는 면허를 갱신하는 자는 수상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로서 정원초과를 금지하며,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등록, 검사, 보험 및 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제2절 문제점 분석

1. 법·제도 측면

가. 개별법에 의한 관리로 중복규제 혹은 행정공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포트피싱 행위제한에 관련한 직접법만 10개이고, 레포트피싱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동력기구를 관할하는 법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 외에 레포트피싱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조성이나 시설설치를 위해서는 기타 어항어촌개발,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규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레포트피싱이라는 행위가 각기 다른 개별법에 의해 각각 별도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중복규제 혹은 규제공백을 피할 수 없고, 관리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유어낚시의 경우에는 이 행위제한 관련법 10개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되며, 내수면에서의 유어낚시는 더욱 그러하다.¹⁰⁾ 갯벌체험의 경우에도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레포트피싱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 사업자를 규제하는 유선및도선사업법, 낚시어선업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 행위에 각기 다른 법적용을 하고 있다. 유선및도선사업법상의 유선(낚시유선)¹¹⁾과 낚시어선업법상의 낚시어선¹²⁾은 어업 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선박을 대여한다는 점에서 영업대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선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신고시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동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영업구역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선박의 성능과 안전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동법 제7조).¹³⁾

또한 이들 개별법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소관사항으로 분리되어 있다.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 레포트피싱이 규제를 받을 경우, 소관부처의 입장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이들 소관부처는 수면이나 수면에 포함된 생태계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수면의 효율적 이용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이용보다는 보존이나 관리측면에 힘을 싣고 있다. 문화재관리법의 경우에도 보호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수면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기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관리과정에서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레포트피싱 관련 계획 및 제도시행에 있어 개발논리와 보존논리를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보다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레포트피싱 활동은 개발논리에 근거해 활성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레포트활동 증대에 따른 연안지역 생태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0) 해수면 유어낚시의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규제받음

1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업·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유선에는 낚시유선과 해상관광용 유선으로 구분될 수 있음

12) 낚시어선업법상 낚시어선업이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승선시켜 하천, 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임

13) 목진용·박용욱, 「해양레저사업의 법적 개선방안」, KMI 기본과제, 2002.11, p 15

보존논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일례로 갯벌의 생태계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갯벌 난개발 방지 혹은 무분별한 갯벌행사에 대한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 갯벌 휴식년제 도입과 같은 갯벌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이 다양하고 이들 관련법의 성격과 소관부처가 상이한 상태에서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 생계형 어업과 유어행위에 대한 법적 형평성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또 하나의 문제는 ‘연안어업인과 레포츠피싱 이용객 간의 유사행위에 대한 차별적 행위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레포츠피싱은 기본적으로 기존 어업자들의 활동영역이나 대상이 되어왔던 해양이라는 공간과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러한 특징은 궁극적으로 레포츠피싱 이용객과 어업자들은 공간 및 자원 활용적 측면에서 경합현상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자원 및 공간 이용상의 경합관계는 주로 유어낚시형이나 수중체험(직접체험형)과 같이 레포츠활동을 위해 특별히 구획된 지역이나 어종이 없이 종전의 상업적 혹은 생계형 어업자들과 동일한 공간 내에서 동일한 자원에 대해 어획이나 채취활동을 벌여야 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에 대한 법 적용방식은 매우 상반된다. 즉 연안어업인들은 정부로부터 어업허가를 득하여 어구제한, 어법제한 등 일정한 어업관리제도 하에서 어로활동을 펼쳐야 하는 반면, 유어(레포츠피싱의 일부)의 경우에는 여가활동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데다 해수면의 경우에는 행위규제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 생계형 어업인과 레포츠피싱 이용객간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컨대 생계형 어업자들은 어업권 제한, 어구, 어법제한과 같은 방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4조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지자체장의 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업의 유효기간(제14조, 제43조), 보호수면 내에서의 어업제한(제69조) 및 유해어업 금지(제73조), 제94조~100조까지의 별칙조항 등을 통해 어업자들의 어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이러한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 대한 어구의 종류, 어법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이러한 어업자들의 행위규제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유어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수산업법 제55조에서 유어장의 지정과 관련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수면에서의 유어행위를 규제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단지 유어장

내에서 스킨스쿠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유어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뿐인 것이다. 특히 실제 해수면의 갯바위나 자연낚시터 등에서 낚시활동이나 스킨스쿠버 활동 등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수산업법 내용으로는 유어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유어 활동에 대한 규제가 힘든 실정이며 유어장 내에서도 불법적 유어활동에 대한 규제를 가할 적절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법은 유료낚시터를 포함한 유어장이나 체험어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 차원이지만 실제로 유어활동을 하는 유어자에 대한 직접적 행위규제가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수산자원보호령의 경우, 수산업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제4조), 금지어구(제5조), 그물코 제한(제6조), 어구 금지구역과 기간(제7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제8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제9조), 체장및체중제한(제10조)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해 어업자들의 어로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어행위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어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어구제한 규정 외에는 별다른 제약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드러냈다.

표 4.2 생계형 어업행위와 유어행위에 대한 상반된 규제현황

생계형 어업 행위규제	유어 행위규제
1. 수산업법 - 어업권규제 : 제8조(면허어업), 제41조(허가어업), 제43조(신고어업) - 어업권유효기간 규제 : 제14조, 제43조 - 보호수면 내 행위규제 : 제69조 - 유해어업 금지 : 제73조 **동법시행령 : 제8조~제10조, 제25조~제27조 등	1. 수산업법 - 명시적인 유어행위 규제조항 없음 - 단, 유어장지정과 관련한 조항(제55조)만 있음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15호 근거조항)
2. 수산자원보호령 - 특정어업 금지구역 지정(제4조) - 그물코 규격 및 어구 규모 제한(제5조, 제6조) - 어구사용금지구역 및 기간(제7조) - 포획금지구역과 기간(제8조) - 어종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제한(제9조, 제10조)	2. 수산자원보호령 - 비어업자의 어구제한 : 제14조제1항 - 특정지역에서 특정어구를 사용한 은어포획 금지 : 제14조제2항
3. 내수면어업법 - 어업권규제 : 제6조(면허어업), 제9조(허가어업), 제11조(신고어업) - 어업권 유효기간 : 제13조 - 유해어업 금지 : 제19조 **동법시행령 : 제8조, 제9조 등	3. 내수면어업법 - 유어질서 : 제18조 (내수면에서의 행위규제 근거조항이 됨) ** 동법 시행령 :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내수면어업법(2005년 3월 개정)¹⁴⁾ 역시 동 법 제6조, 9조, 11조에서는 각각 내수면에서의 어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 허가, 신고를 받고록 규정함으로써 어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이나 제19조의 유해어업의 금지 등을 통해 간접적인 어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면에 적용되는 수산업법이 특별히 유어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데에 반해, 다행히 내수면어업법은 제18조 조항을 신설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더러,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외줄낚시, 쪽대·반두·4수망(사수망),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손 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내에서의 유어행위에 대한 행위규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자들에 대한 규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불명확한 유어의 개념

레포츠피싱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수산업법에서는 ‘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유어는 (i) 낚시 등을 이용하여 (ii) 놀이를 목적으로 (iii)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수면이나 해수면에서 낚시 등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낚시 등이란 범위에 어떤 기구들이 포함되는지, 유어의 범주에 어떤 유형의 활동이 포함되는 등이 명확하지 않다.

수산업법을 근거로 제정된 유어장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서도 유어의 종류를 정확히 나열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 규칙 제8조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 규정에 근거해 유어장에서 가능한 채취포획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하거나, 맨몸 또는 수중 자가 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에 한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유어장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내수면이나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유어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유어개념으로는 레포츠피싱의 네 가지 유형을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어에 활용될 수 있는 종류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음으로써 관리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14) 수산업법은 종전에는 내수면과 해수면에 모두 적용이 되었지만, 내수면어업법이 있는 상태에서 수산업법에 중복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2004년 12월 개정법률안(법률 제7314호)에서 명시적으로는 해수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음. 그러나, 내수면어업법에 제22조에서는 동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산업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면도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

라. 새로운 형태의 유어활동 규제근거 부재

지금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유어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자면, 해수면에서의 유어낚시, 갯벌 체험, 수중체험형 중 작살형 스킨스쿠버과 같은 직접채포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내수면은 갯벌이 없고 탁도가 심해 갯벌체험이나 수중체험이 불가능하겠지만, 내수면 유어낚시와 체험어업은 유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체험어업이나 갯벌체험 중에서도 교육용으로 채취보다는 관찰측면에 관점을 두고 갯벌생태체험과 같은 형태는 이 유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어활동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그 중 체험어업이 가장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체험어업은 실제 어업행위를 하는 어업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 때로는 맨손, 낚시(외줄낚시), 수경, 작살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어획활동을 하거나, 혹은 조업을 행하는 어선에 단순히 승선하는 것을 체험하거나 조업어선에 승선하여 실제 어업행위를 조력하는 형태의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양식활동에 참여하거나, 수산물 가공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체험어업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체험어업이 어떤 식의 다른 형태들로 발전할 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낚시행위가 유어장이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유어장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갯벌체험은 대부분이 체험어장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체험어업은 유어장보다는 일부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어장 전체를 대상구역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화되고 있는 체험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유어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유어활동을 어떠한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 유명무실한 유어장 관리체제

유어장 내에서의 유어낚시나 수중체험, 갯벌체험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부분의 갯벌체험은 마을어장 내에 구획된 체험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 2001년 수산업법 개정 당시 유어장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제도권 내에서 유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다음해인 2002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산업법 제55조제3항에 근거해 발표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어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은 유어장관리규정을 포함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이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유어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2조), 유어장관리규정에는 유어방법 및 시기,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안전사항, 제한 및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규칙 제4조). 또한 동 규칙 제8조에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 규정에 근거해 유어장에서 가능한 채취·포획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동 규칙 별표).

유어장 지정구역 구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방법
양식(협동양식어장 제외)·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 내에 지정된 유어장	- 당해 어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	-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지인망·건강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동 규칙 제9조는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과 관련해,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간이화장실, 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안내입간판(100cm×80cm 규모, 흰색바탕, 청색글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 어장관리선에는 승선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구명동의, 통신기기등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10조에서는 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근래 주5일제 근무 확대로 해양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어류가두리양식장을 유어장으로 지정해 낚시를 허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동 규칙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마을·협동양식어장에서만 가능한 낚시를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 소유의 어류가두리양식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시설기준, 해양환경오염방지시설, 시설장비,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이다.

하지만 문제는 설령 이런 관리기준이 명시화되어 있더라도, 관리자 측이 강제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유어장 관리제도와 관련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어촌계 후

은 지구별수협이 유어장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유어장관리규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관리규정에는 유어의 방법 및 시기, 유어장에서의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 중 상주 관리인원이나 관리방식에 관한 항목은 빠져있다. 물론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상주 관리인력을 두어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유어장보다는 대체로 어촌계 혹은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관리는 그 실현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리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즉 자신에게 직접적 책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한된 체장이나 마릿수 이상의 어획물을 관리하면서 이용객과의 실랑이를 벌이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촌계 회원이 마을어장 활동에 참여해 바지락을 채취하거나 어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유어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개인별 수입보다 더 클 경우에는 어촌계 회원들을 공동관리 체제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설령 해당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유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유어장 운영수입이 크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상주 관리인력을 두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주 관리인력 1명을 두고 있는 서천 월하성 갯벌체험어장의 경우에 연간 유어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6,000만 원가량이라고 할 때, 유어장 운영비 약 1,000만 원 중 60%인 600만 원가량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었다. 따라서 연간 운영수입의 10%가 상주 관리인력 1명의 고용비로 사용되고 있어, 고용인원을 늘리는 것이 힘든 형편이었다.

이 외에도 동조 제2항은 유어장 관리자는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매년 1회 이상 유어장의 안전설비 구비 및 정비실태 등 유어장 안전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유어장 관리운영자는 유어장 관리일지를 매일 작성해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어장 가운데 관리일지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작성자가 일관성이 없어서 작성내용도 작성자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작성내용 대부분이 유어객 이용료 징수사항 정도여서 실질적인 유어장 관리실태를 파악하기는 곤란했다.

이러한 관리체제 미비로 인한 유어객의 치어·치패 남획과 과다어획 등은 결국 유어장 내의 자원량 고갈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원량 고갈은 유어장 이용객들의 흥미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운영수입이 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어장에서는 지자체 단위나 어촌계

자체의 사업자금으로 매년 종패, 종묘사업을 벌여 자원량 감소를 막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바. 불법 유어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조치 불가

최근 유어장을 중심으로 한 유어행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어장 밖에서의 불법 유어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불법 유어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러한 불법 유어행위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어장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낚시를 하거나 스킨스쿠버 등을 하는 사람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어업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유어행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당사자 역시 어업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인은 불법 유어행위자를 발견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해당 수면관리자 혹은 해양경찰청에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정작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제재권한을 갖는 관리기관이나 해양경찰청 등은 이러한 신고에 대해 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불법 유어행위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어업인들에게로 전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어업인들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 낚시도구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나 장비를 어업인이 즉시 취해 잠시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재권한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자원이용 및 관리 측면

가. 생계형 어업인과 레포트피싱 활동자의 경합적 자원이용

전술한 바와 같이 생계형 어업인과 레포트피싱 활동자 간의 자원이용에 대한 경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합현상은 수산자원을 이용한다는 기본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이들 양자의 주요 대상자원이 유사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수산자원량 증대 및 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1973년부터 종묘방류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근래 수산자원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종묘방류량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어종별 방류량 추이를 보면, 넙치, 볼락, 감성돔, 황복의 방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또한 지자체나 어업인 자담으로 별도의 종묘방류나 종패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이들 감성돔, 참돔, 돌돔, 농어, 볼락, 방어, 부시리 등은 고가어종으로서 상업형 혹은 생계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어업자들의 주요 대상종이자 어업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어종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어종은

15) KMI 현안분석, 「치어·치패 방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5, p 10.

유어낚시객의 주요 조획 대상종이기도 하다. 현재 바다낚시객 190만 명의 1회 출조시 평균어획량 2.2kg 중 이들 고급어종의 어획이 1.2kg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간어획량은 2,280톤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 실제로 북제주군 일대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어선업자의 어업소득에서 이들 어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 성업 중인 유어낚시객의 대부분이 감성돔을 비롯한 돔류를 주로 어획하고 있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수중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원이용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통상 어촌계는 마을어장 혹은 협동양식장 내에 어촌계 자체적 혹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마을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한 어가소득을 목적으로 종묘방류 혹은 종패살포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방류 혹은 살포된 패류 등을 스킨스쿠버들이 불법적으로 어획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어종 역시 대부분 고가어종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어업인 자담으로 혹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종묘방류나 종패사업의 경우에는 마을 혹은 지역 어장의 수산자원 증대와 이를 통한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경우 어떠한 기여 없이 마을 혹은 지역민의 공동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의 자원방류나 종패사업을 통한 자원증대 및 관리정책이 유어(레포츠피싱)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이는 자원관리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나. 레포츠피싱 활동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조항 미흡

자원의 경합적 이용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유어장을 제외하고는 레포츠피싱 이용객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조항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대상종에 대한 체장 혹은 체중제한 내용이 없는 등 제도상의 불충분으로 어린물고기나 치패까지 마구잡이로 포획·채포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법 검토내용에 따르면, 어업자들과는 달리 해수면에서의 레포츠피싱 활동의 경우 별다른 행위제한이 없는데다 특히 수산자원보호령에서조차도 비어업자에 대한 어구제한 내용 외에 종묘나 치패의 포획·채포를 규제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물론 유어장에서는 유어장관리규칙에 따라 이의 포획·채포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덤’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상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업자들에 대해서는 산란기 등에 맞춰 금어지역 혹은 금어기간 등을 설정해 자원증식 및 보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유어 활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유어활동을 행하고 있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정부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물고기 산란이나 부화기의 유어활동 혹은 치패까지 남획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레포츠피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수산자원 보호 및 증대 등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자원량 관리 곤란

수산업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2~4에서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이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항 역시 어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유어(레포츠피싱)에 따라 어획 또는 채포되는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총허용어획량 자체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유어 낚시의 경우 일부 어종을 집중적으로 조획하는 경향이 많아 어업자들의 어획량에 비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허용어획량이나 자원관리량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3. 정부부처간 역할관계 측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포츠피싱 활동과 관련된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교부, 문화관광부 4개로, 해양수산부가 주로 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포츠피싱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관할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면의 생물다양성이나 수질 및 기타 환경보전 관련 측면에서, 건교부는 하천수질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문화관광부는 수면내에 속한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각기 관할수면에 대한 관리 및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수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자로서 이러한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활동을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다. 특히 해수면에 대해서는 연안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리권이 해수부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내수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관리자¹⁶⁾가 어업활동 등을 제한하며, 관계 중앙부처의 소관사항에 따라 호소내 낚시금지 혹은 제한구역에서는 환경부가, 하천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교부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문광부(문화재청)가 관리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갯벌 등 습지의 경우에 연안습지와 내륙습지에 대한 관할권이 해수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분할되어 있다. 갯벌보전법 제18조에 의거해 환경부장관의 행위중지 명령권한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해수부장관의 연안습지내 행위중지명령권은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16) 내수면 수면관리자를 보면 사유수면은 개인이, 공공용수면은 국가 혹은 시도이지만 시군구에 권한 위임을 한 상태이며, 기타 수자원공사와 한국농촌공사(농업기반공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4.3 관련 정부부처간 역할관계

관련부처	역할	담당부서	주요 기능	소관법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면과 수산자원의 이용및개발	수산정책과	- 여촌관광·휴양특산단지 개발 관련 사항 - 중장기 어항개발계획 수립 -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낙시어선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촌어항법 등
		어업자원국	- 낚시터 및 체험어장 개발 및 운영사항 - 연근해어업의 허가 및 자원관리 정책수립과 집행 - 불법어업 지도단속 -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운영 및 관리 - 내수면어업 관리	
		안전관리관	- 해상교통,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환경부	수면과 수산자원, 환경의 보전, 수질보전	자연보전국	- 습지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및 생태관리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등
		수질보전국	-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과 수로의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 - 4대강(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 수계 수자원 및 오염원 관리 -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건교부	수자원 이용및개발, 수질보전	기반시설본부*	- 하천 및 하천부속물의 관리 - 댐 건설 및 관리, 지하수 및 상수도 관리 - 기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개조 등	하천법
문광부 (문화재청)	수면내 문화재보호	문화재정책국	- 문화재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	문화재보호법

주 : * 건교부의 직제법이 2005년 9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수자원국이 기반시설본부로 편입되었음.
기반시설본부에서는 모든 하천, 댐, 지하수, 수자원 정책을 총괄함

그러나 레포트피싱 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낚시어선이나 유선 사업자에 대한 관할사항은 이와는 달리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다. 단, 일부 권한이 지자체나 해양청에 위임되어 있다. 예컨대 낚시어선업 사업자 관리권한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갖는다. 유선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선사업자 관리권한은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수면인 경우는 시도지사나 해양경찰청장에게 귀속되지만,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8조와 시행령 제30조 권한위임 조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레포트피싱 활동과 관련해 4개의 중앙부처간 역할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지자체와 중앙부처, 기타 관할청 등으로 일부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서 행정 및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관리측면(예, 유어낚시)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레포트피싱 활동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정책적 측면

가. 어촌어항의 유기적 개발체계 미흡으로 소득과의 연계성 낮음

어촌은 어촌어항어장이라는 3대 요소가 결합되어 돌아가는 하나의 유기체로 볼 수 있는데,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매우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효과 증진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어가소득 증대와 얼마나 연계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레포츠피싱 이용자의 활동권(어장 또는 유어장)-체류권(숙박시설)에 이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레포츠피싱 이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나 기타 어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체험어장이 들어서 어가소득에 별다른 도움 없이 어업인의 어로활동에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나. 프로그램 개발지원 부족

정부와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레포츠피싱을 포함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관광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주로 시설위주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고, 프로그램 역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치 못하고 획일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예컨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체험마을로 지정된 각 지역에 사업자금으로 지급된 5억원은 주로 안내소설치, 주차시설 정비, 체험장조성 등 시설사업에 집중 투하되고 실제 어촌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마케팅 비용이 사업비용에서 누락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체험마을에서 주요 프로그램으로 고시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조사결과 대부분의 어촌체험마을에서 주요 프로그램 1~2개가량만을 실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부재는 어촌체험마을 사업 전반의 효과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성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관측 및 데이터베이스화 측면

향후 레포츠피싱이 수요자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보다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어가소득 및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실질적 수요패턴과 공급자의 공급패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요공급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각 레포츠피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이용실태

와 관련한 제대로 된 통계자료 하나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체험어장의 경우, 그 지역에 상주하며 체험어장 이용객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없고 어촌계 회원이 그때그때 입장료만 징수하고, 징수금액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정보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용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일부 단체관광객의 경우에는 관광회사의 패키지 프로그램 하에서 진행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들 관광회사의 이용객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정보공유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라. 항만구역 및 배후지의 친수공간에 대한 활용성 저조

정부는 항만내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주 찾고 해양에 대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규항만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친수공간 조성을 의무화하고, 기존 항만 역시 유휴부지 또는 노후 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까지 여수항 등에 친수시설 4개소를 조성하고, 2011년까지 부산 다대포항 등에 2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친수공간은 대부분이 항만 배후지의 육상공간을 이용하여 녹지나 공원을 조성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휴식공간 조성은 단지 감상형, 관광형 관광수요나 여가수요만을 만족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항만수역과 이에 부속한 수산자원을 이용해 레포츠피싱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절 개선방안

레포츠피싱의 활성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방안, 어업인과 레포츠피싱 활동자 간의 공존방안, 기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법·제도 개선방안

먼저 현재 개별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레포츠피싱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삽입되어 있는 조항들을 통합해 레포츠피싱발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법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낚시발전을 위한 통합법과 해양자원 이용및개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업법 자체에서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레포츠피싱을 규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수산업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어개념이 레포츠피싱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지 못한다. 특히 체험어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동법 상의 유어개념을 레포츠피싱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정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낚시 등’과 같이 유어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어구 등을 나열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둠으로써 관리상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법에 유어의 정확한 범주를 설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각 범주별 사용가능한 도구나 어구 등을 나열하도록 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산업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유어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행위제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레포츠피싱 관련조항을 통합할 경우, 수산업법 자체의 법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레포츠피싱 육성을 위한 종합적 규정이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의 통합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법 통합과 관련해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레포츠피싱에 사용되는 선박을 규제하는 낚시어선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내용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낚시어선업법과 유선및도선사업법 상의 낚시선에 대한 차별적 규제내용과 관련해, 유어낚시 및 기타 체험어업, 수중체험형 등에 사용되는 어선이나 선박을 통합된 조항으로 규제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이 때 일반 유어낚시나 수중체험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에 대한 제한을 두도록 하되, 체험어업은 핫플조업이나 어선승선체험과 같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영업구역에 대한 제한은 두되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타 안전준수 의무조항 등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정비와 더불어 유어장 관리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해면지역에 50여 곳의 유료낚시터와 유어장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유어장이나 체험어장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으로 유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유어장 관리규정에 상주 관리인원과 관리방식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유어장 관리규정에 대해 마을 어촌계 혹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의견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추후 유어장의 공동관리 및 운영이나 기타 운영방식에 대한 어촌계 및 공동체 회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어장에 대해 우수 유어장 인증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유어장 관리를 통한 자원관리와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 신고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신고체계나 신고내용을 단순화해 자발적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 레포츠피싱 행위에 대해 유어장 관리자

나 해당 마을 어촌계에서 즉시적인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레포트피싱 활동자들의 불법적 행위를 가장 빈번히 접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해당 마을 어촌계나 마을 주민이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로 인해 마을 공동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상업적 어업과의 공존방안

가. 레포트피싱 행위에 대해서도 자원보호 의무사항 명시

전술한 바,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비어업자(레포트피싱 활동자)에 대해서도 체장제한, 체중제한, 금어기 및 금어구 설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생계형 어업인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고가어종에 대해서는 체장제한이나 금어기간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제4장 해외사례(일본) 참조). 하지만 법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적 측면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지적한 대로 레포트피싱 활동자(특히 유어낚시객)에 의해 포획 또는 채취되는 수산동식물의 양이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향후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레포트피싱 행위자에게도 자원보호 및 증식을 위한 의무조항을 둬으로써 자원남획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어구나 어법이 일반적으로 레포트피싱을 하는 이용객의 사용도구보다 어획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조항이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경우,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으로 불법 레포트피싱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모든 규제수단을 적용하기 보다는 1~2개의 수단만을 이용해서 규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어장 및 낚시터 등에 대한 자원관리

현재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총허용어획량 제도(현재 10개 어종 시행 중)를 통해 어획가능한 자원량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유어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어낚시에 의한 조획량 비중이 큰 어종에 대해 연간 조획할당량을 설정하여 유어낚시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도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출조당 일일 어획마릿수 규제뿐만 아니라 유어낚시 어선이 반드시 어획면허(Permit)를 얻어야만 출조하여 어획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유어행위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와 개인별 조획마릿수 제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어장이나 유료낚시터 등 레포츠피싱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정 공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남획에 따른 마을어장이나 유어장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 방법으로 이용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어장과 유료낚시터에 하루 혹은 한달 간 포획 및 채취할 수 있는 자원량을 설정하고, 이 최대 포획·채취 허용량 한도 내에서 이용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 이용권은 금액을 차등화 하고, 금액에 따라 어획가능량을 차등화하도록 하되, 이용권에는 반드시 체장제한, 체중제한, 어획량 제한 내용 등이 명시되도록 해 유어장 내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료운영이 많은 유어장이나 낚시터의 유료화가 불가피하고, 유료화는 어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어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남획을 피할 수 있어 생계형 어업자들과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원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 어업인과 레포츠피싱 활동자의 교류가능성 확대

어업인과 레포츠피싱 활동자들과의 공존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안의 하나는 이 양자간의 교류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보다는 소규모 어촌의 어가를 기반으로 레포츠피싱 활동이 이루어지고 각종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행사에 레포츠피싱 활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소공원을 레포츠피싱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인접하게 배치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별 레포츠피싱 활동그룹·개별 어가를 묶어 모든 레포츠피싱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별어가가 지원하되 이에 대한 일정의 수수료를 받거나 개별어가에서 숙박을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치어·치패의 포획이나 채취를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불법 레포츠피싱 행위가 어가에 주는 피해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적 유대관계의 강화로 재방문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3. 부처간 역할관계 정립방안

현재 개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유어활동(레포츠피싱 활동)을 통합해 일원화된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4개 중앙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레포츠피싱 활동과 관련한 행정체계도 단순화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레포츠피싱은 단순히 수면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행위(예, 해양레포츠) 등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수면 아래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 수산자원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으며, 레포트피싱과 관련한 관련법 중 대부분을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건교부나 문광부 등은 일부 수면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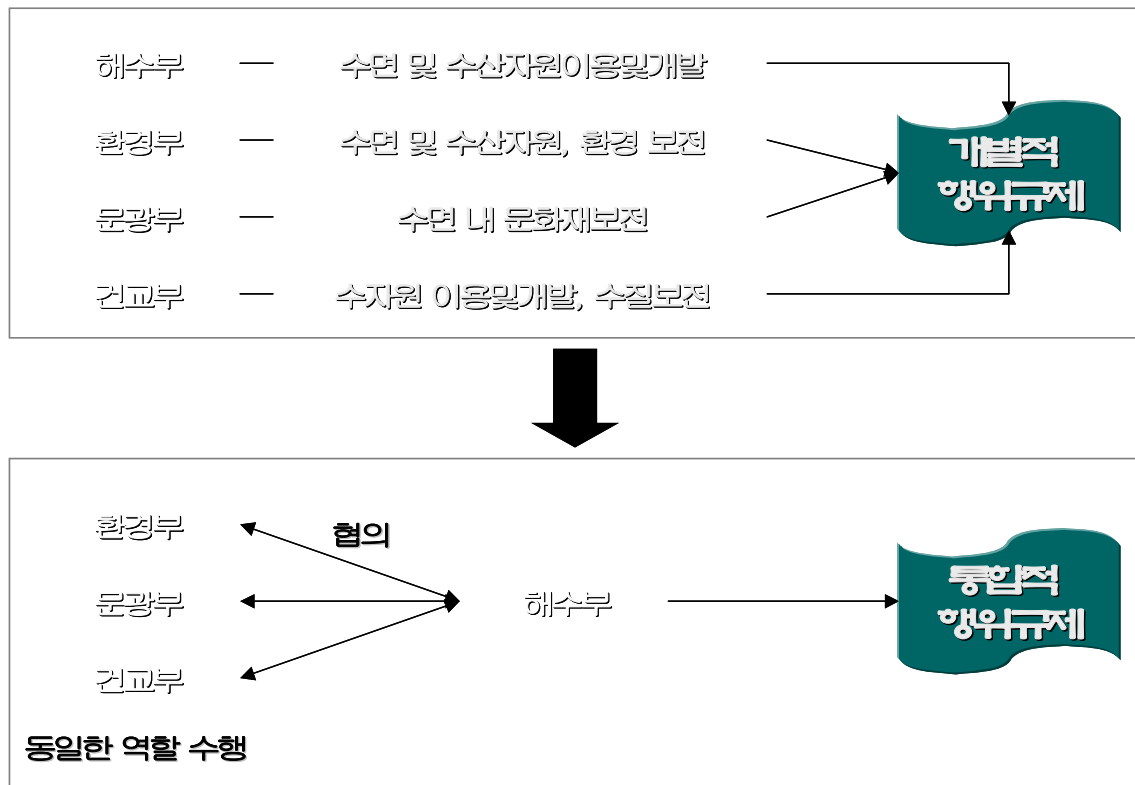


그림 4.1 관련부처간 역할관계 변화도

따라서 현재 건교부나 문광부에서 관할하는 하천 수질을 보호를 위한 낚시행위 금지나 문광부에서 관할하는 수면내 문화재보호권에 대해서는 해수부로 이관함으로써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면과 수면에 속한 부속물을 관리 및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해수부는 이용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환경부는 보존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와는 단기적으로는 공조해서 수면과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레포트피싱과 관련한 관할사항을 해수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만을 환경부에 존치시키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환경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호소내 낚시금지(제한)구역 등에 대한 관할권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나 건교부, 문광부 등에서 수질관리, 문화재관리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레포트피싱 활동을 금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해수부에 알리고 협의과정을 거쳐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이해역을 레포트피싱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리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4. 정책적 개선방안

가. 레포츠피싱 활동이 유어장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

정부는 레포츠피싱 허용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을 설정해 레포츠피싱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낚시금지(제한)구역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의 레포츠피싱 활동을 금지수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허용하는 식으로 레포츠피싱 지역에 대한 관리방식(네가티브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수단을 이용해 관리를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레포츠피싱 활동자들을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오히려 레포츠피싱 허용구역 혹은 권역을 설정하여 레포츠피싱 활동자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되, 불법적 레포츠피싱 활동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식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대역의 허용구역을 설정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체험어장을 지정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일반항만 17개소와 신항만 8개소에 사업이 12,279억원을 들여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 가운데 인천과 동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육역부분에 해양박물관,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해 해양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친수공간과 인접한 항만수역의 수질개선 및 정비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항만수역의 환경이 지금과는 달리 매우 깨끗해질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수공간과 인접한 항만수역의 수질개선 및 환경정비를 통해 이 지역을 레포츠피싱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레포츠피싱용 자원조성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해 그야말로 휴식공간과 레포츠피싱 공간이 공존하는 레포츠피싱 거점구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수공간을 단순히 감상형 혹은 관상형 수요에만 초점을 맞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는 감상형 관광수요와 체험성과 모험성을 추구하는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레포츠피싱 거점수역 및 종합공간으로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레포츠피싱용 자원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레포츠피싱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재 유어장의 어장황폐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어장황폐화는 결국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흥미를 떨어뜨려 재방문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어장 관리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유어장이나 레포츠피싱 허용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조성을 통해 어장황폐화를 막고,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증대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레포츠피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체계 마련

현재 어촌체험마을을 통해 제공되는 레포츠피싱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로 특별히 차별화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유사한 레포츠피싱 활동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화된 프로그램은 레포츠피싱 활동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연구소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레포츠피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관광프로그램 개발업체-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프로그램 개발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주체가 어업인과 어협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업인의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부터 레포츠피싱 관련 시설 및 이용객 관리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관광업계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향후 운영이나 마케팅 등에 대한 비용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시설투자 후 보수비 및 사후관리 비용, 홍보비 등을 정부가 관리기관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다. 기타

이러한 정책적 고려사항 외에도 어가소득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레포츠피싱 활동자의 동선을 고려한 어촌 및 어항개발, 기초통계 구축과 레포츠피싱 관련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각종 레포츠피싱 행위제한 지역이나 제한내용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5장 해외 레포트피싱 개발사례

1. 일본
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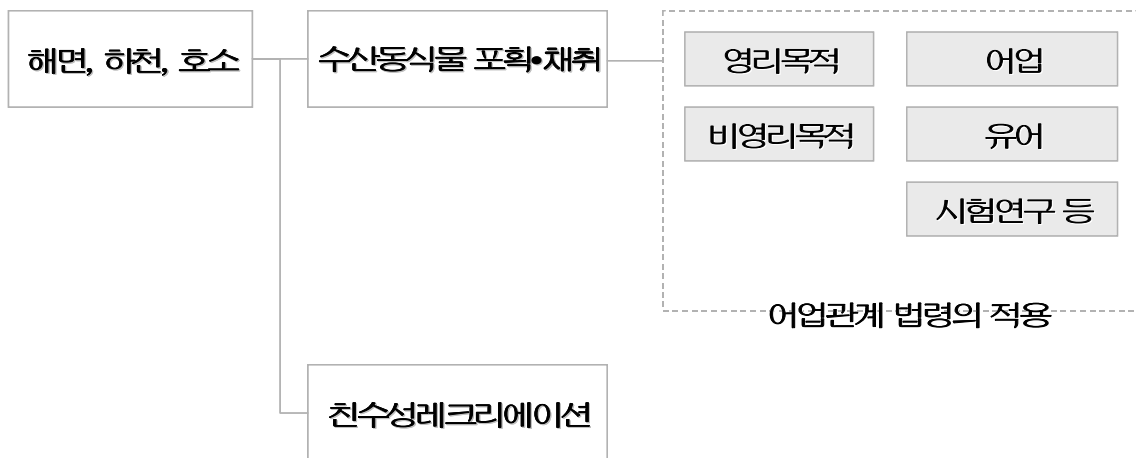
제5장 해외 레포츠피싱 개발사례

제1절 일본

일본의 어촌관광은 ‘블루투어리즘(Blue tourism)’이라는 기치 하에 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 및 문화,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중심테마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어촌관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주로 낚시공원, 수산물직판장, 수족관 및 인공해변 등과 같은 시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시설투자 후 보수비 등 사후관리비용이나 홍보비를 관리기관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시설투자 후 사후관리비 및 홍보비 지원은 운영비 및 운영비용 부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부족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내 레포츠피싱 산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본은 어협을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지원의 경우, 주로 체험어업, 체험어장, 가공 및 요리체험 등과 같이 실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측면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었으며, 부녀인력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도 일본어촌관광 인프라와 운영은 경영수지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발되고 있어, 어가소득 증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 어촌관광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1. 해양레크리에이션 종류 및 현황

일본은 레포츠피싱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양레크리에이션’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해양레크리에이션은 그림 5.1과 같이 수산동식물 채포행위의 수반여부에 따라 채포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유어(遊漁)’로, 수반되지 않는 것을 ‘친수성레크리에이션’로 구분하고 있다.



자료 : 일본 수산청

그림 5.1 일본 해양레크리에이션의 분류

따라서 유어와 친수성레크리에이션을 어업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구분해 본다면, 유어는 해변 및 내수면 등 수면공간을 공유하는 동시에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자원도 공유를 하는 것인데 비해, 친수성레크리에이션은 수면공간만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어업과 유어와의 차이는 그 행위 목적이 영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구분된다.

유어의 종류를 살펴보면, 낚시(갯바위낚시·해변낚시·잔교낚시·바다낚시 등), 체험형어업(정치망·자망·지인망·소형저인망 등), 조간대 패류채취 등이 있으며, 특히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낚시·체험형어업에는 유어선이나 플레저보트가 이용된다(표 5.1). 한편, 친수성레크리에이션에는 유선¹⁷⁾(요트, 보트, 카누, 수상모터사이클, 유람선, Glass보트 등), 다이빙(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해수욕(유영, 서핑, 비치발리볼, 갯벌놀이), 해변자원봉사활동(치어방류체험, 해변청소, 식목체험 등), 견학(고래·돌고래 관찰(watching), 수족관, 해중공원 등), 수산물 조리·가공체험, 물고기 축제(시식·선어판매 등)등이 있다.

표 5.1 일본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종류

해양 레크 리에 이션	유어	낚시(갯바위낚시, 해변낚시, 잔교낚시, 심해낚시, 루어낚시 등)
		체험형어업(정치망·자망·지인망·소형저인망 등)
		패류채취(바지락, 재첩 등)
	친수성 레크리에이션	遊船(요트, 보트, 카누, 수상모터사이클, 유람선, Glass보트 등)
		다이빙(스킨·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해변 자원봉사활동(치어방류체험, 해변청소, 식수체험 등)
		견학(고래·돌고래 관찰, 수족관, 해중공원, 무인도 산책 등)
		수산물 조리·가공 체험(어묵김 제조체험 등)
		물고기 축제(시식·선어판매 등)

자료 : 일본 수산청

한편, 일본에서는 국민생활의 향상, 주5일제 시행에 의한 노동시간의 단축 등에 따라 여가의 유효이용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레저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일본국민의 생활 속에 중요한 의미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고, 그 중 낚시가 가장 대표적인 해양레저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이는 하천 및 호수 등 내수면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또한 이러한 유어인구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5.2).

실제로 유어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유어형태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낚시가 전체 유어인구의 약 80%를 점하고 있고, 이 중에서 선상낚시(유어업자의 어선, 플레저(레저용)보트)가 약 40%, 육상낚시(갯바위낚시, 백사장낚시, 방파제낚시, 낚시공원 등)가

17) 유선(유선)은 주로 수상동력레저기구를 의미하므로, 유어낚시에 사용되는 유어선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임

약 60%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낚시를 위해 유어선을 이용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플레저보트(자가용보트)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 간석지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유어인구가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표 5.2 일본 해면 및 내수면 유어자의 추이

단위 : 만명

		1978	1983	1988	1993	1998
해 면	합계	2,269(73%)	3,093(100%)	3,535(114%)	3,729(120%)	3,868(125%)
	낚시	1,761(71%)	2,482(100%)	2,944(119%)	3,136(126%)	3,326(134%)
	선상낚시	-	1,000(100%)	1,185(118%)	1,118(112%)	1,230(123%)
	기타낚시	-	1,482(100%)	1,760(119%)	2,019(136%)	2,096(141%)
	潮干狩*	294(89%)	330(100%)	480(145%)	490(148%)	461(140%)
	기타**	214(76%)	281(100%)	111(39%)	104(37%)	81(29%)
내수면	낚시	882(91%)	965(100%)	1,094(113%)	1,187(123%)	1,315(136%)

주 : * 간석지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것

** 잠수, 지인망, 뜰채, 투망 등

자료 : 農林水産省, 漁業センサス 각 년도

2. 해양레크리에이션 제도

일본의 해양레크리에이션 제도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수산동식물의 포획을 규제하는 법령으로는 농림수산대신(장관)이 정하는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도도부현지사(시·도지사)가 정하는 해면·내수면어업조정규칙, 해구어업조정위원회·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의 지시가 있고, 특별히 내수면에 대해서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 관할구역 어협이 정하는 유어규칙 등이 있다.

한편 수산동식물 보호 및 어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자율규제로서 연안어장정비개발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어장이용협정,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자원관리협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원관리규정 등이 있다.

가.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규제하는 법령

(1) 어업법·수산자원보호법·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규제하는 법령으로서 우선 어업법(1949.12. 제정, 2005.7. 개정)이 있다. 이 법의 주요목적은 수면(해면·내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통한 어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어업권, 어업허가, 어업조정위원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경영하는 권리이며, 정치어업권(대형정치망어업을 영위하는 권리), 구획어업권(양식업을 영위하는 권리 : 제1~3종-특정), 공동어업권(일정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영위하는 권리 : 패류 및 해조채취, 자망, 소형정치망 등 제1~5종)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5.3).

표 5.3 일본 어업권의 종류와 영위 가능한 업종

정치어업권	정치어업(어구를 정치해서 영위하는 어업으로, 설치장소의 최심 부분이 27m 이상의 대형정치망)을 영위하는 권리
구획어업권	일정의 구역내에서 양식업을 영위하는 권리
제1종	일정한 구역 내에서 돌, 대나무 등을 시설하여 영위하는 양식업(여류가두리양식업, 감·미역 양식업, 진주모패양식업, 진주양식업 등).
제2종	돌, 대나무, 나무 등으로 둘러싸여진 일정한 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양식업(축제식, 그물칸막이 양식업 등)
제3종	상기 이외로 일정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양식업(울타리식 패류양식업 등)
특정	진주모패, 가두리식, 굴양식업, 제3종 구획어업을 합친 어업권
공동어업권	일정한 수면을 공동에 이용해서 어업을 영위하는 권리이며, 자망어업, 소형 정치망어업 등이 있음. 어협에 면허되어 어업권 구역 내에서는 조합의 관리 하에서 조합원이 어업을 영위함. 대부분의 연안역에 설정되어 있음
제1종	해초류, 패류, 대신(장관)지정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
제2종	고정성 그물어구를 이용한 어업(소형정치망 등)
제3종	지인망어업, 미끼이용어업, 무동력선을 이용한 선인망
제4종	기어(寄魚), 조부(鳥付)낙시어업
제5종	내수면(하천·호수)에서 경영하는 어업

자료 : 일본 수산청

공동어업권은 전국의 대부분 연안에 설정되어 있고, 권리를 부여받은 어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의한 채포, 어업권 대상어업에 대한 조업방해, 어장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권리자는 이들 행위를 방지하거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어업권을 침해한 사람은 고소 혹은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구획어업권의 하나인 특정구획어업권(진주모패, 굴양식업, 제3종구획어업을 합친 것)과 공동어업권은 어업경영자에게 직접 면허되는 정치어업권·구획어업권(특정구획어업권은 제외)과 다르며, 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이라고 함)에 면허되어 이들 어업권에 규정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협의 조합원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연안영역에서의 패류나 해조류, 정착성의 수산동식물

조합원 이외의 사람이 채취하면 어업권 침해가 된다.

다음으로 수산자원보호법(1951년12월 제정, 2005년4월 최종개정)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배양과 보호 유지를 통해 어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어법의 제한이나 보호수면 등을 설정하고 있다. 어법의 제한(제5조)은 폭발물·유독물을 사용한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호수면(제15조)은 수산동물의 산란, 치어의 육성, 수산동식물의 종묘생산에 적합한 해역에 대해서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사가 지정한 수면이다. 동 수역에서는 보호배양에 필요한 조치 등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규제하고 있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각 도도부현의 해면·내수면어업조정규칙에 의해 정해진다.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은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및 수산청에서의 통지 등에 따라 도도부현마다 제정된다. 도도부현이 관할하는 수면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자나 유어자 등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주로 어구어법, 채포금지 구역, 어종마다의 채포금지 기간, 채장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하는데, 위반자에게는 징역 혹은 벌금, 과료의 벌칙이 적용되고 있다. 규제내용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며, 각 도도부현에서 유어자가 사용 가능한 어구어법은 표 5.4와 같다.

표 5.4 일본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에서 정하는 유어에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2005.9.1)

○사용 가능 ●집어등 사용금지 △선박 사용금지 ■발사장치 사용금지 ※미끼이용 낚시금지

지역	대낚사손 낚시	트롤링	사들	족대	채롱	투망	작살류	갈쿠리	맨손	함정 그물
홋카이도(北海道)	○		○						○	
아오모리(青森県)	○※		○	○	○	○	■	○	○	
이와테(岩手縣)	○		○	○		△		○ ^{주13}	○	
미야기(宮城県)	○		○	○		○	○	○	○	
아키타(秋田県)	○※		○	○		△	○	○	○	
야마카타(山形県)	○		○	○			△		○	
후쿠시마(福島県)	○		○	○		△	○	○	○	
이바라기(茨城県)	●※		●	●		● △	●	●	●	
치바(千葉県)	●		●	○		● △		○ ^{주4}	● ^{주9}	
도쿄(東京都)	●※		●	●		● △		●	●	
카나가와(神奈川県)	○		○	○		○	○ ^{주7}	○ ^{주14}	○	
니이가타(新潟県)	○※		○	○		△	○	○	○	
토야마(豊山県)	○		○	○		△	○		○	
이시카와(石川県)	○		○	○		△	○	○	○	
후쿠이(福井県)	○※		○	○		△	○	○	●	
시즈오카(静岡県)	○	○ ^{주6}	●	●		△	● ^{주8} ■	○ ^{주15}	○	
아이치(愛知県)	○		●		○	○	○	○	○	
미에(三重県)	○		○	○		△	●	●	○	

시가(滋賀県) ^{주10}	○	○	○	○	△	○	○	○	
쿄또(京都府)	○		○	○	△	○	○	○	
오사카(大阪府)	○		○	○	○	○	○	○	
효고(兵庫縣)	●※ ^{주3}		● ^{주3}	● ^{주3}	●△			○	
와카야마(和歌山縣)	○※		○	○	△		○	○	
돗토리(取鳥縣)	○		○	○	○	○	○	○	
시마네(島根縣)	○		○	○	△	○	○	○	
오카야마(岡山縣)	●※△ ^{주1}		△		△	○		○	○
히로시마(広島縣)	●※		●△	●△	●△	●■	●	●	
야마구찌(山口縣)	○		○	○	△	○	○	○	
도쿠시마(徳島縣)	○		●	●	○	●	●	○	
카가와(香川縣)	●※△ ^{주5}		●	●	●△	●△	●△	●	
애히메(愛媛縣)	○※		●	●	△	●■	○	○	
코지(高知縣) ^{주11}	○		●	●	○		○	○	
후쿠오카(福岡縣) ^{주12}	○ ^{주2}		●	●	△	●	○	○	
사가(佐賀縣) ^{주12}	○※		○	○	△	●■	○	●	
나가사끼(長崎縣)	○	○ ^{주6}	○		○			○	
쿠마모토(熊本縣)	●		●	●	●△	●	●	●	
오오이타(大分縣)	○		○	○	△	○■	○	○	
미야자끼(宮崎縣)	○		○	○	△	●△	△	○	
가고시마(鹿兒島縣)	○		○	○	△	○	○	○	
오кина와(沖繩縣)	●	○	○	○	△	■	■	○	

주 1 : 선박을 사용하는 미끼뿌림낚시는 금지
 주 2 : 집어등을 사용할 경우는 전구 10Kw이하
 주 3 : 등록된 동력어선 이외의 선박에 의한 사용 금지
 주 4 : 패류 맨손 잡이 금지
 주 5 : 선박을 사용하는 미끼뿌림낚시와 낙지낚시 금지.
 주 6 :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가능
 주 7 : 야간 금지, 수경 사용금지
 주 8 : 수경 사용금지
 주 9 : 해조류에 한함
 주 10: 이 외에 압망(押網), 해조류·패류 채집 등 가능
 주 11: 당분간 고치현어업조정규칙(1951년 제정) 규정을 적용
 주 12: 아리아케해(有明海)에서는 집어등의 사용 금지
 주 13: 체장 50cm 이내의 것에 한함
 주 14: 갈퀴류 야간사용 금지, 수경의 야간사용금지
 쇠스랑은 폭이 15cm 이하로 제한
 주 15: 갈고리는 불빛 또는 수경의 사용금지, 쇠스랑은 폭 15cm 이하로 제한

자료: 일본 수산청, '遊漁의 방' 홈페이지 참고

또한 지자체별로 여가낚시를 규제하는 방법 중에서 어구어업 이외에 어패류의 체장 및 금지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다. 표 5.5는 도도부현의 지자체들 중에서 가고시마(鹿兒都)현, 미야자끼(宮崎)현, 미에(三重)현을 예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이 체장제한 및 금지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는 어종들은 대부분 고급 어종들이며, 각 지역에서 어민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보호·육성시키고 있는 어종들이다.

표 5.5 일본 유어낚시의 제장제한 및 금지 기간의 지역별 예

지 역	어종명	체장 제한	금지 기간	
가고시마현 (鹿兒島県)	개량조개	패의 넓이 5cm 이하	10/ 1부터 4/31 11/ 1부터 5/31 5/ 1부터 8/20	
	피조개	패의 넓이 3cm 이하		
	해가리비	패의 넓이 8cm 이하		
	국자가리비	패의 넓이 8cm 이하		
	흑진주조개	패의 넓이 9cm 이하		
	양식진주	패의 넓이 12cm 이하		
	오분자기	패의 넓이 5cm 이하		
	전복	패의 넓이 10cm 이하		
	닭새우류	체장 13cm 이하		
	뱀장어	체장 21cm 이하		
	방어	체장 15cm 이하		
	어업조정위원회지시사항	참돔1)		체장 13cm 이하
		참돔2)		체장 15cm 이하
광어		체장 25cm 이하		
미야자끼현 (宮崎県)	대합	패의 넓이 6cm 이하	7/ 1부터 9/30 4/15부터 8/31	
	전복	패의 넓이 10cm 이하		
	소라	패의 넓이 5cm 이하		
	오분자기	패의 넓이 4cm 이하		
	닭새우	체장 15cm 이하		
	방어	체장 15cm 이하		
	뱀장어	체장 25cm 이하		
미에현 (三重県)	백합	패의 넓이 3cm 이하	9/15부터 12/31 5/ 1부터 9/30	
	전복	패의 넓이 2cm 이하		
	바지락	패의 넓이 2cm 이하		
	소라	장경 2.5cm 이하		
	닭새우	체장 4.2cm 이하		
	방어	체장 15cm 이하		
	뱀장어	체장 20cm 이하		
	잉어	체장 15cm 이하		

주 : 1) 가고시마(鹿兒島)만, 난사쓰(南薩), 미나미오스미(南大隅), 쿠마테(熊手) 지역 한정

2)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지역 한정

자료 : 도도부현별 수산관련 행정국 홈페이지

한편, 유어와 관련하여 수산청이 각 도도부현지사에게 시달한 해면내 유어와 어업간 조정에 대한 통지(1972.5.)가 있다. 이 통지는 지금까지 어장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유어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발한 것이다. 그 이후 유어선업의 발달, 유어자의 증가, 플래저보트 이용의 증대에 의한 유어자의 행동 범위가 광역화되는 등 유어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되면서 이 통지에 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2002년 12

월 새롭게 유어와 어업의 조정에 관한 지침(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어업 조정규칙에서는 ①유어에 관한 규제, ②어업과 유어에 공통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유어관련 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첫째,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미끼 뿌림낚시에 대해 바다에 접한 도도부현 과반수가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유어의 주요 영업 종목이 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자원관리나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장을 제외하고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둘째, 어업의 경우 집어등 같은 광력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유어에 대해서는 규제되지 않고 있어 유어에서도 광력을 규제하기로 하였다. 셋째, 종전까지 유어에서는 끌연승을 전면 금지해 왔지만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끌연승을 이용한 유어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태와 규칙의 괴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구역·기간어법의 제한조치를 설치하여 전면 금지를 해제하였다. 그 외에 어업자와 유어자의 조정을 실시하면서 실태에 맞지 않는 규칙을 검토, 수정하였다.

표 5.6 일본 유어자에 대한 벌칙규정(어업법·수산자원보호법·어업조정 규칙)

법령	제한 금지 규정	법령위반의 내용	罰조문	벌칙 내용				
				징역	벌금	구류	과료	어획물 어선물수
어업법	67조	위원회 지시에 따라야 할 취지의 지사명령 위반	139조	1년 이하	50만 엔 이하	○	○	○
	84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검사 거부	141조 2호	6개월 이하	30만 엔 이하	×	×	×
	-	어업권 또는 어업 행사권의 침해(친고죄)	143조	×	20만 엔 이하	×	×	×
수산자원 보호법	5조	폭발물을 사용해서 채포	36조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6조	유독물을 사용해서 채포	36조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7조	5,6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채포한 어획물의 소자·판매	36조	3년 이하	200만 엔 이하	×	×	○
해구 내수면 어업조정 규칙	35조 내25조	채포 금지기간 중 채포	57조 내38조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36조 내26조	체장제한 이하의 수산동식물 채포조업 등	57내 내38조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37조 내27조	금지어구어법 사용	57조 내38조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34조 내24조	유독물의 누출 금지	57내 내38조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45조	유어자 등의 금지어구어법 사용에 의한 채포	58조	×	×	×	○	×
	내36조	블랙베스·블루길의 이식 제한	내39조	6개월 이하	10만 엔 이하	×	○	○

자료 : 가고시마(鹿児島)현 수산과 「바다와 강의 이용자를 위한 핸드북」

또한 ②어업과 유어에 대한 규제 형평성에 관한 재검토를 통해, 어업과 유어의 어획물(체장, 연령), 구역·기간 등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조치의 통일, 우량어장에 어선, 유어선, 플래저보트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척수제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유어자 등이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어업조정규칙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표 5.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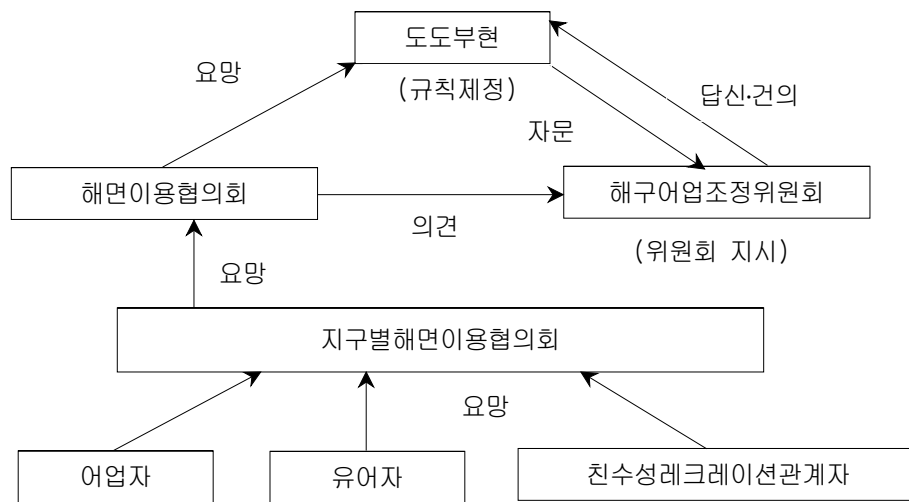
(2) 해구어업조정위원회·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의 지시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및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는 어업자 대표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어업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장이용에 관한 분쟁의 방지·해결 및 기타 어업조정상의 이유로 관계자에 대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시의 대상은 어업자뿐만 아니라 유어자 등 해양레크리에이션 관계자까지 미친다. 지시의 주요 내용은 어구어법의 제한, 금지구역, 체장 등에 관한 제한 등이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신청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지사가 지시에 따르도록 명령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유어를 포함한 해양레크리에이션 관계자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지만 유어자의 집어등 광력제한이나 미끼뿌림낚시에 의한 유어안내 행위의 금지, 지역이나 어종마다 어기, 어체규제 등이다. 그 외에는 해양목장이나 정치망의 주변에 일정한 보호구역을 마련하여 거기에서의 유어를 금지(미에현 5개灣의 해양목장)하는 곳도 있다. 한편, 위원회의 지시는 단년도의 조치가 많으므로 매년 지시를 개정하고 있다.

(3) 해면이용협의회

해면이용협의회는 해면에서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의 분쟁의 예방 및 조정·해결을 촉진하며, 해면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산청장의 통지(1994년 7월)에 근거하여 1994년 12월에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었다(그림 5.2).

이는 1979년에 동일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어장이용조정협의회’를 대신한 조직체이다. 해면이용협의회는 어업관계자, 유어자를 포함하는 해양레크리에이션 관계자 및 학식경험자 중에서 지사가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동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어업자나 해양레크리에이션 관계자의 요청사항을 지구별해면이용협의회를 통해 수집하여 그것을 도도부현에 전달하거나,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과의 해면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이다. 이 외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있다.



자료 : 오오이타(大分)현 어업관리과 자료

그림 5.2 도도부현, 어업조정위원회 및 해면이용협의회의 관계

(4) 유어규칙

하천·호수 등 내수면의 대부분은 어업법에 근거하여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내수면어협에 제5종 공동어업권이 면허되어 있다. 동 어업권이 면허된 하천 등에서는 어업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어협이 치어방류 등의 수산동식물 증식사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내수면어협은 의무이행을 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배양하고 어업조정의 관점에서 그 수역 내에서 조합원 이외 자가 어업권 대상어종을 채포하는 것에 대해 유어규칙을 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다. 한편 이 규정을 제정할 때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신청을 받은 도도부현지사는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유어규칙의 주요 내용은 ①유어 제한범위, ②유어요금과 납부방법, ③유어 승인증 발급, ④유어시 준수사항 등이다. 단, 어협마다 규칙을 정하므로 관할 어협에 따라 규정 내용이 다르다. 또한 어협조합장은 어장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고, 감시원은 유어규칙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유어자가 해당 내수면(제5종 공동어업 면허어장)에서 낚시나 어망을 사용하여 채포할 경우에는 내수면어협이 발행하는 유어승인증이 필요하다. 승인서를 받지 않고 채포하거나 유어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어협이 유어자에게 직접 채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벌칙은 도도부현에서 정하는 내수면어업조정규칙에 따른다. 또한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는 내수면에서는 유어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수면어업조정규칙의 채포금지 기간, 채양제한 등이 적용되며 채포행위에 따라서는 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5)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유어선업은 해면과 호소에서 선박을 이용해 이용객을 어장에 안내하고, 이용객에게 수산동물을 채포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하며, 낚시선, 도선, 체험형어업 등이 해당된다. 단, 수산동식물을 영리목적으로 채포하는 어업, 선박을 이용하여 안내만 하고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박(고래·돌고래 관찰(watching) 안내선, 다이빙 안내선, 어업견학 안내선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1988년에 발생해 많은 사망자를 냈던 유어선과 자위대 잠수함과의 충돌사고를 계기로 1988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시행 당초, 유어선업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기상정보 수집 및 이용자 명부 비치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유어선이 증가하면서 해난사고가 증가하고 어업자와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고, 어업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는 유어선이 증가했으며, 손해 배상보험 등 안전대책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동법은 2002년 6월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의 목적은 유어선업 등록제도 실시 및 규제를 통해 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활동을 촉진하며 이용자의 안전확보나 이익보호 및 어장의 안정적인 이용체계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제1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이전까지 신고제였던 것을 등록제(5년마다 갱신)로 전환하고(제3조), 각 영업소는 업무규정을 작성해 도도부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제11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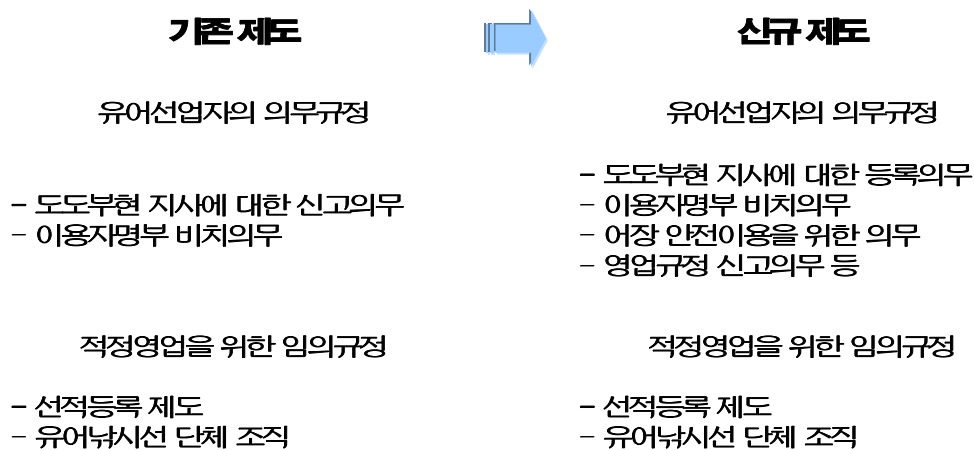
동법에 따르면, 유어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유어선 업무주임자 선출, ②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제4조), ③과거 2년내 유어선법, 선박안전법,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도도부현어업조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제6조). 유어선 업무주임자는 해기(또는 항해)사 2급(2003년 6월 이전의 4급에 상당)이상의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 유어선업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소유하는 사람 또는 유어선 업무주임자에게서 10일(1일당 5시간 이상) 이상의 실무연수를 수료하고 유어선 업무주임 강습(농림수산대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강습)을 수료(수강 후 5년 이내)한 사람을 말한다(제12조).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승선정원 1명당 재해 전보액 3,000만 엔 이상의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해졌다.

업무규정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출항중지의 기준, 사고발생시의 대처방법, 어종·어구·어구 규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영업 시 선박에 등록번호 등 표식을 게시하고(제16조), 등록된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또한 출항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기상·해상 정보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출항여부를 판단하며, 이용자 명부를 영업소와 유어선 내에 비치하고(제14조), 수산동식물의 채포 및 어장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내용을 주지시키며(제15조), 반드시 유어선업 주임자가 동승하도록 했다. 이러한 의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는 업무개선의 명령(제18조) 혹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19조). 또한 법률위반에 대한 벌칙은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혹은 등록신청 시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사업정지 명령에 위반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 엔 이하의 벌금, 업무규제를 신고하지 않거나 유어선 업무주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영업하였을 경우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한 표식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했을 경우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제28조).

한편 유어선업 운영이나 어장의 적정한 이용 및 자율적인 어장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어선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어선업 단체를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이 단체의 주요 역할은 구성원에 대한 지도나 어장이용에 관한 어업자 및 이용자들간 불만을 처리하는 데에 있다(제21조).

하지만 동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어자를 어장에 안내하는 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할뿐, 플래저보트를 이용하는 유어자나 선박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산동식물의 채포하지 않는 친수성레크리에이션(다이빙 선업, 고래·돌고래 관찰(watching) 선업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단, 후자의 친수성레크리에이션업은 해운국의 허가나 도도부현이 정하는 어장이용협정과 같은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5.3은 유어선업 제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 : 일본 수산청,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포인트

그림 5.3 일본 유어선업의 제도 변화

나. 수산동식물의 보호, 어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자율규제

해면에서는 법령에 의한 규제 이외에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자, 유어선업자, 유어자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업방법, 체장제한 등의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인정을 받은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장이용협정이나 자원관리협정 및 관리규정이다.

(1) 어장이용협정

연안어장정비개발법은 수산동물의 종묘생산·방류·육성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추진, 연안어장의 안정적 이용관계 확보를 통해 연안어장의 정비 및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4년 5월에 제정되었고, 2002년 6월에 최종 개정되었다. 동법 제24조는 어업자, 유어자 및 유어선업자 단체가 어장의 안정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어장이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조업구역·시간·방법 등을 정하여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조업구역, 조업시간, 대상어종, 어구, 어법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상호이해를 토대로 맺은 계약으로서 이해당사자간 분쟁해결과 질서확립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어업과 유어와의 분쟁은 지역실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어장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상의하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어장이용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어자 단체를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2) 자원관리협정 및 자원관리규정

자원관리협정 및 자원관리규정은 수산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어업자 단체간 또는 어업자 단체와 유어선업자 단체간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의 적절한 이용 및 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1971년 5월 제정, 2002년 12월 최종개정) 제13조에 근거한 것이다. 동 조항에는 해양수산자원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어업자 단체 등이 일정한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에 대해 자율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대상해역·업종·어종관리방법(채장제한, 금지구역·기간 등) 및 협정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며, 협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원관리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1948년 제정, 2005년 7월 최종개정) 제11조의2에 근거하며, 어업협동조합이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합원에 대하여 어업, 유어선업을 영위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①대상수면 및 업종, ②수산자원의 관리방법(채포방법, 기간, 채장제한 등), ③규정의 유효기간, ④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며, 동 규정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의 법률에 근거하는 규제 외에도 해양레크리에이션과 어업 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어업자 단체와 유어를 포함한 해양레크리에이션 관계자간에 비공식적 협정이나 합의가 맺어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해도의 도카치(十勝)에서는 도카치(十勝) 관내 어협조합회장회와 도카치(十勝) 마린연맹(PB단체)이 도카치 합의를 2004년 3월에 제정하였다. 동 규칙은 유어자에 의한 자원남획 및 어구피해, 유어자에 의한 어항시설의 무질서한 이용, 플레저보트에 의한 해난사고

증가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협정은 크게 유어선낚시에 관한 부문과 플레저보트의 어항시설 이용에 관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유어구역의 설정, 가을 연어의 낚시어획량 제한(1일당 10마리/명), 낚시어획조사표의 제출, 악천후시의 출항금지 등이며, 후자는 오쓰(大津)어항에서 플레저보트의 개방, 주차장 이용 및 출입항 시간과 출항신고서 제출 등의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3. 해양레크리에이션 관련 보조사업

해양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업은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수산관련 보조사업 중에서도 공공비공공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도 공공사업으로는 수산기반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어촌종합정비사업 가운데서도 어항환경정비사업, 어촌만들기종합정비사업(그 중 어업촌락환경정비사업, 어촌재생교부금이 해당)이 있다. 또한 비공공사업으로는 건설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사업(그 중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어촌지역의 활성화 추진이 해당), 어항-어장 관리 및 이용 효율화 사업, 도시-어촌 교류촉진 사업이 있다.¹⁸⁾ 사업별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항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은 어항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어항의 경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에 있다. 따라서 어항-어촌의 휴게소, 친수시설의 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2005년도 사업예산액은 1,831백만 엔이었다. 특히 어촌만들기종합정비사업 중, 어업촌락환경정비사업은 흡인력 있는 어촌공간 조성을 위해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배수시설, 방재안전시설, 녹지시설 정비 등이며, 2005년도 사업예산액은 10,312백만 엔이었다. 또한 어촌재생교부금 사업은 어장환경의 악화와 어업자원의 감소, 과소(過疎)화 및 고령화에 따른 어촌의 활력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어촌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촌활성화에 필요한 정비(조사, 실험 등 소프트 사업을 포함)이다. 2005년도의 사업예산액은 3,000백만 엔이었다.

둘째, 건설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은 어항이 어선의 계류 및 양륙작업 공간뿐만 아니라 해양레크리에이션이나 도시어촌교류의 장소 등으로 그 기능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항시설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어항의 고도이용을 위한 정비(방치선 수용시설, 이용조정 촉진시설, 어항환경개선 추진시설, 심층수 등의 활용시설, 어항기능 개선시설), 어촌 커뮤니티 기반(생활 기반시설, 교류 기반시설, 정보 기반시설,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 추진시설)의 정비 등이다. 어촌지역의 활성화 추진사업은 유어선업 등의 해양레크리에이션 활동자 수가 연 4,0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도시와 어촌교류가 지역 활성화나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와 어촌공생뿐만 아니라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이 공존할 수 있도록

18) (社)전국漁港漁場協會, ‘2005년 어항어장어촌 pocket book’

해면이용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사업은 어촌커뮤니티 지원(지역진흥계획의 책정, 조직구성, 인재육성, 교류이벤트 개최, 홍보활동, 전문가과견 제도의 사업 및 학교관계자와의 연계·협력 하에 해변체험 활동에 대한 지원), 아름다운 일본 어촌만들기 지원(아름다운 경관만들기, 방문자 지원), 해양레크리에이션 지원(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의 해면이용 상 분쟁방지, 질서확립, 질서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외에 건설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사업에는 수산업의 경영구조의 개선,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다양성이 있는 바다만들기, 어촌어장환경개선 대책의 추진 사업 등이 있다.

셋째, 어항어장 관리 및 이용효율화 사업은 어항에서 밀항, 밀수, 밀어 등이 빈번해지고 있고, 산지시장의 통합에 의한 어항이용 형태가 변화하는 등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어항어장의 고도화된 관리와 적절한 이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어항어장 관리시스템 개발(어항어장의 선박출입항 관리, 감시, 방재기능 확보, P.B. 어항이용 신청수속의 전자화 등 고도관리시스템의 개발), 유통체계 변혁에 대응한 수산기반 효율화 검토이다. 동 사업의 2005년도 예산액은 12,700만 엔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어촌 교류촉진 사업은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나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지역인재나 기술부족 등이 문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도시어촌 교류 대책사업, 어린이에 대한 체험활동 조사사업(교류촉진 방법 검토, 교류정보 조사, 홍보활동, 교류활동 실천상황 조사, 어린이 체험활동 보급), 도시어촌교류 인재과견제도 검토사업(어촌지역에 인재과견을 위한 제도마련과 관련한 조사검토), 어촌시설 재평가사업(어촌의 시설 100선, 유효활용 대책의 메뉴얼작성, 우수활동 사례의 표창 등)이 있다. 동 사업의 2005년도 예산액은 7,800만 엔이었다.

이상 해양레크리에이션에 관련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2005년도의 예산액은 약 3억 엔이나 된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 관련부처와의 공동사업인 활력있고 아름다운 해변 만들기 사업이나 공공사업인 수산기반정비 사업 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중에서 어항어장기능 고도화 종합사업의 유어선 등 분리 수용시설의 효과적인 정비사업 등도 있다.

도시어촌교류 촉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실적을 보면, 동 사업은 어촌체류형 여가활동의 추진, 국민에게 개방적이고 매력있는 지역 만들기, 광역적 교류를 지원하는 순환형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¹⁹⁾

어촌체류형 여가활동의 추진은 도시와 어촌의 공생을 통해 활력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도시어촌교류(수산물의 직판장, 친수공간 등) 전담조직 구성, 안전대책 마련, 인재육성, 유어와 어업과의 조정 및 기타 도시어촌교류의 촉진방법 검토, 정보수집 촉진, 선진사례 심포지엄 개최, 팜플렛 등 홍보자료의 작성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19) 水産庁, 水産百書(2004년도)

또한 국민에게 개방되고 매력있는 지역 만들기 사업은 어항 등에 휴식시설, 운동시설, 친수시설 등을 정비하고, 어항·어촌의 기능을 고려한 도시와 어촌과의 교류촉진,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조화, 각지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제공, 친수공원 정비, 어촌에 대한 양질의 주택 및 택지 공급, 거주기반 정비, 복수의 어촌을 연계한 관광루트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광역교류를 지원하는 순환형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해, 간선도로 중점 정비, 지역도로와 지역 간선도로간 일체화, 물류효율화와 사회경제의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추진, 사업자 부담경감, 도로관리용 광역망 및 그 수용공간(정보BOX 등) 정비, 휴대 단말기 등을 통한 도로 정보 제공 등 지역수준의 ITS(고도도로교통시스템) 추진, 녹지나 해변 등 친수교류거점의 정비추진, 지역과 연계한 소항구 만들기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4.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운영사례

가. 보조사업 선행형 사업²⁰⁾

(이시카와(石川)県 쿠루베어협과 이시다Fisharena클럽의 연계에 의한 Fisharena시설 정비를 계기로 한 교류활동 전개)

‘Fisharena’란 ‘Fish(물고기)’와 ‘Arena(극장)’을 합성해 만든 용어로 물고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어항과는 달리 주로 플레저보트나 유람선을 정박하는 일종의 계류시설이다.²¹⁾ 이 시설은 국가 주도의 어항이용 조사사업, 어항어촌활성화 대책사업 하에서 어업진흥,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의 공존, 어촌어항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 26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국 최초로 설치된 것이 이시다(石田) Fisharena인데, 이는 1992년에 어항이용 조정정비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구로베시(黒部市)가 관리를 담당하고, 운영은 구로베어협(1998년 이시다(石田)어협과 구로베(黒部)어협이 합병)에 위임하고 있다.

이 시설이 설치된 계기는 원래 이시다(石田)지구에는 어항시설이 없어 어선이 하천 내에 계류해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85년부터 어항정비사업이 개시되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하천 내에 계류되던 많은 플레저보트까지 수용하기 위해 어항시설도 동시에 정비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시설 배후지에 수산자원 보호배양을 위한 시설, 연수실이나 대형생태수조, 각종 전시물을 구비한 Fishing seminar house가 건립되었는데, 이 house는 Fisharena의 사무실인 동시에 구로베어협의 이시다(石田) 출장소로서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 외에 Fisharena 북쪽에는 어항환경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낚시잔교가 설치되었다. 운영측면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요금은 전

20) (財)漁港漁場漁村技術研究所, ‘都市漁村交流推進地区計画’, 『漁村へのGo』 H.P. 참고

21) (社)Fisharena협회 H.P. 참고

혀 징수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서 낚시점만을 운영하고 있다.

Fisharena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어촌교류사업의 경우, 구로베시(黒部市)가 블루투어리즘의 기반을 조성하고, 구로베어협이 어업체험이나 직판을 기획하고, 구로베어협의 이시다(石田)출장소가 이시다(石田) Fisharena클럽과 연계하여 해면이용의 질서확립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어업체험관광을 실시하는 등 서로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Fisharena는 이와 관련해 몇몇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Fisharena가 정비되기 이전부터 이시다(石田) 해수욕장에서 개최되어 오던 이시다(石田)해안 마린축제로 Fisharena 완성 후에는 매년 8월 구로베시(黒部市) 관광협회의 주최로 手製 골판지선 레이스 대회가 추가돼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플레저보트 수용자가 이시다(石田) Fisharena클럽을 결성하여 연간 2회에 클럽소식을 발행하거나, 연간 3회 정도의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바다의 기념일에는 노토(能登)섬 크루징(cruising) 등의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어업자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에 (구)이시다(石田)어협과 이시다(石田) Fisharena클럽 간에 해면이용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어업조업 존중, 유어금지구역 설정, 유어시간 제한, 유어방법 제한이며, 이 협정에 의해 어업자와 유어자의 분쟁 및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특히 최근 수상모터사이클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수상모터사이클 소유자들이 이시다(石田)어항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때문에 수상모터사이클 소유자들에 대해 어항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수상모터사이클 소유자단체를 조직해 해면이용질서를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이시다(石田)체트스프츠클럽’이 결성되어 이시다(石田)Fisharena클럽이 어업자와 체결한 것과 유사한 해면이용협정을 체결하여 어업자의 조업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자체적으로 청소활동도 실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나. 시민 자발형 사업

(사가현(佐賀縣) 가시마초(鹿島町) ‘가타린픽’)

가타린픽이란 ‘갯벌(HIGATA)’과 ‘올림픽(Olympic)’의 합성어로, 현재 사가현에서는 매년 5~6월 사이 조수가 좋은 날을 이용해 매년 1회 가타린픽을 개최하고 있다. 이 가타린픽은 길의 역 ‘가시마(鹿島)’라고 하는 부지 내에 있는 갯벌시설에서 이루어진다. 길의 역이란 국토교통성 도로국이 주관하는 주차장 등 정비사업의 하나로, 길의 역으로 선정되면 도로개발자금이 투입된다. 관리운영은 시읍면이 담당하며, 휴식, 정보화, 지역연계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1991년 시험사업이 실시되어 1993년 정비요강이 마련된 후로 2004년 8월 현재 전국에 785개의 역이 등록되어 있다.

길의 역 가시마(鹿島)에서는 갯벌 체험시설 외에 전망대 레스토랑, 농림수산물의 직판장, 재단법인 가시마시(鹿島市) 체육협회가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풀장 등도 갖추어져 있다.

가타린픽은 1984년 지역 청년그룹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포럼가시마(鹿島)가 계획해 시작된 것이며, 1985년 이후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다. 현재 행사참가자 1,500명 모집이 며칠 만에 마감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2년부터 개인가족소 그룹을 대상으로 한 갯벌체험을 시작했다. 갯벌체험과 아울러 아리아케해(有明海)를 소개하거나 갯벌에서의 놀이방법(갯벌스키) 등을 지도하기도 한다. 또한 수학여행 학생을 대상으로 미니가타 린픽도 개최하고 있는데, 연간 1만 5,000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이 외에 아리아케해의 조석이나 아리아케해의 시라누이(不知火)에서만 서식하는 생물 등을 관찰하거나 소개하는 자연학습 교실과, 2004년부터는 농원체험, 산나물 채집, 아리아케해의 유람선으로 어업체험이나 아리아케해의 특산물을 시식하는 가시마 아리아케해 에코투어도 병행하고 있다.

사실 1994년부터는 가타린픽의 사업주체가 나나우라(七浦)지구 진흥회로 옮겨졌다. 이 진흥회는 1986년에 산업에서 생활까지 다양한 과제나 진흥책을 검토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지구의 모든 구성원이 가입해서 발족한 단체이다. 단, 가타린픽의 개최는 진흥회와 상공회, 청년회의소, 청년부 등이 참가하는 가시마(鹿島) 가타린픽 실행위원회를 설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민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1991년에 주식회사 나나우라(七浦)를 설립하였는데, 길의 역 가시마(鹿島) 내의 시설에 대한 경영지도나 다양한 마을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왕성하다.

제2절 미국

1. 유어낚시 현황

가. 개요

미국은 1979년부터 해양대기청(NOAA) 수산국(NMFS :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을 통해 유어낚시(Recreational fishing)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어낚시가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1995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962가 발효되면서부터이다.²²⁾ 이를 계기로 연방기관은 증가하는 유어낚시 수요에 대비해 수계(aquatic system)를 보존, 회복 또는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1년 후인 1996년 개정된 수산업법(Sustainable Fisheries Act)은 행정명령 12962의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유어낚시에 대한 조사,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22) 미국에서 유어낚시가 증가함에 따라 수계(aquatic system)를 보존, 회복 및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6월 7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구가 그 기능과 지속적 생산 및 자원의 배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도록 요청한 것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수산업법, 행정명령 12962, 기타 보존법을 근거로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기관인 NOAA는 수계 보존 및 관리라는 원칙 하에서 상업적 어업과 유어업 진흥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중한 책임을 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NOAA는 유어낚시 공동체, 연안에 위치한 주정부기관과 기타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나.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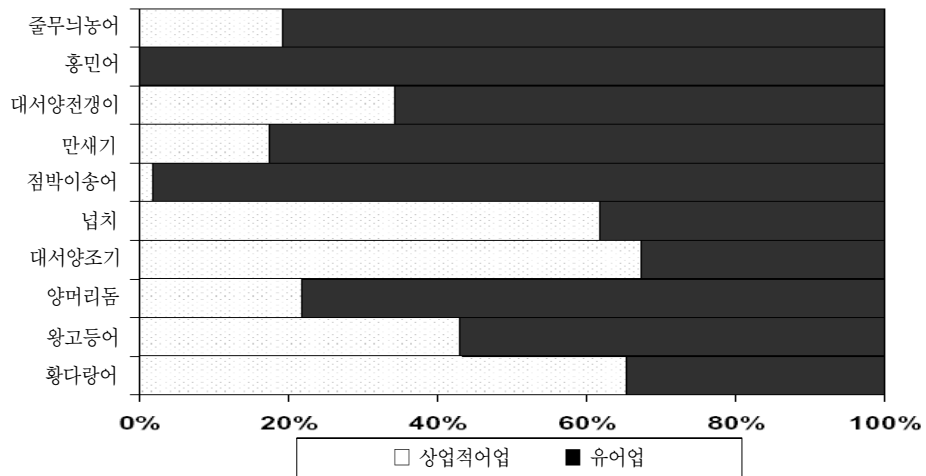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매년 1,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연안과 대양에서 유어낚시를 즐기고 있다. 유어낚시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가족 혹은 동료와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환경보존윤리를 스스로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

유어낚시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출조횟수 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10%가 증가하여 2004년에는 8,200만 회 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어낚시객이 어획한 총 마리수는 4억 4천1백만 마리로 조사되었는데, 중량으로는 총 2억5천4백만 파운드에 달한다. 한편, 유어낚시 인구수는 2003년에 1,300만 명에서 2004년에는 1,4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미국의 수산업, 2004).

미국 입장에서 유어낚시는 단지 소일거리가 아닌 경제발전의 주된 원동력이기도 하다. 연간 바다낚시를 통해 대략 30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35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쾌적한 해안가 주변으로 이주해 여가활동과 기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어획압력은 크게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어낚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언급되었듯이 미국은 1979년부터 NOAA의 NMFS를 통해 유어낚시에 대한 실태조사(MRFSS : 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Statistics Survey)를 실시해 왔다. 이는 정확한 유어낚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유어낚시(개인 혹은 임차 유어낚시어선, 상업적 유어낚시선, 해안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¹

사실 미국에서 유어낚시에 의한 조획량은 전체 어류 어획량의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유어낚시 인구가 수백 만 명에 달하고, 이들 유어낚시객들이 일부 어종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어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어낚시객의 어획활동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MRFSS와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유어낚시는 여러 어종의 자원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어종의 경우에는 유어낚시에 의한 어획량이 상업적 어업에 의한 어획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5.4).



자료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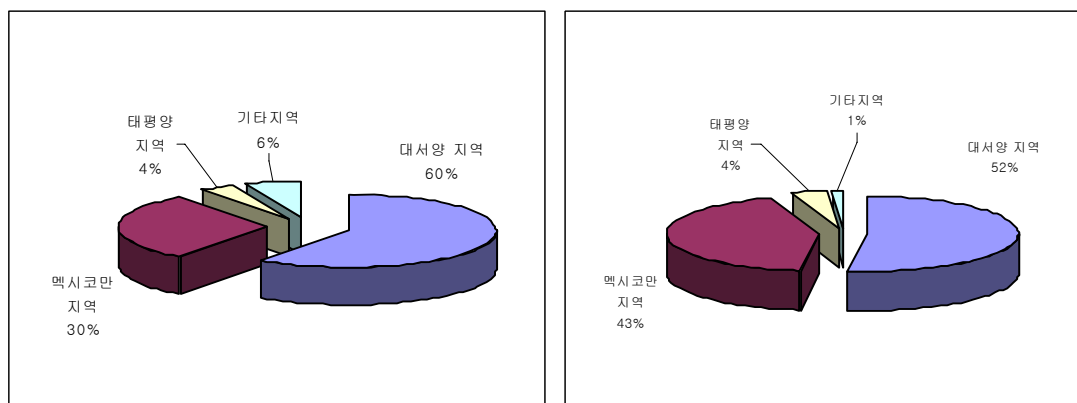
그림 5.4 미국의 총어획량 중 유어낚시 점유율(상위 10대 유어낚시 어종)

앞서 언급되었듯이 2004년도에 약 1,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어낚시객이 대서양 지역, 멕시코 만 지역과 태평양 지역으로 연간 총 8,200만 회 출조하여 총 4억4천1백만 마리를 어획하였다. 하지만 최근 어획물을 재방류 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조획량의 55%가 재방류되었다.

지역별로 유어낚시 실태를 살펴보면, 대서양 지역에서의 출조횟수와 조획량이 60%와 52%를 각각 차지하여 유어낚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멕시코만 지역의 출조횟수와 조획량이 30%와 43%로 나타났고, 태평양 지역은 6%와 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5).

(a) 지역별 출조횟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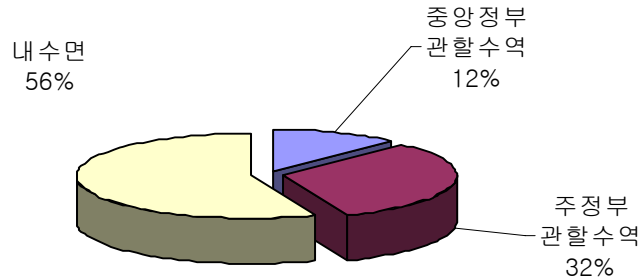
(b) 지역별 어획량 비율



자료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4.

그림 5.5 미국의 2004년도 지역별 유어낚시 출조횟수 및 어획량 비율

수역별로는 내수면에서의 조획량(마릿수)이 5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주정부 관할수역(3해리 이내)에서의 조획량이 32%, 중앙정부 관할수역인 EEZ 수역(3~200해리)에서 1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6).



자료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4.

그림 5.6 미국의 2004년도 유어낚시 수역별 및 형태별 어획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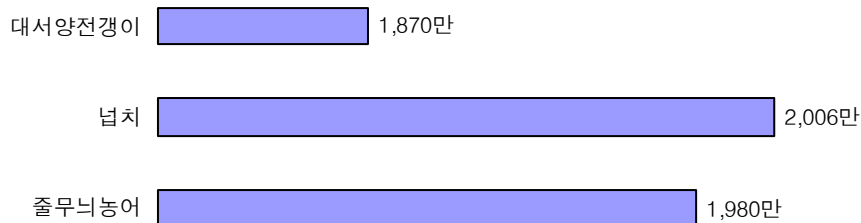
다. 지역별 현황

(1) 대서양 지역

2004년도 대서양 지역의 유어낚시 인구는 약 64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중에 4,800만 회 출조하여 총 2억2천9백만 마리를 잡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출조횟수의 22%가 플로리다 동부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 15%, 뉴저지 14%, 뉴욕 9%, 매사추세츠 9%, 버지니아 7% 그리고 메릴랜드 지역에서 6% 순으로 각기 나타났다. 또한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3개 지역이 11%를 차지했고, 델라웨어, 메인, 조지아, 뉴햄프셔 지역이 그 나머지를 차지했다. 대서양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획대상 어종(마릿수 기준)은 대서양조기(Atlantic Croaker), 넙치(Summer Flounder), 줄무늬농어 (Striped Bass), 대서양전갱이(Bluefish) 등이다. 하지만 조획량으로 보면 줄무늬농어, 대서양전갱이, 넙치, 대서양조기 순으로 나타났다.

유어낚시로 잡은 조획량의 변화를 어종별로 살펴보면, 줄무늬농어는 1995년 1,080만 마리에서 1997년 1,750만 마리로 늘어났으나 1999년에는 1,410만 마리로 감소했다가 2000년에는 1,900만 마리로 다시 늘어났다. 2001년과 2002년에는 1,560만 마리로 다시 감소했다가, 2003년에 1,730만 마리, 2004년에 1,980만 마리로 회복되었다. 한편, 어획량 대비 재방류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어획된 줄무늬농어의 87% 이상이 산채로 재방류되었다. 넙치의 경우 유어낚시에 의한 조획량이 2001년 2,800만 마리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2,060만 마리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방류율 면에서는 2004년도에 어획된 넙치의 77%가 재방류되었다. 이처럼 넙치의 유어낚시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상업적 어업의 어획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원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1대서양전갱이의 경우, 1998년에는 920만 마리, 2001년에는 2,040만 마리, 2003년에는 1,500만 마리, 2004년에는 1,870만 마리가 어획되는 등 매년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7).



자료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4.

그림 5.7 미국의 2004년도 주요 어종별 어획량 비교(대서양 지역)

대서양 지역 중 연방정부 관할수역에서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블랙씨배스(Black Sea Bass), 대서양대구(Atlantic Cod), 넙치, 대서양전갱이 등이지만 연방정부 수역에서의 어획비율은 낮다. 총 어획량 중 30% 정도가 주 관할수역에서 어획되고 있고, 57% 이상이 주로 내수면 지역에서 어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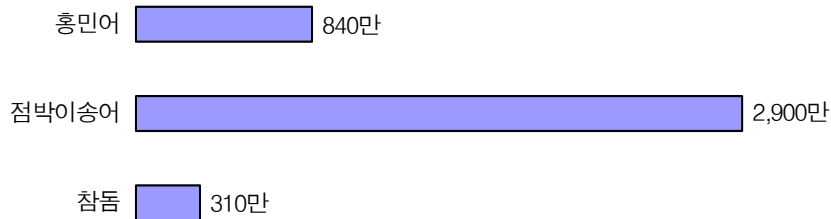
(2) 멕시코만 지역

2004년도 멕시코만 지역 유어낚시 인구는 약 3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2,400만 회 출조하여 총 1억8천7백만 마리를 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총 출조 중 약 68%가 플로리다 서부지역에서 행해졌으며, 루이지애나 20%, 알라바마 8%, 미시시피에서 4% 순으로 나타났다.

유어낚시에 의해 조획되는 주요 어종(마릿수 기준)은 점박이송어(Spotted Seatrout), 홍민어(red drum), 화이트그룬트(white grunt), 양머리돔(sheepshead), 감성돔(Gray Snapper) 등이다. 하지만 중량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홍민어(red drum), 점박이송어, 양머리돔, 참돔(red snapper), 고등어 순이다.

유어낚시에서 잡힌 주요 어종의 어획량변화(마릿수)를 살펴보면, 우선 참돔의 경우 1995년 150만 마리에서 1999년 320만 마리, 2003년 290만 마리, 2004년 310만 마리로 변동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어낚시에 의한 고등어 어획은 1996년 75만 마리, 1999년 42만 마리, 2004년 44.7만 마리로 변동하였다. 점박이송어의 어획은 지난 10년 동안 1,800만 마리에서 2,900만 마리(2004년)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홍민어(red drum) 어획량은 지난 10년 동안 610만 마리(1996년과 1999년)에서 870만 마리(2000년)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 840만 마리로 약간 감소하였다(그림 5.8).



자료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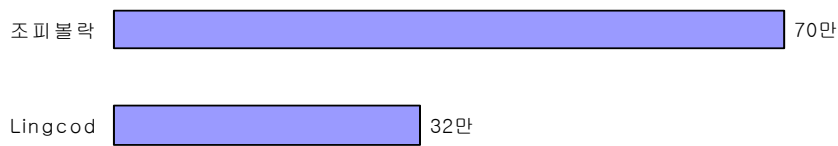
그림 5.8 미국의 2004년도 주요 어종별 어획량 비교(멕시코만 지역)

멕시코만 지역 중 연방 관할수역에서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그런트, 참돔, 블랙씨베스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방 관할수역에서의 어획비율은 낮고, 대부분의 어획은 주 관할수역(28%)과 내수면 지역(61%)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태평양 지역

2004년도 태평양 지역의 유어낚시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의 총 출조횟수와 총 조획 마릿수는 각각 480만 회, 1,800만 마리로 나타났다. 총 출조지역 가운데 약 91%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오레곤에서 5%, 워싱턴에서 4% 순으로 행해졌다.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줄무늬모래배스(barred sand bass), 태평양 가다랑어(Pacific bonito), 켈프배스(kelp bass), 조피볼락(black rockfish), 은연어(coho), 태평양바라쿠다(Pacific barracuda) 등이다. 하지만 중량면에서는 치늑연어(Chinook Salmon), 은연어, 조피볼락, 줄무늬모래배스, 태평양바라쿠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어종의 유어낚시 어획량(마릿수)을 살펴보면, 링카드(lingcod)의 경우 1995년에 24만 마리, 2000년 58만 마리에서 2003년 110만 마리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4년에는 어획량이 급감하여 32만 마리가 어획되었다. 조피볼락의 어획은 지난 10년 동안 60만~140만 마리 사이에서 증감을 보였는데, 2003년에 120만 마리, 2004년에는 70만 마리가 어획되었다(그림 5.9).



자료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04

그림 5.9 미국의 2004년도 주요 어종별 어획량 비교(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 중 연방정부 관할수역에서 어획되는 어종의 조획량은 미미하고 대부분 주 정부 관할수역(82%)과 내수면 지역(10%)에서 조획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대서양 지역과 멕시코만 지역)과 달리 태평양 지역에서의 조획비중은 내수면에서보다 주 정부 관할수역에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2. 유어낚시 관리제도

미국에서는 유어낚시 인구 및 출조횟수 증가와 더불어 유어낚시의 조획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유어낚시에 대한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유어낚시는 관할수역에 따라 크게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한 규제로 양분된다. 연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유어낚시에 의한 조획량 비중이 큰 어종에 대해서 연간 조획할당량을 설정하여 유어낚시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관할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종(다랑어류나 새치류 등)에 대해서는 출조당 일일 어획마릿수 규제뿐만 아니라 유어낚시 어선이 반드시 어획면허(Permit)를 얻어야만 출조하여 어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확한 유어낚시 어획량을 파악하기 위해 유어낚시객들이 조획한 어종에 대해 24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어낚시객들이 연방정부 관할수역에서 잡은 고도회유성 어종(상어와 참다랑어 이외의 다랑어류 제외)에 대해서 24시간 이내 지역 NMFS에 보고해야 한다(김도훈 외, 2004).

주 정부가 유어낚시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 규제수단으로는 최소체장규제, 금어기규제, 그리고 출조 일일당 조획마릿수규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표 5.7). 최소체장 규제와 금어기 규제는 치어 자원의 어획을 방지하고, 산란시기에 조획을 금지하여 산란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출조 일일당 어획마릿수 규제는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여 어업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수단은 주 정부나 지역어업관리위원회에 의한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낚시도구나 미끼를 판매하는 장소에 유어낚시인들이 조획대상 어종에 대

한 규제내용을 알기 쉽도록 설명한 규제 팜플렛을 비치하고, 낚시터나 낚시어선에는 팜플렛 비치 및 규제표지판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적 유어낚시에 대한 주 정부내 감시·감독 기관은 환경과, 야생동물과 등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장 감시·감독을 통해 유어낚시객들의 불법적 유어활동을 차단하고, 유어낚시 규제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주별 유어낚시 관리제도 <부록 3> 참조).

한편, 미국은 보다 정확한 유어낚시 실태를 파악하여 유어낚시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획량계측은 총어획량과 방류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MRFSS 조사원들은 어획된 어종을 확인하고, 마릿수, 중량 및 체장을 계측한다. 또한 유어낚시인 보고를 통해 어획량과 재방류량을 추정하고 있다.

표 5.7 미국 연방정부에 의한 유어낚시 연간 허용어획량 규제 예

어종	연간 어획허용량 (백만 파운드)	과학적 조사용 허용어획량 (파운드)	조업시기	최소 체장규제	출조당 일일 어획마릿수 규제
Summer Flounder	9.28	91,163	◎	◎	◎
Scup	4.01	66,650	◎	10인치	50마리
Rockfish	3.43	67,676	1월-9월, 9.16-11.30	12인치	25마리
Bluefish	26.8	141,900	연중	-	15마리

주 : ◎은 각 주별로 따로 규제내용을 설정하고 있음

자료 : <http://www.mafmc.org>

3. 중장기 유어낚시 개발전략

NMFS는 유어낚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5년에서 2010년에 걸친 유어낚시에 대한 5개년 전략계획(Recreational Fisheries Strategic Plan)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어낚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어낚시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략계획은 크게 관리목표, 과학목표, 연계목표로 나뉘어져 유어낚시 관리 개선, 과학적 자료수집 및 조사, 유어낚시인 참여 확대 등과 연계 프로그램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 비전 및 임무

NMFS가 수립한 유어낚시전략계획에서 밝힌 비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비전 : 미국 국민이 건강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풍요로움과 혜택 향유

- 임무 : 과학에 근거한 보존 및 관리를 통한 살아 있는 해양자원에 대한 책무(stewardship)와 건 강한 생태계 조성

나. 개발전략

(1) 관리목표(Management Goal)

■ 관리목표 : 관리의 개선을 통한 해양유어낚시 진흥

- 유어낚시 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 미 NMFS는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이해하기 쉬운 규제 내용, 적절한 일반대중의 접근(public access)을 보장함으로써 유어낚시 기회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NMFS는 현행 관리실태 및 주정부와의 협력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유어낚시에 대한 관리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 전략 1.1 지역수산과학원(Regional Science Centers)과 NOAA의 과학기술사무소(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협력하여 기존 유어낚시 자료수집방법을 평가
 - 전략 1.2 국가적·지역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유어어종에 대한 정기적인 상황보고 차트 작성
 - 전략 1.3 적절한 관리기술의 도출을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학계 등과의 협력
 - 전략 1.4. 공평한 분배를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 사회과학자료의 분석을 통해 추가자료 획득이 필요한 지역 확인
- 어업관리수단의 효과적 적용 : 유어낚시객은 마릿수제한, 크기제한, 어구제한, 시간 및 지역 제한을 포함하는 일련의 관리수단을 준수해야 한다. 어업관리자는 이러한 관리수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어업 및 사회경제적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 전략 2.1 유어낚시객의 추적(tracking)면허등록에 관한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주에 지원
 - 전략 2.2 유어낚시에 관한 의사결정시 시의적절한 사회경제적 정보의 이용여부 확인
 - 전략 2.3 모든 관리과정에서 유어업과 상업적 어업에 대한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제공
 - 전략 2.4 생태계에 기반한 관리방법 추구
 - 전략 2.5 인공어초, 양식, 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혁신적 관리수단을 해양생태계 보존

을 위한 노력에 적극 활용

- 전략 2.6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시 폭넓은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의견을 고려
- 투명한 관리과정 : 어업관리는 유어낚시객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균형적인 대표성을 띠어야 한다. 어업관리는 종종 이용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시간낭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어업관리가 상업적 어업자뿐만 아니라 주말에 취미로 어획하는 유어낚시객 등 다양한 이용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어낚시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NMFS는 어업관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 이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 전략 3.1 관리과정에 유어낚시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전략 3.2 관리 및 규제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위해 유어낚시객과 관련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NMFS 웹사이트를 개선하여 유어낚시에 대한 대화채널 마련
 - 전략 3.3 유어낚시객의 참여 가능한 시간으로 관련 회의일정 조정
 - 전략 3.4 NMFS 웹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인공어촌, 해양보호구역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유어낚시객의 의견수렴 및 참여 강화
- 혼획 및 해상투기로 인한 사망률 감소 : 미국의 유어낚시객들은 어획물 가운데 60%를 재방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미국의 수산업, 2003). 하지만 유어낚시객이 어획후방류(catch-and-release)와 같은 보존조치를 취해도 여전히 예상치 않은 어획사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NMFS는 매그너슨법(Magnuson Act)의 국가기준 9(National Standard 9)에 의거하여 혼획 및 이에 따른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업공동체 및 기타 정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한다.
- 전략 4.1 유어낚시객에 의한 해상투기 및 이에 따른 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체어구 조사 및 이용 장려
 - 전략 4.2 자발적인 어획후방류(catch-and-release) 프로그램 지원 및 해양유어낚시 관련조직과 연계한 적절한 어획물 처리 지원
 - 전략 4.3 유어낚시 진흥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존에 대한 선도적 역할 지원
- 어업규제(Fisheries regulations) 준수 개선 :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대한 성공여부는 어자원 자체의 관리보다는 자원의 이용자에 대한 관리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유어낚시객에게는 유어행위에 대한 맹목적인 제한의 형태로 느껴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유어낚시객이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러한 규제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높여나가도록 한다.

- 전략 5.1 이해하기 쉬운 규제의 마련을 위해서 유어낚시객 및 관련 공동체와 협력하며, 또한 준수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인책 제공
- 전략 5.2 고갈된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어낚시에 우선순위를 부여
- 전략 5.3 규율에 근거하여 법집행 공무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유어공동체의 준수를 제고
- 전략 5.4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 지역, 주, 연방기관 등과 협력 강화

○ 기구간(intra-agency) 해양유어업 협력 개선 : NMFS는 설정된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구내 협력강화는 물론 NOAA에 소속된 전문가의 다양한 전문지식의 활용을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방안을 마련한다.

- 전략 6.1 NOAA 유어업팀(NOAA Recreational Fisheries Team)을 설립하여 설정된 전략계획을 수행. 유어업팀은 여러 분야를 대표하기 위해 NMFS 각 부서, 지역사무실, 수산과학원, 해양 보호구역센터 등의 대표로 구성
- 전략 6.2 NOAA 생태계팀(NOAA Ecosystem Goal team)과의 조정을 통해 NOAA의 예산 및 계획과정에서 유어업의 문제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전략 6.3 NOAA 해면어업자문위원회(NOAA Marine Fisheries Advisory Committee) 산하 유어업 대책반(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Working Group)과 정기적으로 상담 및 자문

(2) 과학목표(Science Goal)

■ 과학목표 : 협력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의 활용을 통한 유어낚시의 개선

○ 관리요구에 부응하는 자료수집 및 조사 지원 : 신뢰 가능한 과학적 자료는 어업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과학목표와 관리목표에서의 우선순위가 일치할 수 있도록 NMFS는 계획수립, 정보공유 등에 있어 NMFS 내·외부 파트너와 함께 협력해 나간다.

- 전략 1.1 표본수 증대 및 조사방법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유어낚시 양륙자료 수집
- 전략 1.2 협력적 조사 및 과학적 개발 과정에서 유어낚시객의 참여 장려
- 전략 1.3 어업관리위원회(councils), 주연합위원회(interstate commissions), 주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연 2회에 걸친 자문을 받음으로써 어업관리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확보

- 전략 1.4 유어낚시에 대한 해상에서의 표본수 증대를 통한 해상투기 자료 개선
 - 전략 1.5 자료수집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원관리자들에게 양질의 자료 제공
 - 전략 1.6 유어종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원평가 및 NMFS 자원평가개선계획(SAIP) 지원
- 진보된 과학기술 및 자료관리 : NMFS는 어업관리자에게 최상의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보된 기술의 투입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어업정보시스템(FIS)의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연방 및 주어업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GULFIN, RECFIN, ACCSP, WESPACFIN 등과 같은 지역별 유어업정보수집시스템을 확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업과학의 개선을 위해서 유어낚시객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해상에서의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전략 2.1 지역어업정보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어업정보 관리에 있어서의 아이디어, 성공사례, 경험 등을 공유
 - 전략 2.2 전자보고, GPS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을 장려 및 시행
 - 전략 2.3 어업관리자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유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주정부, 공동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
- 자료의 비교가능성 확인 : 어업 및 유어낚시객에 관한 자료는 연방기관 및 주정부 기관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다. 이러한 자료수집의 다양성은 때로는 신뢰성 문제 및 혼돈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어업정책 및 관리수단 결정에 있어 신뢰수준을 제고하고 더욱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NMFS는 어업정보 제공의 요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어업관리자와 일반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략 3.1 주와 연방자료수집프로그램의 통합을 통한 일관된 방법 및 자료(측정단위, 코딩시스템) 확보 체제 구축
 - 전략 3.2 자료포맷, 유형, 분류표시 등 자료의 일관성 확립
 - 전략 3.3 자료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자료검토 회의에 유어낚시객의 참여촉진
 - 전략 3.4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보고체계 수립
- 경제적·사회문화적 자료수집 확대 : 경제적·사회문화적 자료는 관리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된다. 어획량, 자원량 자료와 함께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의 규제와 할당에 관한 의사결정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NMFS는 어업관리위원회, 주연합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어업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체계를 향상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전략 4.1 5년마다 유어낚시객의 지출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수집 및 발간
- 전략 4.2 고도회유성어종 관련 유어업을 향후 지출조사에 추가
- 전략 4.3 소비 및 비소비이용자에 관한 자원평가모델 개선
- 전략 4.4 어업관리 의사결정에 따른 영향을 더욱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유어업에 관련된 산업으로부터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일련의 자료수집

○ 유어낚시와 서식처에 대한 이해 개선 : 건강한 자원량과 유어낚시는 서식처의 질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NMFS 어업관리의 생태계적 접근을 통해 이들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시스템을 보호 및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NMFS는 어자원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 전략 5.1 어자원과 서식처간 동적관계를 연구하여 생태계에 기반한 어업관리 의사결정 개선
- 전략 5.2 서식처에 대한 수계여가활동의 영향을 잘 이해하고 이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전략 개발
- 전략 5.3 인기 있지만 과잉 어획된 어종에 대한 유어낚시와 관련된 서식지에 대한 우선순위 확인
- 전략 5.4 인공어초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전략 5.5 자원조성노력의 효과성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 연구

(3) 연계 목표(Outreach Goal)²³⁾

■ 연계목표 : 지속가능한 유어낚시 기회 조성, 해양유어낚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해양보존원칙 개선

○ NMFS의 보존노력 홍보 : NOAA는 매그너슨법과 행정명령 12962를 통해 건전한 보존 및 관리 원칙 하에서 유어낚시의 진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NMFS는 기존 혹은 새로운 연계 활동을 통해 유어낚시객의 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어업을 홍보함으로써 관리목표와 과학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전략 1.1 유어낚시 윤리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여 미래의 환경책임의식 고취
- 전략 1.2 소책자, 온라인 등을 통해 어업자원상태 관련 정보를 유어낚시객이 알기 쉽게 제공

23) 일반대중의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호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NOAA와 파트너간 양방향 의사교환시스템. 모든 outreach 기능은 과학과 관리 목표의 지원을 위해 취해짐

- 전략 1.3 해양생물자원 및 어업자원의 서식지보호와 복원 사업에 유어낚시객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교육 및 연계프로그램 촉진
 - 전략 1.4 유어낚시객의 책무에 관한 다중 언어 교육자료 개발
 - 전략 1.5 유어낚시객에게 기초 산란장 프로그램, 해양포유류보호법, 멸종위기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과 규제 교육
 - 전략 1.6 시의적절한 과학 및 정책 현안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 전략 1.7 유어업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 개선을 위해 외부 매체, 어업관리위원회, 주연합위원회와 협력관계 개선
 - 전략 1.8 유어업의 개선을 위해 경제적·과학적 정보를 이용한 NOAA의 역할을 유어낚시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교재 개발
- 현안문제에 대해 유어낚시객과 협력기관에 통지 : 이해관계자간의 효과적인 의사교환은 더욱 강화된 파트너십의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방기관, 주정부기관, 어업관리위원회, 주연합위원회, 어업공동체 등과 NMFS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협력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공개되고 시의적절한 의사교환의 기회를 늘려 어업자원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전략 2.1 협력관계 개선 및 정보교환을 위해 유어낚시 그룹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
 - 전략 2.2 보고서, 관리조치, 발표, 웹사이트 등을 이해하기 쉽고 유어낚시객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전략 2.3 유어낚시전략계획의 시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어낚시 조직, 연방기관, 주정부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협력프로그램 수립
 - 전략 2.4 유어낚시 공동체와의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해 연계전략 개발
- 연방 및 주정부 협력기관과의 협력 개선 : 관리효율은 명료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가진 의사교환에 의해 증가된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부서를 통해 NOAA의 내부활동을 조정하고, 보다 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전략 3.1 유어낚시전략계획을 NMFS와 NOAA내 타 부서가 잘 인지하고 또한 필요시 그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
 - 전략 3.2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법(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하에서 수립된 유어업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전략 3.3 연방 및 주정부기관 자원관리자와 정보교환을 위한 정기적인 의사교환계획 개발

- 전략 3.4 NMFS 대표를 다양한 유어낚시그룹, 이사회, 위원회 등에 임명
- 진보된 기술이용의 확대 : 기술의 발전은 유어낚시조직과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보다 원활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NOAA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전자메일과 웹사이트에 있어 진보된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 전략 4.1 유어낚시객을 위한 원스톱 웹사이트 구축
- 전략 4.2 대서양 새치류 보고체계의 개선을 위해 웹사이트에 기초한 실시간 보고체계 개발
- 전략 4.3 정보교환을 위한 유어낚시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략 4.4 유어낚시객에게 이메일 등을 통한 시의적절한 뉴스와 정보 제공

4. 개발사례

가. 하와이(Hawaii)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10가지 활동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하와이는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잠수정 관광, 유어낚시, 관경(Whale watching), 보트를 이용한 상어 관찰 등 투명한 바다와 수계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레저스포츠 활동과 관광을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관경과 유어낚시대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 유어낚시

하와이 지역의 유어낚시 인구는 2004년 기준으로 약 40.7만 명이고 이들의 총 출조횟수와 총 조획 마리수는 각각 290만 회, 450만 마리가량이다.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노란줄무늬고트피시(yellowstripe goatfish), 다랑어류(skipjack tuna, yellowfin tuna), 블루핀트레발리(bluefin trevally), 만새기(dolphinfish) 등이다. 하지만 중량면에서는 황다랑어, 만새기, 가다랑어, 청새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와이는 빅아일랜드(Big Island)에서 매년 7월에 개최되는 47년의 역사를 가진 하와이국제새치대회(Hawaiian International Billfish Tournament)와 함께 개최된 지 3년 만에 가장 큰 낚시대회로 성장한 아히페버피싱대회(Ahi Fever Fishing Tournament) 등 유어낚시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2) 관경(Whale watching)

미국에서 최초로 관경(Whale watching)이 시작된 곳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이다. 현재 미국의 관경산업(Whale watching industry)은 미 북서부, 하와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경에서 교육적 혹은 과학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관경산업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5.8 미국 관경산업 현황

연도	관경 방문객	직접지출	총지출
1991	3,243,025	\$37,506,000	\$192,930,000
1994	3,600,000	\$41,632,000	\$214,152,000
1998	4,316,537	\$158,385,000	\$357,020,000

자료 : Whale watching 2001, UNEP

관경방문객의 국적은 주로 미국(주로 본토),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등 매우 다양하지만, 방문객수 면에서는 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관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정도가 소요되므로 관경 자체만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은 매우 적다. 따라서 관경은 스노클링 혹은 디너크루즈와 함께 관광패키지로 상품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혹등고래(humpback whale) 시즌에 마우이섬에서는 스노클링, 바베큐 등을 관경과 연계시켰다. 1999년 자료에 의하면 혹등고래 시즌에 57척의 관경선에 의해 매일 87회의 출조가 이루어졌다.

나. 괌(Guam)

(1) 해양레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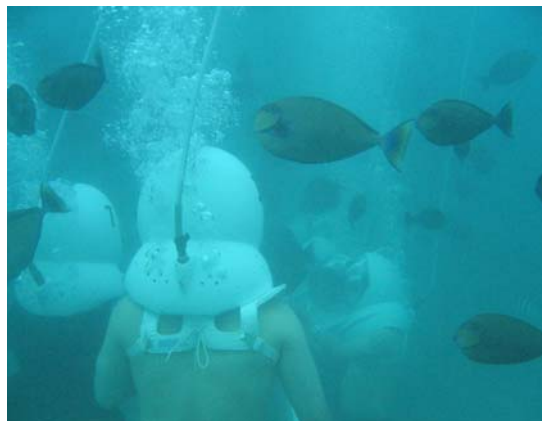
괌은 사계절 따뜻한 기후와 투명한 바다를 갖고 있어 각종 해양레포츠 활동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해양레포츠 활동에는 씨워킹(Sea walking), 씨바이크(Sea bike),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카약킹(kayaking), 유어낚시 등이 있다. 씨워킹은 머리에 산소공급호스로 연결된 잠수헬멧을 쓰고 바다 속을 걸어 다니면서 해저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다. 스쿠버다이빙을 배우지 않고도 바다 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가이드가 제공하는 사료를 손에 들고 있으면 수많은 열대어들이 몰려와서 손에 놓은 먹이를 먹게 된다. 씨바이크(Sea bike)는 2년 전부터 괌에 도입된 해양레포츠 활동으로 수중모터바이크를 타고 바다 속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로 매우 인기가

높다.

괌의 피티(Piti)에 위치한 피시아이해양공원(Fisheye marine park)에는 해중전망탑과 해양레포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괌의 서부연안은 산호초가 소파기능을 하여 해변 가까운 곳에서는 파도가 매우 낮고 수심 또한 매우 낮으나, 산호초에 의해 형성된 수중장벽이 끝나는 곳부터는 매우 가파르게 하강하는 해저지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괌의 서부연안은 낮은 수심으로 인해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수중체험이 곤란한 편이지만 피시아이해양공원에 위치한 해중전망탑의 주변은 2차대전 당시 폭격으로 바다에 깊은 홀이 생겨 괌 지역에서 매우 인기 있는 해양레포츠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씨워킹,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카약킹의 체험프로그램을 해중전망탑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300명이 씨워킹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씨워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육상에 있는 별도의 교육장소에서 비디오를 통해 간단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3시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기시간 동안에는 스노클링 혹은 카약킹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씨워킹 체험프로그램의 가격은 대략 \$85(2005년)로 스쿠버다이빙 체험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다(그림 5.10).



< 씨워킹 입수전 대기 >



< 씨워킹 체험 >

그림 5.10 괌의 씨워킹 체험프로그램

(2) 유어낚시

괌에서는 국제유어낚시대회(International Fishing Derby)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여명 이상의 유어낚시객이 참여한다(그림 5.11). 한편, 1999년부터 어린이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낚시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낚시가 상업적 어업의 성격 이외에도 레크리에이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홍보함과 동시에, 낚시에 의한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윤리를 교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림 5.11 어린이 유어낚시대회

제6장 레포트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활용가능성

1. 어가소득의 현황 및 특성
2. 레포트피싱 수요분석 및 예측
3. 레포트피싱을 통한 어촌의 소득원 개발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6장 레포트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활용가능성

이 장에서는 현재 국내 레포트피싱이 갖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레포트피싱 산업이 어가소득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기로 한다.

제1절 어가소득의 현황 및 특성

1. 어가소득 현황

2003년 말 기준 국내 어업가구의 평균소득은 23,916천 원으로 1990년 10,023천 원에 비해 약 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실제로 어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어업의존도는 2001년을 기해 50% 이하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표 6.1).

표 6.1 어업의존도 및 어업소득률(1990~2003년)

단위: 천원, %

구 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의존도	어업소득률
		어업소득	어업조수입	어업경영비		
1990	10,023	5,217	10,367	5,151	52.1	50.3
1991	11,309	5,285	10,255	4,970	46.7	51.5
1992	12,371	6,036	11,021	4,985	48.8	54.8
1993	14,432	6,222	12,276	6,054	43.1	50.7
1994	17,110	8,665	15,215	6,549	50.6	57.0
1995	18,780	9,437	17,153	7,715	50.3	55.0
1996	19,039	10,526	18,015	7,489	55.3	58.4
1997	20,331	11,768	19,389	7,622	57.9	60.7
1998	16,794	9,254	15,604	6,350	55.1	59.3
1999	18,428	10,323	18,033	7,710	56.0	57.2
2000	18,875	10,078	18,508	8,430	53.4	54.5
2001	22,252	11,087	20,770	9,683	49.8	53.4
2002	21,816	10,165	19,195	9,030	46.6	53.0
2003	23,916	10,741	23,114	12,373	44.9	46.5

주 : 어업소득 = 어업조수입-어업경영비, 어업의존도(%) = 어업소득/어가소득×100

어업소득률(%) = 어업소득/어업조수입×100

자료 : 통계청, KOSIS '어가경제(1980~2002)',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 년도

이는 어가 평균 어업조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 감소와 해양오염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비가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2000년 이후 국내 수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어가하락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가소득의 증가는 어업소득보다는 농업 및 기타 겸업으로 인한 어업외 소득증대에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며, 특히 이전수입의 증가가 어업소득의 손실분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가소득금액이 높아진 것을 단순히 어가소득 증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도시 근로자와의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연평균 10.5% 증가한 반면에 어가의 소득은 연평균 8.7% 증가로 다소 낮았다.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어가소득은 1990년의 88.6%에서 1995년 81.9%, 1997년 74.1% 그리고 2003년에는 67.8%로 그 차이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

표 6.2 어가소득과 농가, 도시근로자 소득 비교(1990~2003년)

단위: 천원, %

구 분	소득금액			비율	
	어가(A)	농가(B)	도시근로자(C)	A/B	A/C
1988	6,821	8,130	7,886	83.9	86.5
1989	8,079	9,437	9,659	85.6	83.6
1990	10,023	11,026	11,319	90.9	88.6
1991	11,309	13,105	13,903	86.3	81.3
1992	12,371	14,505	16,273	85.3	76.0
1993	14,432	16,928	17,734	85.3	81.4
1994	17,110	20,316	20,416	84.2	83.8
1995	18,780	21,803	22,933	86.1	81.9
1996	19,039	23,298	25,832	81.7	73.7
1997	20,331	23,510	27,448	86.5	74.1
1998	16,794	20,494	25,597	81.9	65.6
1999	18,428	22,323	26,696	82.6	69.0
2000	18,875	23,072	28,643	81.8	65.9
2001	22,252	23,907	31,501	93.1	70.6
2002	21,816	24,475	33,509	89.1	65.1
2003	23,916	26,878	35,280	89.0	67.8

주 : 도시근로자 소득은 자가 평가액 제외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년도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 년도

2. 어가소득 특성

어가소득의 기반이 되는 수산물 생산은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 매우 심하게 변동함으로써 결국 어가소득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어촌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대부분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산품에 비해 생산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1997년 수산물 수입 자유화 이후에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 국내 수산물과 외국산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격화로 어가의 수산물생산량이 증대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어획금액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된다. 특히 양식업자에 비해 어선어업자들의 소득변동폭이 심하며, 최근에는 국민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수산물 위생과도 어가소득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어촌 소득원의 대부분이 수산업,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보다는 단순한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것도 어가소득 안정성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어촌구성원 특성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통계기본조사에 따르면,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496,089명이던 어업인구는 2003년 현재 21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이 2000년대를 전후해 40%를 초과하기 시작해 2003년에는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3 어업인구 변화추이(1990~2003)

단위: 명, %

	전체		50세 이하		50세 이상	
	어업인구수	비중	어업인구수	비중	어업인구수	비중
1990	496,089	100.0	372,464	75.1	123,625	24.9
1991	469,520	100.0	343,865	73.2	125,655	26.8
1992	424,939	100.0	292,682	68.9	132,257	31.1
1993	404,610	100.0	272,006	67.2	132,604	32.8
1994	381,864	100.0	249,220	65.3	132,644	34.7
1995	347,210	100.0	226,211	65.2	120,999	34.8
1996	330,464	100.0	200,077	60.5	130,387	39.5
1997	323,383	100.0	196,497	60.8	126,885	39.2
1998	322,229	100.0	194,318	60.3	127,911	39.7
1999	315,198	100.0	186,612	59.2	128,586	40.8
2000	251,349	100.0	152,724	60.8	98,625	39.2
2001	234,434	100.0	129,155	55.1	105,277	44.9
2002	215,174	100.0	120,122	55.8	95,052	44.2
2003	212,104	100.0	114,308	53.9	97,796	46.1

주 : 어업인구는 표본어가의 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고갈 및 경영비용 상승 등에 따라 어가소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도시근로자와 소득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소득불안은 젊은층의 어촌이탈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하고, 또 다른 소득원을 확보함으로써 어업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단순한 어업생산증대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생산차별화, 가공 및 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레포트피싱 활성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2절 레포트피싱 수요분석 및 예측

1. 설문조사 설계 및 방법

가. 조사설계

레포트피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서울 등 7개 시도에 걸쳐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3명의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에 의해 1대 1 면접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부록 4> 참조).

- 조사시기 : 2005년 10월
- 조사장소 : 직접 면접조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전북
- 표본추출방법 : 편의추출법
- 조사방법 : 3명의 사전 교육된 조사원의 1대1 면접법
- 유효표본 수집 : 설문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기입된 경우 표본에서 제외(유효표본 총 270부)

나.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편집과 코딩과정을 거쳐 자료처리를 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는 코딩 이전의 기록상 오류를 식별하여 유효표본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코딩과정에서는 설문내용을 기호화하여 엑셀(Excel)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코딩과정 이후 입력자료의 오류를 최종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한글 SPSS 12.0을 이용하고, 모든

문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항목별 응답 빈도와 점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표본특성

이러한 자료처리 과정을 통해 확보되어 분석에 활용된 유효표본은 총 270부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7.8%, 여성이 2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30대, 40대가 가장 높은 61.9%로 나타났다. 이어 20대는 22.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40, 30, 20대의 연령분포를 나타냈다. 소득 분포는 2천~3천만 원 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천만 원 미만(28.1%) 순이었다. 참가자 지역분포는 서울(45.2%), 경기(31.9%)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이 전체 응답수의 77% 이상을 점했다.

표 6.4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10	77.8	거주지	서울	122	45.2
	여	60	22.2		부산	1	0.4
	계	270	100.0		대구	5	1.9
연령	10대	1	0.4		인천	13	4.8
	20대	61	22.6		대전	4	1.5
	30대	75	27.8		울산	1	0.4
	40대	92	34.1		경기	86	31.9
	50대	40	14.8		강원	11	4.1
	60대 이상	1	0.4		충북	12	4.5
	계	270	100.0		충남	6	2.2
소득	2천만원미만	76	28.1		전북	5	1.9
	2천~3천만원	99	36.7		전남	2	0.7
	3천~4천만원	74	27.4		경북	1	0.4
	4천~5천만원	15	5.6		경남	1	0.4
	5천만원이상	6	2.2		계	270	100.0
	계	270	100.0				

다. 조사자료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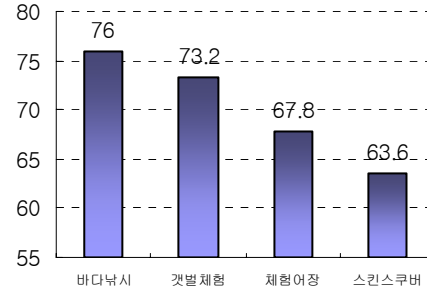
(1) 레포츠피싱 활동 행태

(가) 레포츠피싱 활동 선호도

레포츠피싱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바다축제**, 바다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장, 스킨스쿠버 순으로 나타났다.

표 6.5 레포트피싱 선호순위

응답내용	평균값	점수
바다낚시	3.80	76.0
갯벌체험	3.66	73.2
체험어장	3.39	67.8
스킨스쿠버	3.18	63.6
바다축제	3.90	78.0



주 :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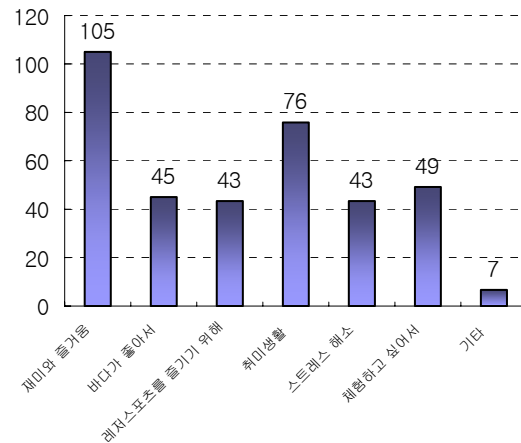
주 : 바다축제는 레포트피싱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함

(나) 레포트피싱 동기

레포트피싱을 하는 동기는 재미와 즐거움(38.9%) 때문에 한다가 가장 높고, 이어 취미생활(28.1%), 체험하고 싶어서(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6 레포트피싱 동기(복수응답)

응답내용	빈도 (응답수)	비율(%)
재미와 즐거움	105	38.9
바다가 좋아서	45	16.7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43	15.9
취미생활	76	28.1
스트레스 해소	43	15.9
체험하고 싶어서	49	18.1
기타	7	2.6
계	26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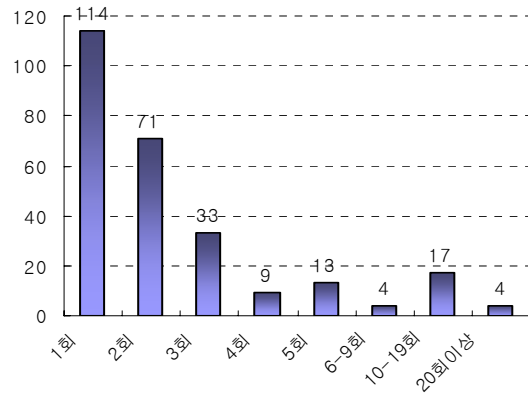


(다) 참여횟수

레포트피싱에 연간 참여하는 횟수에 대한 응답은 1회가 42.2%, 2회가 26.8%, 3회가 12.2% 순으로 3회 이하가 81.2%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7 레포츠피싱 연간 참여횟수

응답내용	빈도(명) (n=265)	비율(%)
1회	114	42.2
2회	71	26.8
3회	33	12.2
4회	9	9
5회	13	13
6-9회	4	1.4
10-19회	17	6.3
20회이상	4	1.2
계	270	100
평균	5.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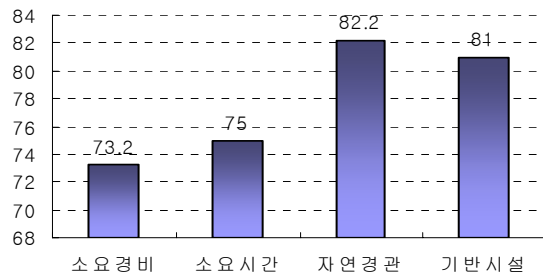


(라) 목적지 선택의 중요도

레포츠피싱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레포츠피싱 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자연경관(82.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반시설(81점), 시간(7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레포츠피싱 목적지 선택의 중요도

응답내용	평균값	점수
소요경비	3.66	73.2
소요시간	3.75	75.0
자연경관	4.11	82.2
기반시설	4.05	81.0



주 :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

(2) 여가생활 중 레포츠피싱 비율

(가) 레포츠피싱 투자시간

자신이 여가생활에 투자하는 총 시간과 금액 중 레포츠피싱에 투자하는 시간과 금액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시간과 금액 모두 20%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가 각각 56.3%, 5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1-40%를 투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6.9 레포트피싱 투자시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0-20%	152	56.3
21-40%	90	33.3
41-60%	23	8.5
61-80%	5	1.9
80-100%	0	0
계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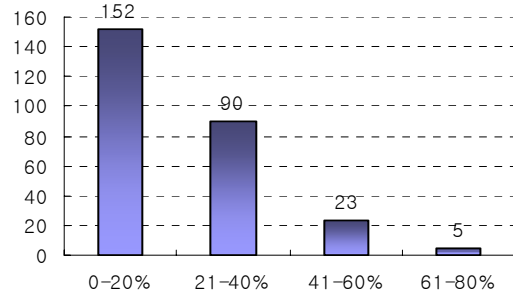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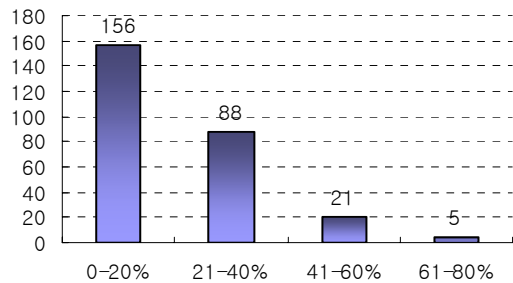


표 6.10 레포트피싱 투자금액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0-20%	156	57.8
21-40%	88	32.6
41-60%	21	7.8
61-80%	5	1.9
80-100%	0	0
계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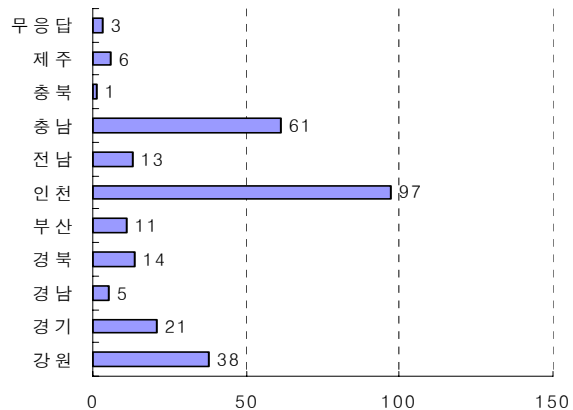
(3) 레포트피싱 방문행태

(가) 레포트피싱 방문지역

레포트피싱 방문지역으로는 인천지역이 35.9%로 가장 높고, 충남(22.6%), 강원(14.1%)의 순으로 방문지역 선정시 지역적 접근성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레포트피싱 방문지역

지역	빈도(명)	비율(%)
강원	38	14.1
경기	21	7.8
경남	5	1.9
경북	14	5.2
부산	11	4.1
인천	97	35.9
전남	13	4.8
충남	61	22.6
충북	1	0.4
제주	6	2.2
무응답	3	1.1
계	2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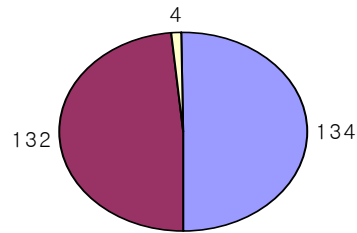


(나) 레포츠피싱 활동지역

레포츠피싱 지역을 주거지역 내외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48.9%의 응답자가 주거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2 레포츠피싱 활동지역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주거지역내	134	49.6
주거지역외	132	48.9
무응답	4	1.5
계	2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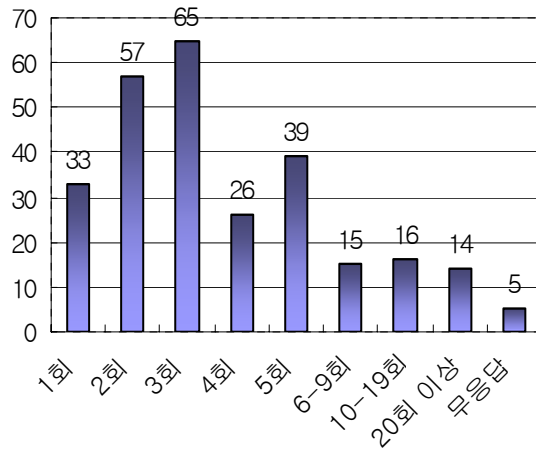


(다) 방문지역 레포츠피싱 연간 참여횟수

방문지역에서 연간 레포츠피싱에 참여하는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 3회라고 답한 경우가 총 응답자 270명의 24.1%인 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회가 21.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5회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를 합하면 총 84명인 31.1%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13 방문지역 레포츠피싱 연간 참여횟수

응답내용	빈도(명) (n=270)	비율(%)
1회	33	12.2
2회	57	21.1
3회	65	24.1
4회	26	9.6
5회	39	14.4
6-9회	15	5.5
10-19회	16	5.9
20회 이상	14	5.3
무응답	5	1.9
계	270	100
평균	2.99회	



(라) 방문 동반자 유형 및 동반자 수

레포츠피싱 활동의 동반자 유형은 주로 친구/연인/선후배(43.3%)이거나 가족/친척(39.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반자 수의 경우 2명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명이 27.4%, 3명이 23.7%를 차지하였고 평균적으로 3.38명을 동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14 레포트피싱 동반자 유형

응답내용	빈도(명) (n=270)	비율(%)
가족/친척	107	39.6
친구/연인/선후배	117	43.3
혼자	15	5.6
단체(여행사)	2	0.7
동호인	28	10.4
기타	1	0.4
계	2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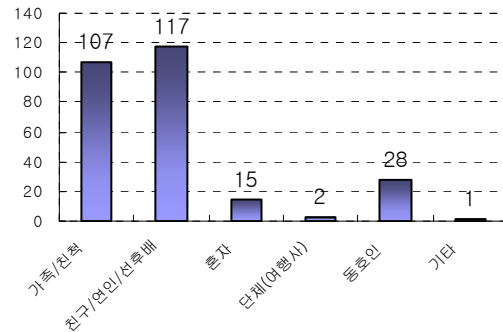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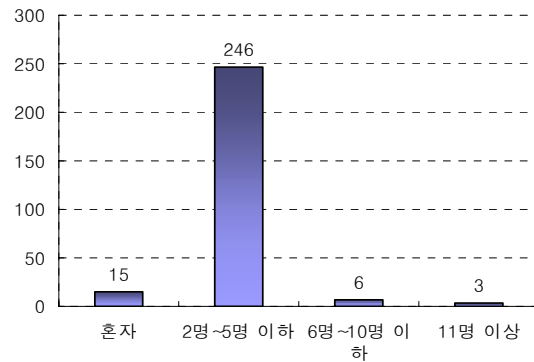


표 6.15 동반자 수

응답내용	빈도(명) (n=261)	비율(%)
혼자	15	5.6
2명~5명 이하	246	91.1
6명~10명 이하	6	2.2
11명 이상	3	1.1
계	270	100
평균 동반인원	3.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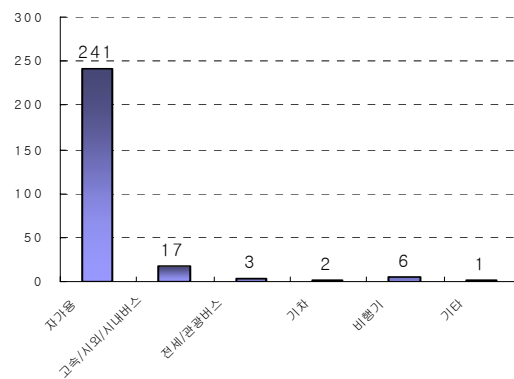


(마) 교통수단

레포트피싱 여행 시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가 89.3%, 고속/시외/시내버스 이용이 6.3%로 조사되었다.

표 6.16 교통수단

응답내용	빈도(명) (n=270)	비율(%)
자가용	241	89.3
고속/시외/시내버스	17	6.3
전세/관광버스	3	1.1
기차	2	0.7
비행기	6	2.2
기타	1	0.4
계	2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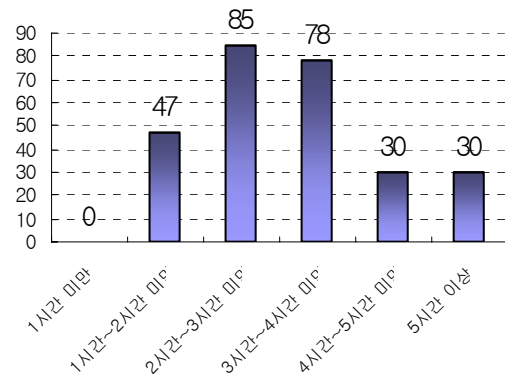


(바) 소요시간

집에서 방문장소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2시간-3시간 미만인 31.5%, 5시간 이상이 1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6.17 소요시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1시간 미만	0	0
1시간~2시간 미만	47	17.4
2시간~3시간 미만	85	31.5
3시간~4시간 미만	78	28.9
4시간~5시간 미만	30	11.1
5시간 이상	30	11.1
계	257	100
평균	3.67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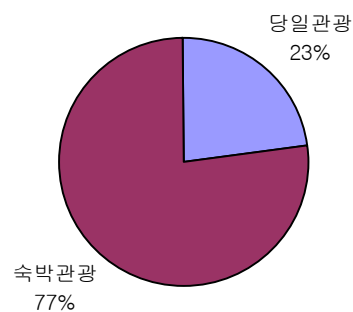


(사) 방문유형

레포츠피싱 관광객들은 당일로 방문한 비율이 23%이며, 숙박을 한 경우가 77%로 조사되었다. 숙박을 한 경우에도 1박2일의 일정이 58.1%로 나타나 숙박기간이 길지 않았다.

표 6.18 방문유형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당일관광	62	23
숙박관광	208	77
1박 2일	157	58.1
2박 3일	36	13.3
3박 4일 이상	15	5.6
계	2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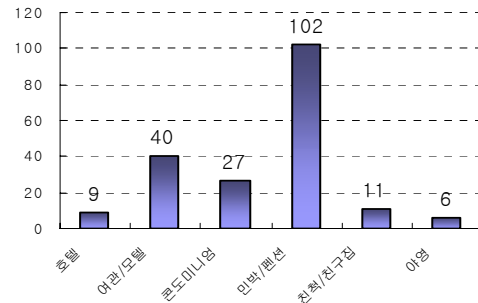


(아) 숙박시설

레포츠피싱 관광객들이 이용한 숙박시설을 조사한 결과, 민박/펜션이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여관/모텔이 20.5%, 콘도미니엄이 13.8%로 나타났다.

표 6.19 숙박시설

응답내용	빈도(응답수) (n=195)	비율(%)
호텔	9	4.6
여관/모텔	40	20.5
콘도미니엄	27	13.8
민박/펜션	102	52.3
친척/친구집	11	5.6
야영	6	3.1
계	1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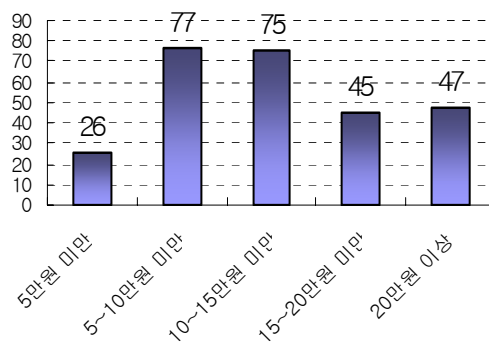


(자) 레포츠피싱 관광시 여행경비

레포츠피싱 관광을 하면서 1인당 소비한 여행경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125,149원으로 나타났고, 분포별로는 5만원 미만인 9.6%, 5~10만원 미만인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15만원 미만이 27.8%, 20만원 이상은 17.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6.20 1인당 여행경비

응답내용	빈도(명) (n=270)	비율(%)
5만원 미만	26	9.6
5~10만원 미만	77	28.5
10~15만원 미만	75	27.8
15~20만원 미만	45	16.7
20만원 이상	47	17.4
계	270	100
1인당 평균여행비용	125,149	



레포츠피싱 관광을 하면서 1인당 소비한 1일 여행경비는 평균 63,268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5만원 미만이 전체의 35.2%를 차지했고, 5~10만원 미만 49.6%, 10만원~15만원 미만 13% 등으로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레포츠피싱 관광을 하면서 사용한 금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용품비가 44,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박임차비와 숙박비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표 6.21 1인당 1일 여행경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5만원 미만	95	35.2
5~10만원 미만	134	49.6
10~15만원 미만	35	13
15~20만원 미만	4	1.5
21만원 이상	2	0.7
계	270	100
1인당 1일 평균여행비용	63,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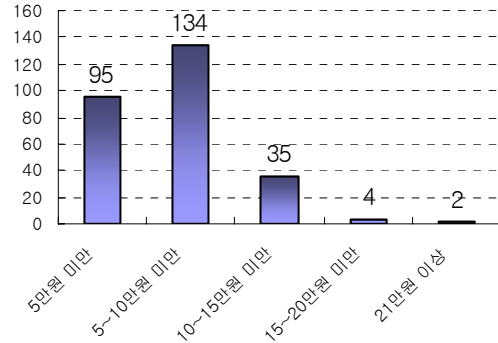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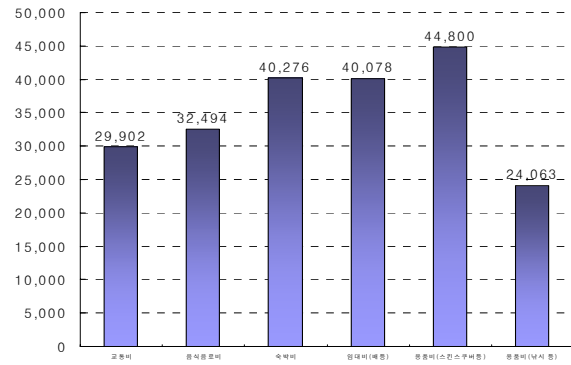


표 6.22 항목별 금액 및 비율

응답내용	평균금액(원)	빈도(명)
교통비	29,902	270
음식음료비	32,494	267
숙박비	40,276	190
임대비(배등)	40,078	88
용품비(스킨스쿠버등)	44,800	10
용품비(낚시 등)	24,063	57
기타잡비	18,782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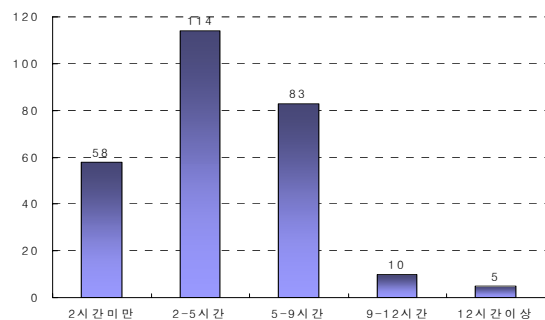


(카) 레포츠피싱 소요시간

방문객이 방문지역에서 레포츠피싱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5시간 미만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9시간이 30.7%, 2시간 미만이 21.5%로 다소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6.23 레포츠피싱 소요시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2시간미만	58	21.5
2~5시간	114	42.2
5~9시간	83	30.7
9~12시간	10	3.7
12시간이상	5	1.9
계	2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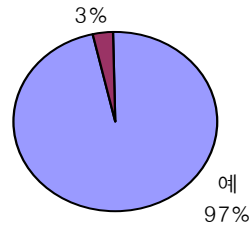


(타) 재방문 의사

레포트피싱을 한 지역을 다시 방문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97%의 응답자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여 레포트피싱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는 것을 반영했다.

표 6.24 해당 지역 재방문 의사

응답내용	빈도(명) (n=270)	비율(%)
예	262	97
아니오	8	3
계	2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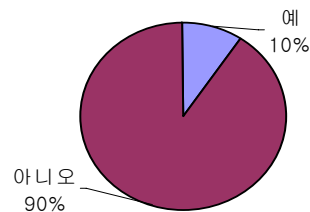


(파) 어민마찰

레포트피싱을 한 지역에서 어민과의 마찰이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90.4%의 응답자가 어민 마찰이 없었다고 답변하여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마찰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어업인의 불만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반된 현상을 보였다.

표 6.25 어민마찰

응답내용	빈도(응답수) (n=270)	비율(%)
예	26	9.6
아니오	244	90.4
계	2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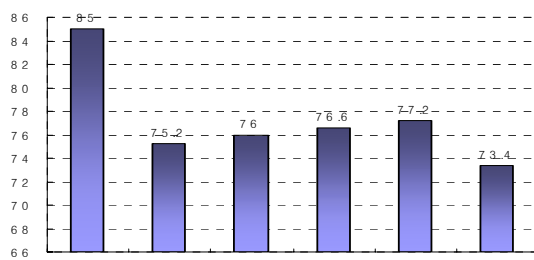


(하) 보완점

레포트피싱 지역에서 보완할 점으로는 편의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금, 음식, 숙박, 교통시설에 대한 보완과 지역민의 친절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6.26 레포트피싱 지역 보완점

응답내용	평균값	점수
편의시설	4.25	85.0
교통	3.76	75.2
숙박	3.80	76.0
음식	3.83	76.6
요금	3.86	77.2
친절	3.67	73.4



주 : 점수는 100점 환산

3. 레포츠피싱 수요분석 및 예측

가. 지출함수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레포츠피싱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콥-더글라스 함수형태의 지출함수를 설정하고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선형모형으로 변형하였다. 종속변수를 연간 레포츠피싱참여회수(LYH), 독립변수를 단위교통비(LTE), 단위 음식비(LFE), 단위 숙박비(LSE), 단위 레포츠피싱 비용(LLP), 1인 연간소득(LY)으로 사용하였다. 단, i = 횡단면 표본 i ($i = 1, 2, 3, \dots, 263$), LYH = 레포츠피싱 참여회수(연간 1인, 회), LFE = 음식비(원/일/인), LSE = 숙박비(1원/일/인), LLP = 레포츠비용(원/일/인), LY = 소득(원/연/인), $\hat{\beta}_i$ = i 번째 독립변수의 파라메타, e_i = 오차항이다.

$$LYH_i = \hat{\beta}_0 + \hat{\beta}_1 LTE_i + \hat{\beta}_2 LFE_i + \hat{\beta}_3 LSE_i + \hat{\beta}_4 LLP_i + \hat{\beta}_5 LY_i + e_i \quad (1)$$

위 추정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연간 레포츠피싱 비용을 이용하지 않고, 연간 1인 레포츠피싱 참여회수를 사용한 이유는 비용을 종속변수로 이용할 경우, 조사된 독립변수들은 사실상 총비용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출(수요)함수로서 의미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사변수로서 참여회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나. 모형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추정모형 (식 2)는 단순한 선형모형이고 추정에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해서 모형의 파라메타를 추정한다고 해도 그 추정치는 편이(bias)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파라메타 추정치의 공분산이 편이되기 때문에 통계적 가설검정 시 검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hite(1980)의 이형분산 하에서의 일관성 있는 분산-공분산 매트릭스(variance-covariance matrix: V)를 추정하여 이형분산 문제를 교정하였다. 단, $X = (k \times N)$ 독립변수 매트릭스, $\hat{\beta}$ = 파라메타 벡터이다.

$$V(\hat{\beta}) = (X'X)^{-1} \left[\sum_{i=1}^N e_i^2 X_i X_i' \right] (X'X)^{-1} \quad (2)$$

추정결과 결정계수(R^2)는 0.427로 나타났고, 식대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 파라메타 추정치의 부호는 기대되는 경제이론과 부합하였으며, 최소한 10%의 전통적 임계수준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 보였다. 특히 소득탄성치가 1.266으로 추정되어, 소득증가에 따른 레포츠피싱에 대한 수요가 향후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27 레포츠피싱 지출(수요)함수 추정결과

독립변수	파라메타 추정치	표준오차	t - 값
<i>LTE</i> (1인연간교통비)	-0.507	0.189	-2.683***
<i>LFE</i> (식대)	-0.319	0.259	-1.232
<i>LSE</i> (숙박비)	-0.124	0.055	-2.255***
<i>LLP</i> (레포츠피싱 지출)	-0.410	0.224	-1.830**
<i>LY</i> (1인연간소득)	1.266	0.413	3.065***
<i>INTERCEPT</i> (절편)	-6.359	2.147	-2.962
R^2 (결정계수)	0.427		

주 : *, **, ***는 각각 1%, 5%, 10% 임계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짐

다. 레포츠피싱 수요예측

레포츠피싱 수요를 예측하는 데는 몇 가지의 중요한 파라메타가 필요하다. 예컨대 레포츠피싱 참여자수, 소득탄성치, 인구증가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소득탄성치는 가용하지만, 레포츠피싱 참여자수는 사실상 그 추계가 극히 어렵고, 인구증가율 또한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레포츠피싱 수요예측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레포츠피싱 참여자수의 증가는 인구증가율에 비례한다기 보다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레포츠피싱에 대한 잠재수요의 실현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포츠피싱 참여자수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위한 초기 레포츠피싱 인구는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중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수와 일반어촌관광객수를 합한 어촌관광객수의 2005년 추정치를 초기 레포츠피싱 인구로 사용하였고, 레포츠피싱 인구증가율의 경우 우리나라 출국 관광객수와 입국 관광객수의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였다²⁴⁾.

예측에 이용된 모형은 (식 3)와 같고, $LFP_t = t$ 연도의 레포츠피싱 인구, $T\dot{P}R_t = t$ 연도의 내국인출국 및 외국인입국 관광객 증가율, $\hat{\eta} =$ 소득탄성치, $G\dot{N}P =$ 경제성장률, $t = 2006\sim 2015$ 이고, 이 정보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레포츠피싱 인구는 아래 표 6.30과 같이 예측되었다.

$$LFP_t = LFP_{t-1}(1 + T\dot{P}R)(1 + \hat{\eta} \times G\dot{N}P) \quad (3)$$

24) 본 연구의 레포츠피싱 인구는 해수면을 기반으로 한 레포츠피싱 활동인구를 추산한 것임. 이는 가용자료의 한계에 따라 해양관광 및 어촌관광인구를 활용한 것에 따른 것임

표 6.28 국내 해수욕장 및 어촌관광객 수(2004/2005)

단위 : 만명

구분	2004년	2005년
해수욕장	317.4	463.6
어촌체험마을	52.8	62.3
일반 어촌관광	160.0	186.0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표 6.29 예측에 이용된 파라메타 추정지

구분	국내외 관광객 증가율(%)	GNP성장률(%) <i>GNP</i>	레포츠피싱 소득탄성치 $\hat{\eta}$
추정치(%)	10.334	4~5	1.266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KDI	설문조사

표 6.30 레포츠피싱 인구 예측(2006~2015년)

연도 경제성장률	2006 (만명)	2007 (만명)	2008 (만명)	2009 (만명)	2010 (만명)
	4(%)	260.9	274.1	288.0	302.5
5(%)	264.0	280.7	298.5	317.4	337.5
연도 경제성장률	2011 (만명)	2012 (만명)	2013 (만명)	2014 (만명)	2015 (만명)
	4(%)	330.0	350.9	368.6	387.3
5(%)	358.8	381.6	405.7	431.4	458.7

요컨대 2015년 해양레포츠 인구는 406.9만명~458.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2005년 설문조사 대상자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산한 시장규모는 1조4천억 원 (349,240원/명×4,069,000명)~1조6천억 원 (349,240원/명×4,58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절 레포트피싱을 통한 어촌의 소득원 개발 가능성 및 파급효과

1. 어촌의 역할

전술한 바와 같이 어촌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어업인구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은 어촌주민의 정주공간이자, 향후 도시민이 자연과 접촉하고 어촌과 교류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동시에 도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참살이(well-being)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어촌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인문학적, 사회문화적, 산업적 자원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어촌의 기능을 레포트피싱 활성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가. 레포트피싱 이용객을 위한 기본 인프라 제공

레포트피싱 활동은 바다나 하천, 호수 등 내수면과 일부 유어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관찰하는 형태의 레포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어선이나 기타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본 장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비나 시설을 보관하거나, 레포트피싱을 통해 얻은 어획물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때로는 어획물을 바로 소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레포트피싱 활동은 1~2시간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루나 이틀 이상의 장시간에 걸쳐 행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나 보관, 저장 시설, 기타 기반시설은 레포트피싱 이용객의 행동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어촌이며 어항이 되는 것이다. 즉, 어촌이나 어항은 이처럼 레포트피싱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포함하고 이를 관리하며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어촌은 기본적으로 바다, 하천, 호수와 같은 수면을 이용한 어획 및 양식활동 등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어구나 양식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한 수산물을 이용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가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 자연, 역사, 문화와 접촉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인문, 사회적)

어촌은 자연을 간직한 곳으로 천연의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생활양식, 가치관, 문화 등이 살아있는 곳이다. 또한 해양관련 축제, 지역고유의 바다음식, 어구어법, 해양관련 사적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해양관련 축제의 경우, 현재 전국에 약 70여개 가량이 연중 계절에 상관없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대하나 쭈꾸미 등 바다음식 등과 관련된 문화축제가 가장 많고, 이 외에 연평도 풍어제나 위도 띠벳놀이 등과 같은 어업행위와 관련된 축제도 1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⁵⁾ 또한 각 어촌지역의 바다향토요리도 표 6.31에서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표 6.31 지역별 바다향토요리

구분	주요 향토요리
경가인천	뱅뱅이회(강화), 꽃게탕(인천 송도), 조기찜, 오징어순대
충남	어리굴젓(서산), 뱀어회(당진), 갯개미회(만리포), 새조개 데침회(천수만)
전북	옹어회(금강), 문어회
전남	갈낙탕(영암), 바지락회(득량만), 흥어찜(목포), 바다참장어회(고흥군), 꼬막(별교), 굴비(영광), 산낙지(신안, 무안), 노래미탕, 가자미회
경남부산	재첩국(하동), 멸치회(기장), 아구찜
경북	과메기(포항), 영덕(대게), 물회
강원	황태구이, 오뉴월 송어회, 연어구이(양양)
제주	옥돔물회, 성어국, 갈치회, 고등어회, 전복소라회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 2000.4., p35

이 외에 보령이나 서천 일대의 대하삼중망어업, 군산의 조망을 이용한 꽃새우잡이, 거제시의 육수장망, 제주도의 멸치분기초망 등과 같이 각 지역의 특수한 어구어법도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 있는데, 이 역시 레포츠피싱 이용객에게는 매우 흥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촌의 중요한 역할은 도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특히 도심의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나 ‘정’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2. 어촌소득원의 개발가능성 및 파급효과

레포츠피싱은 단순히 활동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나 만족감 이외에, 레포츠피싱이 이루어지는 어촌이나 어항 등 주변 환경에서 가능한 모든 사회적, 인문학적, 문화적 활동들과 연계될 때 그 이용자들의 만족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이용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레

25) 신동주, 신혜숙, 『해양관광개발론』, p 63, 2005.

포츠피싱의 경제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촌은 레포트피싱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촌이 레포트피싱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산물 생산이라는 단순했던 소득구조를 탈피해 소득다각화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촌은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의 생산주체이자 최초의 판매주체이기도 하다. 이들 대부분의 수산물이나 가공품은 중간상에게 넘겨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레포트피싱이 활성화되면서 어촌이 레포트피싱 이용객이라고 하는 최종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들 생산물들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간이 직판장 시설 등을 확충해 이러한 어촌의 직판기능을 강화하고 생산물 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어획물을 그물이나 기타 장비에서 떼어내 내장이거나 기타 분비물을 제거한 후 말리는 등의 단순 가공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도시민의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레포트피싱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이러한 부대활동과 특히 어가에서의 숙박 등을 함께 연계시켜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소규모 레포트이용객 그룹 하나가 하나의 어가를 기반으로 수산물 어획, 단순가공과정, 기타 어촌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레포트피싱의 흥미를 배가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가들이 기르는 어업에 치중하기 시작하면서 해상가두리 양식이 많아졌는데, 늘어나는 해상가두리 시설을 낚시터로 전환해 레포트피싱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레포트피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착안해 수심이 낮은 지역에 이러한 해상가두리 시설과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 이를 가족형 이용객들을 위해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가두리 내에 있는 양식물을 대상으로 유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어장의 경우 전술한 대로 체장제한을 어기거나 제한어획량 이상을 어획하는 등의 이용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관리체제가 완비된다고 하더라도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차라리 일정한 관리와 함께 이를 판매 등으로 연결시켜 유어장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어장 관리 및 운영비용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체장제한을 어길 시에는 명확한 기준 하에 관리를 하되, 제한어획량 이상을 잡은 이용객에 대해서는 그 초과어획량을 일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는 유어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어업이나 수중체험 등의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즉 체험어선의 경우, 적정 수준의 어획가능량을 정해서 승선료로 받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면

체험어업을 운영하는 어가들에게 별도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과물량을 신선냉장 또는 일차 가공한 후 택배를 해주는 등의 서비스와 연결시켜 이용객들이 방문 어촌계의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의 충성도(Royalty)를 높일 수 있다.

레포츠피싱 유형별로 어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표 6.32와 같다.

표 6.32 유형별 레포츠피싱 활동에 따른 어촌소득 증대가능성

구분		소득분야	
유어낚시형	직접소득	● 낚시터 운영수입	유료낚시터 입장료, 유어장 입어료
		● 유어선 운영수입	유어선 대여료
		● 기타 관련용품 판매대여수입	낚시도구 대여, 미끼판매
		● 활어 판매수입	낚시객을 상대로 한 활어 판매수입
	간접소득	● 서비스비용	낚시객이 어획한 수산물을 회로 떠주는 비용
갯벌체험형	직접소득	● 갯벌체험장 운영수입	체험장 입장료
		● 체험도구 대여수입	장화, 갈고리, 빨배, 소금(패류), 기타 대여료
	● 각종 수산물 판매수입	체험어장 주변에서 어획된 수산물 판매 체험어장에서 어획된 수산물 판매수입 (제한한 마리수 이상을 어획한 경우)	
간접소득	● 숙박 및 음식판매 수입	숙박료, 음식료, 기타 식음료비	
체험어업형	직접소득	● 어선승선료	야간횃불조업, 그물어업 체험 시 필요한 어선승선료
		● 양식장 체험료	양식장 체험에 앞서 입장료 대신 지급하는 체험료
		● 어구대여료	정치망, 독살, 전통어업 시 필요한 어구대여료
		● 활어판매수입	체험활동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이 어획제한량을 초과했을 때, 이를 체험자에게 재판매
	간접소득	● 서비스비용	체험활동을 통해 수확한 수산물을 어촌에서 건조, 가공 과정 등을 통해 체험자에게 제공해주는 데에 따른 비용
● 숙박 및 음식판매 수입	숙박료, 음식료, 기타 식음료비		
수중관찰형	직접소득	● 유어장 입장료	수중관찰이 가능한 어장내 입어료 혹은 입장료 (잠수정의 경우는 잠수정 승선료)
		● 관련장비 및 먹이 대여료	스킨스쿠버, 씨워킹이나 스노클링 등을 위한 간단한 장비대여
		● 수산물 판매수입	주변에서 생산된 수산물 판매수입 단, 입어와 제한된 양의 어획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한량 이상으로 어획한 어획물 판매수입이 가능
	간접소득	● 숙박 및 음식판매 수입	숙박료, 음식료, 기타 식음료비

앞서 수요분석에서 보았듯이, 2015년 해양레포츠 인구는 406.9만 명~45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2005년 설문조사 대상자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산한 시장규모는 1조4천억 원(349,240원/명×4,069,000명) ~ 1조6천억 원(349,240원/명×4,58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레포츠피싱에 대한 커다란 잠재수요는 어촌관광과 레포츠피싱 개발의 높은 가능성과 성공확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된 잠재수요가 모두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레포츠피싱 지출항목 중에서도 어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은 음식물비, 숙박비, 레트비, 낚시, 스쿠

버다이빙비, 기타 잡비 등으로 압축된다.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인 연간 평균 레포트피싱 지출액은 604,990원이며, 교통비, 음식물비, 숙박비에 대한 지출이 62.3%~74.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33 레포트피싱 항목별 평균지출액

지출항목(1인 연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레포트피싱총지출(원)	265	604,990	795,350	27,000	6,000,000
교통비(원)	265	161,390	293,480	6,000	3,000,000
음식물비(원)	265	161,390	293,480	0.000	3,000,000
숙박비(원)	265	127,140	196,780	0.0000	1,250,000
렌트비(원)	265	47,863	106,940	0.0000	750,000
스쿠버다이빙(원)	265	8,865	74,378	0.0000	1,050,000
낚시(원)	265	40,975	149,700	0.0000	1,250,000
기타잡비(원)	265	62,780	149,590	0.0000	1,800,000

표 6.34 레포트피싱 항목별 지출 비율

지출항목별 비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어가소득기여비율(1)	265	0.623	0.168	0.000	0.930
어가소득기여비율(2)	265	0.742	0.126	0.085	1.000
교통비	265	0.254	0.119	0.015	0.769
음식물비	265	0.276	0.113	0.000	0.833
숙박비	265	0.112	0.182	0.000	0.714
렌트비	265	0.007	0.041	0.000	0.714
스쿠버다이빙	265	0.036	0.094	0.000	0.333
낚시	265	0.036	0.094	0.000	0.714
기타잡비	265	0.111	0.118	0.000	0.500

주 : 어가소득기여율(1): (음식물비+숙박비+낚시+기타잡비)/레포트피싱총지출. 어가소득기여율(2): (음식물비+숙박비+렌트비+스쿠버다이빙+낚시+기타잡비)/레포트피싱총지출

따라서 앞서 예측한 잠재수요와 항목별 지출비율을 감안할 때, 레포트피싱에 대한 잠재수요 중 어가수입 또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비율은 62.3%~74.2% 가량으로, 9,345천억 원~11.13천억 원의 어가소득 증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전망치는 어가소득 실현가능치이며, 어촌관광 및 레포트피싱에 대한 정책의 내용과 투자규모 그리고 정책의지에 따라 그 승수효과 및 파급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레포트피싱 중장기 개발계획

- 1. 상위계획 및 추진사업 검토**
- 2. 기본계획**
- 3. 유형별 어촌경제 활성화 발전모델 설정**
- 4. 시범사업 실시계획**
- 5. 투자계획**

제7장 레포츠피싱 중장기 개발계획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레포츠피싱은 크게 네 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준비가 미비해 관리 및 자원 이용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5장에서 지적한 대로 레포츠피싱 활동이 어촌이라는 공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는 새로운 어가소득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레포츠피싱을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기로 한다.

제1절 상위계획 및 현 추진사업 검토

먼저 레포츠피싱은 기본적으로 국가개발 및 어촌관광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다른 말로 국토개발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촌관광 개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레포츠피싱 개발은 국가의 어촌관광개발과 관련한 상위계획의 정책목표 및 사업방향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표. 7.1 주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구분		내용
상위계획	국토 및 관광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국토구상(2004)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년~2011년)
	해양수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 2000~2010) ●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연도별)
기타 관련계획	국토 및 관광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2000~2009) ●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구상 중)
	해양수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어촌어항개발 기본계획(구상 중) ●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년~2009년) ● 해양관광진흥종합대책(2004년)
추진 중인 사업	해양수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종합개발사업(1994년~2013년) ● 어촌관광활성화사업(2005년~2009년) :모델별 어촌어항개발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2002년~2013년)

현재 국가의 어촌관광개발 관련 상위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국토 전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과 해양수산 부문에서 관광활성화를 다루고 있는 계획 두 가지로 대별된다. 특히 국토이용에 있어 관광개발 및 해양관광 측면을 핵심 사안으로 내세워 국가 관광개발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남해안과 서해안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10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반해 해양관광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되어 시행 중에 있다.

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이 기본계획은 문광부가 관광진흥법 제47조에 근거해 전국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다음의 7개 전략 - (i)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 개발 추진, (ii) 지역 관광개발의 특성화 촉진, (iii)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촉진, (iv)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v)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vi) 국민 생활관광 기반 확충, (vii) 남북한 관광협력체계 구축 - 에 기반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촌 및 해양관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 개발 추진
 - 수상관광호텔 육성, 농어촌 민박이용 활성화 등 테마형 관광숙박시설의 육성
 - 한중일 연계 크루즈 항만개발 계획의 추진 등 동북아 관광교통연계망 확대, 항공·해운·육상 교통연계망 구축 등 관광교통체계 구축
 - 지역 관광개발의 특성화 촉진
 - 농산어촌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마을 조성 등 농산어촌지역 관광개발 추진
 - 부산도시 관광권,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권 등 남해안 각 권역별 관광거점 육성, 지역간 상호연계에 의한 매력 있는 관광벨트 조성 등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추진
 - * 16개 권역별 개발방향을 확정, 발표
 - 서해안 : 충남권(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역)
 - 남해안 : 전남권(다도해 해양문화 관광지역), 경남권(해양역사문화 관광지역)
 - 동해안 : 강원권(청정 산악·해양 관광지역)
 - 제주도 : 국제관광자유지역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강화
 - 연안습지 등 우리나라 생태자원을 대표하면서 관광객의 탐방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지역을 생태 시범지구 관광자원화 등
-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2000~2009)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가시화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은 2009년까지 10년간 총 5조 432억 원을 투자하여 부산~남해안 일대 23개 시·군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부산도시 관광권 : 부산광역시 - 활력있는 국제 해양관광 도시 '부산'
 -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권 : 경남 동남부(통영 등) - 주유식(周遊式) 목적 특화형 주말 리조트
 - 종합휴양교류 관광권 : 전남 동남부·경남 남서부(여수 중심) -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 리조트 개발
 - 역사문화 관광권 : 전남 남서부(목포 중심) - 기존 자원의 잠재력을 활용, 관광지 소생 도전
-

가.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년~2009년)

먼저 1994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이후, 지난 2004년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안에서는 어촌어항 개발 및 해양관광 분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어촌인구 유입을 위한 어촌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225개 권역을 개발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다기능 종합어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어촌어항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둘째로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을 육성한다는 전략인데, 이를 위해 생산기반 위주의 사업지원을 관광기반 지원으로 전환하고,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어업인을 상대로 한 관광교육을 실시하며, 어촌관광 중심의 어촌어항개발 사업을 2009년까지 24개소에 대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 해양레저와 연계한 낚시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어류양식장을 낚시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레저어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나.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2004)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은 어촌환경 변화와 관광인구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해 내놓은 대책안으로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 조성’이라는 기치 하에 (i) 생산기반 위주의 사업지원을 관광기반 중심으로 전면 재편, (ii)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수요 창출, (iii) 어업인중심의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촌소득 증대, (iv)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확산을 위한 어업인의 의식전환 유도라는 네 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제정을 추진하고, 어촌어항 모델별 개발사업(24개소)을 진행하며,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어촌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어업인 주도의 어촌관광으로 실질적인 어촌소득을 증대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 추진 중인 사업

전술한 수산진흥종합대책과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레포트피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이다. 어촌의 부족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하고,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부업·복지·관광시설 확충

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돌아오는 어촌건설을 목표로 지난 19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제1단계 사업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60개 권역에 5,432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제2단계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5개 권역에 3,2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둘째, 어촌관광중심의 어촌/어항 통합모델 개발사업이다. 현행 어촌어항개발은 기본시설, 유지보수 위주로 연간 약 2,600억 원이 분산 투자되고 있는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 체계적 계획 부재, 투자재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총 투자예산 4,723억을 들여 2013년까지 총 24개소에 I(어촌어항 복합공간), II(다기능 종합어항), III(어촌종합관광단지) 모델로 구분하여 어촌과 어항의 관광기능을 부여한 효율적인 어촌어항을 개발할 예정이다.

셋째, 해양레저와 연계한 낚시관리제도 도입 추진사업이다. 최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낚시인구 증가 예상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및 자원남획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교부 등 5개 부처 17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낚시제도를 해양레저 수요에 맞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종합적 낚시관리제도를 도입하되, 어류가두리 양식장 일부의 낚시터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유어장의 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1년 시범사업 이후, 2002년~2007년 60개소 추진을 목표로 1차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2008년~2013년까지 새로운 개발방향에 따라 신규 43개소에 조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어촌관광 운영을 위한 리더 육성사업을 포함한다.

이 외에 (ii) 도시민과 어촌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와 경제단체, 교육기관,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 1사1촌, 1교1촌, 1부녀회1촌을 추진해 최종 300사300촌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자매결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
- I모델 : 어촌어항 복합공간 - 배후어촌이 있는 국가어항 중심으로 수산시장, 씨푸드센터 등을 개발하고 어촌 중심 어촌민숙관, 생태체험장 등을 개발할 계획. 2009년까지 1,079억 원 투자
 - * 7개소-인천 어유정, 울산 정자, 강원 안목, 전남 마량, 경북 양포, 경남 맥전포, 제주 모슬포항
 - II모델 : 다기능 종합어항 - 배후어촌은 없지만 어항자체로 관광잠재력이 큰 국가어항에 해양연수시설, 어업인복지회관, 수산관련단지 등을 포함해 개발할 계획. 2009년까지 2,957억 원 투자
 - * 6개소-부산 대변, 강원 대포, 충남 흥원, 전북 격포, 전남 국동, 경남 지세포항
 - III모델 : 어촌종합관광단지 - 자연경관 등 어촌 자체만으로 관광잠재력이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휴양림, 생태공원, 관광안내센터 등을 개발할 계획. 2009년까지 696억 원 투자
 - * 11개소-부산대항, 인천 초지, 울산 대송, 경기 전곡, 강원 대진, 충남 무창포, 전북 야미도, 전남 방축, 경북 전촌, 경남 학림, 제주 법환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등을 검토한 결과, 각 권역별로 관광기능을 별도로 부여하고, 충청권, 전남권, 경남권, 강원권에 해양관광 기능을 집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충청권과 일부 신안 등에는 갯벌관광을, 여수, 사천, 통영과 제주도 등 남해안 지역에는 해양레포츠 관광기능을 특화해 개발한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법체제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더 나아가서는 가두리양식장 등을 레저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어촌어항 개발 측면에서 이러한 레저기능을 크게 강화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위계획 및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현재 레포츠피싱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레포츠피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2절 기본계획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 계획의 목표

레포츠피싱 증장기 개발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레포츠피싱 관련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수산자원 및 어촌의 인문·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포츠피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체험형 해양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급자인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 계획의 추진방향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어촌관광개발 사업 및 기타 레포츠피싱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레포츠피싱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권역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레포츠피싱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셋째, 어촌 및 어항의 문화교류 기능과 판매기능 위주로 강화함으로써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하되, 특히 어가소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실현가능한 레포츠피싱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체제를 효율화한다.

다섯째,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단일화된 법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증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여섯째,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어촌계와 레포츠피싱 관련 단체,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레포츠피싱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도록 한다.

2. 단계별 추진전략

가. 단계별 추진목표

단계별 추진기간을 10년(2006~201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1단계는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체제정비 기간('06~'07), 2단계는 레포츠피싱의 체제정착 및 발전 기간('08~'10), 3단계는 국민적 여가활동으로서 레포츠피싱의 안정화 및 확산 기간('11~'15)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표 7.2 레포츠피싱 추진단계 및 추진전략

단계별	목 표	추진전략
1단계 ('06~'07)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법·제도적 체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포츠피싱 활성화 체제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06~'07) - '레포츠피싱발전법(가칭)' 제정 추진('06~'07) -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대책 마련('06) - 권역별, 유형별 개발방향 설정('06) - 시범사업 실시계획 확정 및 실시('06~'07) - 레포츠피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06~'07) - 레포츠피싱 관련 통계 D/B 구축 및 자료축적(계속) - 레포츠피싱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강화(계속)
2단계 ('08~'10)	지속적 법·제도 정비를 통한 체제정착 유도 및 레포츠피싱 발전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법·제도의 정비('08~'10) - 시범사업을 토대로 권역별, 유형별 시행계획 확정 및 추진('08~'10) - 유어장 및 레포츠피싱 허용구역 설정('08~'10) - 레포츠피싱용 수산자원 조성 추진('08~'10)
3단계 ('11~'15)	국민적 여가활동으로서 안정화 및 본격 확산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시행계획 수정,보완('11) - 레포츠피싱 개발사업의 본격 확산('11~'15)

특히 레포트피싱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2006년 하반기와 2007년에 걸쳐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0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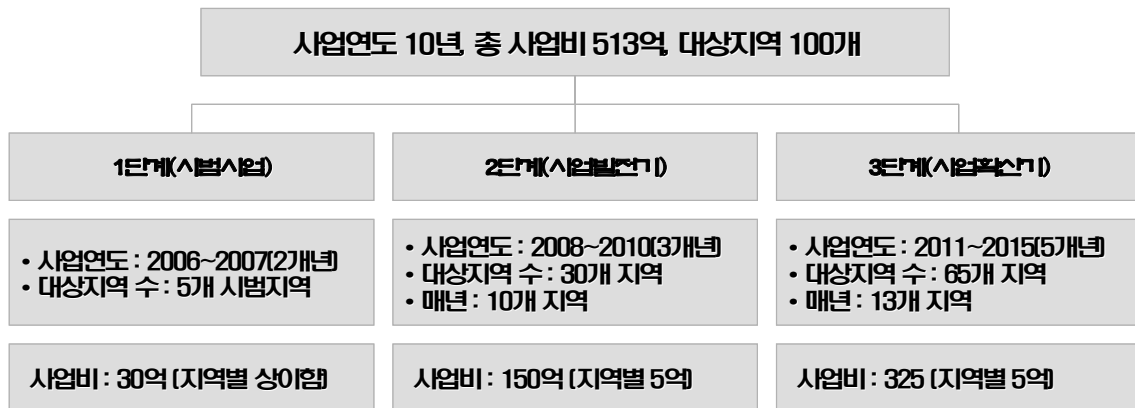


그림 7.1 레포트피싱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

나. 세부 추진전략

(1) 1단계 : 레포트피싱 활성화 기반조성 및 체제정비('06~'07)

- 효율적 집행체제 구축
 - 해수부 내 레포트피싱 전담 TFT 구성·운영('06 상반기)
 - 레포트피싱 관련부처와 협의체 구성 및 역할 정비('06)
 -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06 하반기)
 - 지자체 차원의 레포트피싱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07)
 - 레포트피싱 관련단체 현황조사 및 정부와의 협조체제 구축('06)
- '레포트피싱발전법(가칭)' 제정 추진('06~'07)
- 레포트피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레포트피싱 종합발전대책 마련('06)
 -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06)
 - 권역별, 유형별 레포트피싱 개발방향 설정('06)
- 5개 유형별(도서형 포함) 시범사업 실시계획 확정 및 실시('06~'07)
 - 시범사업 실시계획 확정 ('06년 상반기)

- 시범사업 실시계획 실시 ('06년 상반기~'07)
- 시범사업을 통해 유형별 레포츠피싱 활성화의 장애요인 발굴 및 개선·보완('07 하반기)
- 레포츠피싱 관련 통계 D/B 구축 및 자료 축적시스템 정비(계속)
- 레포츠피싱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계속)

(2) 2단계 : 레포츠피싱 활성화 체제정착 및 발전('08~'10)

- 레포츠피싱 법·제도적 보완작업 지속 추진('08~'10)
- 권역별, 유형별 레포츠피싱 발전 시행계획 확정 및 추진('08~'10)
 -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레포츠피싱 발전모델 확정('08 상반기)
 - 권역별, 유형별 시행계획 확정('08 상반기) : 매년 10개 지역 추진하되, 유형별 2개 지역 선정을 기본으로 함
- 유어장 및 레포츠피싱 허용구역 설정('08~'09)
 - 각 권역별로 레포츠피싱 허용구역 설정('08)
 -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하는 항만의 일부를 허용구역으로 설정
- 레포츠피싱용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08~'10)

(3) 3단계 : 국민적 여가활동으로서 안정화 및 확산('11~'15)

- 2단계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유형별 시행계획 수정, 보완('11) : 매년 13개 지역 선정 추진
- 레포츠피싱 개발사업의 본격 확산('11~'15)
- 레포츠피싱의 범국가적 확산을 통한 국민의 체험형 관광 수요 충족

3. 주요 추진내용

가. 레포츠피싱 종합발전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정부는 어촌관광개발사업, 아름다운 어촌마을 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종전 어촌어항에 관광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개발사업 등 다양한 어촌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개발사업 중 대부분은 어촌, 어항의 인프라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기능 수

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특정의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단순한 감상형 중심의 어촌관광이 아니라 레포츠피싱이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 발전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 추진계획

기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어촌관광 관련사업을 포괄하고, 단순 감상형이 아니라 레포츠피싱을 중심테마로 하는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특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기 추진 중인 사업 중 레포츠피싱의 성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²⁷⁾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연속성을 지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 조성된 어촌체험마을 지정 지역의 주력 레포츠피싱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고, 각 권역별·유형별 거점지역을 1~2개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함으로써 향후 레포츠피싱의 확산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종합발전대책 초안을 200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공청회 및 기타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06년 말까지 레포츠피싱 종합발전대책안을 확정하도록 한다.

나. 레포츠피싱발전법(가칭) 제정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레포츠피싱 관련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문화관광부의 5개 중앙부처에서 13개의 법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레포츠피싱이 개발 초기에 있어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무엇보다도 유어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체험형이 각각 개별법들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레포츠피싱의 체계적 발전과 효율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관련법들이 매우 다양하게 산재함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메울 수 없는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관련법이 레포츠피싱 활동의 발전보다는 레포츠피싱으로 인한 환경 및 자연보전에 중심을 둔 규제위주의 법들이 많아서 레포츠피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27)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 개발사업 가운데, 일반 해양관광보다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레포츠피싱 성격과 가장 부합함

(2) 추진계획

중앙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레포츠피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레포츠피싱발전법(가칭)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산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유어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레포츠피싱의 네 가지 유형 특히 체험형을 아우를 수 있도록 레포츠피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세부적인 범주를 열거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형 어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레포츠피싱 활동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레포츠피싱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행위규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명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레포츠피싱 이용객과 어업인간 자율적 협정을 토대로 상업적 어업과 레포츠피싱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유선및도선사업법, 낚시어선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을 통해 레포츠피싱 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이나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레포츠피싱발전법을 통해 이러한 이용 어선의 규제를 일원화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 해역을 레포츠피싱을 위한 활동구역으로 지정해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어장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레포츠피싱이 수면을 이용하는 행위인 만큼 수면관리자의 역할 및 권한을 명확히 한다.

이 외에 레포츠피싱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 이들 기관의 정부협조를 위한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해양관광자원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가칭)과 낚시발전법(가칭)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 법률을 확대개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 제정에 앞서 보다 면밀한 법안검토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효율적 집행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레포츠피싱 관련법의 소관부처는 5개 중앙부처와 2개 청(해양경찰청, 문화재청)으로 이들 기관별로 레포츠피싱의 활동기반인 수면관리나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권을 산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관부처별로 레포츠피싱 행위에 대한 규제나 발전을 보는 시각이 매우 달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고, 체계적 발전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체험성을 강조하는 레포츠피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임을 감안할 때 전담부서는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에도 레포츠피싱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어낚시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레포츠피싱 활동조차도 전담부서나 팀이 없는 실정이다.

(2) 추진계획

해수부 내에 레포츠피싱을 위한 전담TFT를 구성하여, 일차적으로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이나 문제점, 선결과제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레포츠피싱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업체를 구성해 부처간 업무 및 역할 등을 정비해나가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내에 낚시, 스킨스쿠버 등 각종 레포츠피싱 활동을 포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추후 지자체 차원의 레포츠피싱 전담부서를 점진적으로 구성해 나감으로써 레포츠피싱 관련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레포츠피싱 관련단체 및 관련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단체들 중 총괄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관련 단체 간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다.

라. 레포츠피싱 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레포츠피싱 관련단체 현황을 보면, 낚시단체, 스킨스쿠버 단체 등이 가장 활동이 활발하며, 갯벌체험과 관련해서는 이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보다는 갯벌보전 및 개발반대를 기치로 내건 환경보호단체들이 주류를 이룬다. 체험어업형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인데다 특정한 사업자보다는 어업인이 사업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단체를 형성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각 유형별로 관련단체의 조직이 미흡하거나, 상위단체가 없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정부측이나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특히 레포츠피싱의 경우 각 유형별로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조성 등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입장에서도 불만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문제이다.

예컨대 낚시단체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4개 부처에 약 5개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타 사단법인 아닌 임의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개별단체들은 전국 혹은 지역단위의 낚시대회를 주관하거나 자체적으로 치어방류나 환경기금 운동 혹은 잡는 낚시에서 즐기는 낚시로 유도 등 낚시계 현안에 대한 환경보호 운동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낚시단체의 다양한 치어방류나 환경보호 등의 활동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일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레포츠피싱 각 유형별 단체구성이나 최상위 단체를 구성해 정부, 레포츠피싱 이용객, 레포츠피싱 사업자 간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추진계획

우선적으로 각 유형별로 자신들의 통합된 의사전달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단체의 설립을 유도하고, 유형별 대표단체의 최상위 단체를 구성해 이들 대표단체들 간의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가능한 한 대표성 있는 단체를 해수부에 법인등록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추후 이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정부와 대표단체 협의체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의견조율 및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과 공동으로 자원 및 환경보전 활동, 자원조성 활동 등을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마. 레포츠피싱 권역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레포츠피싱의 개발은 권역별, 유형별 특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매우 획일적으로 개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획일화된 프로그램은 다양한 레포츠피싱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 추진계획

따라서 향후 레포츠피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해역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맞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권역별로 가지고 있는 인문사회적 자원 및 수산자원이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권역별로 유형을 특화하여 집적시킴으로써 관광객을 분산시키되 한 해역이나 특정 지역으로 레포츠피싱 활동자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3절 유형별 어촌경제 활성화 발전모델 설정에서 다루기로 한다.

바. 우수유어장 인증제 도입 및 레포츠피싱 허용구역 설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유어장 지정은 전국적으로 50여 개소이며, 이 중 절반가량은 유료낚시터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체험어장의 경우 갯벌체험장이 가장 많다. 하지만 이들 유어장의 자원관리 및 기타 관리규정 준수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 유어장에서 불법적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레포츠피싱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이로 인한 어장의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포츠피싱이 가능한 특정구역을 설정해 적절한 관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2) 추진계획

유어장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유어장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유어장 관리나 기타 환경 및 자원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유어장에 대해서는 우수 유어장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유어장에 대해서도 관리의 식 고취, 환경 및 자원조성 의무부과와 의무준수에 대한 Incentive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병행해, 권역별로 비교적 넓은 지역에 레포츠피싱 허용구역을 설정해 저렴한 입어료를 징수하는 대신 이 지역에서는 레포츠피싱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단 허용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레포츠피싱용 수산자원 조성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특히 현재 항만별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보면, 인천과 동해항의 경우 레저타운이나 마리나 시설을 조성해 해양스포츠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인천과 동해항, 그리고 현재 레포츠피싱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 권역을 레포츠피싱 허용구역으로 시범적으로 설정하여 향후 허용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도록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현재 박물관이나 공원, 녹지조성을 통해 단순한 휴식중심의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항만에 대해서도 항만수역 내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레포츠피싱 허용구역으로 설정해 레포츠피싱 종합공간으로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허용구역 설정과 확산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유어장 지정과 레포츠피싱 허용구역 설정에 필요한 각 권역별 자원량 조사, 지역민의 의식조사 등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 수산자원의 조성의무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이미 레포츠피싱은 생계형 어업인과의 자원경합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경합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란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자원방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레포츠피싱 활동자들의 방류종 어획이 지속될 경우 생계형 어업인들의 정서적 박탈감이 쉽게 찾아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계형 어업인의 박탈감을 해소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추진계획

이와 관련해 정부는 레포츠피싱 거점지역으로 개발되는 지역, 유어장, 레포츠피싱 허용 구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원조성 활동을 의무화하고, 레포츠피싱 중장기 발전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자원조성비로 책정해 지원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어장이나 레포츠피싱 허용구역 운영비의 일부와 레포츠피싱 포털사이트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자원조성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구역에 자원조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아. 레포츠피싱 관련 통계 D/B 구축 및 자료 축적시스템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레포츠피싱과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통계치조차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이러한 통계를 축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자료의 축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레포츠피싱과 관련한 통계축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추진계획

먼저 레포츠피싱 관련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레포츠피싱 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이와 병행해 현재 유어장이나 체험어장 등을 중심으로 방문객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어장(체험어장)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상주 관리인력에 대한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등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화기반 구축 및 이를 통한 마케팅 비용 등의 일부는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 외에 레포츠피싱 수요자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레포츠피싱 관련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며, 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레포츠피싱 관련 법·제도, 이 어장환경이나 어업인에게 줄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3절 유형별 어촌경제 활성화 발전모델 설정

레포츠피싱 중장기개발을 위한 각 유형별 어촌경제 활성화모델은 (i)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되, (ii) 관리의 편의성 증대, (iii) 어가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iv) 이용객의 재방문 유도를 위해, 현실적으로 운영수입이 좋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어장이나 어촌마을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기본모델로 설정하였다.

1. 유형별 발전모델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구축

○ 레포츠피싱의 각 유형별 특성을 달리하므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조성에 있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개발방향을 달리하도록 함. 유형별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7.3 각 유형별 개발방향

유형	개발방향	비고
유어낚시형	가족중심 소그룹형	
갯벌체험형	소그룹형 단체관광형	2개 유형을 구분하여 개발
체험어업형	가족중심 소그룹형	동해와 서남해 해역에 맞게 개발
수중관찰형	동호회 중심 소그룹형	고급화
도서형	가족중심 소그룹형 대규모단지화	고급화

- 유어낚시형 : 해역에 상관없이 주로 가족중심의 소그룹형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구하되, 일부 낚시대회 개최지의 경우에 단체형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어린이 낚시대회를 활성화함
- 갯벌체험형 : 서해안권(경기, 충남)을 중심으로 소그룹형과 단체관광형을 병행해서 개발하되, 단체관광형의 경우,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행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
- 체험어업형 : 동해를 중심으로 소그룹형으로 개발하되, 일부 서남해 해역은 죽방렴, 지인망 등 전통어업 중심으로 개발함
- 수중관찰형 :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여 아마추어용 소그룹형으로 개발하되, 고급화를 추구함

나. 도서지역을 가족중심·장기체류형 레포츠피싱 거점으로 개발

- 도서지역은 가족중심의 소그룹형으로 개발하되 시설을 대규모화·고급화함으로써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함
 -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발 한계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형태로 개발한다면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필리핀 보라카이의 경우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국제선-국내선-버스이동-선박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보라카이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현재 유수의 관광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는 열대성 기후와 바다낚시, 스노클링, 체험어업, 수중체험 등 다양한 레포츠피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관련 편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데에 따른 것임

다. 시스템적 어촌어항 개발과 이를 통한 판매 및 문화교류 기능 강화

- 어촌을 구성하는 어촌어항어장 세 요소가 레포츠피싱 이용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유기적으로 융합,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및 부대시설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어촌어항의 판매 및 문화교류 기능을 강화해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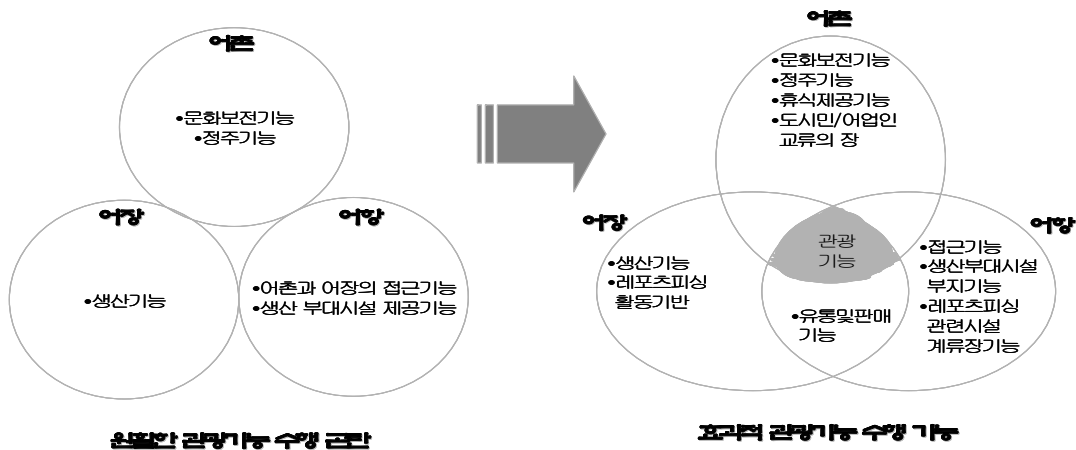


그림 7.2 어촌어항의 시스템적 개발과 기능강화

- 레포츠피싱 활동장소와 숙박시설, 세족장 등 편의시설 사이에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위한 쉼터 주변지역에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이 직판시설이나 기타 레포츠피싱 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의 보관, 저장, 세척 및 시식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가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 레포트피싱 이용객을 위한 쉼터나 숙박시설과 어업인 마을회관 등을 인접해 배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각종 마을행사(풍어제, 마을어르신 회갑연 등)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장소로서의 기능 강화

라. 개별 어가기반의 레포트피싱 이용시스템 구축

- 개별 어가를 기반으로 한 레포트피싱 이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업인과 레포트피싱 이용객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도록 함
 - 하나의 레포트피싱 이용객 그룹이, 레포트피싱 활동·숙식 및 기타 부대활동(그물짜기, 어획물을 그물에서 떼어내 세척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하나의 어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업인과 이용객간의 연결고리 강화
- 이를 통해 어업인의 레포트피싱 이용객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최초 레포트피싱 이용객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하므로 이용객의 재방문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마. 실현가능하고 어가소득과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제 강화

- 지역주민·관광프로그램 개발업체·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프로그램 개발은 어업인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연구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광업계와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완 되도록 함
 - 일본의 경우, 해양관광 프로그램 주체가 어업인과 우리나라의 수협에 해당하는 어협으로 이들 양자가 공동으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업인의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부터 레포트피싱 관련시설 및 이용객 관리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초기 투자비의 일부를 체험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지역 개발투자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각종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할당하도록 함
- 레포트피싱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레포트피싱의 수요·공급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각 지자체는 소프트웨어

보급 및 운영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

바. 주변 배후지 관광자원 및 기타 체험프로그램과 연계성 강화

- 어촌 배후지역에 위치한 명승지·해수욕장 등 관광자원 이외 항만·등대 등에 친수공간, 기타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관 등 해양문화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레포츠피싱 이용객에 다양한 관광기회를 제공함
- 성격이 다른 체험프로그램(농촌 체험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성 강화

2. 유형별 발전모델

가. 유어낚시형

먼저 유어낚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유어낚시는 40~50대의 남성을 중심으로 한 1~2일 혹은 당일 코스의 바다낚시나 갯바위 낚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수면은 유료낚시터를 이용한 이용객과 낚시대회가 활성화되는 등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해변낚시터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집어제 사용이나 미끼사용, 불법유어에 대한 관리미흡 등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유어낚시객을 관리가 용이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모형은 소규모 가족형 유어낚시마을을 지향한다. 이는 현재 주요 이용객인 40~50대 남성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고 갯바위낚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다. 하지만 가족을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할 경우, 체류가 장기화될 수 있고, 특히 갯바위낚시보다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어낚시터를 중심으로 한 낚시활동으로 선호패턴이 바뀔 수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을 동반하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을 수반함으로써 무분별한 유어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간접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 때, 낚시터의 형태는 유어낚시객의 활동영역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상잔교형이나 해상가두리와 같은 마을어장과 인접한 구획성 유어낚시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정부는 정책적으로 갯바위 낚시나 방파제 낚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본모형을 가족형 유어낚시마을로 가지고 갈 경우, 가족 동반객을 위해 전통어업 체험이나 가공체험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동반객 중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녀들의 관광 및 체험욕구를 만족시켰을 때 추후 재방문율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상가두리형 유어낚시터인 경우, 어항내 수심이 낮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해상가두리 1~2조를 띄워 어린이를 비롯한 동반객이 함께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이다.

유료낚시터 관리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도록 한다. 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정한 강제성이 필요하므로, 이 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앞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강제성 규정에 대한 사전 의견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또한 숙박시설, 시식시설 및 기타 레포트피싱과 관련된 부대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부녀자회를 중심으로 하도록 한다.

표 7.4 유어낚시형 발전모델 설정

구분	내용
기본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가족형 유어낚시마을
유어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획성 유어낚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잔교, 해상가두리형, 기타 명확한 구획이 설정된 형태 - 갯바위낚시, 방파제낚시 등은 지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유어낚시객인 성인 남자 이외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전통어업체험, 해조류 및 기타 패류채취, 해수욕(소규모), 수산물시식프로그램 등
관리 및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장 :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운영회를 조직해, 순번제로 공동관리운영 ● 숙박, 판매, 기타 편의시설 : 어촌계 부녀회를 중심으로 공동관리운영(순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수준의 강제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먼저 어촌계 합의과정 선행되어야 함
어촌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관리운영하는 유어장, 숙박시설 등을 통한 입어료, 숙박료, ● 레포트피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수산물 및 가공품 직판 수입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바위 낚시가 주류를 이루던 바다유어낚시는 불법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고, 관리나 통제가 곤란해 어촌계의 반발이 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잔교형, 가두리형처럼 특정한 지역에서만 유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어장 운영할 경우 관리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음 ● 가족 관광객일 경우 체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형으로 개발하되, 유어낚시를 하지 않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강제성을 부여한 순번제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어업소득을 포기하는 대신 수산물 공동판매 및 숙박시설 운영료 등을 통한 소득보전을 위해 수산물 및 가공품 직판장을 설치해 어업인을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함

나. 갯벌체험형

갯벌체험형은 현재 단체관광이나 소규모 그룹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혼재해 있으며, 이를 어느 한 형태로만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체관광형과 소규모 그룹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개발하도록 한다.

단체관광형은 주로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행사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체류를 유도하기 보다는 당일 코스의 통과형으로 개발한다. 한편으로는 소규모 그룹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체류를 유도하는 형태로 개발해 나가는데, 새로이 갯벌체험어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지역은 이러

한 소규모 체류형을 지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갯벌체험장이 대부분 대규모 면적으로 개발되어 채산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체관광객의 입어로 수입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신규로 문을 여는 갯벌체험장은 그야말로 어촌과 도시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체류를 통해 어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7.5 갯벌체험형 발전모델 설정

구분	내용	
기본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관광형 (통과형) - 예: 인근 초중고등학교 체육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그룹형(체류형)
체험어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갯벌체험장 - 마을어장과 갯벌체험장을 구분짓는 표지판 설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체험어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 - 갯벌상황에 따라 갯벌체육행사(갯벌씨름, 뽕배체험 등)를 위주로 구성 ● 갯벌행사 주최측과 프로그램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 + 어업체험 : 갯벌이용한 전통어업체험 ● 갯벌체험 + 유아낚시 - 서남해의 탁도 때문에 갯벌체험과 수중관찰형을 결합하는 것은 불가
관리 및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회원 1~2인(순번제)을 포함한 상시 관리인력을 따로 배치하되, ● 행사시, 주최측 관리인원 추가 - 향후 정부의 [갯벌행사 지침]에 따름 ● 숙박 및 기타 부대시설 공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회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운영체에서 순번제 관리운영 ● 체장 및 어획량 등을 명확히 제한하되 ●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추가어획량에 대해서는 저가판매하는 형태로 운영 ● 숙박, 기타시설물 : 부녀회 공동관리
어촌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대여료, 입장료, 기타 부대용품 판매료, 음식판매비용 등 파생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료, 숙박료, 체험어업 참가료, 어촌계 회원이 직접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판매료, 추가어획량에 대한 판매료 등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형은 이용객 규모에 따라 개발가능한 프로그램 등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관광형과 소규모 갯벌체험마을로 구분하여 개발하되, 소규모형은 체류형으로 개발하도록 함 ● 단체관광형은 특히 인근 학교나 기관의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수산동식물 채포행위와 관련된 행사, 이벤트를 위주로 하는 것이 흥미를 끌어내기 용이할 것임 ● 소규모형의 경우에는 체장, 어획량 등을 정확히 제한해 제한량 이상의 어획물에 대해서는 추가금액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가능 ● 기타 수산물 직판장 개설을 통해 어촌의 수산물 판매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 	

단체관광형과 소규모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데, 단체관광형은 뽕배 체험이나 각종 이벤트 중심으로 개발하되, 갯벌상태를 고려해 체육행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갯벌마라톤이나 갯벌축구처럼 비교적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체육활동 보다는 갯벌씨름과 같이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만을 이용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측면을 강화한 프로그램(갯벌 보존 행사)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인근 학교의 체육대회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갯벌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경우 학교관계자나 관련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이들 갯벌행사 주최측과 연계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관리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어업인 공동체에게 있으며, 유어낚시형과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형의 경우, 갯벌체험을 주력으로 하되, 갯벌체험만으로는 체류를 유도하기 곤란하므로 어업체험이나 유어낚시와 같은 다른 유형의 레포츠피싱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 체험어업형

체험어업형은 지인망과 같이 일부 대규모 이용객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규모 그룹이 참여하는 형태가 많으므로, 기본모델을 소규모 그룹형 체험마을로 한다. 그러나 동해와 서남해역의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해 동해는 체험어업을 위주로 하되 수중관찰형을 부가하는 형태, 서남해는 체험어업을 주력으로 일부 갯벌체험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체험어업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도 동해는 탁도가 낮고 수질이 좋다는 점을 활용해 창경바리나 손꽂이잡이와 같은 전통어업 체험 등으로 특화하고, 서남해안은 김이나 바지락 등 양식장이 많으므로 이러한 양식장을 활용해 양식체험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6 체험어업형 발전모델 설정

구분	내용	
기본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그룹형 체험마을 ● 동해형 (체험어업+수중관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해형 (체험어업+일부 갯벌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의 탁도가 낮은 수질을 이용하는 어업(창경바리, 손꽂이잡이 등) 특화 ● 일부 수중관찰형 체험 가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횃불조업, 김양식, 패류양식 등 양식체험 특화 ● 일부 갯벌체험 가미
관리 및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업은 어업인이 체험안내자로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않음 ● 하지만 레포츠피싱 이용객과 어업인(체험어선이나 장소대여자)을 균등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단, 어촌계 협의과정을 통해 체험어업에 대한 체장제한, 어획량제한을 명확히 하고, 체험안내자인 어업인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어촌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업 참가료(어선대여료, 기타 체험에 필요한 도구 대여료 포함) ● 숙박 및 기타 시설사용료 ● 수산물 간이직판장 개설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 ● 일부 수산물에 대한 가공 등 서비스 제공비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업을 통해 레포츠피싱 이용객이 어획, 채포한 수산물을 어촌에서 단순가공, 배송까지 해줌으로써 체험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업형은 지인망 등 일부 어법을 제외하고는 단체형보다는 대부분이 소그룹이 참여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그룹형 체험마을을 기본모델로 함 ● 단, 동해와 서남해의 해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해는 별 기구없이 손으로 직접 수산물을 수확하는 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을, 서남해는 김양식이나 바지락양식 등이 발전해있다는 점을 살려 양식장 체험이나 야간 횃불조업 등으로 특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체험어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마을공동운영회를 통하도록 하되, 마을공동운영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레포츠피싱 이용객과 어업인(즉 체험어선 대여자)을 균등하게 매칭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매칭시스템이 없이는 이용객이 개별 어업인과 직접 접촉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 수익이 모두 이 개별 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용객이 초과어획이나 체장제한 이하의 수산물을 어획할 경우 그 피해는 어촌계 전체로 전가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체험어업형이 성공적으로 어가소득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마을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과정을 거친 매칭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마을공동운영회를 중심으로 체장제한, 마릿수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체험어업형의 경우에는 어촌계회원이나 운영위원회에 가입한 마을주민이 레포츠피싱을 직접 안내함과 동시에 이용객의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갯벌체험이나 유어낚시 등 다른 레포츠피싱 유형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다. 하지만, 이들 체험안내자(주로 어촌계 회원)들로 하여금 마을공동운영회에서 제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체험어업형의 경우, 개별어가를 기반으로 모든 레포츠피싱 활동과 숙박, 기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수중관찰형

수중관찰형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그룹형 체험마을로 조성해나가도록 한다. 스킨스쿠버와 같이 직접 수중에 입수해 수중생태계를 관찰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관찰행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수중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킨스쿠버 дай버들은 불법적 행태를 자행해왔고 이로 인해 마을어촌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은 전문적으로 스킨스쿠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마을어촌계 계원들은 스킨스쿠버라는 말만으로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이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강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적으로 전문 스킨스쿠버나 기타 다이버들을 위한 전용구역을 지정해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아마추어 수준의 레포츠피싱 이용객이나 가족, 친구 단위 소규모 그룹의 수중관찰형 체험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어촌계의 저항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중관찰형의 경우에는 어촌계의 저항이 심한 만큼 어업인들이 이용객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험어업의 경우처럼 수중관찰형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용객을 직접 어업인이 어선에 승선시켜 안내자겸 관리자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중관찰형 체험마을의 경우, 마을어장 내에 섬이 포함되어 있다면 섬주변을 유어장으로 지정해 유어객이 반드시 어촌계원의 어선이나 관리선을 통해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유사한 형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표 7.7 수중체험형 발전모델 설정

구분	내용
기본모형	● 소규모 그룹형 체험마을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유어장형태	● 섬주변 유어장 혹은 육역과는 떨어져 있어 반드시 유어선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유어장 - 이러한 유어장 형태여야 수중관찰형 레포츠피싱 이용객에 대한 관리가 용이
관리 및 운영형태	● 유어선을 대여해주는 어업인 자체가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 ● 레포츠피싱 이용객에 대한 체장이나 어획량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 ● 유어장 관리 및 운영은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함
어촌소득증대	● 입어료, 숙박료, 부대시설 이용료 및 기타 판매료, 어촌계에서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판매, 기타
모델설명	● 수중관찰형은 그 동안 자원활용에 있어 경합관계를 띠면서 어촌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이는 전문 스쿠버다이버들이 실제로 마을어장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채포한 때문 ● 그러나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그룹형으로, 유어선을 반드시 이용해 이동하도록 개발한다면 어업자들이 안내자이자 유어선 대여자로 기능하면서 관리까지 용이해지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도서형

도서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관광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일제근무가 정착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패턴으로 전환되면서 관광이나 여가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즉 장기체류형 관광개발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을 장기체류형 레포츠 피싱 거점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서형이 갖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접근성이 낮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도서지역에 들어가면 되도록 가능한한 도서지역 내에서 모든 관광 및 체험수요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즉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도서지역을 장기체류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레포츠피싱의 네 가지 유형을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지역은 물품조달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므로, 이러한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련 레포츠피싱 시설을 한 곳으로 집적시켜 단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해 관광 및 편의시설은 민간투자, 진입도로 공사나 기타 인프라 조성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시설하는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에 어촌주민의 일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는 이러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유입되는 관광객을 위해 어업인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레포츠피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어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없이는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입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어가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어업인에게

만 맡길 경우, 전문 지식이나 지원체계 부족으로 역시 어가소득과의 연계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어업인과 지자체의 협조 하에 실질적인 레포츠피싱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7.8 도서형 발전모델 설정

구분	내용
기본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레포츠피싱 단지화 (장기체류 유도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유어낚시+체험어업+갯벌체험+수중관찰 통합 ● 유어낚시의 경우, 온 가족이 유어선에 동승하고 수산물을 시식해 보는 등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기타 관광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관건
관리 및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단지화하는 경우, 어업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업체가 필요함. 이때 관리 및 운영에 어촌주인이 참여가능하도록 함
어촌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선 대여료, 수산물 판매료, 단지내에 고용되어 받는 월급, 기타 ● 레포츠피싱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파생소득(수산물 판매료)
모델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함 ● 그러나, 물품조달이라든지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레포츠피싱 시설을 한데로 집적시켜 단지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므로, 상술한 네 가지 유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시범사업 실시계획

이렇게 설정된 유형별 개발모델을 기본으로 레포츠피싱 활성화와 어가소득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2006년~2007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유형별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i) 본 사업 실시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ii) 체계적 사업추진을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iii) 관리모델의 개발제시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iv) 모델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시범지역 선정

레포츠피싱 시범지역은 이미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2001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9개소, 2002년 8개소, 2003년 11개소, 2004년 12개소를 포함해 총 40개소를 검토대상에 포함시켰으며²⁸⁾, 이 외에 해수부에 의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전문가 의견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실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2개 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28) 올해 들어 17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놓은 상태이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에 걸쳐 55개를 더 선정해 사업비 36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되면 2013년에 가서는 103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선정돼 개발, 육성되게 됨

표 7.9 대상지역 유형별 구분

구분	마을명칭	지역	기타 프로그램
유어 (8)	거일체험마을	울진군	갯바위낚시, 양식장체험, 스킨스쿠버, 온천욕, 유적지탐방
	고산체험마을	북제주군	바다낚시, 잠수함
	남해체험마을	양양군	바다낚시, 갯바위낚시, 정치망
	대진체험마을	동해시	갯바위낚시, 정치망/채낚기어선승선체험, 오징어맨손잡이, 해수욕
	도장포체험마을	거제시	갯바위낚시, 멸치건조, 조개잡이, 유적지탐방, 해수욕
	문항체험어장	남해군	유어낚시, 갯바위낚시, 갯벌맨손체험, 원시돌발어업
	지족체험어장	남해군	바다낚시
	저도 유어장*	사천시	해면유료 낚시터, 죽방렴체험, 해수욕
갯벌 (19)	궁평체험마을	화성시	갯벌체험, 바다낚시, 해산물 조리체험, 슬로우푸드(젓갈)
	다사리체험마을	서천군	갯벌체험, 바다낚시체험, 독살체험, 김양식체험, 어선어업체험
	두우체험마을	영광군	갯벌체험, 조개잡이, 송어잡이, 염전체험, 해수욕
	모항체험마을	부안군	갯벌체험, 바다낚시, 지인망/정치망체험, 해수욕
	석두체험마을	함평군	갯벌생태체험, 정치망체험, 해수짚질, 나비축제
	선감체험어장	안산시	갯벌체험, 맨손어업체험, 갯바위낚시, 바다낚시
	선소체험마을	보성군	갯벌체험(꼬막, 낙지), 바다낚시
	송계체험마을	무안군	갯벌체험, 갯바위 낚시, 정치망체험, 양식장체험
	송석유어장	서천군	갯벌탐사(조수변화관찰), 조개류(동족) 양식어업
	오이도체험마을	시흥시	갯벌체험, 조업체험, 바다낚시
	와온체험마을	순천시	갯벌체험(조개잡이, 짱뚱어/꾸꾸미), 해수짚질
	월하성유어장	서천군	갯벌맛사지, 야간횃불조업, 양식어업, 건강망체험, 바다낚시
	전곡체험마을	화성시	갯벌체험, 어선승선체험, 유어낚시, 양식장체험
	제부체험마을	화성시	갯벌체험, 맨손어업, 유어낚시, 바지락 가공체험
	진두체험마을	웅진군	갯벌체험, 패류채취 및 시식, 망둥어 낚시
	큰무리체험마을	중구	갯벌체험, 조업체험, 바다낚시
	하저체험마을	강진군	갯벌체험, 어선승선체험, 조개잡이, 바다낚시, 도요지체험
	하전체험마을	고창군	갯벌맨손낚시, 축제식 낚시, 김/미역말리기
	증도갯벌*	신안군	갯벌체험장, 갯벌축제, 해수욕, 대규모 고급 관광휴양단지 조성
체험 (12)	강정체험마을	서귀포시	어선승선체험, 정치망체험, 해할현상체험
	공수체험마을	부산시	지인망체험, 전통어업체험, 해조류말리기 체험, 바다낚시
	냉천체험마을	남해군	각망어장체험, 야간횃불조업, 갯벌체험, 바다낚시
	대진체험마을	영덕군	양식장체험, 정치망조업체험, 스킨스쿠버
	대탄체험마을	영덕군	정치망체험, 미역채취 및 건조, 은어잡이, 스킨스쿠버
	대항체험마을	부산시	육소장망(송어), 대구잡이(호망), 김 양식장체험, 갯바위낚시
	동화체험마을	고성군	굴양식체험, 정치망체험
	만돌체험마을	고창군	건강망체험, 후릿그물체험, 김 양식장 체험, 바다낚시
	오호체험마을	고성군	정치망/채낚시어선 승선체험, 해조류채취 및 말리기, 바다낚시
	유동체험마을	통영시	정치망/자망체험, 해조류말리기, 패총체험
	장호체험마을	삼척시	정치망조업, 문어통발, 고동/따개비따기,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죽림체험마을	진도군	주낙/채낚기체험, 해조류 채취체험, 김가공건조
수중 (3)	경정체험마을	영덕군	스킨스쿠버, 대게잡이체험, 정치망체험, 수산자원연구소견학
	위미리유어장	남제주군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갯바위낚시, 해안가바닷잡이
	하예체험마을	서귀포시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어선승선체험, 조개/보말줍기

주 : *는 어촌체험마을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포함된 지역임

그리고 이들 42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체험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를 레포츠피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유어낚시형이 8개(어촌체험마을 7개, 저도 유어장), 갯벌체험형이 19개(어촌체험마을 18개, 증도갯벌관광단지), 체험어업형이 12개, 수중형이 3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분류표를 토대로 각 유형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해 10개 잠재 시범지역을 도출한 후, 2차로 이 10개 지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한 결과 5개 유형별 시범지역을 선정하였다(세부 평가내용은 <부록 5> 참조). 단 평가항목은 시설기반²⁹⁾, 접근성, 인지도, 프로그램 다양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고자 하였으나 어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요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표 7.10 시범지역 선정결과

구분	시범지역	비고
유어낚시형	사천 저도	
갯벌체험형	부안 모항, 서천 월하성	1개소 최종 선정(서천 월하성)
체험어업형	삼척 장호, 부산 공수	1개소 최종 선정(삼척 장호)
수중관찰형	남제주 위미	
도서형	신안 증도	

2. 시범지역 개발방안

가. 유어낚시형 (사천 저도)

(1) 현황 및 개발여건

저도는 경남 사천에 포함된 하나의 섬으로, 섬둘레 1.5km에 가구수는 총 20채 정도에 불과한 조그마한 섬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마을어장의 일부를 유어낚시터로 개발해 운영 중이다.

전체 어촌계 계원이 18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선어업(외줄낚시)을 하고 있으며, 유어선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계원은 없다. 그리고 이 지역은 물바지락이 많이 나는

29) 시설기반: 어촌체험마을 사업진행 여부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점,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연도별 차등 적용

접근성: 수도권, 각 권역별 주요도시로부터의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항공기나 배 등 보고 교통수단 이용여부에 따라 평가

인지도 : 레포츠피싱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한 결과 반영

프로그램 다양성 : 주요 프로그램, 부수적 해양프로그램, 기타 관광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평가

지역으로 국내에서 품질이 좋은 물바지락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간 방문객을 보면, 성수기 하계 휴가철(7월~8월)에 가족관광객이 하루 최고 120명가량에 육박하고, 봄·가을철에는 주말을 이용한 방문객이 꾸준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초기 방문객의 재방문이 매우 많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계에는 가족관광객보다는 개인방문객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겨울철을 이용해 시설보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고 있었다.

이곳은 섬이기 때문에 관리선 1척(3톤, 승선정원 5명)을 두어 방문객을 수송하고 있었는데, 관리선을 이용하는 비용은 개인당 5,000원이었다. 이 외에 입어료 5,000원을 포함해 저도에서 유어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해, 다른 유어장에 비해 비교적 요금이 비싼 편이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연간 수입은 약 6,000만 원~7,000만 원가량으로, 이 중 운영비 일부를 제외하고 2004년의 경우 한 어가당 약 300만 원의 순수입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3,000만 원을 들여 인공어초 및 기타 투석사업을 실시했고, 2005년에도 3,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자원조성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특히 대부분의 인공어초를 마을어장 내에 투입함으로써 자원증대효과가 컸고 이로 인해 현재 이 유어장에는 감성돔, 볼락, 놀래미 등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유어낚시객에게 상당한 유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어장 관리운영 측면을 보면, 상주 관리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을자율공동체를 조직해 15명의 회원이 순번제로 관리선을 이용한 방문객 수송과 방문객 이용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회원이 많지 않고 폐쇄적인 마을 특성상 순번제 관리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유어장 운영 3년째가 되는 2005년에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공동체 회원이 자신의 당직일이 되면 특별한 조치가 없이도 당직을 서는 등 운영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특히 이 유어장은 해상잔교 형으로 약 100m 가량의 잔교를 띄워 이곳에서만 유어낚시가 가능하도록 하되, 기타 유어선을 이용한 선상낚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또한 마을자율공동체에서는 숙박 시설 2개동을 지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녀회가 3명 1개조씩 역시 순번제로 숙박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자원증식사업을 벌이는 등 이 지역은 운영 및 관리가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지역의 유어낚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먼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당시설이 없고, 기타 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이 부족해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유어낚시터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가 있어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둘째, 유어낚시 이외에는 별다른 체험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가족관광객 비중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없었다.

셋째, 관리선 문제였다. 관광객 중 상당수가 관리선을 이용해 섬주변 경관이나 남해대교 주변

을 관광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고, 이를 관리선 당직자에게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은데도 관리선이 3톤으로 승선정원이 5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선실(Cabin)이 없어 관광객을 태우고 1~2시간 가량을 관광하기에는 안전성이나 편의성 모두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표 7.11 저도의 시설현황

구분	시설현황
유어장시설	'T'자형 해상잔교, 길이 100m
숙박시설	2개동(방 12개) : 1일 숙박가능인원 최고 120명(100명 적정)
식당시설	없음(숙박시설 내에 간단한 조리시설 구비)
기타 편의시설	화장실(2조), 공동작업장 1개동, 물양장 등

따라서 저도의 경우, 기 개발되어 있는 유어낚시형 체험장 등의 시설 및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가소득과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에도 가족단위 관광객이 적지 않으므로 향후 해상잔교낚시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중심 유어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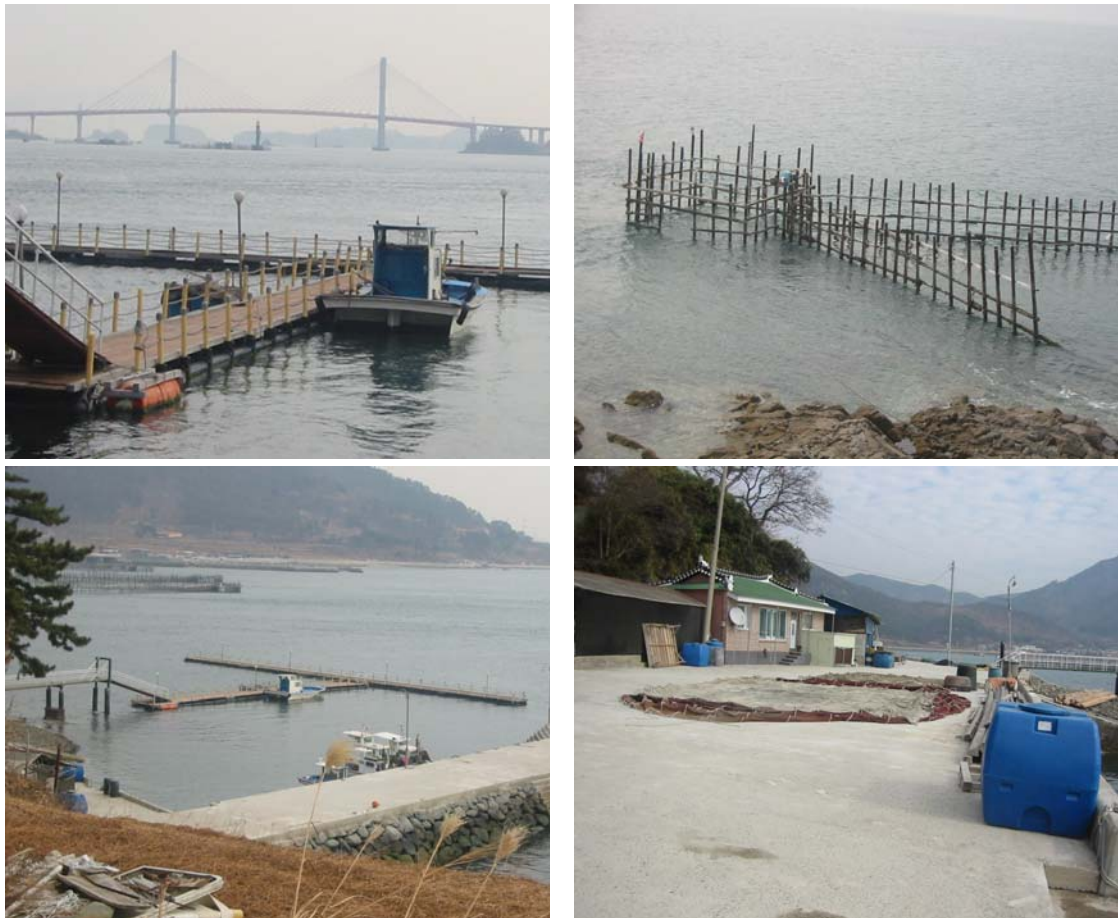


그림 7.3 사전 저도의 시설현황 및 전경

(2) 개발계획

- 기본모형 : 해상잔교형 바다낚시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형 유어장
- 개발방향
 - (i)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시설 정비
 - 수심이 얇은 공간을 이용, 해상가두리 시설을 개조해 어린이용 낚시공간으로 조성
 - 마을어장 내 죽방렴을 이용. 체험프로그램화
 - 해상잔교에 통발을 매달아, 각 통발을 가족에게 분양(해당가족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ii)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관리선 개조(Cabin) 혹은 관리선 확충(1척)을 통한 해안경관 감상 프로그램 지원
 - (iii)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쉼터 및 산책로 등 편의시설 확충
 - 숙박시설 1개동(30명 수용 가능), 자연친화형 산책로 조성
 - (iv) 어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어장 및 어항관련 시설 정비 및 확충
 - 간이 판매시설 등 조성

(가) 어린이용 낚시공간 조성

해상잔교에서 부부의 유어낚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해상잔교가 위치한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수심이 얇은 공간을 이용해 해상가두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해상가두리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을 대비해 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한다. 이렇게 개조된 해상가두리 2조에 비교적 저가어종들을 풀어놓고 낚시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특히 경험이 풍부하고 실제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노령인구를 활용해 어린이를 위한 낚시지도나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한다.

(나) 죽방렴 체험프로그램화

저도 주변에는 죽방렴 시설이 많고, 마을어장 내에도 죽방렴 시설이 되어 있다. 특히, 이들 죽방렴은 유어장의 해상잔교와 매우 가까이 시설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상잔교를 100m 가량 증설해 죽방렴과 연결해, 유어낚시를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죽방렴 체험프

로그래밍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멍동이나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어린이들의 진입을 일정 정도는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7.12 저도 유어낙시터의 현황 및 향후 개발방안

구분	현재	향후
기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도서형으로 사천 해안도로에서 배로 약 5분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형 유지 (연육교 설치 등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잔교 낚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잔교 낚시 활성화 ● 죽방렴을 이용한 전통어업체험 ● 어린이를 위한 해상가두리 낚시체험 ● 해안가 산책
자원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상태 : 인공어초 투하, 중요방류로 자원 상태 매우 양호함(불락, 감성돔 등 풍부) ● 해면유어장 : T자형 해상잔교형태. 길이 100m ● 숙박시설 : 마을공동운영회 운영 2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최대 120명 숙박가능 (최소 3인용~최대 10인용) ● 편의시설 : 화장실 시설 등 미흡 ● 어항의 정비상태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잔교 증설(100m) ● 해상잔교와 죽방렴을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면유어시설 확충(해상잔교 100m)효과 및 죽방렴체험 활성화, 이용객의 동선단축 ● 어린이용 해상가두리 낚시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낙시터 시설과 인접한 공간에 조성 ● 숙박시설 확충 : 최대 100명 수용 가능 ● 소공원시설 확충 : 공원시설과 해안 ● 수산물 간이직판장 시설 확충 ● 정보화시설 확충 : 인터넷 사용시설 ● 안전시설 강화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장 관리 : 마을공동운영회 1인 (순번제 기본, 공동관리) ● 숙박시설 관리 : 마을공동회 내 부녀회 3인 1개조 (순번제, 공동관리) ● 자체관리선 1척(3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공동운영 시스템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향후 관광객 증대를 대비해 상주 관리인력 확충 고려 ● 체장제한은 엄격히 관리하도록 어업인과 이용객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제한 초과량에 대해 판매로 연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회원중 어선어업자들 다수 ● 인근에 죽방렴 시설 다수 ● 수려한 해양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내에 위치한 전기용 침탐의 정비 ● 마케팅 강화

(다) 가족별 통발분양

저도는 해상잔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형 유어낙시터를 기본모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해상잔교를 낚시장소 이외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족별 통발분양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잔교의 하단부에 통발을 매달아 전복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가족단위로 통발 수개를 분양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목적에도 부합하고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요소로 삼도록 한다.

(라) 해양경관 감상 프로그램

저도는 국립해양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해양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이 주변 해상경관을 감상하고자 하는 수요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척인 관리선을 2척으로 늘리고, 새로이 들여오는 관리선은 선실(Cabin)을 갖춘 중규모 선박으로 함으로써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마) 편의시설, 간이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확충

현재 부족한 숙박시설을 1개동 증설하도록 하고, 소규모 가족형에 맞추어 4~5인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2개조에 불과한 화장실 시설을 2개조 더 증설하되 해상잔교와 어린이용 해상가두리 낚시터가 위치하는 주변에 배치하고, 세족장을 갖추도록 한다. 숙박시설 후면으로는 숙박시설-등대를 연결하는 자연친화형 산책로를 약 1km 가량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해상잔교와 해상가두리, 공동작업장이 위치한 어항공간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이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3) 개발의 장애요인

현재 사천 저도는 섬 전체가 한려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때문에 시설물의 설치 및 행위제한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레포츠피싱 관련인프라 및 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마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자체나 해수부 차원에서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수심이 매우 깊어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숙박시설을 증설할만한 공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갯벌체험형 (서천 율하성)

(1) 현황 및 개발여건

서천 율하성지역은 2000년도에 어촌계가 조직되었으며, 회원수는 2005년 말 기준 총 51명으로 이 중 어선어업자가 28명이며 대부분이 2톤 이상의 소형어선을 이용해 연안에서만 어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유어선 신고를 한 경우는 2건으로 매우 적었다. 특히 어선어업자들의 경우, 어로할

등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을 자체 어항이 없어 주변 흥원항으로 싣고 가야 하는 형편이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를 주축으로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총 회원수는 10명에 불과하지만 마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월하성 지역은 지난 2002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체험어장 면적은 총 26ha로 주로 바지락, 맛, 기타 조개류를 채취할 수 있다. 특히 체험장 내에 사구가 잘 발달해 있으며, 사질니질 혼합형 등 여러 종류의 갯벌이 두루 발달해 있어 교육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지정 당시, 사업자금 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종합관리사무소(1개동 2층)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에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연간 체험어장 방문객 수는 7만여 명으로 서천군내 최고 규모이자 국내 갯벌체험 어장 가운데서도 수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70% 이상의 방문객이 하계(7~8월)에 집중되고, 춘계와 추계 주말은 이용객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동계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렇게 많은 방문객에도 불구하고 연간 체험어장을 통한 수입은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가량으로, 1명의 방문객이 체험어장 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약 1,000원 내외에 불과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현재 체험어장 이용료로 어른은 3,000원, 청소년 이하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으며, 단체체험객의 경우 관광버스 1대당 3만 원~3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 체험어장의 경우, 상주 관리인력 1명을 두고, 성수기에는 2명 정도의 임시직을 고용해 이용객을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상주 관리인력에 대해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다, 임시직 비용까지 더해 관리인력 비용으로 약 7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간 관리 및 운영비는 약 1,000만 원으로, 인건비, 전기료, 소금대, 장화 등 기타 대여장비 확충비로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작년 성수기에는 방문객들이 버린 쓰레기 처리 및 기타 체험장 관리를 위해 어업인이 어업활동까지 포기하고 어장관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리 및 운영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기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민박시설로 펜션 10개동(1일 200명 가량 수용 가능)과 일부 지역민이 운영하는 민박시설이 있었으며, 횃집 2개소가 있을 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최근에는 지역민들이 어가를 민박시설로 개조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 외에 현재 충남도청이 발주하여 물양장 증축사업(호안공사 ; 34m, 매립공사 : 3,167 평방미터)을 벌이고 있었으며, 갯벌체험장과 어촌을 연결하는 200m 가량의 진입도로(호안공 : 260m, 매립공사 : 4,347 평방미터, 선양장공 : 26m)가 조성되어 있다. 기타 체험장 입구에 맞닿은 진입도로의 폭을 약 20m 가량 넓히는 공사를 올해 3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체험어장 구성에 대한 어업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어촌체험마을 지정 이후 실질적으로 어가소득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어촌체험마을 지정 이전에 현재 체험어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어장에서 연간 2,000~3,000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어가들이 있을 정도로 맛 채취가 어가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체험어장 조성 이후 마을어장의 소득에 대한 공동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소득 측면에서는 별 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종패사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비용의 종패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외에 체험어장 운영비가 연간 1,000만 원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어촌계회원의 연령이 높아져 향후 고령화를 대비해 어선어업이나 어업활동에서 어촌 및 해양관광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민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 이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되었다.

첫째, 체류형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인데, 갯벌체험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지역은 주로 마을어장 인근에서 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다와 어항을 왕래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어 어선승선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 어선이 대부분 2톤 이하 소형어선으로 승선인원이 최고 2명으로 묶여 있어 어선승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둘째, 세족장과 화장실 등 레포츠피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시설된 종합관리사무소에 세족장과 화장실이 있었지만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그 이유는 이 지역 갯벌은 사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체험객들이 체험 이후 세족을 하거나 채취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모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하수구 입구를 매우 좁게 해놓는 등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어촌계는 세족장과 어촌정보화 시설이 갖추어진 종합관리사무소를 폐쇄해 놓은 상태였으며, 이를 대신해 어촌계에서 간이 세족장과 화장실을 종합관리사무소 외부에 설치해두긴 했지만, 화장실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악취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셋째, 휴식공간(체험객과 지역민을 위한 쉼터)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현재 체험객과 지역민이 짧은 시간이라도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체험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미비했는데, 간이 수산직판장, 먹거리장터나 기타 체험객이 채취한 수산물을 자신들이 요리해 먹을 수 있거나, 이 지역 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었다.

서천 월하성 마을은 넓은 갯벌체험어장, 지역민의 관심, 현재 국내 갯벌체험어장 가운데 인지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연간 방문객이 많다는 점 등 개발여건은 양호하다. 따라서 앞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체험어장 운영을 어가소득으로 연계시키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 개발방향

- 기본모형 : 단체관광형 갯벌체험마을과 체험어업-갯벌체험을 병행한 소규모 가족 체류형 마을
- 개발방향
 - (i) 종합안내소의 기능강화와 단체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현 종합안내소의 기능을 갯벌홍보 및 교육관으로 재편
 - 자연친화형, 개방형 세족장 설치, 화장실 증설, 주차장 완비
 - (ii) 체류관광객을 위한 체험어업 프로그램 개발
 - 어선승선체험 프로그램화(개별어가-소규모 관광객 연계)
 - 승선체험 이후 부대활동까지 프로그램으로 연계
 - (iii)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쉼터 및 산책로,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
 - (iv) 어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어장 및 어항관련 시설 정비 및 확충
 - 간이 직판장, 간이 시식시설 등 조성

표 7.13 율하성 갯벌체험장의 현황 및 향후 개발방안

구분	현재	향후
기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 ● 주변에 송림자연휴양림, 마량포축제, 전어축제 등 연계가능한 관광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권 가족관광객 중심 : 체류형 ● 학습형 단체관광객 일부 : 통과형 ● 춘장대 해수욕장, 한산 모시타운, 동백정, 해양박물관, 띠섬 등과 연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 외,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 : 뽕배를 이용한 갯벌체험 다양화 ● 어선체험어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승선, 승선 후 부대활동 체험 등
자원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상태 : 체험어장 홍보부족으로 관광객의 무분별한 치패남획 증가. 바지락 및 가무락 등 주요 자원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 어장진입로 :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진입로와 관광객의 자동차 진입로가 같아 어선어업자들의 피해 심각 ● 숙박시설 : 마을주민 운영 숙박시설 10개 (하루 50명 숙박가능). 최근 펜션 증가추세 ● 편의시설 : 주차장 시설정비 중, 특히 화장실, 세족장 등 편의시설 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확장 : 어선승선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필수적 (충남도청에서 계획 중) ● 수산물 간이직판장 : 체험어장과 어촌정주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수산물 간이직판장 시설 도입(현재 이 지역 어선어업자들이 여획한 수산물을 수협까지 운반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비효율) ● 숙박시설 : 어촌마을 분위기에 맞는 중규모의 펜션시설 확충, 어가의 시설개조 ● 편의시설 : 개방형 세족장, 화장실시설 확충 ● 소공원(일종의 쉼터) 조성 ● 정보화시스템 시설 : 인터넷 사용가능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장 관리 : 상주 관리인력 1명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장 입장료 징수하는 기능만 수행 - 자원관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입장료 : 성인(3,000원) 유아(무료), 단체관광객은 1대당 주차료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어장 관리 : 상주 관리인력 ● 기타 주변 시설물 관리 : 마을공동조직체 ●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장제한 : 엄격 관리(홍보 강화) - 어획제한 : 초과량을 판매로 연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인근지역 공무원연수원이 들어설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강화

(가) 종합안내소 기능강화 및 시설정비

앞서 지적한 대로 종합안내소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단체형 관광객을 위한 교육 및 홍보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하도록 한다. 특히 종합안내소 내에 시설된 세족장을 사질이 많은 갯벌의 특성을 고려해 변경하도록 하고, 종합안내소와 어장진입로가 맞닿아 있는 주변부에 개방형 세족장(씻으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도록 하며, 주차장 일부공간을 활용해 화장실 시설을 증설하도록 한다.

(나) 어선승선 및 기타 체험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가족이나 그룹의 체류를 위해 지역어업인의 안내를 받아 어선승선 및 어로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개별 어가와 연계해 어선승선부터 어로활동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후활동(어획물 거두기, 그물짜기, 수산물 손질하기, 시식) 일체를 패키지 프로그램화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킨다.

(다) 편의시설 및 기타 소득연계 시설 확충

특히 이 지역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 주변부에 간이직판장을 설치함으로써 휴식기능과 판매기능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충남도청이 체험어장과 연결되는 진입로의 너비를 20m 가량 넓히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체험어장 입구부에 원두막이나 정자형태의 자연친화적 쉼터를 조성하고 쉼터 전면에 간이 직판장을 설치한다.

(3) 개발의 장애요인

윌하성 체험어장이 위치하고 있는 서천군 비인면 관내에는 다사리, 송석리 등 어촌체험마을이 다수 지정되어 있고, 새로이 인근어장에서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관광객을 두고 경쟁관계를 벌일 수 있는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인근지역과의 프로그램 연계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이 지역은 어선승선 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좋지만, 어선의 규모가 작아 승선인원이 2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위원회 명의로 4~5명이 승선할 수 있는 규모의 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체험어업형 (삼척 장호)

(1) 현황 및 개발여건

장호 어촌체험마을은 가구수 73세대, 인구 188명의 작은 마을이며, 어가는 47세대로 어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총 어촌계원은 36명이며, 총 어선수는 56척으로 유어선이 21척에 달할 정도로 유어낚시가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마을어업(33ha), 정치망어업(4ha)과 양식어업(9ha) 등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어업허가 건수는 43건으로 대부분이 연안어업(연안유자망 22건, 연안복합 18건, 연안통발어업 3건)에 종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미역, 다시마, 전복, 해삼, 광어, 우럭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13억 5,800만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한 후, 연간 관광객수가 사업이전 약 2,700명 정도에서 최근 7,00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은 선상낚시로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이루어지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여러 가지 낚시를 이용하여 대구나 감성돔을 잡으며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선상낚시에는 주로 2~8톤의 연안어선이 이용되며, 승선은 5~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유어선 1척당 400,000만원이 소요되어 비용이 다소 비싼 편이다. 가두리양식장을 이용한 양식장 체험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다에 설치된 양식장에 배를 타고 나가 먹이도 주면서 방어, 볼락, 쥐치, 돌돔 등 양식종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식장 관리선(3~7톤) 4척이 이용되고 있으며, 경비는 4인 1시간 기준으로 척당 50,000원 선이다.

이 외에 해송에 둘러싸인 소규모 장호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반 환경이 뛰어나며 많이 알려지지 않아 여유 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해수욕장 주변 산책로에는 맨발지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장호마을은 지난 2005년 원덕읍 갈남 1리 마을과 함께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09년까지 5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해안경관을 복원하고 일출공원조성과 해안산책로 조성, 주택개량,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명도와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의 방문이 많지 않아 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성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며, 먹거리나 기타 즐길거리가 단조롭고, 특히 숙박시설 등이 전무해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지 숙박시설도 모텔 1개소뿐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하루 40~50명의 대구잡이 유어낚시객들이 찾을 뿐 어촌체험시설이 빈약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도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림 7.4 삼적 장호의 시설현황 및 전경

(2) 개발계획

- 기본모형 : 가족중심의 소규모 체험형 레포츠피싱마을로 개발
- 개발방향
 - (i)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시설 확충, 정비
 - 오징어채낚기 승선체험, 문어통발 및 맨손낚시 등 체험프로그램 강화
 - 해조류 따기와 건조체험 등 강화
 - 어획물을 야외에서 시식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증설
 - (ii) 숙박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
 - 중고급형 펜션 시설 확충 : 2개동 (마을 공동운영), 기타 민자로 확충
 - 맨발지압용 시설물 증설(50m 가량)

(iii) 마케팅 활성화

표 7.14 장호마을의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구분	현재	향후
기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호항(아름다운 항구마을) 수려한 자연경관(동양의 나폴리) 장호용화관광랜드 등 연계자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체험형 레포츠피싱 마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어업체험(정치망체험, 가두리 양식장체험), 선상낚시 문어통발 등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해수욕 및 맨발지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징어채낚기어선 승선체험 문어통발 및 손공치어업, 맨손낚시 등 해조류 따기와 건조체험 어획물 직접 시식프로그램 활성화 스킨스쿠버와 유어낚시를 활성화
자원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상태 : 깨끗한 수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상태는 비교적 양호 숙박시설 :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1개 (하루 30명 숙박가능) 편의시설 : 주차장 시설 및 관리실 확충 중. 그러나 화장실, 세족장 등 편의시설 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장 체험을 위한 부대시설 해조류 건조체험장 수산물 간이직판장 시설 스킨스쿠버와 선상낚시가 가능한 유어장시설 및 표시설 레포츠피싱 관련 장비 및 도구 보관시설 정보화시설 : 인터넷 사용 가능 숙박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 증설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어업 : 체험어업 활동에는 반드시 어업인이 안내자로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어업인이 안내 및 관리기능까지 겸하게 되는 운영상의 장점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어장(스킨스쿠버와 선상낚시) 및 체험어업 : 체험어업 어선주가 체험어업 교육자 겸 관리자 가능 기타 시설물 관리 : 상주 관리인력 공동운영 숙박시설 : 어촌계 공동관리 체장제한은 엄격히 관리하도록 어업인과 이용객 홍보 강화 어획제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판매로 연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장호마을의 경우 어촌체험마을 지정 이후 연간 7,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 어가당 약 1,000만원의 어업외 소득을 얻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체험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되, 다른 유형의 레포츠피싱까지 연계시켜 발전시킴으로써 어촌소득을 극대화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어선변형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필리핀의 경우, 바다에서 어선이 장시간 떠있기 위해 선측으로부터 대나무로 된 장대를 덧대는 식으로 어선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음)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현재 이 지역은 선상낚시와 가두리 양식장 체험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일부 어선승선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삼척 장호마을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체험어업형 레포츠피싱 마을을 지향한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연안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어선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많다는 장점을 활용해 수심이 낮고 바람이 적은 마을어장 일

부를 체험어업용으로 구획화하여 3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험어업을 하면서, 체험어업을 통해 잡은 어획물을 선상에서 바로 요리해 먹도록 하는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맨손낚시나 창경바리 어업 등을 가족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 등을 따고 건조하는 등의 체험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나) 체험프로그램 관련 시설, 숙박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

이러한 체험어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와 어획물을 일시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간단한 보관시설을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확충하도록 한다.

또한 이 지역은 마을 진입로를 중심으로 선착장 및 어업인의 정주공간은 좌측에, 해수욕장은 우측에 치우쳐져 있으며, 그 중간에 맨발지압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즉 선착장 및 어업인의 정주공간이 위치한 좌측에서 맨발지압 시설물이 있는 곳을 따라 해수욕장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맨발지압용 시설물을 50m 가량 증설하여 정주공간과 해수욕장의 연결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러나 레포츠피싱을 즐기는 가족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어업인의 정주공간으로부터 인접한 공간에 증축하도록 한다. 단 현재 숙박시설이 매우 미흡하므로 4~5인용 방을 중심으로 2개동 정도(하루 150명 정도 수용가능)의 중고급형 펜션을 증설하되,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해 운영수입을 어업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업인 개인이 어가를 개조해 민박을 하거나, 외지자본의 유입을 통해 증설하도록 한다.

(다) 마케팅 활성화

장호마을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지명도가 낮아 레포츠피싱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는 시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선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명도는 다양한 홍보수단과 채널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삼척 장호마을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케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강원도 지역을 찾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한다.

(3) 개발의 장애요인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받은 사업비로 생태체험관을 완공하였으나 군이 작전상의 이유로 진입로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척시 측에서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협의에 나섰지만 군은 절벽에 철조망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철조망 설치의 미관상 문제뿐 아니라 자연훼손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군과의 보안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생태체험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체험어업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체험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유어선과 양식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주변도로 확충은 도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라. 수중관찰형 (남제주 위미)

(1) 현황 및 개발여건

남제주 위미는 지난 2002년에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체험마을 조성자금 5억 원으로 진입로를 확장하고, 안내판 설치, 족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이 지역은 19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양장이나 공동작업장, 기타 어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당부분 확충한 상태이다.

이 지역은 인근 앞바다에 위치한 지기도라는 섬의 주변 2ha를 유어장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데, 이 유어장에서는 작살을 이용한 스킨스쿠버가 가능하며, 1일 어획량은 2마리로 제한하고 있다. 유어장 입장료는 맨 작살만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은 2만원이며, 고급형은 5만원으로 입어료가 상당히 비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 유어장은 섬 주변에 설정되어 있어 이용객이 유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선 선주가 스킨스쿠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선을 이용해 이동시켜주는 것 외에도 유어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기능까지 하고 있어 유어장 관리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회 활동이 매우 활발했는데, 일부 청년회 회원들이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어촌계원 가운데 다이빙 강습이나 다이빙 관리교육 등을 수강한 회원도 다수였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역은 어선어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었으며, 자체 정주어항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어촌계 회원 124명 가운데 60여 명이 어선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 어선어업자 대부분은 3~5톤급 어선을 통해 갈치(채낚기), 오징어잡이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제주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녀들의 활동이 많았는데, 겨울철에는 소라를, 여름철에는 오분자기와 성게를 주로 채취하고 있었다. 자원상태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주변에 감귤농산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귀포 증문단지와의도 멀지 않아 주변 관광자원도 풍부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추진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체험마을조성사업 자금 대부분이 어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거나, 기타 간접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투자되었다. 때문에 위미지역은 좋은 관광개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 즉 각종 숙박시설 및 음식점, 주차장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에 최근 외지자본에 의해 펜션이 2개동이 들어서고 있긴 하지만, 성수기 이용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숙박시설도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해 이용객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합안내시설이 들어서 있긴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 있었다.

(2) 개발계획

제주 위미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중체험형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스킨스쿠버처럼 직접적 수중동식물 채포행위가 가능한 활동에 대해 어촌계 주민들의 저항이 매우 강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촌계 주민과 레포츠피싱 이용객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기본모형 : 가족중심의 소규모 레포츠피싱 관광마을로 개발(비숙련자 대상)

○ 개발방향

(i) 종합안내센터의 기능 강화

- 안내센터 내부는 교육센터로 기능전환
- 안내센터 주변부를 레포츠피싱 이용객과 지역민의 교류공간으로 활성화
-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ii)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편의시설 확충

- 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우측에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집중 배치

(iii) 마케팅 채널 강화 및 운영체제 정비

표 7.15 위미지역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구분	현재	향후
기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전체의 관광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지역에 대규모 감굴단지 형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낚시, 갯바위낚시, ● 스킨스쿠버(작살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킨스쿠버 작살체험 강화 (어종 다양화) ● 유어장 내 선상낚시 활성화 ● 인접지역의 농업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2003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으로 위미항 진입도로 및 기타 어항시설 정비 ● 어장상황 : 소라, 오분자기, 성게 등 패류 자원상태 양호. 지속적으로 자원방류사업 실시 ● 지기도 유어장(스킨스쿠버형) : 2ha ● 숙박시설 : 마을주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2개 (하루 30명 숙박가능)와 최근 외지자본에 의한 펜션 1동 확충 ● 해양소공원, 종합관리시설, 족구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 펜션형 중급형 숙박시설 증설 ● 정보화시설 : 인터넷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 안전시설 강화 ● 위미항과 현재의 종합관리센터를 다이빙 교육 및 관리, 수산물 판매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장 관리 : 유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이 이용객 관리까지를 겸함. 효율성이 높음 ● 스킨스쿠버의 경우, 2마리 이상 채취 불가하도록 함. 대체로 잘 지켜짐 ● 입장료 : 개인당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장 운영방식 현행 유지. 단 입어료 하향 조정, 어획가능한 어종 다양화 필요 ● 어업인이 유어장 내 스킨스쿠버 교육 및 관리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 가능 ● 체장제한은 엄격히 관리하도록 어업인과 이용객 홍보 강화 ● 어획제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판매로 연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회 회원의 연령대가 비교적 낮고, 마을 내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있을 정도 ● 지역민의 의욕이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강화프로그램 개발 요

(가) 종합안내센터의 기능 강화

현재 이 지역은 종합안내시설, 족구장 및 체육시설, 기타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위한 시설은 마을진입로 우측에 몰려있는 반면, 지역민의 생활기반 시설은 모두 오른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용객과 지역민간의 교류공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민과의 교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종합안내센터의 시설이나 기능을 강화해 교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수중체험의 경우는 이용객과 지역민의 직접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금으로서는 종합안내센터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없이 그 기능이 불분명하며, 체계적 운영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내부시설에 교육 및 홍보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안내센터에서 각종 유어선대여, 숙박시설 및 유어장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인근 농산체험프로그램과도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레포츠피싱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체험어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매칭시켜 주는 기능까지 포괄해 실질적인 종합안내소로 기능하도록 재정비한다.

또한 현재 종합안내센터 바로 앞에 족구장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기타 레포트피싱 이용객을 위한 쉼터는 없는 실정이다. 지역민이 주로 거주하는 쪽에 이러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합안내센터와는 거리가 있어 이들을 위한 쉼터로서 기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족구장과 종합안내센터 주변부를 쉼터 겸 간이 직판장, 교류공간 등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한다.

(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가족형 프로그램 개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미 지역은 숙박시설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미비해 레포트피싱 이용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없다. 그러나 어가소득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숙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흡한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 때 숙박시설과 기타 편의시설이 종합안내소, 쉼터, 체육시설 등의 위치와 인접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관련시설물의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또한 최근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추세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특히 보다 고급화된 여행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중고급형 펜션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지역은 현재 체류하는 이용객이 드물기 때문에 유어장 운영이나 낚시 이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체류중심형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현재 3~5톤급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많은데, 5톤급 어선의 경우에 승선정원이 4~5명이 가능하고 유어장의 현재 자원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활용해 유어장 내에서 가능한 간이 가족형 체험어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 마케팅 채널의 강화

위미 지역이 레포트피싱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하고 운영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사실 제주도는 이미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작살형 스킨스쿠버가 가능한 곳만도 10여 곳에 달한다. 때문에 굳이 위미 지역에서 체류를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고급스러운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보다는 비교적 한적한 곳에서 가족들과 보내면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의지가 있는 특정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주 위미지역의 여건을 정확히 설명하고 유인요소를 찾아 정확한 타겟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여행동호회, 아이를 가진 30~40대 학부모층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마

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청년회 회원이나 외부 인력을 고용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도록 하되, 가족형 소규모 어촌 체험마을을 지향하는 만큼 대대적인 광고나 홍보는 피하도록 하고,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 도서형 (신안 증도)

(1) 현황 및 개발여건

현재 신안 증도의 면적은 40.03km²로 신안군 전체 면적의 6.4%를 차지하는 도서지역으로 총 가구는 924호이며, 이 중 어가비중은 28%로 263호가량이며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어가가 많았다. 신안 증도는 3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방축과 전증 어촌계는 원래 하나의 어촌계였으나 현재는 2개로 분리된 상태이다. 병풍 어촌계는 같은 행정구역에는 속하지만 증도와 분리된 낙도에 조직되어 있는 어촌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개 어촌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은 김, 백합 등이며, 현재 932ha의 지주식 돌김 양식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김 가공공장은 28개소이다. 이 외에 어선어업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이는 증도 방축리 도덕도 검산마을 주변해역에서 송원대 유물이 발굴되어 유물 발굴 작업을 위해 주변 어장에 어로어업 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어선어업이 상당히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증도 주변어장 대부분이 마을어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월별 수산물을 보면, 1~2월에는 주로 송어를, 3~4월에는 농어와 간재미를, 5~6월에는 병어와 송어를, 7~8월에는 민어와 쟁뚱어를, 9~10월에는 꽃게를, 11~12월에는 대하를 생산하고 있다.

신안 증도에는 약 60~70ha 가량의 갯벌이 펼쳐져 있는데, 이 갯벌은 30여 종의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갯벌의 질이 매우 좋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게르마늄 갯벌축제’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숙박이나 음식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대부분의 관광객이 당일 방문을 하는 형태였으며, 2년 여 전부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신안군 측에서는 이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증도 진입도로부와 우전해수욕장을 잇는 도로변에 ‘쟁뚱어 다리’라 불리는 목교가 폭 2m, 길이 470m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특히 쟁뚱어 집단 서식지가 있어 훌치기 낚시를 통해 어획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쟁뚱어 외에도 망둥어, 백합, 대롱, 꽃게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혀 그물로 물고기를 가둬 잡는 ‘개매기³⁰⁾ 체험’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의 갯벌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30)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갯벌 위에 그물을 쳐 놓은 후, 밀물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그물에 잡히도록 하여 잡는 전통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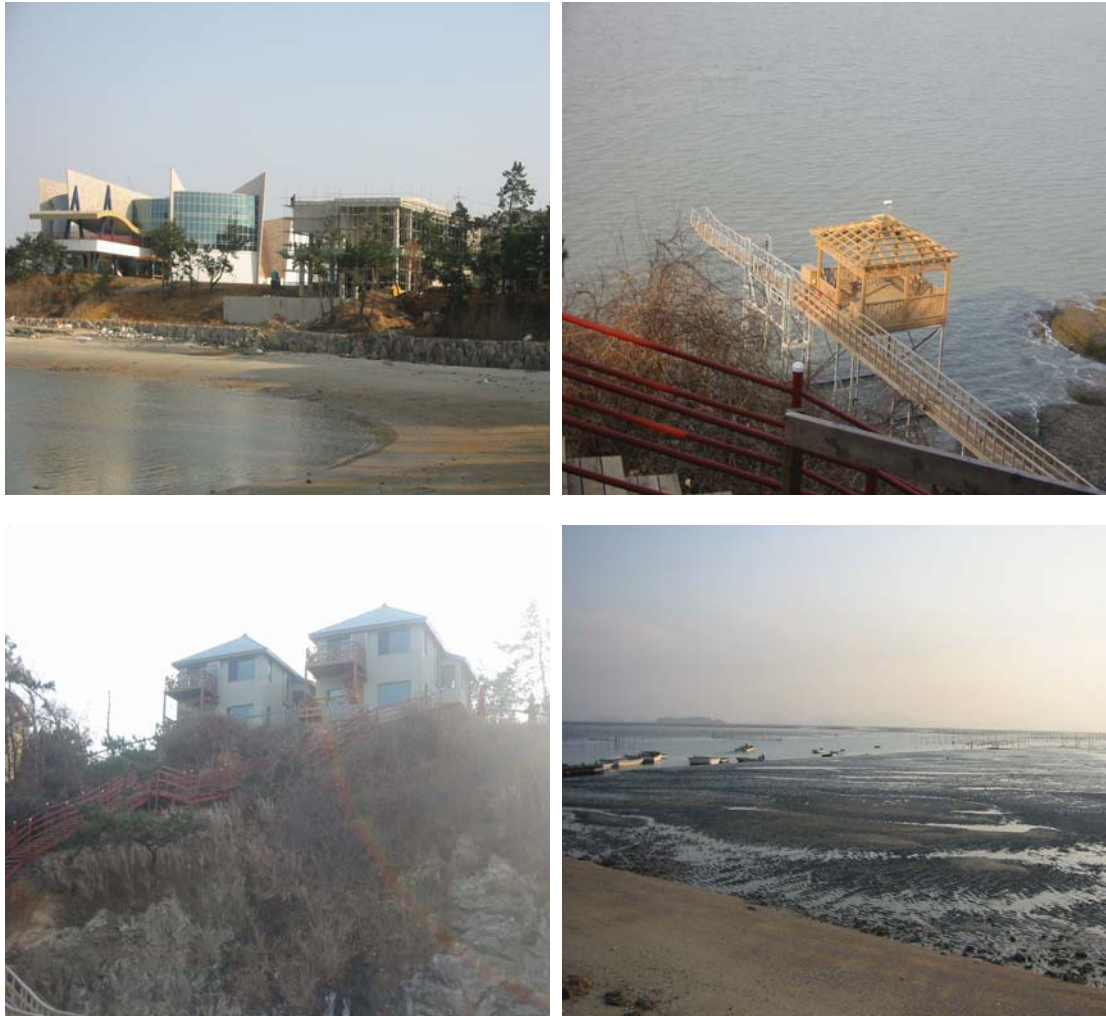


그림 7.5 신안 증도의 시설현황 및 발전전경

하지만 길이 4km, 폭 100m의 모래 해변을 가진 우전해수욕장이 있어 매년 전남권 해수욕객이 찾고 있으며, 서해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뒤편으로 소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해수욕장과 함께 국내 단일 염전으로는 최대규모인 266ha의 태평염전이 들어서 있으며, 연간 1만 6,000여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이 염전과 연계해 증도는 매년 3월 소금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증도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입이 차도선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차도선 2대가 하루 6차례 가량이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시 차도선 운항이 늘어 하루 300여 대(자동차 기준) 가량을 수송하고 있다. 대기시간은 대략 20분가량이며 증도까지 15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 350m 길이의 연도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는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

상기한 바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신안군과 민간 공동으로 총 사업비 356억원(공공 136억원, 민자 220억원)으로 25만평 규모로 우전해수욕장 좌측에 ‘중도 갯벌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민간투자 협약이 체결되어 2005년 말 현재 일부 조경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제외하고 약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투자비용으로는 갯벌학습전시관, 진입도로, 짙뚱어다리, 화장실 및 마리너 등 인프라 조성, 민간부분에서는 고급형 콘도 120실, 온천 스파, 해수풀, 요트 등 관광시설 설치를 하게 된다. 실제 짙뚱어 다리도 이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민간에서 투자를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서지역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 어촌지역의 인력이나 기타 자원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규모 관광단지화에 따른 경제활성화 외에, 이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가들이 어떠한 형태의 소득원을 별도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 기본모형 : 가족중심의 대규모 고급형 레포츠피싱 관광단지 (어가소득 증대 프로그램 강화)

○ 개발방향

(i) 갯벌체험 프로그램 강화

- 짙뚱어다리 보강 및 증설을 통해 우전해수욕장과와의 접근성 증대
- 갯벌의 일부를 체험어장으로 운영
- 주차장, 세족장 등 설치

(ii) 김 양식장 체험 프로그램 강화

- 불치선착장 인근 돌김 양식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iii) 간이 체험어업형 프로그램 운영

- 가족단위로 선상낚시, 체험어업, 수영 등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패키지화
- 어획물을 야외에서 직접 요리해먹을 수 있는 간이 시설 확충

(iv) 유어선 선착장 시설 증설

표 7.16 중도 레포트단지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구분	현재	향후
지역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혜의 갯벌자원 풍부 ● 연계관광 자원이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형을 기본으로 하되, 인근 육지 및 섬과의 연도교를 이용해 접근성을 높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장 : 길이 2km의 잔교(일명 짱뚱어 다리) 설치 ● 갯벌자원현황 : 매우 질 좋은 니질형 갯벌 ● 민자로 콘도 21개동(121실), 온천스파, 요트 시설 등 휴양시설 개발 중(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성 부근을 기점으로 하는 유어낚시포인트로 해 가족 유어낚시객이 수산물을 직접 요리(바베큐)해 시식할 수 있는 간이시설 ● 수산물 판매 간이시설 ● 유어선 선착장 시설 증설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수욕, 갯벌체험 ● 계획 : 대규모 해수욕장, 염전체험, 낚시, 요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혹은 계획 중인 프로그램 일체 ● 전통어업체험, 유어낚시 활성화 ● 가족단위 유어낚시와 수산물시식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 한백 R&C 민자기업에서 전문경영 ● (어촌계어업인 70여 명을 리조트시설 관리원 등으로 채용할 계획,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공동체와 전문경영업체, 관광업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어업인 :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유어낚시와 관련된 프로그램 일체 ● 전문경영업체 : 리조트 관리시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조성 : 종묘/종패방류사업 지속 실시 ● 시범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시설증설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가) 갯벌체험 프로그램 강화 및 짱뚱어 다리 확충

현재 짱뚱어 다리 아래쪽으로는 짱뚱어의 서식지가 형성되어 있어 매우 좋은 갯벌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갯벌로 내려가서 수산 동물 등을 채취하는 체험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짱뚱어 다리가 시작되는 기점이나 종점 부근의 일부를 구체화하여 실제로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짱뚱어 서식지를 제외한 일부 지역을 구체화하여 해당 어촌계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함으로써 일부 어가소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으로서는 관찰 중심의 프로그램만 시행하고 있어 관리 인력이 없는 만큼 상주 관리 인력을 두되 어촌계 회원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단, 갯벌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차장이나 세족장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먼저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짱뚱어 다리는 현재 470m 길이로 시설되어 있으며, 우전 해수욕장과 갯벌생태전시관, 대규모 관광리조트인 엘도라도 콘도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향해 뻗어 있다. 그런데 약 300m 가량이 확충되면 우전 해수욕장이나 관광단지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짱뚱어 다리를 증설함으로써 우전 해수욕장과 접근성을 높인다면, 짱뚱어 다리-우전해수욕장-관광리조트-해송림 등이 도보로 관광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나) 김 양식장 체험 프로그램 강화

현재 우전해수욕장과 대규모 리조트시설이 위치한 곳을 등지고 약 10분 거리에 불치선착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불치선착장에는 어선어업자들이 수산물을 양륙하는 곳이며, 불치선착장 바로 옆으로 대규모 지주식 돌김 양식장(마을어장이 대부분)이 펼쳐져 있다. 따라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반나절 정도의 김 양식장 체험프로그램이나 농어, 민어철에는 연안에서 어선승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형의 경우 장기간 체류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리조트 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면, 리조트 측은 관광객의 흥밋거리를 제공하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이며, 어업인에게는 또 다른 소득원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혹은 리조트 측이 일부 마을 김 양식장을 임대하고 어촌계에 이용료를 내는 대신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관리, 안내 등의 역할을 어촌계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공조를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다) 가족형 패키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간이 시식시설 확충

증도는 가족형이며 장기체류형 레포츠피싱 거점을 지향한다. 따라서 가족단위로 유어선을 대여해 증도 우측 맞은 편에 위치한 취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시간 전후의 선상낚시와 승선체험을 하거나 수산물을 야외에서 시식해서 먹는 등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대규모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우전해수욕장이 우측으로는 소규모 모래사장이 군데군데 펼쳐져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소규모 모래사장에 간이 시식시설을 확충해 이러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유어선을 대여하는 어촌계 회원으로 하여금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시식용 수산물 조달, 사후 처리까지 완벽하게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하도록 함으로써 고가이면서도 관리 및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한다면 관리상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투자계획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을 기한으로 추진되는 레포츠피싱 증장기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 총액은 51,320백만 원으로, 이 중 시범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8%인 3,821백만 원이며, 본 사업비 47,500백만 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각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이나 본 사업에 관계없이 투자재원 조달 비율을 국비 50%, 지방비 30%, 어업인

자담 20%로 하되, 시범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재원별 조달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하였다. 특히 어촌기반 시설 및 환경정비, 연구개발비는 공공부문 투자비용으로, 대규모 어촌관광시설은 민간자본 유치로, 레포츠피싱 운영 및 소규모 어촌관광시설은 어업인 자담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장내 자원조성, 어항정비 및 수산물 간이직판장 설치비, 레포츠피싱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물(시설물간 연결로, 교량, 잔교 등), 레포츠피싱 관련 장비 및 도구 보관시설, 레포츠피싱 이용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시스템비, 기타 프로그램 및 마케팅 방안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국비나 지방비 등 공공부문 투자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대신 어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업인도 소규모 혹은 공동운영 숙박시설 및 음식점 증설비, 상주 관리인력 운영비, 레포츠피싱 관련시설 관리운영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소공원조성비, 레포츠관련 시설, 고급형 숙박시설이나 상가, 대규모 체험관광 단지 조성 등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민자로 조달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어촌관광개발사업과는 달리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비용, 정보기반 시설비용, 특히 상주 관리인력비와 같은 운영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측면의 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어촌관광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나 운영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어촌계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운영비용의 일부를 공공부문에서 투자함으로써 레포츠피싱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 시범지역 투자계획(사업 1년차~2년차)

시범사업은 유형별로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지며, 2006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확정된 후 2006년 7월 이후부터 2007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시범사업비 3,821백만 원 중 26%인 794백만 원은 2006년에 나머지 3,027백만 원은 2007년에 투자하는 것으로 2006년 투자금액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였다.

표 7.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 중 기반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남제주 위미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650백만 원 가량의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신안 증도의 경우에는 이미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시설비는 투자비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일부 수산물직판장 설치비나 진입도로공사비 등 기반시설과 판매시설 투자비만을 계상하였다.

이 중 자원조성비 투자계획을 보면, 사천 저도는 지금까지 각종 자원조성 사업을 꾸준히 해온 결과 자원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자원조성비용을 60백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월하성과 장호, 위미는 상대적으로 자원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의 일부를 자원

조성비로 편성하였다. 신안은 전체를 지방비로 해서 80백만 원을 자원조성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정보화 및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비용을 보면, 사천 저도, 서천 월하성과 삼척 장호는 정보화 비용으로 각각 30백만 원,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20백만 원, 마케팅 비용으로 각각 13백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위미는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 35백만 원으로 높게 책정하였다.

표 7.17 시범사업 투자계획

단위 : 천원, %

구 분		2006	2007	합 계	비 중
전체	합 계	793,500	3,027,000	3,820,500	100.0
	국 비	361,000	1,617,000	1,978,000	51.8
	지방비	259,500	890,000	1,149,500	30.1
	어업인	173,000	520,000	693,000	18.1
사천 저도 (유어낙시형)	소 계	190,000	650,000	840,000	100.0
	국 비	80,000	340,000	420,000	50.0
	지방비	67,000	185,000	252,000	30.0
	어업인	43,000	125,000	168,000	20.0
서천 월하성 (갯벌체험형)	소 계	237,000	625,000	862,000	100.0
	국 비	140,000	305,000	445,000	51.6
	지방비	72,000	195,000	267,000	31.0
	어업인	25,000	125,000	150,000	17.4
삼척 장호 (체험어업형)	소 계	104,000	645,000	749,000	100.0
	국 비	42,000	335,000	377,000	50.3
	지방비	37,000	185,000	222,000	29.6
	어업인	25,000	125,000	150,000	20.0
남제주 위미 (수중체험형)	소 계	141,000	447,000	588,000	100.0
	국 비	74,000	232,000	306,000	52.0
	지방비	42,000	135,000	177,000	30.1
	어업인	25,000	80,000	105,000	17.9
신안 증도 (도서형)	소 계	121,500	660,000	781,500	100.0
	국 비	25,000	405,000	430,000	55.0
	지방비	41,500	190,000	231,500	29.6
	어업인	55,000	65,000	120,000	15.4

주 : 신안 증도의 경우, 민자투자금액 비중이 높지만 위 투자금액에서는 제외한 것임

2. 본 사업 투자계획(사업 3년차~10년차)

본 사업 투자계획은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국비, 지방비, 어업인 부담 비율을 각각 50%, 30%, 20%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자원조성 비용은 국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정보화 및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비용은 지자체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어업인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사업비 47,500백만 원 가운데 20%인 9,500백만 원을 레포트피싱용 자원조성에 투자하고, 8,550백만 원(18%)을 정보화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하였다.

표 7.18 본 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47,500	5,000	5,000	5,000	6,500	6,500	6,500	6,500	6,500
국 비	23,750	2,500	2,500	2,500	3,250	3,250	3,250	3,250	3,250
지방비	14,250	1,500	1,500	1,500	1,950	1,950	1,950	1,950	1,950
어업인	9,500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1,300
국 비	소 계	23,750	2,500	2,500	2,500	3,250	3,250	3,250	3,250
	자원조성	9,500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기반시설조성	14,250	1,500	1,500	1,500	1,950	1,950	1,950	1,950
	기 타	0	0	0	0	0	0	0	0
지 방 비	소 계	14,250	1,500	1,500	1,500	1,950	1,950	1,950	1,950
	기반시설조성	5,700	600	600	600	780	780	780	780
	정보화기반조성	3,325	350	350	350	455	455	455	455
	프로그램개발비	1,900	200	200	200	260	260	260	260
	마케팅비용	3,325	350	350	350	455	455	455	455
어 업 인	소 계	9,500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기반시설조성	6,175	650	650	650	845	845	845	845
	운영비	3,325	350	350	350	455	455	455	455

주 : 시범사업을 제외한 투자금액임

제8장 결론

제8장 결론

사회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등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생활양식이 자리 잡아가면서 앞으로 관광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체험성을 강조하는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속에서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및 레포츠는 타 분야에 비해 활동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 수요는 2010년에 가서는 2000년 수준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광 또는 체험관광 수요를 어촌사회로 유입시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레포츠피싱(유어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체험 등)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레포츠피싱은 예전처럼 단순히 자연경관 감상이나 해산물 시식 등의 관광과는 달리, 수산동식물을 직접 포획·채포하거나 수중생태계를 관찰 또는 체험하는 등의 활동을 포괄하는 신개념 레포츠활동으로 단순히 수면만을 이용하는 수상레포츠와는 차원이 달라 체험을 강조하는 관광수요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진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서울 등 7개 시도에 걸쳐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레포츠피싱의 수요를 예측한 결과, 2015년 레포츠피싱 인구는 406.9만 명~45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 같은 레포츠피싱의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2005년 설문조사 대상자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산한 시장규모는 1조4천억 원(349,240원/명×4,069,000명)~1조6천억 원(349,240원/명×4,58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레포츠피싱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촌사회 자체적으로도 어촌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실제로 어가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시 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소득의 불안전성은 젊은층의 어촌 이탈을 심화시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 상승, 어장상황 악화, 국제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어업 이외의 부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어촌사회는 어촌만의 특수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다면 체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어촌사회 자체적인 구조변화와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 여행경비 중에서 레포츠피싱 직간접 서비스가 어가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을 62.3~74.2%로 추정/가정해 예시적으로 추정할 경우, 어가소득은 9.345천억 원~11.1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어촌관광개발과 연계성, 레포츠피싱의 성격과 내용, 투자 규모 및 방식,

작·간접 레포츠피싱 서비스 가격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레포츠피싱 활성화가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레포츠피싱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 상업적 어업인과 레포츠피싱 이용객 간의 경합적 자원이용 문제, 레포츠피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간 역할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레포츠피싱 활성화와 어촌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레포츠피싱 활동자와 생계형 어업인의 공존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들 양자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각종 행위규제를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하고, 레포츠피싱 활동자에게도 치어 및 치패의 남획을 방지하도록 하는 자원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양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개별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데 따른 중복규제나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유어장 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레포츠피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레포츠피싱과 관련한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어촌체험마을 사업 등 정부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이미 레포츠피싱이 개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부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마케팅 측면이 간과됨으로써 실질적일 어가소득 증대까지 연결되는 데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레포츠피싱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어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관찰형과 더불어 도서지역을 레포츠피싱과 연계시키는 방안까지 각 유형별, 지역별 특색이 고려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레포츠피싱이 명실상부한 어가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레포츠피싱 관련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장기적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레포츠피싱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어촌관광개발 사업 및 기타 레포츠피싱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레포츠피싱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

둘째, 권역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레포츠피싱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셋째, 어촌 및 어항의 문화교류 기능과 판매기능 위주로 강화함으로써 공간효율성을 극대화되, 특히 어가소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실현 가능한 레포츠피싱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체제를 효율화한다.

다섯째, 레포츠피싱 활성화를 위한 단일화된 법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여섯째,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어촌계와 레포츠피싱 관련 단체,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레포츠피싱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연남 · 김진형, “레포츠, 리조트, 그린소비자의 서비스 품질 지각에 따른 시장 세분화”, 한국스포츠투리서치 제10권 제4호, 1999.
- 김인숙 · 임인수, “리조트의 레포츠 시설 서비스 환경이 고객의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포츠산업 · 경영학회지, 제6권 1호, 2001.
- 김학신 · 이덕성 · 민창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레포츠시장의 개발 방향, 제38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 스포츠이벤트와 지역사회 발전, 2000.
- 남시춘추 편집실, “한국낚시 55년 300대 뉴스, 사건” 낚시춘추 2001. 3월호 특별부록, 2001.
- 남동현, “해양스포츠 관광 경영론”, 대경북스, 2004.
- 문화관광부,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전망과 과제』, 2000.
- 목진용 · 박용욱, 「해양레저사업의 법제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과제, 2002.11.
- 배상부, “낚시가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신동주 · 신혜숙, 『해양관광개발론』, 대왕사, 2005.
- 엄서호, “레저산업론-21세기 관광산업의 세 영역”, 학현사, 1998.
- 이상춘 · 여호근 · 최나리, “해양관광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4.
- 장희정 · 양위주, “레저사회와 레저산업론”, 백산출판사, 1998.
- 정동일,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한 관광정책의 방향”, 호텔관광경영연구 14집, 1999.
- 조정희 · 김봉태, 「치어 · 치패 방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안분석, 2005.
- 통계청, 『2004년 어가경제 조사결과』, 2005.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년도.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 2005.
- 통계청, KOSIS ‘어가경제(1980~2002)’.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1999.
- 한국관광연구원,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본연구보고서, 1997.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관광동향(2006년), 2005.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 2000.4.

- 해양수산부, 「종합적인 낚시관리제도 도입 추진방향」 참고자료, 2004.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연구」, 2005.
- 해양수산부, 「갯벌 체험행사 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Workshop' 개최 등 추진계획」 참고자료, 2005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 년도.
- 한국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5』, 2005.
- 農林水産省, 漁業センサス 각 년도.
- (社)전국漁港漁場協會, '2005년 어항어장어촌 pocket book'.
- 水産庁, 水産百書(2004년도).
- (財)漁港漁場漁村技術研究所, '都市漁村交流推進地区計画', 『漁村へのGo』.
- Gary Caput, "Magnuson Stevens Act Peanthorization", 2003.9.8.
- Hickley, P.C.H. Tompkins, Recreational Fisheries Fishing News Books, 1998.
- Holt, Bary, D., "Psaychological Motivational Factors Impacting Leaisure Pursuit : A Study of UK Carpangers in Progress", 2000.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NOAA, 2004.
- NOAA White, Halbert, Asymmetric Theory for Econometricians: Economic Thoery, Econometrics, and Mathematical Economics, Academic Press, Inc. 1984.
- Wikipedia, "Sport Fishing", 2003.9.8.
- UNEP, Whale watching 2001, 2004.

참고 홈페이지

- 국민생활체육 전국 스킨스쿠버연합회 홈페이지
- 일본 도도부현별 수산관련 행정국 홈페이지
-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
- (社)Fisharena 협회 홈페이지

부록

1. 전국 주요 바다유어낙시 포인트
2. 국내 유어장 지정 및 이용현황
3. 미국의 주요 주별 유어낙시제도
4. 설문조사 양식
5. 시범지역 평가결과
6. 잠재지역 실태조사표

<부록 1> 전국 주요 바다유어낚시 포인트

번호	권역	제목
1	강원, 동해	강원도 동해시 용정방파제·갯바위
2	강원, 동해	동해권 원투낚시 포인트
3	강원, 삼척	삼척 마린데크 밑
4	경북, 영덕	경북 영덕군 사진 2리 초소밑 갯바위
5	경북, 경주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수렴방파제
6	경북, 영덕	경북 영덕군 경정리 일대 갯바위
7	경북, 포항	경북 포항시 소봉대 방파제 일대
8	경북, 영덕	경북 영덕군 감성동 포인트 3선
9	경북, 경주	경북 경주시 양북면 대본방파제 옆 갯바위
10	경북, 경주	경북 경주시 진리초소앞 갯바위·봉길리 ‘떨어진여’
11	경북, 경주	경북 경주 전촌
12	경북, 울진	경북 울진 망양휴게소 일대
13	경북, 경주	경북 경주 양남 읍천 방파제·감포 북방파제
14	경북, 포항	경북 포항시 신창리 초소 밑 떨어진여·갈매기섬
15	경북, 포항	경북 포항시 양포방파제·신창 갑을축양장 앞
16	경북, 경주	경북 경주시 대본갯바위·오류갯바위 및 방파제
17	경북, 경주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부대 밑 갯바위’
18	경북, 영덕	경북 축산면 사진1리 갈바위·경정3리 마을앞
19	경북, 경주	경북 경주시 전촌방파제 일대
20	경북, 경주	경주권 예비군교장바위·납닥여·백돌·긴돌
21	경북, 영덕	경북 영덕 창포 왕림수산 축양장 일대
22	경북, 울진	울진 후포 거일리 흥통
23	경북, 포항	경북 포항시 강사리~삼정리 여치기 포인트 4선
24	울산	울산시 서생명 골매 상어바위
25	울산	울산시 서생면 비학연수원 뒤
26	울산	울산시 서생면 간절곶 대송등대 일대 여치기
27	울산	울산시 온산읍 당월리 당월방파제
28	울산	울산 신리 갯바위
29	울산	울산 방어진 사장여
30	울산	울산시 서생면 신암리 앞 ‘떨어진여’
31	울산	울산시 서생명 골매방파제 옆 갯바위
32	울산	대박 감성동 포인트-나사리 장군바위
33	울산	울산시 서생면 간절곶 방파제 옆 갯바위
34	울산	울산권 대왕암 전봇대바위
35	울산	울산권 겨울 감성도 포인트 - 비학큰여
36	부산	부산 영도구 태종대 감지곶바리
37	부산	부산 강서구 가덕도 내부반 밑
38	부산	부산 강서구 가덕도 솔섬 62번자리
39	부산	부산 강서구 가덕도 용바위 뒤편 75번자리
40	부산	부산 기장~울산 서생 동해남부 가족낚시터 4선

레포트피싱(Lepports-fishing)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번호	권역	제목
41	부산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음포 100번자리
42	부산	부산 강서구 가덕도 새바지 88번자리
43	부산	부산 강서구 가덕도 천수대 40번자리
44	부산	부산 사하구 다대포 딸섬
45	부산	부산 낮개 겨울포인트
46	부산	부산 나무섬 일자바위
47	부산	부산 가덕도 5선
48	부산	부산 태종대 물개바위 생도 높은여
49	부산	부산 다대포 아들섬 칼바위
50	부산	부산권 아치섬 철탑 일대
60	부산	부산권 감천항 입구 낮개
61	부산	부산권- 술섬 '돌무너진 곳'남쪽
62	부산	부산권 나무섬 동바위
63	부산	부산 나무섬 칼바위
64	부산	부산 다대포 아들섬 띨돌
65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시 해금강 쇠바위 큰흙통
66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시 다포 형제섬
67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시 해금강 줄여, 줄여 왼쪽
68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시 다포 판자리
69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실거칠리도 물곶자리
70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해금강 노랑바위 왼쪽
71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다대형제섬 고래여
72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산양면 풍화리 이끼섬 앞 거미여
73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산양면 학림도 높은바위
74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윗사랑도 염소자리 밑
75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시 서이말 마당바위
76	남해동부, 남해도	경남 남해군 미조 죽암도 볼락 포인트
77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흥도 의자바위
78	남해동부, 사천	경남 사천시 술섬 북서쪽 곳부리
79	남해동부, 남해도	경남 남해군 양화금 옛초소 밑
80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비상도 1번자리
81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사랑도 낮은바위
82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옥지면 납도 흥합여
83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추도 등대 밑 긴여
84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산양면 이끼섬 모기여
85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두록여·긴여·노랑바위 직벽
86	남해동부, 남해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세존도
87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시 해금강 줄여, 쌍여
88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상노대도
89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옥지도
90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 망월산 지도밑

번호	권역	제목
91	남해동부, 통영	통영권 한겨울 감성동 급소-내부지도 평바위
92	남해동부, 거제	거제도 서이말 대물승부처 촛대바위 치곶·꽃바구니
93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외초도 끝바리 직벽
94	남해동부, 거제	거제도 구망 장기판바위·초소 길 작은여
95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시 한산면 대성
96	남해동부, 남해도	남해도 창선 장곶이
97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권 사랑도
98	남해동부, 통영	경남 통영권 사이섬
99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 대병대도
100	남해동부, 거제	경남 거제도 양지암
101	남해동부, 남해도	남해도 고현면 엄나무섬
102	남해동부, 사천	경남 추성 등대·봉화골 기지말
103	남해동부, 고성	경남 고성 소치섬 높은 자리·미끄럼바위·앞여
104	남해동부, 사천	경남 사천권 신항마을 동성·신수도
105	남해동부, 남해도	경남 남해군 창선도 장곶이 대바위·물내려오는곳
106	남해동부, 고성	경남 고성권 두미도 삼각여 상노대도 호텔자리
107	남해동부, 통영	안거칠리도 ‘최가바위’·돌거칠리도 ‘토끼여’
108	남해동부, 통영	가을 감성동 특급 포인트 - 옥지도 ‘고래머리’
109	남해동부, 사천	사천권 마릿수 명소 - 진널방파제
110	남해동부, 통영	통영권 대물포인트 - 추도 염소자리
111	남해동부, 통영	통영권 초겨울 급소 - 죽도 고래여
112	남해동부, 고성	고성출발 4선 - 옥지도 촬영자리
113	남해동부, 고성	내초도 뒷등 높은자리
114	남해동부, 고성	외초도 마당바위
115	남해동부, 통영	연화도 한숨자리
116	남해동부, 통영	연화도 귀신골
117	남해동부, 통영	국도 남동쪽 흠통 1번자리
118	남해동부, 통영	국도 남동쪽 흠통 2번자리
119	남해동부, 통영	국도 북동쪽 직벽 1번자리
120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권 개도
121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권 금오도
122	남해중부, 고흥	전남 고흥권 황제도 땅콩섬
123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 금오열도 3선
124	남해중부, 고흥	전남 고흥 덕우도권 구도
125	남해중부, 여수	전남 완도 여서도
126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금오도 각진바위
127	남해중부, 고흥	전남 고흥군 다량도 오리뚥여
128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평도 시화여 맞은편 직벽
129	남해중부, 고흥	전남 고흥군 손죽도 높은여
130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화정면 상계도 북서쪽 배꼽바위

번호	권역	제목
131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평도 갈기섬 명실바위
132	남해중부, 거문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서도 거문등대 밑 흥통
133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거문도 서도 솔곶이 큰흥통
134	남해중부, 거문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서도 해녀막사 옆 방파제
135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대상부도 북동쪽 직벽
136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연도 검등여 남서쪽
137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야외음악당
138	남해중부, 거문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칼바위
139	남해중부, 여수	전남 여수시 개도 육고여 마주보는 곳
140	남해중부, 여수	전남 소리도 대룡단
141	남해중부, 여수	전남 금오도 큰막개
142	남해서부, 진도	진도권 접도 소나무 밑
143	남해서부, 장흥	전남 장흥 비견도 화장실말·목섬 철탐말
144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권 대창리
145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권 청산도
146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권 소안도
147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대모도 서쪽 곳부리, 솔잎골
148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청산도
149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150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형도 앞 '떨어진여'·형도·제도
151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불근도 큰여
152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청산도 목섬 동쪽 일대
153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모도 대망여
154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정자도 서쪽 흥통
155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이진이 직벽
156	남해서부, 완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북동쪽 흥통 옆
157	남해서부, 진도	전남 진도군 병풍도 수정동굴
158	서해남부, 흥도	전남 흥도
159	서해남부, 가거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칼바위 일대
160	서해남부, 태도	하태도 촛대바위 옆
161	서해남부, 목포	전남 목포시 고하도 용머리
162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야미도
163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덜컹여·남여
164	전북, 군산	군산권 어청도 불탄여
165	전북, 군산	전북 고군산군도 무녀도 남동쪽 백사장 일대
166	전북, 군산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관리도
167	전북, 군산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땅콩섬
168	전북, 군산	전북 군산시 명암여
169	전북, 부안	전북 격포 낙철여·긴여
170	전북, 부안	전북 부안군 왕등도 북암

번호	권역	제목
171	충남, 보령	충남 보령권 외연열도 초망여/내·외횡건도 물곶
172	충남, 보령	충남 보령권 무창포 일대
173	충남, 보령	충남 보령시 무창포 석대도·직연도·황죽도
174	충남, 태안	충남 태원권 두에기
175	충남, 서천	충남 서천군 홍원리 동부섬
176	충남, 태안	충남 태안군 안흥 목개도
177	충남, 태안	충남 태안군 불기여
178	충남, 태안	충남 태안군 각시여
179	충남, 보령	충남 보령시 황죽도 북쪽 간출여
180	제주, 북제주군(서부)	제주 소관탈도 동쪽계단 옆 흠통
181	제주, 북제주군(서부)	제주 대관탈도 마당여
182	제주, 북제주군(서부)	제주 가파도 돛개
183	제주, 남제주군(서부)	제주 마라도 살래덕
184	제주, 북제주군(동부)	제주 북제주군 우도 절터
185	제주, 북제주군(동부)	북제주군 용두암 일대
186	제주, 북제주군(동부)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진여, 나비여
187	제주, 추자군도	제주 추자도 사자꼬리여·밖미역섬·모여
188	제주, 추자군도	추자군도 오동여 앞 간출여·작은 수영여
189	제주, 북제주군(서부)	북제주군 조천읍 '닭머리'일대
190	제주, 남제주군(서부)	제주도 가파도 작은악근여
191	제주, 추자군도	추자군도 오동여 앞 간출여·작은 수영여
192	제주, 북제주군(동부)	제주 세배·등대·가두리
193	제주, 북제주군(서부)	북제주군 사수도 떨어진여
194	제주, 북제주군(서부)	제주권 대관탈도 동쪽 끝여
195	제주, 남제주군(동부)	제주도 지귀도 등대밀
196	제주, 북제주군(동부)	제주 구좌읍 종달리 넓개
197	제주, 남제주군(동부)	제주본섬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갯바위
198	제주, 추자군도	추자군도 수령섬 남쪽
199	제주, 추자군도	추자군도 직구도 직벽 아래흠통
200	제주, 추자군도	추자군도 모여 등대밀

<부록 2> 국내 유어장 지정 및 이용현황

○ 유료낚시터

사·도 (사·군)	유료낚시터		면적 (ha)	지정 번호	지정일	만료일	관리 선 (척)	이용료 (원)	'02년실적	
	명칭	지정위치							인원 (명)	금액 (천원)
계		21개소	545				21척		30,518	345,542
전남도	소 계	8개소	241				9척		5,710	38,022
목포시	바다유어장	목포시 외달도	10	03-1	'03.8.7	'05.9.5	1	15,000	990	4,222
여수시	조발유어장	화정면 조발리	22	'02-1	'02.7.26	'07.11.25	1	5,000	2,000	10,000
	적금1유어장	화정면 적금리	23	'03-1	'03.4.30	'07.12.1	1	5,000	800	4,000
	적금2유어장	화정면 적금리	11	'03-2	'03.4.30	'08.12.8	1	5,000	900	4,500
고흥군	우두유어장	영남면 우두리	33	'00-1	'00.2.2	'05.11.3	1	10,000	510	5,100
보성군	선소유어장	보성읍 선소리	15	'04-1	'04.7.15	'13.11.12	-	5,000	-	-
장흥군	사금1호유어장	관산읍 사금리	12	'02-1	'02.7.2	'11.10.18	1	20,000	210	4,200
	대리1호유어장	관산읍 회진리	115	'02-2	'02.7.2	'06.11.3	3	20,000	300	6,000
경남도	소 계	13개소	304				12척		24,808	307,520
마산시	실리도낚시터	구산면 심리	3	'03.1	'03.8.7	'05.2.26	1	-	1,541	21,380
사천시	산분령유료낚시터	실안동 산분령	3	'95-1	'95.5.6	'08.11.30	1	10,000	2,000	20,000
	저도어촌계 유료낚시터	마도동 저도	6	'03-1	'03.4.11	'07.8.24	1	10,000	1,500	15,000
거제시	근포어촌계유어장	남부면 저구리	10	'04-1	'04.3.11	'05.10.13	1	(개)20,000 (단)200,000	700	16,000
	장승포어촌계 유어장	장승포동	10	'04-2	'04.3.11	'05.9.26	1	"	960	19,200
	이수도어촌계 유어장	장목면 시방리	23	'04-3	'04.4.14	'06.3.18	1	"	324	8,200
	대곡어촌계 유어장	하청면 대곡리	22	'04-4	'04.9.1	'05.8.27	1	"	510	11,000
남해군	노도낚시터	상주면 양아리	16	'97-1	'97.9.19	'14.12.30	1	3,000	1,667	5,000
	왕지낚시터	설천면 수원늘	7	'00-1	'00.4.20	'05.4.19	-	좌대15,000	2,265	4,530
	왕지낚시터	설천면 왕지리	52	'00-2	'00.4.20	'05.4.19	1	"	1,385	10,570
	지족낚시터	삼동면 지족리	1	'02-1	'04.1.7	'13.12.30	1	10,000	540	5,400
하동군	대도유료낚시터	금남면 대도리	64	'97-2	'97.11.14	'07.10.16	1	15,000	6,283	94,245
	대치유료낚시터	금남면 대치리	87	'98-1	'98.3.17	'07.11.2	1	15,000	5,133	76,995

○ 체험어장

사도 (사군)	체험어장		면적 (ha)	지정 번호	지정일	만료일	관리선 (척)	이용료 (원)	`02년실적		비고
	명칭	지정위치							인원 (명)	금액 (천원)	
계		25개소	434				20척		35,933	172,377	
경기도	소 계	3개소	30				-		2,500	-	
안산시	탄도체험어장	단원구 선감동	15	2004-1	`04.4.23	`05.4.30	-	5,000	-	-	개발중
	선감체험어장	"	7	2004-2	`04.6.14	`05.4.18	-	5,000	-	-	"
	종현동체험어장	단원구 대부북동	8	2004-3	`04.6.14	`05.4.18	-	5,000	2,500	-	무료
강원도	소 계	2개소	47				2척		1,000	-	
강릉시	정동지인망 체험어장	강동면 정동진리	11	99-1	`99.9.6	`05.6.15	1	-	-	-	-
	소돌어촌계 유어장	주문진읍 주문리	36	04-1	`04.8.12	`05.6.15	1	-	1,000	-	해수 욕장
충남도	소 계	8개소	75				3척		29,900	99,500	
서천군	월하성유어장	서면 월호리	10	서천유어1	`02.7.30	`10.12.23	-	3,000	10,500	31,500	갯벌
		"	5	서천유어5	`02.7.30	`10.7.6	-	3,000			
	송석유어장	마서면 송석리	15	서천유어7	`03.9.9	`04.8.23	-	3,000	3,700	11,100	"
태안군	몽산1유어장	남면 몽산리	6	2004-1	`04.2.25	`06.2.28	-	5,000	3,600	10,800	"
	누동1유어장	고남면 누동리	5	2004-2	`04.11.5	`14.6.29	-	5,000	-	-	"
당진군	당진수협 도비도유어장	석문면 난지도리	1	2003-2	`03.6.14	`07.7.7	3	20,000	1,100	21,900	"
	장고항어촌계 용무지유어장	석문면 장고항리	9	2003-3	`03.6.14	`12.8.12	-	대인5,000 소인2,000	4,200	17,000	"
	당진수협 망누리유어장	신평면 매산리	24	2003-4	`03.8.18	`05.8.12	-	대인4,000 소인2,000	6,800	7,200	"
전남도	소 계	2개소	35				2척		396	7,920	
완도군	여서 스킨스쿠버어장	청산면 여서리	16	`04-1	`04.12.14	`14.8.29	1	20,000	318	6,360	스킨 스쿠버
	당리 스킨스쿠버어장	청산면 당리	19	`04-2	`04.12.14	`14.8.29	1	20,000	78	1,560	
경남도	소 계	4개소	44				1척		1,267	13,000	
남해군	송남체험어장	미조면 송남리	2	`00-3	`00.11.21	`05.10.12	-	-	-	-	지인망
	지족체험어장	삼동면 지족리	23	`04-1	`04.1.7	`13.12.30	-	20,000	-	-	땃목식
	문항체험어장	설천면 문항리	17	`04-2	`04.9.13	`10.1.18	-	소인1,000 대인2,000	867	13,000	갯벌
하동군	대치체험어장	금남면 대치리	2	`02-1	`02.2.19	`07.10.16	1	무료	400	-	"
제주도	소 계	6개소	203				12척		870	51,957	
서귀포시	거문여코지 유어장	토평동	14	제1호	`04.6.23	`06.6.22	5	작살30,000 기타15,000	203	2,897	제주국 제자유 도시특 별법
북제주군	애월어촌계 유어장	애월읍 애월리	71	제1호	`04.7.14	`14.6.10	1	50,000	377	42,620	
	수원어촌계 유어장	한림읍 수원리	40	제2호	`04.2.26	`14.5.22	1	50,000	-	-	
남제주군	상모리유어장	대정읍 상모리	17	2004-1	`04.7.26	`06.7.25	1	50,000	36	640	
	위미1리유어장	남원읍 위미리	29	2004-2	`04.7.27	`06.7.26	3	50,000	215	4,800	
	온평리유어장	성산읍 온평리	32	2003-3	`03.4.10	`07.3.8	1	50,000	39	1,000	

<부록 3> 미국의 주요 주별 유어낚시제도

○ 위스콘신 주

규제항목	규제내용
제한연령	16세이상
주요낚시분류	• Inland • Ice • Crayfish • Frog/turtle
라이선스종류	1. 거주자 • Individual(annual) • combination(husband&wife) • Conservation patron • Reduced-rate • Annual fishing licenses for disabled • Annual disabled veterans • Free annual resident armed forces 2. 비거주자 • Individual(annual) • 4day individual • 15day individual • 15day family individual • Annual family 3. 거주자 비거주자 공통 • Annual inland trout stamp privilege • Annual great lakes trout and salmon stamp privilege • 2day sports fishing
낚시바늘제한	바늘, 루어 3개이상 사용금지, 바늘코 3개이상 사용금지
낚시대제한	없음
미끼제한	• 모든 호수, 강, 하천에 사용하지 않은 미끼고기 방류금지 • 미시시피 강을 제외한 모든 내수(內水)에서 낚시중이나, 낚시도구를 소유한 채 살아있는 미끼용 가재 소유금지 • 미시건 호수, 지류 상류를 제외한 지역에서 금붕어, 청어 미끼로 사용금지 • 송어낚시계절에 미끼로 사용하기 위한 유충채집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람을 제외한 송어서식 하천에서 미끼로 사용하기위한 유충채집금지, 단 손으로 채집(그물, 예인망금지) • 연어과물고기 미끼로 사용금지 • 인공루어만 사용이 허용된 곳에서 생미끼 사용금지
사이즈제한	• 어종별 최소최대 사이즈 구분
마리제한	• 일일할당량 명시,

○ 워싱턴 주

규제항목	규제내용
제한연령	15세이상
주요낙시분류	• Freshwater • Marine • Shellfish/Seaweed
라이선스종류	1. 거주자 • Combination • Freshwater • Saltwater • Shellfish/Seaweed • 2day(consecutive) 2. 비거주자 동일, 가격차有
낙시바늘제한	• 바늘코 3개이하
낙시대제한	• 한번에 낙시줄 하나만 허용
미끼제한	• 연어, 청어, 넙치 미끼사용금지 • 살아있는 물고기로 미끼 사용금지
사이즈제한	• 어종별 최소최대 사이즈 구분
마리제한	• 어종별 일일할당량 명시

○ 남 캐럴라이나 주

규제항목	규제내용
제한연령	• 16세이상
주요낙시분류	• Freshwater • Saltwater • Nongame
라이선스종류	1. 거주자 • Resident freshwater fishing • 14day resident freshwater fishing • Lake and reservoirs permit • Resident saltwater fishing • 14day resident saltwater fishing • Shrimp baiting 2. 비거주자 • Combination hunting and freshwater fishing and big game • Annual non-resident freshwater fishing • 7day non-resident freshwater fishing • Annual non-resident saltwater fishing • 14day non-resident saltwater fishing • Shrimp baiting
낙시바늘제한	• 동시에 바늘 2개 이상 사용금지
낙시대제한	• 동시에 낙시대 2개 이상 사용금지
미끼제한	• 어획한 연어과 물고기 미끼로 사용가능, 단 일일할당량에 포함됨
사이즈제한	• 어종별 최대최소 구분
마리제한	• 어종별 일일할당량

○ 네바다 주

규제항목	규제내용
제한연령	12세이상
주요낚시분류	• Ice • Cold water game • Warm water game • Bullfrog
라이선스종류	1.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ual fishing • Junior fishing • Senior fishing • Combination hunting and fishing • Junior Combination hunting and fishing • Senior Combination hunting and fishing • Short-term fishing permit : valid until midnight of day specified • Each consecutive day added to a short-term permit to fish • Serviceman fishing • Disabled veteran combination hunting and fishing • Disabled person fishing • disabled person combination hunting and fishing • Indian fishing and hunting 2.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ual fishing • Junior fishing • Colorado river fishing • Short-term fishing permit • Each consecutive day added to a short-term permit to fish
낚시바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하나당 미끼 3개 이하 • 바늘코 3개이하(more than three fly hooks) • 루어 2개이하 • 플러그(plug) 사용금지
낚시대제한	• Second rod stamp를 소지하지 않을시 낚시대 일인당 하나
미끼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어과나 보호어종 미끼로 사용금지 • 수생동물(양서류, 가재, 대합조개, 달팽이 등)미끼 허용된 곳에서만 사용 • 지역이동 금지 목록상의 수생동물 미끼나 살아있는 민물고기 미끼의 지역(강, 웅덩이등) 이동 금지
사이즈제한	• 어종별 최소 최대 제한
마리제한	• 어종별 일일 어획량 제한

○ 오레곤 주

규제항목	규제내용
제한연령	• 14세 이상
주요낙시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me fishing • Nongame fish and shellfish – freshwater • Nongame fish – marine • Marine shellfish and other marine invertebrate
라이선스종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ident Annual licenses • Combination angling/hunting license • Juvenile angling license • Senior citizen combination angling/hunting license • Sport pac license • Duplicate license or tag • Resident disabled war veteran angling and hunting license • Resident pioneer angling and hunting permanent license 2.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resident annual angling licenses • 1day angling licenses • 2day angling licenses • 3day angling licenses • 4day angling licenses • 7day angling licenses
낙시바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코 세개 이하만 사용가능 • 태평양 넙치 낙시는 바늘 2개 이하만 사용가능 • 타어종 바늘 3개이하만 사용가능
낙시대제한	• 동시에 낙시대 2개이상, 낙시줄 2줄이상 사용금지
미끼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있는 고기 미끼 사용금지, 단, 연어과가 아닌 고기는 사용가능 • 죽은 물고기, 저장된 물고기, 물고기조각, 조개, 물고기 알 미끼로 사용가능
사이즈제한	• 어종별 최대최소 지정
마리제한	• 어종별 일일할당량 지정

○ 미네소타 주

규제항목	규제내용
제한연령	• 16세 이상
주요낙시분류	• Inland water • Stream trout • Lake superior and tributaries • Border water fishing • Rough fishing • Ice fishing
라이선스종류	1. 거주자 • Angling, individual(age 16 and old) • Angling, Combination(husband and wife) • Sport, individual • Sport, combination(husband and wife) • Dark house spearing • Trout and salmon stamp • Fish house or dark house • Whitefish netting • Rental fish house or dark house • Recreational turtle license 2. 비거주자 • Angling, individual • Angling, family(husband, wife, and children under age 16) • Angling, individual 7day • Angling, individual 24hour • Angling, individual 72hour • Angling, husband and wife 14day • Trout and salmon stamp • Fish house • Fish house 7day
낙시바늘제한	• 바늘하나만 허용 • 인공루어도 바늘하나만 허용 • 바늘코 세 개(a treble hook) 사용금지
낙시대제한	• 낙시줄은 한줄만 사용 단, 얼음낙시 두줄 허용, 슈페리어 호수의 지류 혹은 강입구에서 100야드 떨어진 곳 두줄 허용
미끼제한	• 연어, 금붕어, 잉어, 부분 혹은 전체 미끼로 사용금지 • 미끼로 사용하기 위한 살아있는 작은물고기(minnow) 수입(importing) 금지
사이즈제한	• 어종별 최대최소 구분
마리제한	• 어종별 일일할당량 구분

○ 캘리포니아 주

규제항목	규제내용
제한연령	• 16세 이상
주요낚시분류	• Inland water fishing • Black bass fishing • Trout, salmon fishing
라이선스종류	1.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ident sport fishing • Resident pacific ocean-only sport fishing • Duplicate (annual licenses only) • Second-rob stamp(valid only in lake, reservoirs and the colorado river district) • Ocean enhancement stamp-annual • Upgrade stamp (resident pacific ocean only license) • Sport salmon punch card(pacific ocean north of hourse mountain(humboldt county) and all water of the klamath river system) • Colorado river special use stamp • Steelhead report card • Striped bass stamp • Abalone report card 2.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resident sport fishing 3. 거주자 비거주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day sport fishing • 1day pacific ocean-only(fin fish only) • 1day pacific ocean-only license w/ocean enhancement stamp (fin fish only)
낚시바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코 3개이하만 사용 • 루어 3개이하만 사용
낚시대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인당 낚시대 하나, 낚시줄 한줄 • Two-rob 스템프 소지시나, 16세 미만 낚시대 2개 사용가능 단, 호수 및 저수지, 콜로라도 강 지역만 허용
미끼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척추동물(invertebrate), 연체동물(mollusk), 갑각류(crustacean), 양서류 (amphibian)-도롱뇽(salamander)제외, 고기알, 가공된 음식 사용가능 (treated and processed food)
사이즈제한	• 어종별 최대최소 명시
마리제한	• 어종별 일일할당량 명시

○ 플로리다 주

규제항목	규제내용
제한연령	• 16세 이상
주요낙시분류	• Freshwater fishing • Saltwater fishing
라이선스종류	1.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Freshwater fis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ident 12month freshwater fishing • Resident Freshwater fishing/hunting combination • Resident Freshwater/saltwater combination • Resident Freshwater/saltwater/hunting combination • 64 or older hunting and fishing • Spotsrman's license • Gold sportman's license • Lifetime sportman's license(freshwater/saltwater 공통) • Lifetime freshwater fishing license • 5 year freshwater fishing license 2) Saltwater fis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year license • 5 year license • Fishing-saltwater/freshwater • Fishing-saltwater/freshwater/hunting • Liftttime sportman license • Liftttime saltwater license • Snook permit • Crawfish permit 2.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Fresh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day freshwater fishing • 12 month freshwater fishing 2) Salt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day license • 7 day license • 1 year license
낙시바늘제한	• Bush hook 사용가능
미끼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물새우, 연어과가 아닌 작은 잡어(minnow)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그물 1인치 이하로 잡을 것. - 작은 잡어 그물은 직경 4피트를 넘지 않을 것 - 작은 잡어 후릿그물(seine)은 그물사이즈 1인치 이하, 길이 20피트 이하, 깊이 4피트 이하. - 작은 잡어(minnow) 올가미(trap) 길이 24인치 이하, 직경 12인치 이하, 깔때기(funnel)입구는 펼쳤을 때 1인치 이하 - 위의 방법으로 잡은 모든 연어과 물고기는 즉시 놓아 줄것 • Black bass, Peacock 는 부분이라도 미끼로 사용금지 • 살아있는 금붕어와 잉어 미끼로 사용금지 • 직접잡은 모든 강꼬치고기(pickereil)와 bream(blueill, redear sunfish, redbreast sunfish, spotted sunfish, flier, warmouth) 미끼로 사용가능. 단, 낙시대와 릴을 사용하지 않는 낙시대어법에서는 강꼬치고기(pickerl)와 bream 사용금지
사이즈제한	• 어종별 최대최소 명시
마리제한	• 어종별 일일할당량 명시

<부록 4> 설문조사 양식

레포츠피싱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레포츠피싱(낚시·스킨스쿠버다이빙·체험어장, 갯벌 체험 등)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레포츠피싱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학교, (주)이티카운슬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체계적인 해양레포츠피싱 정책수립을 통해 웰빙시대를 준비하는데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답변이 우리나라 해양웰빙시대를 준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본 연구목적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5.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류정곤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 박성쾌
조사기관 (주)이티카운슬

※ 설문에 관한 문의

조사기관: (주)이티카운슬 02-3295-3335

설문일시	
설문장소 및 시간	
설문자	

《레포트피싱이란?》

바다낚시, 해양스킨스쿠버, 체험어장, 갯벌체험, 바다축제 참여 등 해양레저(여가)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웰빙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어떠한 레포트피싱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즐기는 레포트피싱의 번호를 가장 선호하는 순으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

① 바다낚시 ② 스킨스쿠버 ③ 체험어장 ④ 갯벌체험 ⑤ 바다축제

2. 1번 문항에서 대답을 한 레포트피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연간 몇 번이나 하십니까? ()번

4. 레포트피싱의 장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3가지만 적어 주십시오.)(1._____ 2._____ 3._____)

① 접근성 ② 수려한 환경 ③ 편의시설 ④ 비용 ⑤ 기타()

5. 귀하의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3천만원 미만 ③ 3천만원~4천만원 미만
④ 4천만원~5천만원 미만 ⑤ 5천만원 이상

6. 귀하의 1년 여가 시간과 금액을 각각 100으로 보았을 때 레포트피싱에 시간과 금액을 몇 %나 투자하고 계십니까?(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가. 시간() : ① 0~20%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0% 이상

나. 금액() : ① 0~20%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0% 이상

※ 이후 질문은 귀하가 주로 방문하는 지역 혹은 최근에 방문한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7~16번).

7. 레포트피싱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지역 혹은 최근에 방문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 · 광역 · 특별시 ()시 · 군 · 구 ()지역

8. 다음은 귀하의 레포트피싱을 하는 형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연간 오는 횟수	()번
여행형태	단체(), 가족(), 개인()
1회 평균 소요기간	박 일
출발(집)에서 현지까지 총 여행시간	()시간 정도
교통수단	① 자가용 ② 여행사단체버스 ③ 고속/시외버스 ④ 렌트카 ⑤ 항공편 ⑥ 기타 ()

9. 다음은 레포트피싱의 여행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반여행객수	()명
동반유형	가족, 단체, 동호회, 친구, 기타()
총비용	()원
교통비	()원
식비	()원
숙박비	()원 1박당 단가()원 × ()박
숙박형태	① 무박 ② 민박 ③ 여관 ④ 호텔 ⑤ 콘도 ⑥ 기타 ()
임대(배, 시간당)	()원
용품대 - 스쿠버 다이빙 장비 등	()원
- 낚시관련 장비 등	()원
기타 잡비	()원

※ 1인당 비용을 알고 계시면 1인당 비용을 적어주시고, 만약에 확실히 모르신다면 총 여행객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설문지는 1인당 비용인지, 총 여행객 기준비용인지에 대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10. 실제 레포트피싱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2시간 미만 ② 2~5시간 미만 ③ 5~9시간 미만 ④ 9~12시간 미만
⑤ 12시간 이상

11. 다음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해당지역으로 여행을 오겠습니까?

예(), 아니오()

12. 11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해당지역에서 현지 어민들과의 마찰은 있습니까?

예(), 아니오()

14. 13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떤 내용인지 적어주십시오.

15. 해당지역에 레포트피싱을 하는데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6. 15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중요성에 따라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예, 교통, 편의시설, 숙박시설, 친절, 각종 요금 등)

1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번호에 √해 주십시오.

- ① 남 ② 여

18. 귀하의 나이를 답해주십시오.

만 ()세

19.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도 · 광역 · 특별시 ()시 · 군 · 구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우리나라 레포츠피싱 사업추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록 5> 시범지역 평가결과

구분	마을명칭	시설기반	접근성	인지도	프로그램	소계	전문가의견	합계
유어	거일체험마을	2	2	2	3	9		9
	고산체험마을	5	4	5	4	18		21
	남애체험마을	4	3.5	3	3	13.5		13.5
	대진체험마을	2	3.5	3	4	12.5		12.5
	도장포체험마을	2	2	4	3	11		11
	문항체험어장	4	2	3	4	13		13
	지족체험어장	5	2	4	2	13		13
	저도 유어장*	5	3.5	5	3	16.5	5	21.5
갯벌	공평체험마을	5	4	3	2	14		14
	다사리체험마을	2	4	3	4	13		13
	두우체험마을	2	3	2	4	11		11
	모항체험마을	3	3	5	4	15	5	20
	석두체험마을	4	3.5	2	3.5	13		13
	선감체험어장	5	4	3	3	15		15
	선소체험마을	5	3.5	5	2	15.5		15.5
	송계체험마을	3	3.5	3	3	12.5		12.5
	송석유어장	5	3.5	5	3	16.5		16.5
	오이도체험마을	2	4	3	3	12		12
	와온체험마을	2	3	2	3.5	10.5		10.5
	월하성유어장	4	3.5	5	4	16.5	5	21.5
	전곡체험마을	4	4	5	3	16		16
	제부체험마을	5	4	5	3.5	17.5		17.5
	진두체험마을	3	4	3	3	13		13
	큰무리체험마을	2	4	3	3	12		12
	하저체험마을	2	3	2	3.5	10.5		10.5
	하전체험마을	4	3.5	3	3.5	14		14
증도갯벌*	5	2	3	4	14	5	19	
체험	강정체험마을	2	4	3	3	12		12
	공수체험마을	5	4	3.5	3	15.5		15.5
	냉천체험마을	3	2	2.5	3	10.5		10.5
	대진체험마을	5	3	3	3	14		14
	대탄체험마을	4	3	3	4	14		14
	대항체험마을	3	4	3	4	14		14
	동화체험마을	3	3	2	3	11		11
	만돌체험마을	3	3	2	3.5	11.5		11.5
	오호체험마을	3	3	2	4	12		12
	유동체험마을	2	2	2	3	9		9
	장호체험마을	5	3	3	4	15		15
	죽림체험마을	3	2	2	4	11		11
	수중	경정체험마을	3	4	3	3	13	
위미1리유어장		4	4	3	3.5	14.5	5	19.5
하에체험마을		3	4	3	3.5	13.5		13.5

<부록 6> 잠재지역 실태조사표

■ 면담자 현황

소 속 :	
이 름 :	
연 락 처 :	

■ 설문내용

1. 어촌체험마을 현황

1.1 지정연도 :		년
1.2 지정면적 :		ha
1.3 지정내용 :		
1.4 지정 후 이행된 사업내용 (시설 측면 포함) :		
1.5 어촌계 현황	회원수 (명),	어선어업 (명), 해녀수 (명)
1.6 청년회 현황	회원수 (명),	회원 평균연령 (세)
1.7 기타 관련내용 기입		

2. 어촌체험마을 지정 이후 어업인 인식도

2.1 지정 이후, 해당 어업인들은 어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기타 ()		
2.2 지정연도 :		ha
2.3 지정내용 :		
2.4 지정 후 이행된 사업내용 :		
2.5 기타 관련내용 기입		

3. 체험프로그램 현황

<p>3.1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만 고르시오.</p> <p>유어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관찰(), 기타()</p>
<p>3.2 주요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을 모두 고르시오</p> <p>유어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관찰(), 기타()</p>
<p>3.3 현재 프로그램이 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p> <p>예 (), 아니오()</p> <p>3.3.1 아니오라고 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3.3.2 그렇다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p> <p>유어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업(), 수중관찰(), 기타()</p> <p>3.3.3 기타라고 한 경우,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p> <p>3.3.4 현재 프로그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p>
<p>3.4 연계 가능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십니까?</p> <p>예 (), 아니오()</p> <p>3.4.1 있다고 한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p> <p>3.4.2 이들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경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p>
<p>3.5 기타 관련내용 기입</p>

4. 관리현황

<p>4.1 체험어장으로 지정된 지역의 입어는 유료입니까? 예 (), 아니오()</p> <p>4.1.1 유료인 경우, 입장료는 얼마입니까?</p> <p>4.1.2 무료인 경우,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p> <p>4.1.3 유료화 한다면 언제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p>
<p>4.2 체험어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 아니오()</p> <p>4.2.1 아니라고 한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p> <p>4.2.2 상주 관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주 관리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p> <p>4.2.3 상시관리원을 어촌계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4.3 기타 관련 내용</p>

5. 시설현황

5.1 숙박시설	
민박(펜션, 리조트 포함) :	개소
어촌계 회원이 운영하는 민박 :	개소
외지인에 의해 운영되는 민박 :	개소
<p>5.1.1 어촌계 회원이 운영하는 민박이 외지 자본 민박에 비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예 (), 아니오()</p> <p>5.1.2 아니오라고 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p> <p>5.1.3 어촌계 공동으로 민박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다고 보는가?</p>	
5.2 레포츠피싱 판매시설	
낚시판매점	개소
스킨스쿠버 대여점	개소
기타	
5.3 음식점시설	개소
5.4 기타 관련 내용	

6. 기타 내용

6.1 향후 개발계획
6.2 접근성
6.3 지역주민, 행정관청 등의 의지
6.4 기타 지역별 특징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이며,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 해양수산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야 하며,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제한적 조건(연구의 범위, 대상, 방법, 한계 등)들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